

글로벌 법제전략 연구 11-20-1

글로벌 전략수립을 위한 지역 기초 연구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

박찬호 · 유예리 · 나채준 · 김형건 · 김종천 · 손현진
· 미즈시마 레오 · 김은환 · 윤정화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글로벌 법제전략 연구 11-20-1

글로벌 전략수립을 위한 지역 기초 연구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박찬호 · 유예리 · 나채준 · 김형건 · 김종천 · 손현진
· 미즈시마 레오 · 김은환 · 윤정화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글로벌 전략수립을 위한 지역 기초 연구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Analysis on Global Legal Strategy
for Regional Legislative System
-Middle East, Africa, Latin America, Southeast Asia, Central Asia-

연구자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전략TF팀
박찬호(Park, Chan-Ho)
유예리(Yoo, Ye-Ri)
나채준(Na, Chae-Joon)
김형건(Kim, Hyung-Gun)
김종천(Kim, Jong Cheon)
손현진(Son, Hyun Jin)
미즈시마 레오(Leo Mizushima)
김은환(Jin, Yin-Huan)
윤정화(Yoon, Jung-Wha)

2011. 12. 30.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선진외국의 법제도, 즉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률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했음
- 글로벌화 된 세계경제체제의 확대로 인하여 단순한 입법지원이라는 범주에서 문헌적인 연구 및 비교법적 방법론과 추상적인 대안제시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확대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능동적으로 해결을 필요로 함으로 인하여, 선진국과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간에 Bridging Role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13일 UAE에서 원전공사를 수주하였고, 에너지 자원 채굴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외교 및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
- 하지만,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전문가가 부재한 실정이어서 외교 및 경제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치, 사회, 문화 등의 기초연구 및 기초법제도를 연구함

II. 주요 내용

1. 중 동

- 중동지역 국가 중 UAE, Saudi Arabia, Qatar의 정치, 사회, 문화 등을 분석함
 - 중동지역 국가의 공통점으로 왕정중심의 정부 형태를 취함.
 - 아랍인의 국민성 및 기질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친화력이 강하고 정이 많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이기적인 면도 있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된 문제의 경우에 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중동지역 국가는 사회, 문화 특징으로 일부4처, 히잡 등이 있음
- 중동지역의 UAE, Saudi Arabia, Qatar의 법체계 분석
 - UAE, Saudi Arabia, Qatar의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이 코란이라고 하는 율법에 의한 Sharia法 體系에 의하여 法制를 운영하고 있음
 - UAE, Saudi Arabia, Qatar의 헌법을 분석을 통하여, 기본권규정, 위원회규정, 행정부, 사법제도 등의 통치구조를 분석함
 - UAE, Saudi Arabia, Qatar는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입법부인 의회를 입법화하고 있지 않고 그 대신에 명목상 의회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두고 있음

□ 중동지역의 현안문제

- 중동지역의 국가는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물관리 및 수자원관리 문제, 식량안보, 이슬람식의 민주주의 건설문제, 기후변화로 인한 빈곤문제, 정치개혁 논쟁과 선거,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원자력발전소 건설문제, 후세대를 위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이슬람여성의 인권문제 - 일부다처제, 히잡, 여성폭력, UAE의 해수담수화로 인한 사해방지방안, 아부다비 그린빌딩코드 적용 확대 등에 관한 문제를 분석함

2. 아프리카

□ 아프리카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 아프리카는 총 53개국의 독립국가로 구성되며 전 세계 인구의 14.7%(10억)이 살고 있으며 북부, 중앙, 동부, 서부, 남부 아프리카 5개 권역으로 구분함
-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빈번한 분쟁과 절대적 빈곤 및 기아, 질병 등 정치·사회·경제적 심각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음
- 강대국의 식민지를 겪어온 아프리카는 독립 시에 민주주의 정치 실현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열망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당·부족간 대립에 의해 정치적 혼란을 맞이한 국가가 대부분임
-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의 정치체제의 특징적인 것이 대통령제이며, 서구적인 의미의 민주적 대통령제에 비해 매우 이질적이고 절대군주제에 가까움

□ 아프리카지역의 법체계 분석

- 아프리카지역의 헌법을 보면, 식민지헌법에서 독립헌법의 제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독자적 헌법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그들의 식민지종주국의 헌법을 거의 맹목적으로 수용함
- 식민지종주국 언어별로 구분하여, 영어권, 불어권 및 기타언어권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임
- 아프리카 헌법은 명목적 헌법이라 흔히 얘기 하는데 이는 현실 사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그밖에 아프리카 헌법의 성격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유형화된 헌법이라는 것

□ 아프리카지역의 현안 문제

- 빈곤퇴치
 - 아프리카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빈곤층 비율은 여전히 50%를 넘으며, 2020년까지 극빈층 비율은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물 부족
 - 소말리(Somali) 주와 오로미아(Oromia) 주에서는 10~11월 사이에 내려야 할 비가 오지 않아 물 공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
 - 암하라(Amhara)와 아파르(Afar) 지역에서도 평균 이하의 강우량을 기록하여 가축 및 여성·아동의 영양보충에도 큰 문제가 발생함
- 지역공동체 형성
 -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 후 정치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아프리카 지역

내에는 10여 개의 경제공동체가 존재함

- 지역공동체를 통해서 경제발전과 빈곤감소의 효과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함
- 그러나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협소한 시장규모,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들이 보호주의정책을 취함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화를 이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3. 중남미

중남미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 중남미 주요 3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중남미의 법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스페인 법과 히스패닉 아메리카법의 유래를 살펴봄

중남미지역의 법체계 분석

- 브라질, 멕시코, 페루의 기초적인 법의 특징 및 국가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살펴봄
- 브라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법으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실체적, 절차적 보호장치를 헌법에 일일이 명시에 놓고 있음
- 중남미의 국가의 헌법재판제도는 혼합형이고, 법률에 대한 분쟁 전제형(구체적), 추상적 심사가 모두 가능하며, 헌법재판의 담당 기구는 집중형과 분산형의 유형을 취함
- 브라질과 멕시코, 페루의 정부형태는 공통적으로 대통령제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브라질의 상, 하의원 그리고 멕시코의 상, 하

의원 그리고 페루의 의원 선거는 공통적으로 직접선거의 방식을 취함

중남미지역의 현안문제

- 중남미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는 경제적, 시민적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오랜시간 지속되어온 통합에 대한 노력을 하는 통합체와 중남미의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논의를 함
-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브라질의 'Bolsa Familia'와 같은 빈곤퇴치 및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젠더변화 및 사회적 소수자 보호문제
- 중남미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패척결 및 사회안전망 확보문제를 발굴함

4.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정치, 사회, 문화 연구

-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의 법률시스템을 정리하였음. 인도네시아는 관습법과 네덜란드법률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베트남은 도이모이 이전에는 중국, 프랑스, 구 소련의 영향을 받고, 도이모이 이후에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 법률시스템을 정비함.

동남아시아 지역 법률시스템 연구

-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의 법률시스템을 정리하였음. 인도네시아는 관습법과 네덜란드법률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베트남은 도이모이 이전에는 중국, 프랑스, 구 소련의 영향을 받고, 도이모이 이후에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 법률시스템을 정비함.
- 인도네시아 헌법은 팽짜실라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기본권의 흠

결, 권력분립에 反하는 미완성적 헌법으로 최근 여러 차례 개정되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기본권을 강화함.

- 베트남은 1986년 사회주의식 경제 개발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외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주의 통치 체제를 고수하면서 시장경제 원칙을 부분 도입하는 헌법을 제정함
- 캄보디아는 공산정권이 무너진 이후 1993년 신헌법을 제정하여 입헌군주국이 됨. 국왕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에 따라 나라를 다스림.

동남아시아 지역현안 분석

- 동남아시아 지역 현안으로 동남아시아의 부패방지시스템, 동남아시아의 수자원관리 시스템, 동남아시아의 재난관리 시스템, 동남아시아 빈곤감소 문제 등을 발굴함

5.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 민족 공화국으로 구성됨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주도의 경제개혁을 진행해 왔고, 정치체제에 있어서도 비교적 공고한 일인 독재정권을 유지함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정치민주화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

□ 중앙아시아지역의 법체계 분석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법률체계는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며 최고 법인 헌법을 정점으로 통일된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행정부는 대통령과 중앙 및 지방정부로, 사법부는 최고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구성됨
-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사유화가 진행되고 개인의 사적소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었음. 가족법은 민법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법률을 규정함

□ 중앙아시아지역의 현안 문제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연방 사회주의체제에서 축적되고 독립 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안보, 통상, 민족갈등, 마약, 테러, 수자원 이용,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현안이 발생됨
 - 국내적 현안: 경제성장, 외국인투자유치, 에너지수출, 식량 안보, 수자원 확보, 환경오염, 빈부 격차
 - 대외적 현안: 에너지 외교, 지역안보, 관세동맹, 자유무역협정, 민족갈등, 이슬람급진주의
 - 글로벌 현안: 에너지 확보, 실크로드 지역경제권, 인권, 마약, 테러, 민주화, 식량불안, 공정경쟁, 부정부패, 환경오염, 사막화
 - 지역공동현안: 수자원 확보, 에너지개발협력, 경제공동체형성, 지역안보, 정부주도개발, 권위주의체제 확대

Ⅲ. 기대효과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초연구를 통하여 향후 우리 정부 및 기업이 동 지역에 진출시에 실질적인 지역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제어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Background

- Research of legislation of developed countries, namely Germany, France, Japan and others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assisting domestic legislation attain globally accepted standards
- With globalization of world economies, there are limitations to support the formulation of legislation through literature research, comparative law methodology and conveyance of abstract alternatives
- Through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Korea must play an active part in mitigating global issues. As such,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undertake a bridging role between developed nations and the regions in the Middle East, Africa, Latin America, South East Asia and Central Asia

Objectives

- March 13, 2011, Korea obtained an order for nuclear construction in the UAE. Once the energy contract was signed, the results were diplomatic and economic ties
- However, due to the lack of experts in the Middle East, Africa, Latin America, South East Asia and Central Asia diplomatic and economic support has experienced much hardship

- On the basis of this lack, research will be conducted on the aforementioned countries' politics, society, culture, economy, and legislation. These aspects will be researched to create a basic report

II. Main Contents

1. The Middle East

- An analysis of society, politics, culture and etcetera will be conducted for the following Middle Eastern countries: UAE, Saudi Arabia and Qatar
 - A similarity in the Middle Eastern region is that the head of state is a monarch
 - A prominent characteristic of Arabs is that they are sociable. However, they are also proud and self-centered. As such, if a situation arises where personal opinions are affected, they will not accede to any other beliefs
 - There are many characteristics of society and culture that are specific to the Middle East (ie polygamy, headdress for women)
- Analysis of UAE, Saudi Arabia and Qatar's Legislation
 - As Islamic states, the law is based upon the laws of the Koran which is known as Sharia Law
 - Through the analysis of constitutional laws in the UAE, Saudi Arabia and Qatar, an overall analysis of basic regulations, political structure, administration, judicial systems and etcetera will be conducted

- Unlike the democratic states of western nations that have a parliamentary body, Islamic states have a committee that functions are its parliament
- Unlike the democratic states of western nations that have a parliamentary body, Islamic states have a committee that functions are its parliament
- Due to geopolitical factors, the current issues that will be analyzed are: water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food security; the construction of democracy by Islamic states; poverty caused by climate change; debates on political reform and elections;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to increase energy capacity; renewable energy that promotes low emissions green growth; discrimination of Islamic woman (polygamy; headscarf; abuse); UAE's desertification caused by seawater desalination; Abu Dhabi Green Building Code expansion; and etcetera

2. Africa

-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in Africa
 - Africa is composed of total 53 independent states with approximately 14.7% of the world's population (billion) and is divided into 5 districts; Northern, Central, Eastern, Western, and Southern Africa
 - Most of the Africa countries are facing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situations such as frequent disputes, absolute poverty and starvation, disease
 - Despite the aspiration of realizing democracy in terms of politics

after achieving the emancipation from being the colonies of powerful nations, most of the Africa countries are facing political turmoil due to the conflicts within political parties and tribes

- Traditionally presidential system is the unique trait of Africa's political system and is highly different from democratic presidential system of Western and similar to absolute monarchy

Analysis on African Legal System

- From African region's constitution, it seems Africa failed to establish its independent constitutional order during the process of changing from colonial constitution to independent constitution and blindly accepted its colonial constitution
- It is effective to divide Africa into colonial districts in terms of language such as English, French speaking areas and etc
- African constitution is commonly considered nominal due to its little function in a real society. Another trait of African constitution is that it is a categorized constitution

Current Issues in African Region

- Antipoverty
 - Africa is developing rapidly, however, its poor strata is still over 50% and its destitute poor is not anticipated to drop below 30%.
- Lack of Water
 - In Somali and Oromia, water supply is extremely difficult, due to its lack of precipitation between October and December

- Additionally, in Amhara and Afar region, problems occurred regarding supplementing nutrition for livestock, women and Children since the precipitation was below than average
- Forming communities
 - African countries have propelled economic cooperation even though they have been separated after the emancipation. There are about 10 economic communities within the African region
 - Economic development and diminishing poverty are expected through communities
 - Nonetheless, African countries are anticipated to take considerable time until they become competitive and globalized, since most African countries are adopting protectionist policies in their small markets and even in the sectors in which they can be competitive

3. Latin America

-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in Latin America
 - Aimed to understand the basic contents encompassing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in the 3 main countrie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to examine the origins of Spanish and Hispanic law to comprehend the legal system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 Analysis on Legal System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 Examined the basic traits of law in Brazil, Mexico, and Peru and the composition of and management in those countries

- Brazil has specified various actual and procedural protective device in its constitution in order to protect their people from political authorities
- Central and South America's Constitutional Court system is mixed in the sense that both concrete and abstract control regarding law are possible and the organs of Constitutional Court adopt centralized and dispersal categories at the same time
- Governments in Brazil, Mexico, and Peru are adopting presidential system and Brazil and Mexico's upper and lower house and Peru's parliamentary election are taking direct election

Current Issues in Latin America

- Critical current issue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are concerned with continued effort towards social integration by integrated system and sustainable economy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 Institutions eradicating poverty such as Brazil's 'Bolsa Familia'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issu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rans-gender and minorities for social integration
- To eliminate factors hindering societal development of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to eradicate corruption and secure social safety net in order to maintain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ies

4. Southeast Asia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in Southeast Asia

- Summarized the legal system in Indonesia, Vietnam, and Cambodia.

Indonesia was greatly influenced by common law and Dutch law. Vietnam was influenced by China, France, and former Soviet Union before Doi Moi and organized the legal system with the help from Japan after Doi Moi

Analysis on Legal System in Southeast Asia

- Summarized the legal system in Indonesia, Vietnam, and Cambodia. Indonesia was greatly influenced by common law and Dutch law. Vietnam was influenced by China, France, and former Soviet Union before Doi Moi and organized the legal system with the help from Japan after Doi Moi
- Indonesian constitution has recently been amended several times into sort of an incomplete constitution which is opposed to balance of power with Pancasila as its basic ideology in order to weaken presidential authority and strengthen fundamental rights
- Vietnam has admitted its failure in 1986 socialistic economic development and enacted a constitution which adheres to socialistic system of government while partially introducing market economy principle
- After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government, Cambodia became a constitutional monarchy enacting 1993 new constitution. The king has ruled the country with constitution, liberal democracy, and pluralism

Current Issues in Southeast Asia

- Southeast Asian corruption prevention system,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 disaster relief system, poverty reduction etc have been developed as the pending issues

5. Central Asia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in Central Asia

- Central Asia is composed of 5 democratic republics; Kazakhstan, Uzbekistan, Kyrgyzstan, and Turkmenistan
- Central Asian countries are adopting powerful presidential systems and bicameral systems. They also have made progress in a state-centric economic reform and have maintained a relatively stable dictatorial government
- Central Asian countries are actively engaging in an open door policy by switching their systems to market economies while passively approaching political democratization

Analysis on Legal System in Central Asia

- Central Asian countries' legal systems have written laws as a rule and form a unified legal system centered around a constitution
- Divided government power into legislature, executive, and judicial bodies and has maintained checks and balances among them. Legislature is composed of upper and lower houses, executive the presiden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judicial bodies the Supreme Court and District Courts

- Originally in socialist countries, private property was not authorized, however, after switching to market economy, privatization has been carried on and recognition regarding authorizing individual's private property has emerged

Current Issues in Central Asia

-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developed various pending issues such as regional security, trade relations, ethnic conflict, drugs, terror, using water resources, and energy development etc accumulated by the former Soviet Union Socialist system and in the course of switching to market economy after the emancipation
 - Domestic Current Issues: Economic development,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exporting energy, food security, securing water resources, pollution, and disparity between rich and poor
 - Foreign Pending Issues: Energy diplomacy, regional security, customs union, Free Trade Agreement, ethnic conflict, and radical Islamic groups
 - Global Current Issues: Securing energy, Silk Road regional economic bloc, human rights, drugs, terror, democratization, precarious food condition, fair competition, eradicating corruption, pollution, and desertification
 - Common Regional Current Issues: Securing water resources, cooperating energy development, forming economic community, regional security, state-led development, and expanding authoritarian regime

III. Expected outcome

- Throughout the preliminary research on Middle East, Africa, Southeast Asia, and Central Asia region, aiming to contribute to provide the actual preliminary data for our government and companies to enter the region in the future

➤ **Key Words : Middle East, Africa, Latin America, Southeast Asia, Central Asia**

목 차

요 약 문	5
Abstract	15
제 1 장 서 론	29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9
제 2 절 연구의 범위	30
제 2 장 글로벌 전략수립을 위한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등에 관한 기초	33
제 1 절 중동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33
1. UAE(United Arab Emirates)지역의 一般的인 管見	33
2. Saudi Arabia Kingdom 지역의 一般的인 管見	51
3. Qatar(Qatar State)지역의 一般的인 管見	68
4. 중동(UAE, Saudi Arabia, Qatar)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등에 공통점 도출	81
제 2 절 아프리카의 정치, 사회, 문화 등	85
1. 아프리카 정치체제	85
2. 아프리카 국가 형성	90
3. 아프리카 지역공동체	95
제 3 절 중남미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108
1. 브라질	108
2. 멕시코	119

3. 페 루	137
제 4 절 동남아시아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153
1. 인도네시아의 정치·사회·문화	153
2. 베트남의 정치, 사회, 문화	163
3. 캄보디아의 정치, 사회, 문화	176
제 5 절 중앙아시아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180
1. 중앙아시아의 개관	180
2. 카자흐스탄의 사회·정치·경제	184
3. 우즈베키스탄의 사회·정치·경제	194
제 3 장 글로벌전략수립을 위한 지역의 법체계 분석	205
제 1 절 중동의 법체계	205
1. 아랍에미레이트	207
2. 사우디아라비아	221
3. 카타르	229
4. 중동(UAE, Saudi Arabia, Qatar State)지역의 법체계에 관한 공통점 도출	243
제 2 절 아프리카지역의 법체계	249
1. 에티오피아	249
2. 나이지리아	259
3. 콩고민주공화국	267
제 3 절 중남미지역의 법체계	272
1. 중남미의 법체계의 개요	272
2. 스페인 법(Siete Partidas)과 히스패닉 아메리카 법의 유래	273
3. 브라질	275

4. 멕시코	281
5. 페루	288
제 4 절 동남아시아지역의 법체계	292
1. 인도네시아	292
2. 베트남	302
3. 캄보디아	314
제 5 절 중앙아시아지역의 법체계	318
1. 중앙아시아지역의 법체계 개관	318
2. 카자흐스탄	318
3. 우즈베키스탄의 헌법	322
제 4 장 글로벌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현안 문제	327
제 1 절 중동지역의 현안문제	327
1. 물 부족(Water Shortage)	327
2. 식량안보(Food Security)	328
3. 사우디아라비아의 환경문제로 “태양도시” 건설	329
4. 기후변화로 인한 빈곤문제	331
5. 정치개혁 논쟁과 선거	332
6.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334
7. 후세대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335
8. 이슬람여성의 인권문제 - 일부다처제, 히잡, 여성폭력-	337
9. UAE의 해수담수화로 인한 사해방지 방안	340
10. 아부다비 그린빌딩 코드 적용 확대	342
제 2 절 아프리카 지역의 현안문제	343

1. 에티오피아의 현안 문제	343
2. 나이지리아의 현안 문제	345
제 3 절 중남미 지역의 현안 문제	346
1. 중남미 지역 통합 기구의 변화	346
2. 중남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경제 통합 노력	348
3. 중남미의 빈곤퇴치 및 사회복지제도	349
4. 중남미의 젠더변화 및 사회적 소수자 보호 정책	351
5. 중남미의 부패척결과 사회안전망 확보	352
제 4 절 동남아시아지역의 현안문제	353
1. 개 관	353
2. 동남아시아의 부패방지 시스템	354
3. 동남아시아 수자원관리 시스템	357
4. 동남아시아 재난관리 시스템	361
5. 동남아시아 빈곤감소 및 빈부격차해소 방안	363
제 5 절 중앙아시아지역의 현안 문제	366
1. 지역현안 개관	366
2. 중점현안 이슈 분석	367
제 5 장 결 론	383
참 고 문 헌	38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종래의 외국법제도 연구는 우리나라의 입법수요에 대한 지원을 위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고, 이는 우리나라의 법률 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한 경제성장과 시장의 확대로 단순히 국내 입법지원이라는 범주에서 연구하는 현행 비교법 연구방법론으로는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창출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초 연구를 위하여는 중동지역의 법체계 및 현안연구를 포괄하는 지역종합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13일 UAE에서 원전공사를 수주하였고, 에너지 자원 채굴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외교 및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하지만,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전문가가 부재한 실정이어서 외교 및 경제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초연구 및 기초법제도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글로벌전략수립을 위한 지역의 법제도 분야는 경제분야와 달리 정치·사회·문화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실질적인 지역 기초법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 일본, 미국 등은 중동지역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와 함께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연구가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

아시아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등에 대한 분석을, 그리고 기초법률을 분석한다.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최근 현안주제를 발굴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글로벌 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연구는 글로벌한 경제성장과 시장의 확대에 인하여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법체계 및 현안연구를 포괄하는 지역종합연구 및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간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치, 사회, 문화를 강화하고자 한다.

제2장 제1절에서는 중동지역의 기초법제연구를 함에 있어서 UAE, Saudi Arabia Kingdom, Qatar State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논문 및 국외문헌을 참조한다. 제2절에 아프리카지역은 전체의 정치체제 및 헌법 개요 및 특징을 검토한다. 제3절 중남미지역은 브라질, 멕시코, 페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분석한다. 제4절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의 정치, 사회, 문화 등을 살펴본다. 제5절 중앙아시아 지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제도를 분석한다.

제3장 제1절은 중동지역의 법체계를 분석을 한다. 주로 UAE, Saudi Arabia Kingdom, Qatar State 헌법의 체계, 기본권 규정, 입법부에 해당되는 위원회 규정, 사법부, 행정부를 살펴본다. 그리고 각 국가간 공통점으로 “샤리아법”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헌법과 상호협력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서구의 입법부 대신에 명목적 의회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중동지역의 국가는 세습제인 왕정 국가로 인한 병폐가 있다는 점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UAE, Saudi Arabia Kingdom, Qatar State Constitution을 번역하여 분석을 한다. 제2

절에서는 아프리카 주요국으로 에티오피아·나이지리아·콩고민주공화국을 선택하여, 당해 국가의 주요 법체계를 분석한다. 제3절에는 중남미지역의 법체계, 스페인법과 히스패닉 아메리카법의 유래, 브라질, 멕시코, 페루의 헌법에 대하여 분석한다. 제4절에 동남아시아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법률체계를 조망한다. 제5절 중앙아시아 지역의 법체계를 분석하는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제도, 기본권규정, 통치구조 등을 검토한다.

제4장 제1절에서는 중동지역의 현안으로 중동지역의 물관리 및 수자원관리 문제, 식량안보, 이슬람식의 민주주의 건설문제, 기후변화로 인한 빈곤문제, 정치개혁 논쟁과 선거,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원자력발전소 건설문제, 후세대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이슬람여성의 인권문제 - 일부다처제, 히잡, 여성폭력, UAE의 해수담수화로 인한 사해방지방안, 아부다비 그린빌딩코드 적용 확대 등에 관한 현안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현안문제로 물관리 및 수자원관리, 식량부족 문제 해결방안, 중동지역의 국가에 이슬람식 민주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한다. 제2절에서 아프리카의 현안으로 민주주의, 국가적 저존 및 위신, 세계화, 지구온난화, 치안, 부패, 종교, 의료 문제 등을 검토한다. 제3절 중남미지역의 현안문제로 중남미지역 통합기구변화와 경제발전, 빈곤퇴치, 사회적 소수자보호, 부패척결과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하여 분석한다. 제4절 동남아시아 현안문제로 부패방지시스템, 수자원관리 시스템, 재난관리 시스템, 동남아시아 빈곤감소 문제 등을 검토한다. 제5절 중앙아시아의 현안문제로는 국내적 현안: 경제성장, 외국인투자유치, 에너지수출, 식량 안보, 수자원 확보, 환경오염, 빈부 격차, 대외적 현안: 에너지 외교, 지역안보, 관세동맹, 자유무역협정, 민족갈등, 이슬람 급진주의, 글로벌 현안: 에너지 확보, 실크로드 지역경제권, 인권, 마약, 테러, 민주화, 식량불안, 공정경쟁, 부정부패, 환경오염, 사막화, 지

제1장 서론

역공통현안: 수자원 확보, 에너지개발협력, 경제공동체형성, 지역안보, 정부주도개발, 권위주의체제 확대를 분석한다.

제 2 장 글로벌 전략수립을 위한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등에 관한 기초

제 1 절 중동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1. UAE(United Arab Emirates)지역의 一般的인 管見

UAE의 국명은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United Arab Emirates)이고, 연방창립일은 1971년 12월 2일인데, 그 전에 1952년 영국정부의 주도하에 7개의 부족통치자로 구성된 “걸프지역의 보호령연합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8년에 영국이 1971년까지 군대를 전원 철수하기로 결정하자, 1968년 카타르와 바레인을 포함한 에미리트 연방최고회의를 결성하여 합의를 했다. 이어서 1971년 영국이 휴전 토호국과의 모든 조약을 종결함에 따라 1971년 12월 2일에 라스 알-카이마를 제외한 6개의 에미리트로 구성된 아랍에미리트연합을 창설하였다.¹⁾ 따라서 아랍 에미리트 연방(United Arab Emirates) 헌법 제1조에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샤르자(Sharjah), 아즈만(Ajman), 움 알 카이마(Umm Al Quwain), 푸자이라(Fujairah), 라스 알 카이마(Ras Al-Khaimah)로 구성하게 되었다.²⁾

UAE의 수도는 아부다비(Abu Dhabi)이고, 인구가 약 164만명, 두바이가 약 177만 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³⁾ UAE는 현재 인구가 총 679만명이고, 인구의 80%이상이 외국인⁴⁾이고, 약 20%는 자국민이라고 한다.⁵⁾

1) UNITED ARAB EMIRATE YEARBOOK(2010), pp. 12~13.

2) UAE Constitution, Art. 1.; 헌법의 본래 서명은 Ras Al Khaimah는 포함되지 않았고, 1962년 2월 10일에 연방을 준수했다. 수정헌법(1972년) 1의 선언에 의해서 추가된 것은 다음과 같다: 연방에 새로운 멤버의 가입의 경우에 연방의 최고위원회는 좌석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연방평의회에서 멤버를 할당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헌법 제68조에 멤버를 규정하게 되었다.

3) 2004년 UAE의 수도 아부다비의 인구가 1,678,000명, 두 번째 주요도시 그리고 UAE의 상업도시로 약 1,306,000명 이었다.(Ministry of Energy, United Arab Emirates, 2006/4), p. 16.).

UAE의 종교는 이슬람교가 96%를 차지하고 있고, 언어는 아랍어이다.⁶⁾ 즉 이슬람교는 종교일뿐인가 혹은 종교이며 국가인가 하는 문제는 현대 이슬람세계에서 중요한 논쟁 중의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슬람은 종교이며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이 종교이자 국가이기 때문에 “꾸란”과 “하디스”는 국가통치에 관한 기본원리가 된다.⁷⁾

UAE는 국기, 엠블렘 및 國歌를 둔다. 국기와 엠블렘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고, 각 에미리트는 영토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국기를 유지하고 있다.⁸⁾

UAE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의 연방제 국가이고, 국가원수는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인데 2009년 11월 재선되어 2014년까지 연방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부통령겸 총리로는 모하메드 빈 라쉬드 알 막툼인데, 2011년 1월 재선되어 현재 두바이의 통치자이다.⁹⁾

4) UAE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GCC 멤버의 6개나라 간에 협력적인 개발이었다. UAE는 모든 나라사이에서의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의 지속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아랍지역에서의 안정, 안보, 평화를 위하여 헌신한다.(UNITED ARAB EMIRATE YEARBOOK(2010), p. 38.)

5) UAE 연방이 형성되기 전의 에미리트의 경제는 진주채취, 수산업, 무역 및 소규모의 농업을 기반으로 했다. 1930년도에 UAE에서 석유가 최초로 발견되었지만, 1960년대 셰이크 자이드(H.H. Sheikh Zayed)가 아부다비에서 정권을 장악한 후에 비로써 석유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1962년에는 움무 샤이프 유전에서 최초로 수출이 이루어졌으며, 석유가 발견되기 전에는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중개무역과 소규모의 어업,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한 농업과 목축업이 산업의 전부였다. 현재는 농업 2%, 공업 56%, 서비스업 42%의 산업구조를 취하고 있다.(<http://hopia.net/hong/file/oil-uae.htm>)

6) UAE Constitution, Art. 7.; 연방의 공식적인 종교는 이슬람이다. 이슬람 샤리아는 연방 입법의 주요 원천으로 한다. 연방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이다.

7) 꾸란과 하디스에 담겨 있는 그 원리들은 국가의 정치적인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고 구체화하고 있다. 즉 국가의 목적은 종교를 세우고, 백성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슬람국가의 신정체제와 관련해서 진원숙, 「이슬람의 탄생」(살림출판사, 2010), 41면 이하 참조.

8) UAE Constitution, Art. 5.

9) www.uaeinteract.com/governmentaffairs; UNITED ARAB EMIRATE YEARBOOK(2010), pp. 22~27.

UAE의 연방행정구역은 7개의 에미리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교, 국방 등 연방정부 소관사항외에는 각각의 에미리트별로 관할권을 가진다. UAE의 대의기구로 40명으로 구성되는 연방평의회가 있는데, 임기는 4년이다.¹⁰⁾ 실제 연방평의회는 실질적인 입법적인 권한은 없고, 심의 및 자문 기능만을 담당하며, 정당 활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¹¹⁾

UAE의 군사력은 총 육만천오백명으로 구성되는데, 육군이 사만사천명, 해군이 이천오백명, 공군이 구천명이라고 한다.

(1) UAE의 정치제도

1) UAE의 정부구조 - 행정부, 입법부(연방평의회), 사법부

UAE의 행정부의 수반으로 “대통령”¹²⁾은 연방최고회의에서 선출되고,¹³⁾ 임기는 5년이다.¹⁴⁾ 관례적으로 에미리트 중 아부다비(Abu Dhabi) 통치자가 선출되며, UAE 통합군 사령관이 겸직을 한다.

10) UAE Constitution, Art. 68.; 연방평의회는 40명으로 구성된다. 연방평의회는 자리는 Abu Dhabi 8명, Dubai 8명, Sharjah 6명, Ras Al-Khaimah 6명, Ajman 4명, Umm Al-Quwain 4명, Fujairah 4명의 에미리트에 따라 구분된다.

11) UNITED ARAB EMIRATE YEARBOOK(2010), p. 30.

12) UAE Constitution, Art. 107.; 연방대통령은 연방사법부에 의하여 통과된 선고의 집행으로부터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연방대통령은 형량의 감형 또는 복역에 대한 사면권을 집행 전에 3년의 기간 동안 연방 장관위원회에 의하여 선택된 6명의 회원으로 구성과 연방장관의 의장하에 형성된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연방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근거로 갱신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원은 좋은 평판과 능력이 있는 시민으로부터 추천되어진다. 위원회의 회원들은 무료로 한다. 위원회 의결은 비밀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다수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13) UAE Constitution, Art. 51.; 연방의 최고위원회는 연방대통령과 부통령을 에미리트 멤버사이에서 선출한다. 연방부통령은 어떤 이유로 부재의 경우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14) UAE Constitution, Art. 52.; 대통령과 부통령의 공식임기는 5년으로 한다. 그들은 재선거로 동일한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공식직무를 수행함에 앞서 최고위원회 앞서 아래와 같은 선서를 하여야 한다.“나는 아랍 에미리트 연방에 충실할 것을 전능하신 하느님께 맹세 한다; 첫째,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둘째, 연방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셋째, 나는 나의 의무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고, 연방의 영토보전과 연방의 독립을 보호할 것이다”

UAE의 연방총리는 내각을 수반하고 임기가 5년이고, 대통령의 제청 및 연방최고회의 동의로 선출된다. 관례적으로 두바이(Dubai) 통치자가 선출되며, 부통령직을 겸직한다. UAE의 내각은 연방총리가 제청, 연방최고위원회에서 선출된다. 내각은 국내외 연방정부의 일반정책의 이행을 수립, 내각위원들은 최고위원회에서 제재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하여 연방대통령에게 제출하기 전에 연방국가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연방법의 초안을 제안, 연방의 연간 일반예산 작성 및 최종계정, 명령과 다양한 결정의 초안 준비, 연방법의 개정 없이 이행에 대한 필요한 규제 사안 또는 그러한 규제중단 및 집행으로부터 면제 제작, 연방헌법과 법률의 한계내에서 행정과 공공서비스 조직과 관련된 경찰규제와 기타 규제 사안, 내각위원회 또는 특별한 법률조항의 선포로 연방장관 또는 행정당국의 권한을 규제, 연방법률, 명령, 결정의 이행의 중단과 연방과 에미리트에 관련된 당국의 모든 규제, 연방법원에 의하여 내려진 판결의 집행 및 연방에 의하여 결정된 국제조약과 협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방근로자의 해고와 임명, 즉 근로자의 임명과 해고는 명령의 문제를 요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연방근로자의 훈련과 행동 그리고 연방의 공공서비스와 부서에서 근로자 행동의 규제, 다른 행정당국은 헌법의 한계내에서 최고위원회에 의해 또는 법률에 의하여 권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¹⁵⁾

내각의 심의는 비밀이고, 그 결의는 과반수로 통과되고, 투표수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연방총리의 투표로 결정되고,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준수하여야 한다.¹⁶⁾

UAE의 권력구조에 따라 내각도 분배되는데, 아부다비 6명(외교, 내무, 정보 등), 두바이와 샤르자 각각 3명(국방, 재정, 경제, 무역 등),

15) UAE Constitution, Art. 60.

16) UAE Constitution, Art. 61.

푸자이라, 라오스 알-카이마 각각 2명, 아즈만, 움알-카이와인 각 1명이다.¹⁷⁾

UAE는 서구의 입법부를 “연방평의회”이라 불리우는데, 임기가 4년이고 각 에미리트별로 임명하고, 40명으로 구성된다.¹⁸⁾ 연방평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로 내각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고, 명목적으로 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할 뿐이고, 입법기능이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은 없다. 연방평의회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먼저, 연방평의회 의 대표자로 연방의 에미리트 시민, 장기적으로 거주하여야 하고, 둘째, 선출당시 적어도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좋은 품행과 평판을 가져야 하고,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지 않아야 하고, 법률에 따라 교화되지 않는 한 시민의 지위를 즐겨야 하고, 셋째, 읽고, 쓰는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¹⁹⁾

연방평의회 의 회원은 장관 및 연방의 모든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²⁰⁾ 연방평의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에 시작하여, 보통회기는 적어도 6개월 동안 지속하고, 임시회기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수 있다. 연방평의회는 어떤 다른 문제 보다 임시회기를 개최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대통령은 헌법의 효력에서 60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첫 번째 보통회기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회기는 최고평의회 의 명령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에 종료한다.²¹⁾

연방평의회 의 의원은 평의회와 위원회에 내에서 그들의 직무수행 중에 표현된 어떤 의견과 관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17) UAE Constitution, Art. 58.; 법률은 각 장관의 권한과 장관의 관할권을 정하고 있다.
1. 외교 2. 내무 3. 국방 4. 금융, 경제와 산업 5. 법무부 6. 교육 7. 공공건강 8. 공공
사업과 농업 9. 통신, 우편, 텔레그라프와 전화 10. 노동과 사회 11. 정보 12. 계획

18) UAE Constitution, Art. 68.

19) UAE Constitution, Art. 70.

20) UAE Constitution, Art. 71.

21) UAE Constitution, Art. 78.

특권”을 정하고 있고, 또한 “현행범(flagrant delicate)”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평의회 회의 동안에 의회의 승인 없이 어떤 의원에 대한 어떠한 형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는 “不逮捕特權”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평의회 회의가 아닌 동안에 그러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연방평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²²⁾

UAE의 사법부는 연방최고회의가 임명한 5명의 재판관²³⁾으로 구성하고, 주로 에미리트간 분쟁 및 각 에미리트와 연방정부간의 분쟁을 조정한다. 기타법원으로 종교사건과 관련해서는 샤리아 법원에서 헌법 대신 이슬람법을 근거로 재판하고, 그 밖의 각 에미리트별로 지방법원 성격의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을 두고 있다.

UAE 사법부의 재판은 규율의 기본이고,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판사는 독립적이고, 그는 당국에 구속되지 않고 법과 자신의 양심에 구속된다고 한다.²⁴⁾

연방대법원 판사와 대법원장은 법을 집행하는 동안 파면되지 않는다. 그들의 임기는 사망, 사임, 고정기간 계약자 또는 파견근무 기간의 의하여 임명된 계약기간의 만료, 퇴직연령에 도달, 질병의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영구 불능인 상태, 법에 정해진 절차와 이유를 근거로 한 징계 석방, 그들의 동의에 의한 다른 공직에 임명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종료되지 않는다.²⁵⁾ 연방대법원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며 모든 것을 구속한다.²⁶⁾

22) UAE Constitution, Art. 81. 82.

23) UAE Constitution, Art. 95.; 연방대법원은 최고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후 연방대통령의 발급한 명령에 의하여 5명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판관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

24) UAE Constitution, Art. 94.

25) UAE Constitution, Art. 97.

26) UAE Constitution, Art. 101.

2) 최근 UAE의 정치상황

UAE는 1971년 연방창립 이래 각 에미리트 간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국을 유지하고 있다. 최대 에미리트인 아부다비 통치자 故 자이드 大統領의 개인적 신망과 석유 수입의 에미리트간 적절한 안배를 통해 전체 연방의 화합을 유지하고 있다. 안정된 정치 환경을 기반으로 원유 수익의 기간산업 개발 집중투자와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을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무역·금융·통신·교통·관광 중심지로 부상했다.

1996년 5월에 연방최고회의는 정식 헌법 채택 및 아부다비를 수도로 공식 확정했다. 그리고 1997년 12월 두바이 관할 군대를 통합사령부 지휘 체제하에 편입기로 결정하고, 실질적인 UAE 군의 통합 확보 및 아부다비 에미리트의 지도력 강화했다. 석유 수입이 풍부한 아부다비(전체 석유 매장량의 94% 차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에미리트는 아부다비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2004년 11월에 자이드 초대 대통령 사망 이후 장남 칼리파가 대통령직 승계를 하게 되었다. 칼리파 대통령은 1969년부터 아부다비 왕세자였으며, 자이드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여온 바, 칼리파의 권력 승계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자이드 대통령의 19명의 여타 아들들간의 권력·재산분배 및 각 연방들간의 협력관계 유지로 국가 안정에 주요 요인이나 정치적 위협요인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부친인 故 자이드 대통령의 친서방, 친기업 성향의 자유주의 노선 계승했다. 특히, 모하메드 왕세자는 칼리파 대통령의 강력한 협조자로 매우 활동적인 성격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아부다비 경제 개발 및 개혁과정에서 동인의 영향력이 증대될 전망이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칼리파 대통령의 이복동생으로 故 자이드 대통령이 생전 가장 좋아했던 부인 셰이카 파티마의 장남이고, 故 자이드 대통령은 2004년 모하메드 왕세자를 위해 아부다비副왕세자 직을 신설하는 등 각별한 애정 표현이라고 한다.²⁷⁾

2009년 11월 칼리파 대통령은 2009년에서 2014년까지 대통령직 연임에 성공을 하였다.

최근 UAE는 연방평의회 간접선거를 통한 점진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즉 2005년 12월 칼리파 대통령은 연방창립일에, 대국민 연설에서 연방 평의회 의원 과반수에 대해 직접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2006년 12월 각 에미리트 통치자가 에미리트별 비율에 따라 지명해 오던 연방평의회 의원 40명 중 20명에 대해 UAE 최초의 선거를 실시했다. 약 6,70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게만 투표권을 허용하는 간접선거였다.

2009년 2월 연방최고회의는 연방평의회 의원 임기를 2년 연장키로 결정을 하였고, 동 의원들은 연장된 2년의 임기가 2010년 12월에 만료되었으나, 2011년 9월 24일에 연방평의회 선거를 실시한 결과 전체 12만9천274명의 선거인단 중 3만5천877명이 참여하여 27.7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UAE의 연방평의회에 대한 선거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연방평의회가 입법기능이나 연방최고위원회와 같은 행정부 견제 기능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²⁸⁾

칼리파대통령은 파격적인 사회보장정책 단행했는데, 그 이유가 칼리파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함이었다. 고유가로 인한 정부의 막대한 수입을 국민들에게 환원을 하였고, 2005년 4월에는 모든 자국민의 임금을 25% 인상(외국인 근로자 15%)함, 2005

27) <http://are.mofat.go.kr/kor/af/are/affair/opening/index.jsp>

28) http://www.uaeinteract.com/docs/National_Elections_Committee_endorses_the_final_lists_of_winners_in_FNC_elections/46870.htm

년 10월 1일부터 이혼녀, 노인층, 미혼녀, 불구자 등 자국민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사회보장 지원금 예산을 전년 대비 75% 인상되었다.

2006년 2월에 정부 조직 개편 및 개각 단행하였는데, 총리가 교체될 경우, 내각이 총 사퇴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개각을 단행했다. 모하메드 부통령 및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가 칼리파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대통령과 총리간의 서열을 분명히 하고, 대외적으로 칼리파 대통령이 다른 에미리트 통치자들보다 상위에 있음을 표명하였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도모하였다.

기존의 농업부, 통신부, 최고회의 및 GCC회의 담당부 등 3개 부처 해체하고, 교육부 → 교육부 / 고등교육·과학연구부, 노동사회부 → 노동부 / 사회부로 분리·확대 하였고, 문화정보부→문화·청소년 및 사회개발부로 변경, 정부분야개발부, 환경·수자원부, 연방업무담당부 등 3개 부처 신설하여, 전임 내각의 핵심 장관들이 대거 유임하고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의 친형제들이 부총리 2인·외교장관·내무장관·대통령실장관 등 기존 핵심 요직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아부다비 에미리트의 정치적 영향력 과시하게 되었다. 현재 UAE의 부총리는 : 쉐이크 슴탄 빈 자이드 알 나흐얀 / 쉐이크 함단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외교장관 : 쉐이크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 대통령실장관 : 쉐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 내무장관 : 쉐이크 살프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다.²⁹⁾

(2) UAE의 국민적 기질 및 특성

아랍인의 국민성 및 기질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친화력이 강하고 정이 많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이기적인 면도 있어서 개인적인 이해관

29) http://www.uaeinteract.com/docs/National_Elections_Committee_endorses_the_final_lists_of_winners_in_FNC_elections/46870.htm

계가 개입된 문제의 경우에 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체면, 명예와 품위, 자존심을 중시하고, 대체로 순박하고 사교적이며, 성격이 느긋하여 서두르지 않고 매사에 의연하게 대처를 한다.³⁰⁾ 코란의 계율에 따라 ‘조급하게 굴지 말라’는 것에 따라 일을 서두르는 것을 신뢰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경박한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³¹⁾

또한 아랍인은 혈연·가족 관계 및 체면·명예를 중시하며 외형이 내면을 규정 한다고 믿고 있고 자신의 재산 및 부계 혈통을 과시하기 위해 노력 - 혼인시 개인의 성격·능력보다는 가계·혈통이 중요하고 고려요소로 작용한다. 가부장제 사회로서 친인척간 우애와 협력을 중요시하며, 부모는 자식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문 또는 가족을 향한 의리가 우정에 우선하며 동일 가문 내에서도 친형제와의 우애가 친척간 유대감보다 중요하다. 이 같은 아랍인은 가족의 유대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과 공중도덕 관념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³²⁾

(3) UAE 사회의 문화

이슬람사회는 꾸란에 규정되어 있듯이 “오른손”을 우선시하는 사회이다. 왼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슬람사회는 여럿이 하나의 접시에 담아낸 요리를 손으로 집어서 먹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처럼 젓가락이나 포크가 없다. 한편 예전에는 배설물 처리도 손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규칙을 정해 두지 않으면 매우 비위생적이다. 그래서 왼손을 용변볼 때 쓰는 “부정한 손”

30) 하병주, 「아랍 사회와 문화」(부산외국어대학교, 1998); 정수일, 「이슬람문명」(창비, 2010), 269면 이하.

31) 아랍의 속담에 “빨리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고, 천천히 하는 것이어야 알라가 기뻐한다”는 말이 있다. 즉 이 말을 뒤집어서 해석해 보면, 천천히 하는 것이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http://www.uaeinteract.com/docs/National_Elections_Committee_endorses_the_final_lists_of_winners_in_FNC_elections/46870.htm

으로 규정하는 관행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연유로 오른손은 행복, 행운, 번영 등의 이미지와 연결되고, 집이나 모스크에 들어갈 때에는 오른 발부터 옷소매에 팔을 끼울 때에도 오른손부터 라는 식이다. 다만 화장실만은 왼발부터 들어간다고 한다.³³⁾

UAE의 사회구성원으로는 1960년대까지 8~10만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외국인 노동력 유입에 따라 560만명으로 급증하였고, 가운데 이중 토착 아랍에미리트인은 20%인 90만명임. 인도·파키스탄·필리핀 등 아시아 노동자 50%, 이집트·시리아·北아프리카 등 非에미리트계 아랍인 23%, 유럽계 서양인 8% 등임. 연령별로는 15-64세가 전체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녀 성비가 2:1로 대부분의 노동력이 남성인데 기인한다.³⁴⁾

국적이나 직업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분류되는데, 베두인 : 토착 에미리트인들은 ‘bedu’라 불리는 유목민들로 태어나면서부터 왕족·중산층·하층민으로 분류되며, 베두인 왕족 등 상류층이 UAE의 권력과 경제권을 장악하고, 非에미리트계 아랍인 : 일자리를 찾아 주변국으로부터 온 사람들로 점차 전문직에 종사는 사람이 늘고 있으나 서양인에 비해 급여도 적고 인정을 덜 받고 있는 실정임. 아시아계 이주노동자 : 주로 불법 체류자들로써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영어 구사능력이 있으면 택시운전사나 상점 점원으로 취업함, 서양인 : 석유관련 직종·영어교육·의료업 등에 종사, 풍요한 생활 영위한다.³⁵⁾

최근 UAE 정부는 외국인 인력 규모를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최

33) 미야저키 마사카츠/이규원(역), 「하룻밤에 읽는 중동사」(랜덤하우스, 2010), 86면 참조.; 정수일, 「이슬람문명」(창비, 2010), 286면 이하 참조.

34) 외교통상부, 「UAE 개황」(2011/1), 83면 이하

35) 아랍인의 노동 기피현상과 낮은 생산성 때문에 외국인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걸프 GCC 지역의 전체 인구 중 약 63%가 외국인으로 구상되어 있고, 노동 인력 중 외국인의 비중은 이보다 높아 평균적으로 75%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국민의 실업률이 30%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서정민, 「글로벌에너지의 중심지-중동」(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2009/9), 66면 이하).

소한의 범위 이내로 유지하고 민간부문에서의 내국인 고용 확대 정책 추진한다. 외국인 유입으로 인해 최근 10년간 약 15%의 인구증가율을 기록, 과도한 외국인 비중이 장차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UAE의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되고 있다. 이슬람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향유한다.³⁶⁾ 1990년대 초부터 독신 여성 인구 증가 추세 - UAE 국민의 평균 월소득은 16,000디르함(\$4,359 상당) 수준으로 평균 결혼 비용은 최소 3천만원에서 1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UAE의 언어와 종교는 아랍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의 비중(80%이상)이 높은 관계로 비즈니스에서는 영어도 광범위하게 통용하고 있다.³⁷⁾ 예컨대, 외국인 중 인근 서남아시아계, 특히 인도, 파키스타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힌두어 및 우르드어도 일부 사용하고 있다. 종교는 이슬람 / 수니파 다수 - 국민 대다수(총인구 470만명중 96%)가 수니파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4%는 기독교와 힌두교 신봉하다. 수니파 이슬람교가 국교로 사회전반을 지배하나 두바이를 중심으로 他 종교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코란을 읽도록 하고 있어 이슬람 율법이 각종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매년 이슬람력 12.8~12간 메카 이슬람 성지 순례(하지)가 있는데 이를 위해 5일간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이슬람력 9월의 라마단³⁸⁾

36) 서정민, 「글로벌에너지의 중심지-중동」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2009/9), 47면 이하 참조.

37) 서정민, 「글로벌에너지의 중심지-중동」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2009/9), 84면.

38) 꾸란 제2장은 “이것은 한정된 날수를 지켜야 한다. 단 당신들 중에 병자 또는 여행 중인 자는 다른 날을 잡아 행해야 한다” 혹은 “라마단에 집에 있는 자는 금식해야 한다”...“병자나 여행중인 자는 다른 날을 잡아야 한다”...“당신들이 소정의 날수만큼 단식의 의무를 지키고 당신들을 인도할 알라를 참미하면 그만이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원숙, 「이슬람의 탄생」(살림출판사, 2010), 21면 이하 참조.

기간 동안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일체 禁食(sawm)하고, 밤에 음식을 먹으면서 특별예배를 드리며, 同행사후 3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이드 알 피트르(이슬람 2대 명절) 중에 친지·이웃을 방문한다.

따라서 이슬람 종교의 영향력으로 에미리트인의 종교는 사회·문화·일상생활 전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주요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슬람교는 단순한 신앙 체계가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이 합일된 생활양식으로서 이슬람의 이해 없이 UAE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나, 사우디, 이란 등에 비해서는 종교관련 규제가 완화된 편이다.

UAE의 생활양식으로는 1960년대 석유가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주로 사막에서 부족단위 유목민으로 생활을 한 관계로 가족관계를 중시하고, 경로우대 사상이 강해 일반적으로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인 가부장제 사회이다. 가장은 남성다움을 상징하기 위해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 4명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아내들은 자녀 양육을 맡으며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가족은 대개 7-13명 정도로 남편과 한 두명의 아내 및 자녀, 때로는 숙부모·조부모·4촌들까지 포함되기도 하여 친인척간 유대감을 강조 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중시하고 있다.

(4) UAE 사회의 결혼 및 여성의 지위

과거에 중동국가의 혼인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미혼 남녀간 교제를 금지함에 따라 부모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했으나, 최근에는 남녀간 교제도 자유로워지고 일부일처제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배우자 선택에서 4촌간 결혼에 우선권이 부여될 정도로 근친결혼이 일반화되었으나 양가 합의와 당사자간의 동의가 있으면 씨족이 다른 사람과도 결혼이 가능했다. 남성들이 지참금 등 과도한 결혼 비용 때문에 외국

여성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국내 여성과 결혼하는 남자에게는 2만불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³⁹⁾

UAE의 여성은 자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여성은 남자의 청혼을 거절할 수 있고, 남자로부터 받는 마흐르는 전적으로 신부 소유이다. 마흐르는 의무이지만, 신부의 소신에 따라 거절할 수 있다. 마흐르는 남녀간의 합법적인 결합의 상징으로 남자가 약혼녀에게 지불한다.⁴⁰⁾ 이것은 결혼할 때 신부가 지참하는 지참금(Dowry)과 다르다. 꾸란 경전(4:4)에는 “여인들에게 마흐르를 선물로 줄지어다”라고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부인의 모든 사유재산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 또한 남편이 가족부양 등 소정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인은 이혼을 제기할 수 있다.

이슬람법에 의해 여성은 자신의 재산을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⁴¹⁾ 성년이 된 여성은 부친이나 형제, 남편, 자식, 그리고 누구와도 상의 없이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재산의 취득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바, 상속⁴²⁾, 증여, 본인의 노력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39) Ibrahim Abdulla Al-Marzouqi, *Human Rights in Islamic Law*, (Abu Dhabi-U.A.E., 2005), pp. 188~207.

40) 마흐르의 액수는 신부 집안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신부의 교육정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 독신 남성이 준비하기에는 벅찬 액수이다. 따라서 나이든 노총각과 이혼녀의 결혼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편견 없이 행해진다. 또한 초혼과 재혼에 따라 그 비율도 달라 처녀일 경우를 100으로 할 때, 이혼녀는 75, 미망인은 50에 해당하는 마흐르를 받을 수 있다.(이희수, 『이슬람문명』(살림출판사, 2009), 29면 이하 참조; 이희수/이원삼, 『이슬람-9·11테러와 이슬람세계 이해하기』(청아출판사, 2010), 131면 이하 참조).

41) Ibrahim Abdulla Al-Marzouqi, *Human Rights in Islamic Law*, (Abu Dhabi-U.A.E., 2005), pp. 209~231.

42) 꾸란 제4장 11절에는 “아들의 지분은 딸 두 명의 지분과 같다. 오직 딸만 있으면 딸들의 상속분은 전 상속재산의 3분의 2이고, 외동딸이면 상속재산의 2분의 1이다”고 했다. 오늘날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무슬림 가정에서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거나 생전에 자녀들에게 유산을 분배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갑자기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부분의 유가족들이 이슬람 법정으로 가서 상속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경우 아들이 있으면 아들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고 삼촌이나 다른 친척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하지만 딸만 두고 있는 경우에 아버

있다. 따라서 이슬람사회의 여성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인되고 보장된 권리로서 남편과 어떤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초기부터 근세까지 이슬람 여성은 “行爲無能力者”로 취급되어 재산권 등에 관하여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남성 의복의 경우, 정부에서 장려하는 전통 의상인 ‘디슈다샤’·‘칸두라’를 가정에서나 외출할 때 입으며, 여성은 몸 전체를 가리는 검은색의 ‘아바야’를 착용하고 있다. 2004년 프랑스 정부는 이슬람교도 이민 자녀가 스카프를 쓰고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스카프 금지법”을 시행하여 논란을 야기했다.⁴³⁾ 이슬람교는 여성이 외출을 할 경우, 부르카(히잡=차도르)이라는 베일을 써서 머리카락, 피부, 몸매를 감출 것을 요구했다. 베일은 원래 눈만 남기고 몸을 전부 가리는 천임. 부르카를 사용하는 이유는 남성으로 하여금 자극하지 않고 스스로 정절을 지키고 정숙하게 지내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가정과 자녀를 키우는 일상생활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⁴⁴⁾

즉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피부를 보이지 않는 관습은 고대그리스, 로마, 이란 등 중동의 습속이다. 그리고 얼굴을 감추는 베일에는 몸 전체를 가리는 하바라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이슬람사회에서 여성의 베일은 남자에게 자신이 성인임을 나타내는 도구이고, 어린이는 베일을 착용하지 않는다.

지가 사망한다면, 아버지의 재산이 삼촌들에게 분배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일주, 「이슬람율법」(살림출판사, 2010), 44면 이하 참조.

43) 프랑스가 이법을 도입한 명분은 테러방지과 여성의 인권 향상이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경제적 위기에 놓인 서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이슬람정서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법률에 대해 여성 인권 옹호론자들은 부르카는 남성에게 예측된 여성의 상징, 이슬람문화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44) 이슬마의 부르카는 베일로 망사로 가린 눈을 포함해 신체 모든 부분을 가리는 것, 히잡은 목과 머리를 가리는 천으로 얼굴만 드러내고, 니카프는 눈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베일로 망사가 없는 부르카이고, 차도르는 얼굴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것을 말한다.(이희수/이원삼, 「이슬람-9·11테러와 이슬람세계 이해하기」(청아출판사, 2010), 136면 이하).

(5) UAE 사회의 음식문화

UAE의 음식과 관련해서 여타 아랍권과 마찬가지로 양고기와 닭고기를 즐겨먹고 대추야자에서 추출한 설탕은 거의 빠지지 않는 식재료로 사용한다. 푸알라는 과일, 달콤한 케이크, 견과류, 피키 등의 간단한 먹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개 아침과 점심사이나 점심과 저녁사이에 먹으며 집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도 의례적으로 대접한다. 음식은 알라신이 내린 가장 귀중한 선물로 식사하는 동안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지만 각 식사 단계마다 축복하는 말을 서로 교환 한다.⁴⁵⁾

예컨대, 먹기전에는 ‘비스말라(Bismillah)’ (알라의 이름으로), 식사 중간에 ‘Billah aleik tihbshi’ (알라께서 더 먹으라고 하시네요), 충분히 먹었을 경우 ‘Akram Allah’ (알라의 영예로움이 함께 하길), 식사 후 커피를 마신 후 ‘Alhamdulillah’ (알라 덕분에)라는 말로 만족감을 표시하는 것이 관례이다. 음식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기 위해 오직 오른 손으로만 먹을 수 있고, 집어올릴 때는 엄지·검지·중지를 사용 한다.⁴⁶⁾

UAE의 사회생활 금기사항으로 이슬람 종교 교리에 따른 유의, 술이나 돼지고기를 권하거나 非무슬림이 베일이나 전통 의상을 착용하는 행위 금지⁴⁷⁾, 기도중인 사람을 방해하거나 똑바로 응시하는 행위 및

45) 이희수, 「이슬람문화」(살림, 2009), 51면 이하 참조.

46) 정수일, 「이슬람문명」(창비, 2010), 285면 이하 참조.

47) 꾸란에 “술과 도박...이것들은 커다란 죄악도 되고 인간에게 이익도 된다. 그러나 죄악이 이익보다 더 크다”는 구절이 나온다. 또한 “시체, 피, 돼지고기, 알라외의 이름으로 희생되어 타살된 것...은 너희에 금지되어 있다”...“시체, 흘린 피, 혹은 돼지고기, 이것은 부정한 것이지만...”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술과 돼지고기를 금기시한 이유는 견디기 힘든 사막의 기후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하면서 기독교라고 해서 유대인의 돼지고기 금식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과 “레위기”에서 돼, 황새 박쥐같은 날짐승과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족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 하는 것을 부정한 음식을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 또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라마단 기간 중 일몰 전까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식음 등 자제, 종교나 관습에 대한 부정적 발언, 여성에 대한 발언, 부인·딸에 대한 안부, 이스라엘·술·마약·섹스 등에 대한 언급은 회피, 누군가 구걸할 경우, 거절해서는 안되며 줄 것이 마땅치 않을 때는 ‘신이 당신에게 베풀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여야 하고, 공공장소에서 남녀간 노골적인 접촉, 격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반응 표출 등은 자제한다.

현지 여성에 대한 사진촬영은 사전 동의를 필요하며, 공공건물, 발전시설, 군부대 등에 대한 사진 촬영도 주의를 필요로 한다. 가족은 존중하거나 보호해야 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 중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 회피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거나 부와 명성을 과시하는 행위 금지, 다른 사람에게 발바닥을 보이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것은 남을 모욕하는 행위로 인식, 다른 사람의 물건을 칭찬하면 선물을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선물을 받아 그 자리에서 풀어보는 행동도 자제하고, 금요일은 휴일이므로 약속을 잡는 것을 피해야 하고, UAE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6) UAE의 교육제도

UAE의 교육은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의 비중(약 80%)이 높은 관계로 이슬람 종교·문화의 보전 및 非석유산업 육성 등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⁴⁸⁾ 교육을 “진정한 의미의 부(real wealth)”로 중시, 석유 수출을 통해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교육부문에 집중 투자, 기본학제 - 유치원/초등(6-11

희수, 『이슬람문화』(살림출판사, 2009), 43면 이하 참조.

48) UAE Constitution, Art. 17.; 교육은 사회의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 연방 내에서 교육은 초기단계에서 의무교육이고, 모든 단계에서 무료로 하여야 한다. 법률은 문맹퇴치를 위한 것과 다양한 수준의 교육의 전파와 확산에 필요한 계획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UAE Constitution, Art. 18에 학교는 권한 있는 공공기관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의 조항에 따라 사립학교는 개인과 단체에 의하여 설립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세) · 중등(12-14세) · 고등학교(15-17세)/대학교, 9학년까지 의무교육 제공, 여성의 95%, 남성의 80%가 대학 진학 또는 해외 유학, 교직원들의 수를 대폭 증가하여 교육수준 제고 도모, 유치원 · 초등학교의 교직원/학생 비율 - 1:17, 중등 · 고등학교의 교직원/학생 비율 - 1:10, 즉 자이 드 前국왕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1950년대 최초로 서구식 학교를 설립(2004년 고등교육기관 12개)한 가운데 외국인 교사를 고용하는 등 개방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수업료 · 교과서 · 피복 · 식사 등 일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을 분리한 캠퍼스를 개설(1972년), 국내 뿐 아니라 중동 각지의 여성들이 UAE 유학을 선호함. 2020년까지의 중장기 교육전략 수립 (매 5개년 계획 수립 · 점검 중), 국제수준에 부응하는 교과과정 개발 및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5명당 컴퓨터 1대, 중등학생의 경우 2명당 1대, 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1대씩 보급, 2020년까지 내국인 교원 비중을 전체 교원의 약 9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⁴⁹⁾

(7) UAE의 예술

이슬람의 조형 예술은 장식적인 특징이 있으며, 현실주의적인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아랍-무슬림 예술가들은 장식분야를 그들의 독창성을 발휘할 무대로 선택하고 있다. 그들은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예술의 기초를 삼고 있다. 아랍-이슬람 예술가들은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형태의 세속적인 현실에 바탕을 두고 사고, 관념, 상상력의 발현을 중시하고 있다. 이것은 예술적인 소명이며, 위대한 예술의 전통을 창조하는 것이다.

49) http://www.uaeinteract.com/docs/National_Elections_Committee_endorses_the_final_lists_of_winners_in_FNC_elections/46870.htm

이슬람의 미술은 현실과 동떨어진 영감의 근원을 암시해 주는 공상적인 특성이 있다. 그래서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건축물이든 아니든, 그 건물의 벽과 안뜰, 천장 등은 복잡한 디자인과 환상적이고 상상적인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재료로 장식되어 있다. 즉 포도나무 덩굴손 등 고대의 잎사귀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고, 이것을 아라베스크라는 새로운 형태의 장식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아랍인이다. 한마디로 아라베스크는 이슬람세계의 예술과 밀접한 연관되어 있는 무슬림의 예술형태이며, 이슬람 장식미술의 진수라 할 수 있다.⁵⁰⁾

2. Saudi Arabia Kingdom 지역의 一般的인 管見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수도를 리야드로 하고 있으며, 2007년도 기준으로 수도 인구는 약 470만명이고, 국가원수로 압둘라국왕을 두고 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성지 수호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국왕의 호칭을 Custodian of Two Holy Mosques로 부르기로 한다.⁵¹⁾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면적은 한반도의 약 100배로 215만 제곱미터이며, 인구는 대략 2,456만명이라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민족은 아랍족인제 베드윈족이 27%이고, 기타 아랍정착민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종교는 이슬람교(수니파 90%, 시아파 10%)이며⁵²⁾, 공식언어는 아랍어, 정부형태는 정교일치의 왕국 중심제인 이슬람군주국이다.⁵³⁾

50) 전완경, 「이슬람 예술」(살림출판사, 2010), 6면 이하 참조

51) <http://sau.mofat.go.kr/kor/af/sau/affair/opening/index.jsp>

52) Saudi Arabia Constitution, Art. 1.;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이슬람교를 가진 아랍의 독립 이슬람국가이다; 헌법은 전지전능한 하느님과 사도 Sunnah(하느님의 기도와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책이다. 언어는 아랍어이고, 수도는 리야드이다.

53) Saudi Arabia Constitution, Art. 5. (a).;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서 정부의 시스템은 군주제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는 의회가 없고, 의회와 유사한 기관으로 국왕자문위원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법제도는 이슬람의 샤리아법률을 토대로 재판을 하고, 3등급의 법원과 사법감독위원회 설치하고 있다.⁵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병역제도는 지원병제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석유매장량은 2,641억 배럴로 세계매장량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고,⁵⁵⁾ 기후는 고온 건조한 대륙성 기후로 최고 54도에서 평균섭시 32~34도로 내륙, 해안, 산안 고지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이슬람국가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관습을 유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국기는 녹색의 장방형 바탕으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3:2에 “알라(하느님) 이외의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Messenger)이다”라는 구절이 중앙에 새겨져 있으며, 그 밑에 칼집이 없는 칼이 그려져 있다.⁵⁶⁾ 이는 정의의 힘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54) Saudi Arabia Constitution, Art. 68.; 자문위원회는 만들어지게 된다. 그 법률은 자문위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는지, 어떻게 멤버를 선택하는지를 명시하게 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동 규정을 바탕으로 1992년 3월에 자문위원회법을 정하고, 국왕이 임명한 90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심의한다.(<http://sau.mofat.go.kr/kor/af/sau/affair/opening/index.jsp>).

55)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이다. 하루에 약 500만 배럴을 생산하여 국내 수요를 제외한 대부분을 수출하는 나라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 섬유 등 수 많은 제품을 1년에 1,50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하여 그 이익이 100억 달러 내외에 이르는 것에 비하여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하나로 50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우디는 석유로 축복 받은 나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몇 십년이 지난 후에 석유가 완전히 고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변할까? 이에 대한 답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의 관광대국이기 때문이다(이희수/이원삼, 『이슬람』(청아출판사, 2010), 216면 이하 참조).

56) Saudi Arabia Constitution, Art. 3.;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국기는 다음과 같다. (a) 색깔 : 녹색, (b) 너비는 길이의 3분의2 정도로 동일하여야 한다, (c)“하느님과 모함메드는 그의 예언자이다”라는 단어 아래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을 중앙에 새겨야 한다. 국기와 관련된 규율을 법률에 정하고 있다. Saudi Arabia Constitution, Art. 4.;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엠블렘(국장)은 두 개의 칼사이 위쪽 공간에 야자수 나무로 구성한다. 법률에 사우디아라비아의 國歌와 메달을 정한다.

(1)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

아랍족의 발생지는 중앙 아라비아와 북아라비아로 추측됨. 이슬람 이전 시대의 중요한 아라비아 부족으로는 홍해 연안 헤자즈 지방 북부에 자리잡고 살던 타무드족과, 데단과 그 주위에 살던 리히아니트족을 꼽을 수 있다. 아라비아 반도 외부의 아랍 민족들은 고대부터 아라비아를 지배하고 영향을 끼쳤다. 트란스요르단으로 알려진 지역에 자리잡고 있던 라흐 왕조는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한 최초의 왕국으로 남아라비아의 국경지대까지 그 세력이 미쳤다. 중앙 아라비아 서부의 키타 국(國)이 4세기와 5세기에 라흐 왕조로부터 중앙 아라비아 대부분의 지배권을 강제로 빼앗았으나 528년에 다시 밀려났다.⁵⁷⁾

622년 메카에 거주하는 쿠라이시가(家)의 마호메트가 알라 신(神)을 유일신으로 설교하면서 메디나로 이주하여 이슬람교를 창시했다. 이로써 서구세계의 3대 일신교 가운데 가장 늦게 이슬람교가 성립되었다. 마호메트는 메디나에서 더욱 많은 신도를 얻었으며 메카로 돌아와 이곳을 점령하고 메카·메디나 두 곳을 자신이 창시한 새 종교의 성지로 삼았다. 그러나 661년 이슬람 왕조 우마이야가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아 건국함으로써 이슬람교의 정치 중심지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다마스쿠스로 넘어갔다. 중세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의 지배권을 차지하려는 내부·외부의 지배자들 간에 끊임없는 각축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칼리프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나 자치를 보장받았으며 사실상 독립되어 있었다. 1517년 오스만 제국이 정권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아라비아에서 카르마트파(派), 파티마조(朝), 셀주크 왕조, 아이유브조, 맘루크조 등 여러 세력 사이에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아라비아의 현대사는 오스만 통치에 대한 반감이 증대되고 18세기 초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시작되었다. 1745년 무하마드 이븐

57) <http://www.maxtie.com/ko/nationalPortal/newsDetail/fc9181e8260d26cd012617094e9d018f.html>

아브드 알 와하브가 이슬람의 외적 형식주의와 근대주의를 탈피하고 <코란>에 밀착하는 교리 엄수주의를 제창하기 시작했다. 그는 디리아의 무하마드 이븐 사우드 왕의 지지를 받았고, 그결과 와하브주의 운동이 아라비아 반도에 널리 퍼져나갔다. 이들은 오스만 제국과 이집트의 저항으로 난관에 부딪혔으나 싸움은 19세기 내내 계속되었다. 1904년까지는 이븐 사우드(아브드 알 아지즈 2세) 왕에 의해 중앙 아라비아(나지드 지방)의 원래 사우디의 영토 모두를 되찾았다. 1915년 이후 사우디는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1927년 헤자즈와 나지드 왕국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받았다. 두 왕국은 1932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의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을 지지하고 미국과 긴밀한 유대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81년 사우디아라비아는 페르시아 만 연안의 여러 나라를 포함하는 하나의 지역 경제·방위 협정인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 GCC)⁵⁸⁾의 중심지가 되었다.

58)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1981년 5월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6개국 정상회의에서 결성된 안보 및 경제협력 관련 지역협력기구이다. 다른 국제기구와는 달리 매우 단순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걸프산유국의 이 기구는 이제 지역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의 경제협력기구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들 6개국의 면적은 247만 5,672km²에 인구 약3,887만명 정도인 소규모 경제블럭(GCC 6개국의 총면적은 남한의 약25배에 달하며, 인구는 남한인구보다 적지만, 총GDP는 한국경제의 규모와 비슷함) 이기는 하지만, 막대한 석유자원의 혜택으로 건설시장,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상품시장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발휘하여 WTO 가입은 물론 EU와 FTA 가입을 염두에 두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동판 ‘유로’로 불리는 GCC 단일통화는 2010년 도입을 목표로 2001년부터 협의가 진행돼 왔지만 UAE와 오만은 불참을 선언했다. UAE는 2009년 GCC 중앙은행 유치경쟁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패하자 단일통화 도입 불참을 선언했고, 오만은 지난 2007년 불참을 선언했다. UAE는 중동 금융허브인 두바이를 내세워 사우디와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GCC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사우디에 밀려 중앙은행 유치에 실패했다. 이제 GCC의 중앙은행 설립은 목전의 현실이고, 단일통화의 창출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http://www.emerics.org>).

(2) Saudi Arabia Kingdom의 정치제도

1) Saudi Arabia Kingdom의 정부구조-정부, 의회, 사법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1992년 3월에 제정된 헌법 제5조 (a)에 의하면 정치·종교일치의 절대군주국 형태의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⁵⁹⁾ 국왕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행사하며, 종교의 수장을 겸하고 있다. 그리고 왕세자는 기존 왕의 형제 승계에서 왕의 아들도 승계가 가능토록 승계가능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왕세자의 임명과 박탈은 왕권으로 가능하며, 왕세자의 지명은 종교지도자의 회의(Ulema)와 왕족으로 구성된 왕실위원회에서 승인으로 확정되었다.⁶⁰⁾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의회와 정당은 국민의 직접적인 선거로 선출되지 않고, 국왕의 명령으로 90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임기 4년),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권고한다. 그리고 왕족으로 구성되는 왕실위원회와 종교지도자 회의가 국왕선출 등 국가의 심대한 현안을 결정하는 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⁶¹⁾

국왕은 왕실위원회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현재 압둘라 국왕이 총리를 겸임하고 있고, 술탄왕세자가 제1부총리 및 국방장관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내무부장관, 각 주지사 등 군부 및 경찰을 포함한 주요 요직을 왕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총리, 제1부총리 및 21개 부처 장관과 7명의 무임소 장관 등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⁶²⁾

59) Saudi Arabia Constitution, Art. 5. (a).;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서 정부의 시스템은 군주제이다.

60) Saudi Arabia Constitution, Art. 5. (c).; 국왕은 확실하게 후계자를 선택하고, 왕의 명령에 의하여 자신의 직무를 후계자에게 털어준다. (d) 확실한 후계자는 국왕의 임무를 그에게 임무를 위임할지라도 후계자로서 자신의 직무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e) 국왕이 사망했을 경우에, 후계자는 새 국왕으로 승인될 때까지 국왕의 권한을 수행하여야 한다.

61) Saudi Arabia Constitution, Art. 68.

62) <http://sau.mofat.go.kr/kor/af/sau/affair/opening/index.jsp>

지방행정조직은 사우디아라비아를 13개주로 나누고 이들 13개 주의 주지사들은 거의 왕실에서 임명한 왕자들이 맡고 있다. 또한 각 주에는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정원 30명의 주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2005년 압둘라국왕의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사우디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지방의회선거를 통해 동 12월 178개의 지방의회(Municipality Council)가 구성하게 되었다(각 지방의회는 선출직의원 592명으로 구성).⁶³⁾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각료 및 주요 군지도부는 왕이 직접 임명한다.⁶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사법제도는 이슬람법인 샤리아법(Sharia Law)과 규율(regulations)로 구별된다. 이슬람에서 국왕은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다만 Alla가 내려준 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규율(regulation)을 제정할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샤리아법과 규율이 충돌될 때에는 “샤리아법”이 우선한다. 규율은 왕국의 최고 집행기관인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되고 왕령으로 승인된다.⁶⁵⁾

샤리아법(Sharia Law)은 네 가지 근거, 즉 코란, 순나, 이즈마, 끼야스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중 코란(이슬람 경전)이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원천이나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보다 더 필요한 지침이 요구되는 경우, “순나”에서 인용할 수 있다. 순나란 무하마드의 언행(하디스, Hadith)을 기록한 것으로서, 하디스는 수세기를 거쳐 전승되어 온 것임. 이즈마나 끼야스는 코란이나 순나 보다는 덜 중요한 것으로서, 이즈마란 코란이나 순나에 의해 직접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중

63) <http://sau.mofat.go.kr/kor/af/sau/affair/opening/index.jsp>

64) Saudi Arabia Constitution, Art. 57.; (a) 국왕은 국왕의 명령에 의하여 장관위원회의 멤버와 수상, 장관의 직무를 절어주고 임명한다. Saudi Arabia Constitution, Art. 60.; 국왕은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다. 국왕은 장교를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종료한다.

65) Ibrahim Abdulla Al-Marzouqi, Human Rights in Islamic Law, (Abu Dhabi-U.A.E., 2005), pp. 10-29.

교학자들(Ulema)이 합의한 사항을 말하며, 끼야스란 전술한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도 명백한 판결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유추 해석을 의미한다.⁶⁶⁾

사법부 조직은 샤리아 법과 규율에 의거, 재판하는 3심법원이 있고, 사법감독위원회가 법원을 감독한다.⁶⁷⁾ 대법원은 왕도 리야드에 소재하고 있고, 상급재판소는 메카, 메디나, 젯다 등 대도시 소재하고 있고, 1심법원은 전국 주요도시에 산재하고 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최고 사법감독위원회는 메카에 소재하는데, 위원장으로 국왕이고, 위원으로 국왕이 권위 있는 이슬람 법학자들로 임명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형벌은 살인죄와 상해죄 : 응보형, 배교 또는 기도 불이행죄 : 사형, 간통죄 : 돌로 처형 혹은 태형 후 추방 (미혼자간의 간통인 경우), 음주죄 : 태형 80대, 절도 및 강도죄 : 수족절단 또는 응보형, 반정부죄 : 참수형으로 정하고 있다.⁶⁸⁾

(3) Saudi Arabia Kingdom의 사회문화

1)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국민들의 엄격한 종교생활⁶⁹⁾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이슬람 경전인 쿠란에 바탕을 둔 이슬람법(Sharia)을 국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종교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슬람의 양대파(순니: Sunni, 시아: Shia)중 순니(Sunni)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순니파 중에도 원리적인 Wahabism을 국정의 근간으로 채택하고 있어, 금욕적이면서도 세속적이지 않은 이슬람 생활을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약 2,470만 인구 중 (자국민 1910만) 90%의 순니

66) 공일주, 『이슬람 율법』(살림출판사, 2010), 71면 이하

67) Saudi Arabia Constitution, Art. 45., 55.

68) 이희수/이원삼, 『이슬람』(청아출판사, 2010), 245면 이하 참조

69) <http://sau.mofat.go.kr/kor/af/sau/affair/opening/index.jsp>

파와 10%정도의 시아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아파는 석유가 풍부한 사우디 동부 지역에 밀접하여 살고 있다(시아파는 사우디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어, 병역 의무가 없으며 정치, 외교 분야 참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음. 또한 출판이나 언론의 자유가 없으며 여행이나 거주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순니파에 비해 시아파가 많이 사는 동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소 개방적이며 자유를 누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토 중앙에 위치하면서도 고립되어 있는 리야드 지역이 가장 폐쇄적이며, 서부 젯다, 메카, 메디나 지역은 이슬람 성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순례객들과 교류를 가졌던 관계로 리야드 지역보다는 훨씬 개방적이고 자유가 있다.

사우디의 종교경찰(Mutawa, 공식적으로 약 5,000명)의 일반 국민들에 대한 제재는 리야드 지역이 가장 심하며, 젯다 동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소 덜한 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국민들은 엄격한 종교생활에 익숙해 있던 관계로 국민들이 문화나 여가활동에 대한 의지나 기대가 높지 않은 상태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내 위락 생활이나 여가 활용 장소는 스포츠, 어린이 등에 한정되고 있다. 경마, 창던지기(현재는 사격) 등 이슬람 선지자 무하마드가 백성들에게 권유했던 스포츠는 인기가 있으며, 이외에도 축구는 남성들에게 대중적이다.

정부와 종교지도자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는 가정이나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서방 매체와 정보가 별 다른 여과 없이 사우디에 유입되고 있다. 놀이동산 등 소형 위락 단지가 있으나 어린이용이며 이러한 시설의 대부분은 남성과 여성의 동반 입장을 금지하고 있다. 우상 숭배라는 이유로 아랍어 글자를 이용한 서체 미술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미술이 제한 받고 있으며, 음악도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팝송 등 대중음악이 인기가 있다고 한다. 공공

집회나 모임을 제한하기 때문에 극장이나 공식적인 공연장은 없다. 정부의 검열이나 감시를 받는 신문이나 잡지가 있으나 기자들의 상당수가 파키스탄, 인도 등 제3국인으로 정보 획득에 한계가 있으며, 언론 논조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국 신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낮으며 많은 신문사들이 적자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

2)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국민들의 가정생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국민들의 가정생활은 가부장적 유산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⁷⁰⁾ 이슬람의 남녀 평등사상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권위가 인정되며, 남아 선호 사상이 높음. 쿠란에서는 一夫一妻제를 선호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아내의 사망, 성적 능력 미비, 병환)에서는 4번째 부인까지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⁷¹⁾, 부유층을 중심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 발전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인권이나 사회 진출 확대 요구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내에서 가끔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목소리가 높지 않은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아직도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들의 차량운전을 금지하고, 가족 중 남성 보호자의 허락이 없으면 여행, 일, 수술을 받을 수

70) Saudi Arabia Constitution, Art. 9.; 가족은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에서 핵심이고, 그 가족들은 신에게 복종하고, 충성하고, 이슬람 신앙, 하느님의 메시지를 토대로 키워진다. 그리고 수호자는 법률실행의 가부에 대한 존중, 자국의 사랑과 자부심 그리고 이슬람 신앙으로서 찬란한 역사를 규정하고 있다.

71) 이슬람에서 一夫多妻제도를 도입한 직접적인 이유는 전쟁초기 많은 남성들이 사망하자 과부들과 고아들이 생겨나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으니, 그들을 구제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은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이희수/이원삼, 『이슬람-9·11테러와 이슬람세계 이해하기』(청아출판사, 2010), 133면 이하).

없음. 최근 정부에서는 제한된 분야에서 여성의 운전 허용, 신분증 발급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검토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011년 9월 26일에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은 슈라위원회(의회)에서 “2015년 선거부터 여성에게 투표할 권리와 후보로 출마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밝혔다.⁷²⁾

3)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국민의 사회생활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은 가족을 제외한 여성과 남성이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다(병원은 예외임). 남학교와 여학교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며, 여학교의 교사는 당연히 여성이다(음악, 체육 과목 없음). 국내에 자유가 적은 관계로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은 방학을 이용하고 자녀들과 함께 외국 여행을 하고 있다. 이성간의 접촉, 연애 등은 사회 구조상 불가하나, 극소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서 국민들의 결혼은 부족주의 시대에 타부족을 불신했던 관습이 상존하여 아직까지 사촌이내의 근친결혼이 만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관계로 이혼율이 매우 높은 상태임(친족들간의 결혼을 연결하는 중매인(Khataba)의 역할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직까지 존재함). 또한 근친 결혼하는 관계로 자손들이 각종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⁷³⁾

결혼은 부모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 경우 신랑은 신부의 부모에게 마흐르(Mahr)를 지불해야 한다(최근 사우디의 경제 사정이

72) 조선일보사, 2011년 9월 26일자.

73) 현재까지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율법이 지켜지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술과 도박이 금지 되어 있고,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며, 도둑질 한자는 손을 자르고 살인과 간통을 한 자는 죽는다고 한다.

악화되면서 마흐르 때문에 혼인을 하지 못하는 남성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사회 일부에서는 수 천만원에서 때로 수 억원에 이르는 마흐르를 줄이자는 움직임도 있음).⁷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내의 외국인들 생활은 사우디내 외국인들도 사우디의 종교 규범에 귀속을 받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외출시에는 사우디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바야로 온몸을 가려야 하며, 여성 단독 외출이나 운전은 상상할 수 없다. 예배는 하루 다섯번 기도시간 중에는 모든 업무가 중단되며, 식당이나 상점도 이 시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따라서 미국이나 영국인등 서양인들은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집단거주지(킴파운드)에서 생활하며 이러한 킴파운드에는 사우디인들의 통제가 엄격히 배제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청년층들은 70-80년대 고유가 영향으로 사우디 젊은이들은 풍족한 사회혜택을 받았으나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 및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실업률이 급증(약 31%), 청년층에서 이슬람 과격 사상 및 반정부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안에서 청년층이 누릴 수 있는 여가생활이나 자유가 없으며, 이슬람 종교에 편중된 교육 때문에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있더라도 적응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이러한 현상을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⁷⁵⁾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부가 약 95%가 왕족을 중심으로 한 부유층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경제력 약화로 효율적인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젊은 층은 왕족의 특권에 대해 불만). 청년층은 인터넷 등 대중 매체를 통하여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려 하나 많은 부분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어 한계가 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

74) 이희수/이원삼, 「이슬람-9·11테러와 이슬람세계 이해하기」(청아출판사, 2010), 192면 이하

75)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29208.html

든 교육의 60% 이상이 종교교육에 편중되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이슬람 사상에 심취(사우디아라비아 박사학위 소유자의 70%는 이슬람 분야임)해 있다고 한다.

4)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최근 정부의 동향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나친 종교교육이 9.11 테러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 일부에서 개혁, 개방을 추진하자는데 목소리가 있으나, 보수적인 왕족들의 반발로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사우디에 종교 교육 개편 및 인권 개선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실적인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왕족들은 사우디가 이슬람 종주국으로서 정통 이슬람 국가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유지해야만 국가의 존립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개방과 개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3년 5월 12일에 리야드 테러 사건(34명 사망) 이후 종교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슬람 과격 사상에 심취한 1800여명의 모스크 관련자들을 해고하고 수 천명을 재교육을 시키고 있다. 또한 종교 경찰(무타와)이 내외국인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들에게 온건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무타와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⁷⁶⁾

(4)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교육제도⁷⁷⁾

쿠란의 교리에 의거 이슬람교육은 종교의무의 하나로서 전통적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이슬람 교육만이 실시되어 오다 1920년부터는 소수의 사립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소년들에게만 격

76) <http://sau.mofat.go.kr/kor/af/sau/affair/opening/index.jsp>

77) <http://sau.mofat.go.kr/kor/af/sau/affair/opening/index.jsp>

리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가 1953년도에 최초로 설치(초대장관: Fahd 국왕) 되었으며,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학교설립, 교사 신축 등 근대적인 교육제도 기본 골격이 갖추어져 있다. 1957년도에 최초의 대학이 리야드에 설치되었으며, 이후 6개의 종합대학교를 비롯한 상당수 초급 및 단과대학이 신설되어 현대적인 교육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1960년도에는 제3대 Faisal 국왕이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여성교육청을 신설하고, 여성교육 업무를 독립 관장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의 대학교육(교사,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분야)의 참여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종교교육에 대한 편중된 학교 교육으로 현실생활과 괴리되어 있고, 대부분의 고급인력과 기술인력을 해외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990년대부터 산업 전반에 걸친 자국화정책(Saudization)을 추진하면서 교육분야에도 직업, 전문 교육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슬람 종교 교육이 초, 중, 고, 대학의 근간이 되고 있어 실제적으로 사회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 박사학위 소유자의 70%가 이슬람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이슬람 율법 및 남녀를 구분하고 있는 종교 사회체제상 교육 주관 부서가 4원화되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다. 즉 교육부는 여성, 직업, 대학교육을 제외한 남자 초, 중, 고, 사범교육을 관장하며 고등 교육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 여성교육청(General Presidency of Girl's Education), 직업교육청(General Organization for Technical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으로 다원화되어 아래와 같이 독자적으로 교육행정을 관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1953년 설립) : 남자 초중고, 사범학교, 성인교육, 고등교육부 (1975년 설립): 남자대학교 이상 교육 (7개 종합대학교와 부속 82개 단과대학), 여성교육청

(1960년 설립): 여성교육전반 (유치원부터 대학, 직업교육), 직업교육청
(1980년 설립) : 남성직업교육, 실업전문학교, 중고기술헌교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학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6, 3, 3, 4의 미국식 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교육 과정은 무상이나 의무교육제도가 아니어서 강제성은 없다. 전교육 과정에 이슬람(쿠란) 교리 등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분리 (학교 건물 또는 위치가 남녀학교로 분리) 하여 실시되고 있다. - 음악 및 무용 등 이슬람 정서에 맞지 않는 분야는 교육에서 제외하고 있다.

2005년도 기준으로 사우디의 대학생 숫자는 약 450,000명이며, 이중 44%가 여학생이다. 수업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구분되어 따로 받고 있다. Enginerring 등 일부 이공계는 여성에게 금지되고 있다. 사우디에서 이름 있는 King Saud대학은 2005년 현재 56,000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으며, 175개과에 32개의 박사 과정이 있으며, 3,000여명이이 교직원이며 학생수의 65%는 사우디 아라비아인이고 나머지는 걸프, 아랍지역에서 온 학생들이라고 한다.

최근 사우디 정부는 교육이 지나치게 이슬람 분야에 치우쳐 있다고 판정, 초등학교에 영어 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등, 교육 Curriculum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나, 보수 세력의 반발로 진전이 더딘 상태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초, 중 교육으로 초등학교에는 산수, 지리, 과학 등의 교과 과목 등이 있으며, 코란 교육이 약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덕 교육은 코란의 암송과 모하메드의 언행록 교육 등에 치중하고 있으며 체육과 음악은 세속적인 것이어서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과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고 있다. 중등, 고등학교 교육도 초등학교와 유사한 형태이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처럼 직업 교육이나 상업학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5)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국방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 편제는 국방·항공부 산하의 정규군(육/해/공/방공군)과 국가 방위군(National Guard) 및 내무부 산하의 경찰 특수부대 및 국경/해안수비대로 각각 구분된다. 정규군은 육군, 해군, 공군, 방공군을 단일 지휘체계화한 통합군 형태로 편성, 운용하고 있으며 총참모장(합참의장)이 각 군 사령관을 지휘하고 있다.⁷⁸⁾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병역제도는 18세 이상 남성이며 지원하는 지원병제도이고, 정규군으로 124,500명이고, 육군은 대략 75,000명, 해군, 13,500명, 공군 20,000명, 방공군 약 16,000명, 기타 군사조직은 50,000명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정책은 이슬람 신앙, 두 성지, 사회 및 국토 방위를 위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회원국간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6)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생활관습⁷⁹⁾

이슬람 전역에 걸쳐 간음과 매춘행위, 음주, 돼지고기 판매, 이자놀이 등이 생활의 금기로 되어 있으며, 신앙생활을 해치는 가무나 요란한 음악, 영화 등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 교육은 이슬람 종교 교육이 중심이며 음악, 무용 등의 예능과목은 없다. 단식기간(라마단) 중에 외국인은 아랍인 앞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거리에서 흡연을 삼가고 기타 아랍인들의 종교생활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남녀 간 내외를 엄격하게 지켜 여자 가족에 대한 안부를 묻거나 관심을 표명해서도 안되며, 여성의 사진을 찍거나 말을 거는 등 접근은 삼가는 것이 좋다.

78) Saudi Arabia Constitution, Art. 60.; 국왕은 모든 군대의 총 사령관이다. 국왕은 장교를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종료한다.

79) <http://sau.mofat.go.kr/kor/af/sau/affair/opening/index.jsp>

그리고 좋은 일에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고, 불결한 일을 할 때는 왼손을 사용한다. 악수를 한다거나 물건을 주고받거나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왼손은 화장실에서 용변 후 씻을 때, 신발을 닦을 때, 그리고 코를 풀 때 주로 사용한다.

옷차림은 남자들은 외출시 토브(thobe)라고 하는 하얀색의 전통복장과 구트라(goutra)라고 하는 흰바탕에 붉은 체크 무늬 또는 흰색 천을 머리에 두르며 여인들은 아바야라고 하는 검정 옷을 입고 검은 머플러로 머리와 얼굴을 가린 후 외출한다. 외국인 여성도 아바야 착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권유받은 선물이나 음료, 음식 등은 거절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집으로 초대받았을 때에는 세 번 이상 거절하면 예의상 곤란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답례를 하는 것이 좋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이슬람법에 결혼은 모든 무슬림들의 의무사항이며, 이혼도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배우자 선택에는 있어서는 중매결혼이 대부분이며 4촌간 근친결혼도 성행하고 있다. 민족이 다른 사람 간에도 양가의 합의와 결혼 당사자 간 동의만 있으며 결혼이 가능함. 1부4처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2명 이상의 부인과 결혼한 사람은 소수이며 오히려 과도한 결혼지참금 등으로 결혼을 못하는 독신 남자의 비율이 늘고 있다. 결혼 지참금은 신랑의 보호자가 신부의 보호자에게 지불, 신부 본인에게 전하여짐.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는데 현금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에는 양, 낙타, 소 등으로 지불이 가능하다. 만일 신랑 신부가 동의하고 양가에서 허락한다면 신랑은 재산 없어도 간단한 예물로 지참금을 대신할 수 있는 바, 이때 당사자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부모는 의무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생활이 어려운 미혼 남성에게는 정부에서 결혼지참금을 융자해 주고 있음). 결혼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순결과 정절로서 여성들은 몸가짐에 매우 조심하고 있다.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4명의 증인과

분명한 물증이 필요하며, 형벌은 기혼자인 경우 더욱 엄격하고 미혼자간의 경우는 태형을 받게 되면 반드시 당사자 간에 결혼을 해야 한다. 이혼 사유가 성립되면 합의 이혼이 가능하며, 재혼도 가능하나 사별하지 않는 한 재혼을 두 번 이상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은 대략 다음과 같은데, 남편이 부인과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세 번 이상 이혼을 선언하는 경우, 신에게 3번 이상 부정을 목격한 사실을 선서하는 경우(단, 거짓 증언을 했을 때는 의증죄로 처벌됨), 신체적인 결합으로 부부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남편이 처를 학대하거나 처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경우이다.

따라서 결혼지참금인 마하르(Mahr)는 남편을 사별하거나 이혼을 당했을 때 여자 본인은 물론 여자들의 생계 및 자녀교육을 위해 여자의 개인재산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과부나 이혼녀, 노약자, 불구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국민들은 개, 돼지, 맹수류, 맹금류, 파충류와 이슬람식으로 도살되지 않은 고기, 죽은 짐승의 고기와 피, 내장 등은 먹지 않는다. 도살할 때는 “비스밀라(가장 인자하며 자비로운 알라의 이름으로)”를 낭독 후 도살하며, 음식을 먹을 때 오른손을 사용함.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은 “샤이”라고 부르는 홍차와 노란색 박하 향기의 차를 즐겨 마시며 손님 접대시 아랍커피 “까후와”와 함께 차를 권유하는 게 관례이다.⁸⁰⁾

매년 9월은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계시 받은 달이라 하여 무슬림은 신성한 달로 여겨져 한 달 동안 고행과 수도를 하며,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는 물, 음료, 담배 등 모든 음식물을 금식하게 되는 데, 대신 해가 진 후 밤에는 식사를 하고 특별 예배를 보며 대부분 야간활동을 하고 있다.⁸¹⁾

80) <http://sau.mofat.go.kr/kor/af/sau/affair/opening/index.jsp>

81) 꾸란 2장에는 “이것은 한정된 날수를 지켜야 한다. 단 당신들 중에 병자 또는 여

3. Qatar(Qatar State)지역의 一般的인 管見

카타르는 수도를 도하(Doha)⁸²⁾로 하는 독립주권의 아랍국가이다.⁸³⁾ 카타라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경기도 지역의 면적인 11,521제곱미터이며, 인구는 2010년 4월 통계치 169만명이라고 한다. 카타르의 언어는 아랍어와 영어를 통용하고 있다. 카타르 국민은 95%가 이슬람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카타르의 정부형태는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세습군주제이다. 현재 국가원수인 국왕은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타니이다.

카타르의 입법부는 Al-Shoura 자문위원회로 45석이고 임기는 4년이다.⁸⁴⁾ 그러나 현재 2007년 5월 실시예정이던 자문위원회(30석) 선거는 계속 연기 중에 있다. 카타르의 사법부는 3심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법원과 헌법법원의 특수 법원 설치하고 있고, 판사는 최고사법평의회가 천거를 받아 국왕이 판사를 임명한다.

카타르의 주요산업으로는 다른 중동지역과 같이 석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이다.⁸⁵⁾ 카타르의 군사력은 총 병력이 1만 2,400명이고, 육군 :

행 증인자는 판 날에 같은 날 수 만큼 행해야 한다. 라마단에 집에 있는 자는 금식 하여야 한다. 병자나 여행 중인 자는 다른 날을 잡아야 한다. 당신들이 소정의 날 수만큼 단식의 의무를 지키고 당신들을 인도할 알라를 찬미하면 그만이다.”고 정하고 있다.(진원숙, 『이슬람의 탄생』(살림출판사, 2010), 21면 이하 참조; 공일주, 『이슬람율법』(살림출판사, 2010), 21면 이하 참조; 이희수, 『이슬람문화』(살림출판사, 2010), 54면 참조; 정수일, 『이슬람문명』(창비출판사, 2010), 135면 이하).

82) Qatar Constitution, Art. 2.; 카타르 국가의 수도는 도하(Doha)이다; 수도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할 있다.

83) Qatar Constitution, Art. 1.; 카타르는 독립주권의 아랍 국가이다. 카타르 종교는 이슬람이고 샤리아법은 그 법제의 주요 근간이 된다. 카타르의 정치시스템은 민주주의이다. 공식적인 언어가 아랍어이다. 카타르 국민은 아랍국가의 일부분이다.

84) Qatar Constitution, Art. 77.; Al-Shoura 위원회는 45명으로 구성되는데, 30명이 직접 선출하고,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그리고 국왕은 나머지 15명을 임명한다.

85) 카타르의 3대 국가성장동력으로 천연가스, 알자지라 방송, 카타르 재단을 든다. 2010년 12월 13일에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연산 7700만톤 생산설비 기념식이 열렸다. 연산 7700만톤의 LNG는 전세계 인구가 약 13일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카타르의 국부를 창출한다. 그리고 카타르는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석유화학

8,500명, 해군 : 1,800명, 공군 : 2,100명임이다.

카타르의 국기는 가로와 세로 비율이 28:11이고, 흰색은 국제사회에서의 평화를 상징하며 밤색은 카타르의 역사, 특히 19세기 하반기 격어온 여러 전쟁중에 흘린 피를 상징한다. 아홉개의 톱니 모양은 1916년 카타르-영국간 조약에 의해 걸프지역내 9번째 국가로 탄생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카타르의 국장은 국기를 연상시키는 외부 도우넛형 씨클과 국가적 상징이 표현된 내부의 노란원 속으로 구성된바, 외부 도우넛형 씨클의 흰색 상단부의 밤색 글씨는 “State of Qatar”의 아랍어 표현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동 씨클 밤색 하단부에 동 국명(State of Qatar)을 흰색 영문으로 써 넣어 아래위 아랍명과 영문명을 각각 표기하기도 한다. 노란원내에는 두 개의 아라비아 검이 교차하며 그 위로 푸르고 흰 바닷물 결과 전통목선(dhow) 및 두 개의 야자나무가 있는 섬을 형상화하고 있다. 아라비아검은 중동지역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는 상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의 국장에서도 사용되며 전통목선(dhow)은 현재의 쿠웨이트 국장과 과거 UAE의 국장에서도 사용된다. 야자나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상징이기도 하다.⁸⁶⁾

(1) Qatar의 역사⁸⁷⁾

Qatar는 「하마드」국왕을 중심으로 개혁 개방적인 국가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그 이유는 1995년 6월 하마드 국왕은 부왕의 해외체류 중 궁정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입법·행정·사법 등 전 분야에 있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마드 국왕의

생산시설인, 청정 고효율 연료인 천연가스액화정제(GTL)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2102년 본격적으로 가동 예정인 GTL 설비가 가동된다면 세계 에너지국가 대열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문화일보사, 2011년 2월 22일자).

86) <http://qat.mofat.go.kr/kor/af/qat/affair/opening/index.jsp>

87) <http://qat.mofat.go.kr/kor/af/qat/affair/opening/index.jsp>

부왕도 ‘칼리파’ 국왕 역시 1972년 2월 궁정 무혈 쿠데타로 삼촌인 ‘아흐메드’ 초대 국왕으로부터 왕위 찬탈하였다. 하지만 하마드 국왕도 1996년 2월에 ‘칼리파’ 前국왕 지지 세력들의 쿠데타 음모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국민 대다수는 現‘하마드’ 국왕의 개방·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Qatar는 개혁적인 리더십 아래 “세계 최고의 명품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동국가 중 카타르는 인구 160만(외국인 포함), 우리나라의 경기도 면적의 “초미니 국가”이지만, 연간 20%대의 경제성장을 실현하며 1인당 국민소득 7만불 이상의 초고소득 국가로 발전 중에 있다. Qatar는 세계 3위의 방대한 가스자원을 활용한 산업 다변화 전략 및 교육도시·과학기술단지·의료도시 조성, ‘알-자지라’ 방송 설립 등 집중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하며 “걸프지역의 허브(Hub)”로의 부상하고 있다.

Qatar는 하마드 국왕이 집권하면서 영구 헌법안을 공포하여 “서구식 민주주의” 도입하였다. 예컨대, 2003년 4월 모든 국민의 법률적 평등·자유, 집회·표현·종교의 자유,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영구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96.6%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2005년 6월부터 신헌법을 발효하였다. 하지만,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세습 왕정체제 유지, 가문을 중시하는 사회 관습 등으로 인한 자문위원회(의회)의 권한 제한 및 정당 활동 금지 등,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Qatar 하마드 국왕은 1995년 집권초기 자신의 셋째 아들인 “자심” 왕자를 왕세자에 책봉하고, 이복동생 압둘라를 총리로 임명하는 등 친정체제를 구축하여 2003년 8월까지 유지하고 있다. 국왕은 국방장관직 겸직을 통해 軍 통수권을 확보하고 쿠데타의 일등 공신들(현 하마드 국무총리 등)을 정부 주요 각료로 임명하였다. 2003년 8월 왕세자 직을 “자심(Jassim)” 왕자에서 현 “타밈(Tamim)” 왕세자에게로 평화

적으로 양위토록 하고, 안정적 후계구도 마련을 위한 점진적 권력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Qatar는 2003년 9월에 “정부조직법”을 일부 개정하여, 2인 부총리 제도를 신설하고, 국왕의 최측근인 “하마드”외교부 장관을 제1부총리로 “알-아티야” 에너지·산업 장관을 제2부총리로 임명하여 친정체제 강화함. 2007년 4월에는 국왕의 동생이나 실권이 없던 “압둘라” 총리를 해임하고, 하마드 외교부 장관을 총리에 임명하는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국왕을 대신한 대내외 활동에 ‘타밈’ 왕세자의 비중을 크게 확대하였다. 현재 “하마드” 국왕으로부터 “타밈” 왕세자에게로 국정이 이양되는 과정에 있으며, 최근 실질적 軍통수권이 일부 이양되는 등 국정 전 분야에 있어 왕세자의 영향력 강화되고 있다.

Qatar는 적극적인 개방·개혁정책의 추진으로 서남아·동남아시아 노동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건설현장에서의 임금 체불, 처우에 대한 불만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카타르 정부는 이를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소요사태로 발전되지 않도록 국내치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 Qatar의 정치제도

Qatar의 국왕(Amir)⁸⁸⁾은 국가원수로 행정부를 관할하고, 사실상 종신제이다. 국왕은 모든 법령의 비준 및 공포, 각료회의 주재, 정부각료 및 자문위원 임명하며, 국방장관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자문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및 자문위원회 해산권을 보유하고 있

88) Qatar Constitution, Art. 64.; 국왕은 국가의 원수다. 국왕은 신성불가침이고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Qatar Constitution, Art. 65.; 국왕은 군대 통수권자이다. 국왕은 그의 직속권한 아래 국방위원회의 도움과 함께 동일하게 감독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왕의 결의안을 형성하고, 또한 국왕 결의안의 기능을 결정할 것이다. Qatar Constitution, Art. 66.; 국왕은 모든 국제관계에서 내부와 외부의 국가를 대표한다.

다. 다만, 2003년 4월에 통과된 영구헌법에 의해 3권 분립의 원칙이 도입되면서 국왕의 입법권 약화되었다. Qatar의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총리(외교장관겸직), 부총리 (에너지산업장관겸직), 12개 부처 장관, 국무장관 5명, 무임소 장관 1명, 총 20명으로 각료회의를 구성(2008년 7월 1일)하고 있다.⁸⁹⁾ 각료회의는 자문 위원회에서 논의 될 법안과 포고령 제안, 각 부처 관할권내에서 마련된 각종 결의와 규정 승인, 법령, 포고령, 결의 규정 및 법원 판결의 이행 감시, 국가 재정 감시, 국가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⁹⁰⁾

Qatar의 입법부는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⁹¹⁾의 형태로 4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임기가 4년이다. Qatar의 영구헌법에 따라 국왕이 15명을 임명하고, 30명은 직접·보통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있다.⁹²⁾ 그러나 2005년 최초의 자문위원회 선거 실시 예정이었으나 계속 연기 중에 있다. 그 이유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이중 국적자 투표권 부여, 선거구 획정, 부족 간의 이해관계 및 집권 가문 내 이견 등의 문제로 당초 2005년 실시예정이던 자문위원회 선거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

89) Qatar Constitution, Art. 120.; 장관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의 기능을 이행함에 국왕을 지원하여야 한다.

90) Qatar Constitution, Art. 121.에 “장관위원회가 최고집행기관의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관할권의 범위 내에 놓여있는 국내외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부한다. 장관위원회는 특히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Qatar Constitution, Art. 122.; 장관은 자신의 관할권의 한계내에서 일반적인 정부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국왕은 그들의 기능의 형태내에서 국가의 모든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수상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91) Al-Shoura 위원회의 회원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원래 카타르 국적의 소유자일 것, 2. 그의 나이가 적어도 임명의 날 마지막일 보다 30살 되지 않으면 안된다, 3. 아랍어를 읽고 쓸 수 있을 것, 4. 법률에 따라 교화되지 않거나 부정직, 도덕적 비열함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법률의 관할 법원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5. 선거법에 정해진 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것

92) Qatar Constitution, Art. 77.; Al- Shoura 위원회는 45명으로 구성되는데, 30명이 직접 선출되고, 일반적으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그리고 국왕은 어떤 다른 사람 및 장관들 사이에서 남은 15명을 임명한다. Al-Shoura 위원회에서 임명된 회원의 서비스 기간은 회원 또는 자신의 자리를 사임할 때 또는 자신의 직위가 해임될 때 만료된다.

황이라고 한다.

자문위원회는 제안 발의 및 법률 제정, 각의에서 회부하는 예산안 및 법령안, 기타 주요안건 심의를 함. 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안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국왕의 비준이 필요하다. 국왕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심의를 이루어지며 2/3의 지지를 얻어 재차 통과되면 법률안으로 확정하여야 한다.⁹³⁾

Qatar의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는 명목상 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할 뿐 서구 개념의 의회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원의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Qatar의 Al-Shoura 위원회의 의원이 현행범(flagrante delicto)으로 발견되었을 때, 그는 위원회로부터 사전허가 없이 체포, 구금, 검색 및 수색을 받지 않고 있다. 위원회가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내에 허가에 대한 요청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 사실상 허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허가는 마지막으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을 때 위원회의 의장에 의하여 발행하게 된다. 또한 현행범의 경우에, 위원회는 유죄가 되는 의원에 대한 취한 조치를 통지해야 함. 그리고 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이러한 통지는 첫 번째 회의 결과에서 행하여져야 한다.⁹⁴⁾

Qatar의 사법부는 최고사법평의회(Supreme Judicial Council)⁹⁵⁾를 1999

93) Qatar Constitution, Art. 106.; 1. 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초안은 비준을 위하여 국왕에게 회부된다. 2. 만약 국왕이 법률초안에 대한 승인을 거절한다면, 그는 회부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내에 위원회에 법률안의 거절이유와 함께 장기간 반환한다. 3. 법률초안은 전항의 정해진 기간 내에 위원회에 반환된 사건에서, 위원회가 모든 회원의 3분의2 이상 과반수로 똑같이 통과하게 되는 경우에, 국왕은 비준을 하고 공표를 한다. 국왕은 나라의 고도의 이익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게 될 절박한 상황에서 그 기간 동안 법률초안을 보류하도록 명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법률초안이 3분의2 다수결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회의 동일한 기간 내에 다시 재의할 수 없다.

94) Qatar Constitution, Art. 117.

95) Qatar Constitution, Art. 137.; 사법부는 법원과 법원의 보조기관의 적절한 기능을 감독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를 둔다. 법률은 최고위원회의 기능, 권한, 구성을 규정한다.

년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을 하였다. 사법 제도 발전을 위한 법률 제안 및 판사 임명을 위한 조언을 하였다. Qatar의 법원은 3심제를 실시하고 있고, 원심(First Instance) → 상소심(Appeal) → 최고심(Cassation)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다.⁹⁶⁾ 그리고 사법기관은 독립적이고, 다른 유형과 심급의 법원에서 부여하게 되고, 법원은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⁹⁷⁾

또한 Qatar의 경우 다른 중동국가들과 같이 이슬람 법원(샤리아)에서 이슬람 관련 사안에 대한 판결 및 코란의 율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는 종교재판소를 설립하였고, 2004년 10월에 사법개혁법 공포를 통해 법무부내로 편입되었다. Qatar는 2006년 카타르에 거주하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왕비 주도로 가정법원을 설치하였음. 즉 이슬람 법원이 일반 법원으로 일원화되기 이전에 이슬람 법원에서 조정되던 사안들, 특히 가정과 관련된 이혼 시 여성의 위자료 지급, 양육권 문제, 아동보호 문제 등을 전담하게 되었다.

(3) Qatar의 사회·문화제도

1) Qatar 국민의 국민성과 특성⁹⁸⁾

Qatar의 국민들은 대부분 친화력이 강하고 인정이 많으나, 자존심이 강하고 이기적인 면도 있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된 문제의 경우 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체면을 차리고 명예와 품위, 자존심을 중요시하며, 대체로 순박하고 사교적이며, 성격이 느긋

96) Qatar Constitution, Art. 130.; 사법기관은 독립적이다. 그리고 사법기관은 다른 유형과 심급의 법원에서 부여하게 된다. 법원은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Qatar Constitution, Art. 131.; 판사는 독립적이고 그들은 법률에 의하여 제공되는 사법적인 기능의 행사에 어떤 권력도 구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판사는 법원의 소송절차와 정의의 실현을 허용하는 것에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

97) Qatar Constitution, Art. 130.

98) UAE, Saudi Arabia, Qatar의 사회와 문화제도는 같은 중동지역의 아랍인으로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다. 즉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중복 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하여 서두르지 않고 매사에 의연하게 대처한다. Qatar 국민들도 혈연·가족 관계 및 체면·명예를 중시하며 외형이 내면을 규정 한다고 믿고 있고 자신의 재산 및 부계 혈통을 과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혼인시 개인의 성격·능력보다는 가계·혈통이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카타르도 가부장제 사회로서 친인척간 우애와 협력을 중요시하며, 부모는 자식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가문 또는 가족을 향한 의리가 우정에 우선하며, 동일 가문 내에서도 친형제와의 우애가 친척간 유대감보다 중요하고 있다. 이 같은 가족 중시성향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과 공중도덕 관념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다만, 다양한 서구식 문화의 유입과 외국인 노동력 유입 증가에 따라 이슬람문화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⁹⁹⁾

2010년 4월에 현재 Qatar의 전체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대략 169만명이고, 외국인 노동력 유입에 따라 지난 5년간 2배로 급증하였으며, 이 중 카타르인은 약 14%에 불과하다고 한다. 미혼 남성 외국인들의 유입의 영향으로 성비 불균형 심각하다(전체 인구 대비 여성 비율 24%). 카타르는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 도하에 거주하고 있고, 국적이나 직업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분류되는데, 베두인 : 토착 카타르인들은 ‘bedu’라 불리는 유목민들로, 태어나면서부터 왕족·중산층·하층민으로 분류되며, 베두인 왕족 등 상류층이 카타르의 권력과 경제권을 장악, 非카타르계 아랍인 : 일자리를 찾아 주변국으로부터 온 사람들로 점차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나, 서양인에 비해 급여도 적고 인정을 덜 받고 있는 실정, 아시아계 이주노동자 : 주로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나, 영어 구사 능력이 있으며 택시운전사나 상점 점원으로 취업, 서양인 : 석유관련 직종·영어교육·의료업 등에 종사하며,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99) <http://qat.mofat.go.kr/kor/af/qat/affair/opening/index.jsp>

최근 카타르정부는 외국인 인력규모를 경제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유지하고, 민간부문에서의 내국인 고용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카타르 국가의 언어와 종교

카타르 국가는 아랍어¹⁰⁰⁾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의 비중(80%이상)이 높은 관계로 비즈니스에서는 영어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외국인 중 인근 서남아시아계, 특히 인도·파키스탄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힌두어 및 우르드어도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카타르의 종교는 이슬람교, 수니파가 다수임. 카타르 국민 대다수(총인구 169 만 명 중 95%)가 무슬림이다. 와하비파에 속하는 수니파 무슬림이 대다수로 이슬람 문화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고, 1999년 4월 외국인의 인구 증가에 따라 기독교 등 타종교에 대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종교활동을 허용하였고, 2008년 3월에는 최초의 가톨릭교회 “세인트 메리”를 건립하였다.¹⁰¹⁾

카타르는 이슬람의 교리, 문화, 관습의 전파를 위하여 종교부를 설립하였다. 종교부는 이슬람 사원의 건립 및 관리, 회사금의 관리, 이슬람 문화 보급 및 서적 발간 등을 담당하였다. 카타르인의 종교는 사회·문화·일상생활 전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주요 요소이다. 이슬람교는 단순한 신앙 체계가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이 합일된 생활양식으로서, 이슬람의 이해 없이 카타르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나, 사우디·이란 등에 비해서는 종교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100) 일반적으로 아랍어는 아랍인의 언어로, 또는 무슬림의 예배언어로 정의되고 있다. 아랍어는 인종, 언어, 종교적 요소들이 상호 결합된 채 시간과 공간적인 영역을 포함해온 언어이므로 아랍어가 단지 아랍인 또는 무슬림, 아라비아 반도의 언어라고 정의하는 것은 완전한 정의가 되지 못한 정의라고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희수·이원삼, 「이슬람-9·11테러와 이슬람세계 이해하기」(청아출판사, 2010), 176면 이하 참조.

101) <http://qat.mofat.go.kr/kor/af/qat/affair/opening/index.jsp>

3) 카타르국가의 생활양식

카타르국가는 1930년대 석유가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주로 사막에서 부족 단위인 유목민으로 생활을 한 관계로 가족관계를 중시하고, 경로우대 사상이 강해 일반적으로 가정의 권위가 절대적인 가부장제 사회였다. 카타르 가정은 남성다움을 상징하기 위해 자녀를 많이 갖기 위해 노력하며, 법률상 4명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고, 아내들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가족은 대개 5-10명 정도 규모이고, 남편과 1-2명의 아내와 자녀, 때로는 숙부모·조부모·4촌들까지 포함되기도 하여 친인척간 유대감이 강하며,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중시하고 있다.

카타르 국민들의 결혼이 과거에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미혼 남녀간 교제 금지로 부모의 결정에 따라 혼인했으나, 최근에는 교제가 자유로워지고 일부일처제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배우자 선택에서 4촌간 결혼에 우선권이 부여될 정도로 근친결혼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양가 합의와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으면 씨족이 다른 사람과도 결혼이 가능하다. 카타르국가에 의복의 경우, 남녀 모두 전통 아랍 복장을 상용하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 두건 ‘쿠트라’와 긴 흰옷 ‘디쉬타’를 착용하며, 왕족과 정부 고위층은 소매 없는 ‘알-아바’를 착용하며, 여성의 경우, 연령에 따라 상이하나 성인여자는 몸 전체를 가리는 검은색의 ‘아바야’를 착용하고 있다.

4) 카타르 국가의 음식

카타르 국민들도 여러 중동국가와 마찬가지로 양고기와 닭고기를 즐겨먹고, 대추야자에서 추출한 설탕은 거의 빠지지 않는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다.¹⁰²⁾ ‘푸알라’는 과일, 달콤한 케이크·견과류·퍼키 등

102) 이희수, 『이슬람문화』(살림, 2009), 51면 이하 참조.

의 간단한 먹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개 아침과 점심 사이나 점심과 저녁사이에 먹으며, 집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도 의례적으로 대접을 한다. 음식은 알라신이 내린 가장 귀중한 선물로 식사하는 동안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지만 각 식사 단계마다 축복하는 말을 서로 교환을 한다. 먹기전에는 ‘Bismillah’ (알라의 이름으로), 식사 중간에 ‘Billah aleik tihbshi’ (알라께서 더 먹으라고 하시네요), 충분히 먹었을 경우 ‘Akram Allah’ (알라의 영예로움이 함께 하길), 식사후 커피를 마신후 ‘Alhamdulillah’ (알라 덕분에)라는 말로 만족감을 표시하는 것이 관례이다.¹⁰³⁾

카타르 국민은 음식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기 위해 오직 오른 손으로만 먹을 수 있고 집어 올릴 때는 엄지·검지·중지를 사용을 한다.

(4) Qatar의 국방제도¹⁰⁴⁾

카타르의 ‘하마드’ 국왕은 국방장관 및 軍총사령관을 겸직, 군부를 장악하고 있으나, 최근 軍통수권이 ‘타밈’ 왕세자에게 사실상 이양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카타르에 존재하는 총병력은 1만 2,4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교 이외의 대부분의 병사는 예멘 등 아랍계 용병이 약 70%로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육군 8,500명, 해군 1,800명, 공군 2,100명이며, 육군은 왕실경호 연대·기갑대대·포병연대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카타르가 국방력을 증강하는 이유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戰, 1990년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등 역대 정세불안과 바레인과의 소도시 분쟁 등을 계기로 원유시설 보호 및 자국방위를 위한 것이다.

최근 이란 핵문제 및 이라크 내전 상황 등 중동정세 불안 등을 고려하면, 모병제의 징병제 전환검토 및 외국인 병사 위주의 군대를 카

103) 정수일, 『이슬람문명』(창비, 2010), 285면 이하 참조.

104) <http://qat.mofat.go.kr/kor/af/qat/affair/opening/index.jsp>

타르인 군대로의 대체를 추진하는 한편 첨단무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걸프戰 이후 아랍국가간 이해 갈등 및 GCC 회원국 상호간 입장 차이로 자국방위가 GCC 집단안보체제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영국, 프랑스, 미국 등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안보체제 보완하고 있다. 미국은 1992년 6월, 영국은 1993년 6월, 프랑스는 1994년 8월에 각각 군사협력협정 체결하였다.

따라서 카타르정부는 미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자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 및 프랑스와도 연례 해군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 군사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Qatar의 의료제도와 교육제도¹⁰⁵⁾

카타르는 기본적으로 국립의료체제로서 자국민 및 외국인 모두에게 무료 의료제도를 실시하여 오다가,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악화로 최소한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선회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1998년 국립병원에서 최초 등록비를 유료로 받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최고 보건 위원회 (Supreme Health Council) 설립 법을 승인(2009.4.5), 본 위원회를 통해 의료 보험 제도 개혁 및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하고 있다.

카타르는 하마드 메디컬 센터(Hamad Medical Center)를 국가 의료시스템의 중추이며, 그 외 지역별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 전문직 외국인을 위한 사립 영리병원이 다수 존재하며, 진료비는 매우 높은 편이다(대부분 사보험으로 지급). 카타르의 의료시설은 우수한 편으로 주로 제3국인 의료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을 하여야 한다. 중동 지역 의료 허브로의 부상을 위해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과정 디지털화된 초대형 병원(Sidra Hospital) 건립 등 도하시 외곽에 대규모 의료단지 건립 추진 중에 있다.

105) <http://sau.mofat.go.kr/kor/af/sau/affair/opening/index.jsp>

카타르정부의 교육정책은 전체인구 중 외국인의 비중(약 86%)이 높은 관계로 이슬람 종교·문화의 보전 및 비석유 산업 육성 등 국가발전에는 필요한 인력양성 등을 위해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카타르의 “하마드” 국왕은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카타르 정부는 최근 수년간 교육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는데, 2005/2006년의 약 13억불 수준에서 2008/2009년 약 54억불로 증대하고 있다.

카타르는 2004-2008년간 해외 우수대학 유치에 50억불, 중·고등학교 시설확충에 20억불 투자를 하고 있다. 카타르의 기본 학제는 유치원 / 초등(6년)·중등(3년)·고등학교(3년) / 대학교로 구성함. ‘교사 대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1:10), 중학교(1:11), 고등학교(1:9)로 매우 낮은 편이다.

카타르 정부는 카타르인에 대해서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며, 외국인에 대해서도 무슬림인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대우를 하고 있다. 교재, 학용품, 체육복, 운동기구 등 교육에 필요한 모든 용품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학업성적(고등학교 40% 이상)이 좋을 경우, 전액 국비 해외유학을 보장한다. 현재 카타르는 초·중·고 공립학교를 자율형 사립학교로 전환 추진 중에 있다. 카타르는 1977년 설립된 카타르 대학(Qatar University)이 6개 단과대학에 학생 수 8,400여명, 교수진 600여명으로 년 1,380여명 내외의 졸업생 배출하고 있다. 교수진의 70% 정도를 영국, 이집트, 이란 등지에서 초빙하여 외국인 교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전체 학생의 약 70%가 여학생이다. 이는 “셰이카 모자” 국왕비의 주도 아래 카타르 교육도시(Education city)를 조성하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을 국가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카타르를 중동지역 교육 허브로 부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코넬 의대, 조지타운 국제관계대학, 노스웨스턴대 신문 방송 대학, 버니지아 주립대의 응용미술대학, 카네기멜론대 경영 및 컴퓨터

공학 대학, 텍사스 A&M대 공과대학 분교 및 이슬람대학 등 총 7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¹⁰⁶⁾

(6) Qatar의 언론제도

카타르 국가는 現 “하마드” 국왕 즉위 이후 언론검열의 폐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진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언론이 카타르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언론의 자율적인 보도에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카타르정부의 국영 TV 방송 및 라디오 방송은 1968년 에 창립되었고, 1978년에 TV 방송을 창립하였다. 2011년 현재 카타르의 알-자지라 방송은 1996년 11월에 창립하여, 중동·아프리카·유럽 및 아랍권 전역을 시청권으로 하는 24시간 뉴스 채널로서, 9.11 테러사건 및 2003년 3월 이라크戰 보도 등 성역 없는 보도로 국제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¹⁰⁷⁾

4. 중동(UAE, Saudi Arabia, Qatar)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등에 공통점 도출

(1) 중동국가는 왕정중심의 정부형태

중동의 왕정국가들은 그동안 막대한 오일머니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대신에 정치참여를 막았다. 그리고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수입해 국가를 운영해 왔다. 대부분의 중동 국가 단일 정당체제를 폭압적으로 유지하면서 왕정일가들이 행정부의

106) 카타르는 석유가 나기전에 자연 진주 채취가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하지만 일본이 양식진주를 만들어 내면서 어려움을 겪은 이후 오늘날 교육과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석유, 가스가 고갈된 이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미국의 우수한 대학을 선별 유치하였다.

107) 알자지라방송은 이라크 전쟁 등 서구의 시각에서 도전한 최초의 아랍미디어이다. 만약 많은 사람이 CNN을 본다면 CNN은 알자지라를 보고 있을 것이라는 말로 알자지라는 세계 여론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요직을 독차지 했고, 거액을 외국에 빼돌려 언제든지 도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다.

예컨대, UAE는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즈만, 움 알 카이마, 푸 자이라, 라오스 알 카이마로 구성된 연합국가로 UAE의 석유자산 대부분을 아부다비가 사실상 UAE를 대표하고 있다. 아부다비의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형식적인 통치자이며, 칼리파 대통령의 이복 동생인 모하메드 왕세자가 실권자로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Saudi Arabia는 이슬람 성지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데다 이슬람근본주의를 추종하는 “와하비”운동이 득세해 항상 보수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고, 그 만큼 사회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이다. 2005년 왕위를 계승한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이 첫 남녀공학 대학을 개교하는 등 개혁추진을 천명했으나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사우디 왕정국가는 후계구도가 불안한 상황에 부딪쳐 있다. 왕세자 술탄이 83세이고, 또 다른 실력자인 내무장관 나예프 왕자도 71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다음세대의 권력이양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Qatar의 알-타니 왕가는 막대한 가스 매장량을 바탕으로 생긴 부를 국민에게 배분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으며, 외교정책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아랍세계의 반정부 시위대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동의 왕정국가 중에 카타르의 경우에만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반정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2) 중동국가는 샤리아법(Sharia Law)을 바탕으로 사법시스템을 운영

UAE, Saudi Arabia, Qatar의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이 코란이라고 하는 율법에 의한 Sharia法體系에 의하여 法制를 운영하고 있다. 사

리아법에는 상거래와 같은 세속적인 法規定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슬람 교리에 근거한 宗教法으로서 만의 性格을 갖지는 않는다. 중동국가의 UAE, Saudi Arabia, Qatar 이슬람국가는 이슬람사회 전체를 규율하고 있는 샤리아법률이 헌법보다 상위의 법률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헌법보다 하위규범이라고도 할 수 없는 특수한 지위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중동국가는 의회 대신 “위원회”를 둬

중동국가(UAE, Saudi Arabia, Qatar)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입법부인 의회를 입법화하고 있지 않고, 그 대신에 명목상의 의회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두고 있다. UAE의 경우에는 연방평의회를 두어, 임기가 4년이고, 각 에미리트별로 40명을 구성함.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왕의 명령으로 자문위원회를 90명을, Qatar는 자문위원회의 형태로 45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4년이다.

(4) 중동국가는 정교일치 사회의 이슬람교

이슬람은 인간이 신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현세와 내세에 신이 가르치고 인도해 준 생활양식을 그대로 따르는 종교이다. 이슬람은 단순히 신앙체계만을 일컫는 종교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활동 전체를 포함하는 생활을 말한다. 기독교나 불교 등 대다수의 종교가 세속적 삶보다 내세를 강조하고 인간생활의 육체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면을 중시하고 있는데 반해, 이슬람은 현세의 삶을 내세의 삶과 동일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은 종교와 정치를 모두 포함한다는 인식은 중동인들의 역사와 생활, 의식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슬람의 정치와 종교 합일현상을 정교일치 사회라 한다.

(5) 중동국가의 사회·문화 특징으로 일부4처, 히잡 등

이슬람사회에서 일부4처제도는 “꾸란”에 “만일 너희가 고아들을 공평하게 대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결혼을 할 것이니 너희가 마음에 드는 여인으로 둘, 셋, 또는 넷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들을 공평하게 대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한 여인이나 아니면, 너희 오른 손이 소유한 것(노비)을 취할 것이니, 그것이 너희가 부정을 범하지 아니할 최선의 길이다”는 구절이 있다. 이는 이슬람초기에 전쟁에서 많은 남성들이 사망하게 되자 과부들과 고아들이 생겨나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으니,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도가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슬람 초기사회에서 일부다처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였다.

이슬람은 종교적인 임무와 수행에서 남녀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혼인, 이혼, 상속권 및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슬람은 남성에게 경제적인 부양의무가, 여성에게는 자녀교육과 가정을 보존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히잡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여성의 순결성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도 했다. 이로써 히잡을 착용하는지 여부가 남성의 성적욕구를 자극해 남성을 타락케하는 기준으로 간주됨으로써 히잡은 여성의 순결성과 가문의 명예를 나타내게 하는 상징을 하게 되었다. 또한 히잡의 착용은 다양한 순기능 역할을 하는데, 이란여성은 정치 경제적인 권한을 확보, 이집트는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한 사회활동을 영역을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해 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

제 2 절 아프리카의 정치, 사회, 문화 등

1. 아프리카 정치체제

(1) 개요

아프리카의 정치정세는 세계정세와 흐름을 같이하면서 동요와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강대국의 식민지를 겪어온 아프리카는 식민지로부터 독립시 민족주의의 고양에 독립 후 민주주의 정치 실현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열망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당간·부족간 대립에 의해 정치적 혼란을 맞이한 국가가 대부분이다. 독재적인 대통령제, 정당활동에 큰 제한을 두는 일당제 등에 의해 민주주의 정치는 후퇴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역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혼란은 가중되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많은 부족들이 존재하였고 부족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 정치체제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954년~62년의 알제리 전쟁이나, 1960년~65년의 콩고(자이르) 위기 등 강대국의 개입의 의해서 뒤늦게 해결에 이른 분쟁도 있었다. 또 이들 분쟁과 관련하여 친서구적 브라자빌 그룹과 친중소적인 카사블랑카 그룹이라는 두 개의 정치적 그룹이 1961년~63년에 성립되었다. 즉, 프랑스 식민지에서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들로 구성된 친서방적이며 온건한 성향의 브라자빌 그룹과 급진적이며 친사회주의 성향의 카사블랑카 그룹으로 분열되었다¹⁰⁸⁾. 이후 이 두 그룹의 화해와 아프리카 단결을 위한 중재로 브라자빌 그룹이 먼로비아 그룹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두 그룹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채 아프리카 단결과

108) 1963년 초부터 오늘날까지 수없이 일어난 군사 쿠데타에 의해 오늘날에는 카사블랑카가 친서구적인 모로코의 도시이고 브라자빌은 친중적인 콩고의 수도인 것과 같이 일찍이 이 두 도시의 이름으로 판가름한 두 개의 정치적 그룹과는 전혀 반대되는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발전을 위해 1963년 아프리카 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가 설립되었다. 이후 OAU는 내정불간섭이란 원칙으로 아프리카 각 국가에 대한 강제력을 지니지 못해 설립 39년만에 아프리카 연합(AU)으로 대체되었으며, 관세·경제적 통합을 바탕으로 다수의 공동체, 연합이 생겨났다.

특히,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의 지역안보협의체 등을 통한 역내 분쟁해결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ECOWAS는 시에라리온 사태, 라이베리아-기네 국경분쟁에, SADC의 안보협력체는 콩고사태, 앙골라 사태에 적극 개입,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 아프리카의 5개 권역 -

권역 구분(53)	국가명
북부 아프리카(5)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중앙 아프리카(10)	가봉, 르완다, 부룬디, 상투메 프린시페,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아프리카(9)	세이셸,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지부티, 케냐, 탄자니아 ※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지부티는 뿔 지역(Horn of Africa) 으로 분류되기도 함
서부 아프리카(16)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에라리온,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토고
남부 아프리카(13)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코모로

※ 밑줄 친 국가들은 불어권 아프리카국가(21개국)

아프리카에서 폭력적인 정권 획득의 대부분은 쿠데타나 군사 개입을 통한 유혈 사태로 이어졌다. 1960년 이후 25명의 대통령과 수상들이 정치적 폭력의 결과로 정권에서 쫓겨났다. 1952년 이집트 혁명 이후 아프리카에서 85번의 폭력에 의해 정권 교체가 있었으며 모두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90여개의 정부가 전복되었다.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31개국이 정권교체를 당했고 이들 중 22개국은 유사한 종류의 정권교체를 한번 이상 경험했다. 베닌, 부룬디, 가나, 나이지리아, 수단, 시에라 레온과 우간다를 최소한 5번의 군사적 정권 교체가 있었다. 군사정권은 일당제와 다당제 국가 모두에서 발생했다.

보츠와나와 모리셔스만이 독립 이후 다당제를 유지해 왔으며 1994년 7월 군부의 권력 탈취가 있기 전까지는 감비아도 다당제를 유지하였다. 짐바브웨와 나미비아는 독립 이후 다당제 국가가 되었고 지금까지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기니아, 말리, 니제르같은 나라들은 독립과 함께 일당제를 채택하였는데 일당제는 지난 30년 동안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에게 일반적인 정당 체제로 받아들였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권의 일반적인 모습은 점진적으로 군사정부를 민간정부 형태로 이양해가고, 또한 군부 정치 체제를 일당 독재체제로 변형시켜나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나와 나이지리아는 예외적으로 독립 후에 민주주의와 군정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났다. 1977년까지 이집트, 모로코, 세네갈에서는 다당제를 부활시켰으며 1980년대에는 튀니지아, 수단, 알제리, 라이베리아, 코모로스 등지에서도 다당제가 뒤따라 부활되었다. 그 후에 라이베리아와 수단에서 독재주의가 부활하고 라이베리아가 내전에 휘말리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 초 다당제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소용돌이의 초석이 되었다. 또한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힘을 얻게 된 아프리카 지원국들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정부에게 경제와 정치 체제에

대한 개방 압력을 가했다. 1989년 11월 UN의 감독 하에 치러진 독립 전 나미비아의 총선을 아프리카의 제2의 해방이라 일컬어진다. 이것은 1990년 전반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일당제 권력 독점이 다당제 선거 제도로 급속히 이행된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었다. 1990년 3월 나미비아가 독립을 맞았을 때 코모로스는 최초의 경선을 치루었고, 가봉과 디부아르도도 같은 해에 코모로스의 전철을 밟았다.

이후 아프리카 대륙 전체 많은 국가에서 기존의 정치체제들은 야당의 형성과 공개된 선거제도의 실시를 허용했다. 사하라 이남 지역의 48개국 중 1997년 말까지 경쟁적인 다당제 선거를 치루지 않은 국가는 4개국뿐이었다. 실제로 1990년 초의 아프리카는 세계를 휩쓸고 있는 민주화의 분명한 물결에 동참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모든 부문에 걸쳐 정치 구조에 근본적인 개혁이 있었으며, 실제로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들은 정치적 자유화를 실행했고, 일당 정부는 거의 사라졌다.

(2) 특 징

아프리카는 북부는 이슬람교로 동남부는 기독교가 강세를 이루고 있다. 언어 또한 구 식민지종주국의 영향으로 영어, 불어, 포르투갈어를 비롯한 약 2천여 개의 토착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 1884년 베를린 회의 당시 아프리카 대륙 분할 -

	국가 (현재 국가명으로 기입)
영국령(12)	가나, 감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보츠와나, 시에라리온, 수단, 이집트,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프랑스령(16)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니제르,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모로코, 베냉, 부르키나파소, 알제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트디부아르, 콩고, 튀니지

	국가 (현재 국가명으로 기입)
독일령(4)	나미비아, 카메룬, 탄자니아, 토고 ※ 카메룬, 토고 → 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와 독일이 분할 점령 르완다 → 1919년 벨기에에 위임
벨기에령(1)	콩고민주공화국
스페인령(1)	적도기니
포르투갈령(2)	모잠비크, 앙골라
이탈리아령(3)	리비아, 소말리아(남부), 에리트레아 ※ 국가로 분류되지는 않으나(UN기준) 서부사하라도 이탈리아령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의 정치체제의 특징적인 것이 대통령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프리카 제국의 대통령제는 서구적인 의미의 민주적 대통령제에 비해 매우 이질적이고 절대주의적 군주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일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종신직이나 다름없다.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정치 사회는 부족이나 촌락을 바탕으로 서로 대화에 의한 만장일치로 모든 정책이 결정되었으며, 다수결 원칙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토착적 정치문화에 익숙해진 민중은 다수결원칙에 따른 정치절차에 익숙하지 않았다. 다양한 정치체제들이 존재하였고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에 의해 사회를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제도와 체제는 각 부족들이 그들의 환경에 적응하며 오랜 시간을 거쳐 발달하며 체제화 되었다.

그러나 신생국가들의 독립이후 높은 교육율과 서구사회의 정치체제가 유입됨에 따라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보다 지방분권적·부족적 특색을 존중하는 세계적인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아프리카 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2. 아프리카 국가 형성

(1) 독립국가 형성 과정

전통적으로 아프리카는 식민지 지배를 통한 유럽문명의 접촉으로 서구로부터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됨에 따라 아프리카 전통체제를 대체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따라서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들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 현대와 법들이 이중적으로 적용받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¹⁰⁹⁾

독립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아프리카국가들은 여전히 정치적·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 이를 아프리카의 법제도, 특히 헌법에 국한시켜 살펴보면, 식민지헌법에서 독립헌법의 제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독자적 헌법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그들의 식민지종주국의 헌법을 거의 맹목적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정치지도자들의 실정과 쿠데타 등 잦은 정변으로 아프리카 특유의 독재 정치로 이어지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아프리카헌법을 연구함에 있어 보통 사하라 이남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의 헌법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식민지종주국 언어별로 구분하여, 영어권, 불어권 및 기타언어권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가운데서도 53개 국가들 중 30개 이상의 국가들이 영어와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개 언어권을 중심으로 헌법의 제정 경위와 그 핵심적인 주제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느 국가 혹은 지역의 헌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또는 사회구성원의 법의식 내지는 정치제도와 상황에 대한 분석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아프리카국가들의 개별 헌법을 분석하기 보다는

109) 조부연, “아프리카 전통사회의 정치체제와 법”, 아프리카학회집 제20권, 191면.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까지, 그리고 독립 후 영어권 및 불어권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작동된 헌법 제정의 상황과 그 주요한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를 크게 불어권 및 영어권 국가로 나누어 식민지종주국 헌법체계가 이 국가들의 헌법 제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그 주된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독립 이후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안에는 기본권과 자유권이 포함되어 있다.

법과 정치의 접점으로서 헌법은 최고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가 민주정치 확립을 위해 국회법, 행정조직법, 그리고 선거법 등 제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며, 또한 정치가 어떤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인가, 국민의 인권이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는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민주정치의 원칙, 인권보장의 원칙이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만으로 헌법의 역할을 충분히 다한다고 말할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원칙이 현실사회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헌법은 명목적 헌법이라 흔히 얘기 한다. 이는 헌법이 현실사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것이 아프리카 헌법의 성격중 하나인 것이다.

또 하나의 아프리카 헌법의 성격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유형화된 헌법이라는 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독립은 민족주의 고양의 결과로서 쟁취한 것도 있지만 독립헌법의 대부분은 식민지 시대의 종주국의 지도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령 국가의 헌법은 1957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영국령 헌법은 1960년 나이지리아 독립시 영국식에 기초한 법률체계를 따라 만들었다.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독립하였기 때문에 헌법은 당연히 사회주의 헌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각자 지역의 정치이데올로기의 획일화를 낳게 되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얼핏 보기에 다양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헌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블록화된 획일화 현상도 존재한다.

법과 정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법과 정치가 서로 맞물려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이는 제3세계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단지 선진국은 법과 정치가 서로 맞물리지 않더라도 사회환경, 경제, 교육 등에 의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국가의 경우 식민지 시대 원주민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식자율이 현재에도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경제적 사정 또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과 정치가 조화롭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2) 독립 이후 국가형성

독립 후 아프리카 국가 헌법체제에 있어 특징으로 대통령제와 일당제(the systems of the presidentialism and one-party system) 채용이다.

프랑스권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다수 독립한 국가의 1960년 헌법이 1958년 드골 헌법이 제정된 시기와 정치환경에 있어 일치하였기 때문에 의회제도 보다 행정권우위의 드골헌법을 모델로 한 대통령제를 채용하였다. 반면에 영국령 아프리카 국가는 자치령헌법의 기본이 된 웨스트민스터 조령(the Status of Westminster, 1931)에 따라 원수로서 영국왕이 있는 의회정치를 그 모델로 채용하였기 때문에 독립헌법에 있어 정부기구는 수상을 중심으로 한 의원내각제를 채용하였다.

이러한 아프리카 국가의 대통령제에 있어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의 책임자에 머물지 않고, 입법·행정·사법 전반에 걸쳐 법정립과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독립이후 근대화를 위해 중앙집권화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헌법체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당제 채용이다.¹¹⁰⁾ 이러한 일당제와 관련 성문헌법에 명시된 국가는 적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일당제를 채용하고 있었다. 아프리카 국가가 일당제를 채용한 이유는 몇 가지 들 수 있으나 사회주의 국가의 일당제와 그 기원과 현상이 다르다.

독립전후 정당결성에 노력한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민족운동에 의해 해방·독립을 쟁취하였다. 그리고 이 지도자가 독립 후 강력한 지도력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게 요구되었고, 모든 권력을 쥐게 되어 행정부의 장이 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정당과 행정기관이 중복되고, 입법에 대해서는 행정우위의 정치구조에서 자연스럽게 일당제 국가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또한 독립이후 아프리카 국가의 헌법은 그 성립 경위로부터 이전의 식민지 지배의 형태에 따라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라이베리아, 우간다 등 영어권 국가들은 개별조항에 있어서는 미연방국가의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권 목록을 자신들의 헌법에 수용하였다. 베냉, 기니 등 프랑스권 국가들은 대개 일반적인 기본권 조항이외에 헌법 전문에 인권과 시민권에 대한 프랑스 선언, 혹은 유엔 인권 선언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 안에서는 헌법은 현재 보류중이던가 아니면 특별령으로 의해 실행이 저지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사회는 비록 서구형태의 법률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본질 속에는 여전히 아프리카 전통사회의 법들이 함께 병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사회에 여전히 더 강하게 남아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양한 종족들로

110) 일당제를 명문화한 헌법으로 중앙아프리카헌법(1958년), 아랍공화국연합헌법(1958년, 1964년 폐지), 알제리헌법(1963년, 현재 효력정지), 가나헌법(1964년, 1966년 쿠데타로 중지), 탄자니아잠정헌법(1965년), 말라위헌법(1966년), 콩고헌법(1970년), 자이르헌법(1970년), 이집트아랍공화국헌법(1971년), 수단헌법(1973년), 잠비아헌법(1973년) 등이 있다.

국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¹¹¹⁾

전통 아프리카 사회에서 적용되는 법은 성문법이 아닌 관습이나 문화 속에 나타나는 관습법을 아프리카 전통사회에서는 채택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가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원주민의 법생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부족사회라는 아프리카 특성상 국가로서 통일된 법질서를 형성하기 어려웠던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아프리카 관습법들은 종교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신들을 불러오는 것으로 특정한 제례의식들이 따라온다.

그러나, 서구에 비해 정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아프리카 전통사회에서도 민법과 형법으로 구별하여 나누어졌다. 민법은 개인의 재산이나 지위 또는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의 권리와 관련되는 반면, 형법은 사회전체의 이익이나 행위들에 반하는 행위들로 정의된다.

대체로 아프리카는 법집행에 있어 엄격하게 적용하였으며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으로 다루어졌다.

아프리카 국가 헌법에서 법과 현실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특히 인권보장 조항에서 그렇다. 그 중에서도 사회권과 그 권리를 구체화하는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는 헌법에 이러한 문제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경제적·사회적 현실이 이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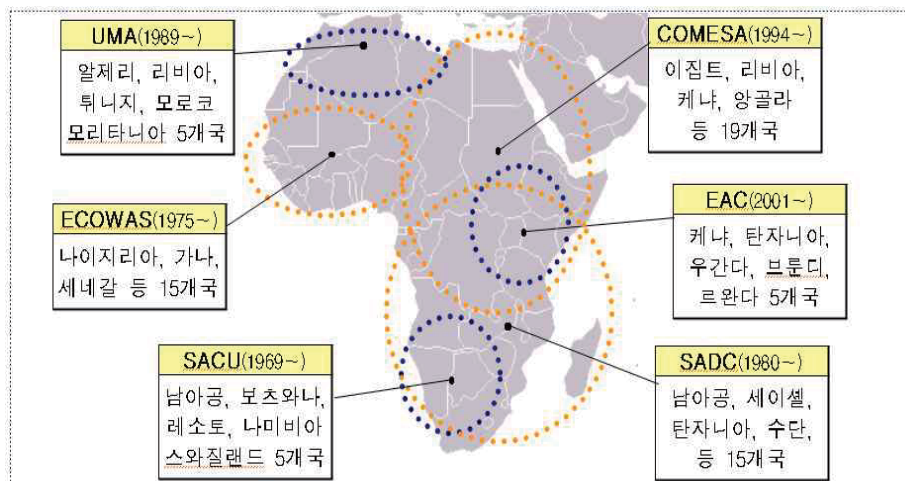
111) 나이지리아의 경우 아직까지 하우스-폴라니 족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북부지역에서는 나이지리아 연방법 보다 그들이 이전부터 유지하여왔던 이슬람 율법(샤리아법)을 우선시 두고 있어 연방정부와 마찰을 가져오기도 한다.

3. 아프리카 지역공동체

(1) 개요

아프리카 국가들은 1950년대 독립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국가는 정치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려 노력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역공동체(지역통합)을 통해서 경제발전과 빈곤감소의 효과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협소한 시장규모,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들이 보호주의정책을 취함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화를 이루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내에는 10여 개의 경제공동체가 존재하나, 국가 간 경제력 격차 등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활동은 미약한 수준이다.

- 아프리카 주요 역내 공동체 -



현재 아프리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의는 탈식민화의 정치적 과정을 배경으로 한 것이지만, 그 기반은 식민시대의 정치적 분할인 경우가 많다. 프랑스령 서부 아프리카는 1904년에서 1958년까지 연합으로 존재했으며, 수차레의 구조적 변환을 겪으면서 베닌,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가 독립했고, 이들 국가들은 현재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맹(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WAEMU)을 구성하고 있다.

중앙아프리카에는 1964년 프랑스의 지원과 관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통화연합이 창설되었다. 이는 1999년에 이르러서는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of Central Africa, CEMAC)로 변화되었다. CEMAC는 현재 유로화에 연동된 CFA 프랑을 사용하고 공동의 통화정책을 지닌 통화연합이며, 2014년까지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식적인 관세동맹이기도 하다.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SACU)은 원래 1910년에 창설되었다. 1969년에는 보츠나와, 레소토, 스와질란드, 나미비아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는 공동의 대외 관세, 세입 공유 기제, 그리고 남아공의 화폐인 랜드(rand)와 연동된 화폐를 사용하는 공동통화지대(보츠나와는 제외)의 창설이 포함되었다. 2004년에는 새로운 조약이 발효되었다.

식민지 케냐와 우간다는 1917년에 공식적인 관세동맹을 수립하였고, 1927년 탄자니아가 추가로 이 관세동맹에 가입했다. 독립 이후에 이들 국가들간의 협력은 동아프리카공동기구(East African Common Services Organization)를 통해 지속되었다. 동아프리카공동체가 1967년에 창설되었으나 1977년에 정치적 차이의 결과로 해체되었다. 1990년대의 재통합 시동에 뒤이어 2000년에 현재의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가 건설되었다. 공식적인 관세동맹은 2005년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1970~1980년대에 다양한 지역기구들이 건설되었는데, 이들은 기존 기구들 사이의 연계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나이지리아의 주도로 1975년에 형성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는 이 지역의 불어권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맹 국가들과 영어권 국가들의 연합이었다. 1981년에는 아프리카의 동부와 서부 국가들 사이의 특혜무역지대가 건설되었다. 이는 1994년에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COMESA)으로 승계되었고, 2006년에는 리비아에서 마다카스카르까지 아프리카의 공과 서를 가로지르는 19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1983년에 창설된 중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ECCAS)는 기존의 대호수지역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the Great Lakes Countries)와 상투메프린시페가 결합된 것이었다. 최근에 건설된 지역적 연계 기구는 1998년의 사헬-사하라국가공동체(Community of Sahel-Saharan States)로, 이는 세네갈에서 에리트레아까지 대륙을 관통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 지역기구 창설의 주요한 이유는 경우도 있다. 남아공의 주변 국가들이 1980년에 남부아프리카개발조정회의(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ordination Conference, SADCC)를 설립한 데는 인종차별 정책을 취하고 있던 남아공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크게 작용했다. 1992년 이 기구는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한 남아공을 포함하는,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로 바뀌었다.

창설 초기의 특정한 목적이 이후 확대된 지역기구도 있다. 1986년 동아프리카의 정부간개발기구(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IGAD)는 가뭄과 사막화에 대처하기 위해 형성되었지만, 회원국들의 갈등과 소말리아 내전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에는 분쟁 예방과 관리가 이 기구의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1989년 창설된 아랍마그레브연합(Arab Maghreb Union, AMU)은 국지적인 문화적 정체성이 지역기구의 창설에 주요한 요소인 사례이다.¹¹²⁾

대륙 전체의 지역기구 건설은 그 초기 단계에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추동되었다. 1963년에 형성된 아프리카통일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는 식민주의의 종식과 정치적 독립의 쟁취를 위해 매진했다. 대륙의 어젠다는 이후 확대되었다. 1991년에 체결되고 1994년부터 발효된 아부자 조약(Treaty of Abuja)은 아프리카경제공동체(African Economic Community, AFC)를 건설하였다. 이 두 기구는 유럽연합을 모델로 하여 2002년에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으로 합쳐졌다.

다양한 지역기구들을 대륙 전체 차원에서 조정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경제공동체와 14개 지역 경제공동체 사이의 관계에 관한 1997년 협약이다. 지역 경제공동체들은 기능적 취약했다. 이들 경제공동체들의 중층적 기제들은 제도적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에 따라 최근의 ‘합리화’ 이니셔티브가 촉발되었다. 심층적 통합에 필요한 요소들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전무하고, 통합의 지역적 중추도 부재하다. 기업이나 시민사회로부터의 압력과 같은 통합의 국내정치적 지지 기반도 제한적이다. 그리고 주권의 공유를 고려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여전하다.¹¹³⁾

이처럼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프리카 지역내 경제통합 단계의 심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선언적 성격으로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2) ‘카다피 구상’으로 알려진 ‘AMU’는 모로코,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리타니아 등 마그립지역 5개국이 참여하여 1989년 2월 17일 결성되었다. AMU는 북아프리카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의 통합을 통해 국제적인 지위 향상과 더불어, 1992년 통합이 예정된 EU와 이집트, 이라크 및 요르단을 주축으로 하는 ‘아랍 협력위원회(ACC)’의 창설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도라 볼 수 있다.

113)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and African Union 2006

- 주요 역내 경제공동체별 통합단계 및 향후일정 -

구 분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통화
UMA	논의중	-	-	-
ECOWAS	일부 진행중	일부 진행중	-	일부 진행중
SACU	진행중	진행중	-	-
COMESA	진행중	‘10년 까지	-	‘18년 까지
EAC	진행중	진행중	‘10.7.1 출범	‘10년 까지
SADC	일부 진행중	‘12년 까지	‘15년 까지	‘18년 까지

※ UMA(아랍-마그립 동맹), ECOWAS(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EAC(동아프리카공동체),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주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완고한 입장에 점진적인 변화가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01년에 채택된 아프리카 발전으로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은 아프리카 동료 검토 기제(African Peer Review Mechanism)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기구가 분쟁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변화도 있다. 1990년 라이베리아에 대한 개입을 위해 설립된 감독 기구(ECOWAS Monitoring Group, ECOMOG)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감독 기구는 1999년 개입의 공식적 기반이 마련되기 이전에 시에라리온과 기니비사우에 개입했고, 그 이후에는 2002년 코트디부아르, 2003년 라이베리아에 개입하였다. 2003년에는 아프리카연합(AU)의 평화안보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아프리카연합은 부룬디(2003)와 수단(2004)에 평화 임무단을 파견하였다.¹¹⁴⁾

114) 『세계정치론』 하영선 외, 2009.2. p. 512-513.

(2) 아프리카 연합(AU)

1) 설립 배경

2001년 7월 잠비아 수도 루사카에서 개최된 제37차 아프리카단결기구(OAS: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연례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은 기존의 OAU를 아프리카연합(AU: Africa Union)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¹¹⁵⁾ 이를 위해 아프리카 이니셔티브(NAI: New African Initiative)를 채택하였다.¹¹⁶⁾

기존의 OAU가 아프리카 지역 독립국 모두를 포함한 53개국으로 확대되어, 외견상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기구로 성장하였으나, 아프리카에서 빈발하였던 인권유린, 빈곤퇴치, 난민문제, 전염병 확산 등에 대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회원국들간의 결집력 부족과 내분, 재정조달 문제 등 비효율적 기구로 인식되어 왔다.¹¹⁷⁾

OAU를 AU로의 전환은 유럽연합(EU)을 모델로 한 초국가적 아프리카연맹체제를 출범시켰다는 의의가 있으며, 보다 발전된 형태의 아프리카 지역공동체의 출범이라 볼 수 있다.

AU는 아프리카 대륙의 정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틀을 제시하고, 아프리카 통합이라는 정치적 의지에 대한 상징적 차원의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¹¹⁸⁾ 특히, 정치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민주

115) OAU는 1999년 9월 6일~9일간 리비아 시르테(Sirte)에서 제4차 특별정상회의를 갖고 2001년까지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을 창설하기로 합의한 소위 시르테 선언을 채택하였다.

116) NAI는 다시 2001년 10월 23일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개최된 AU 정상 평의회 발족 준비회의에서 그 명칭을 NEPAD(New Partnership for the African's Development)로 변경하였다.

117) OAU의 결성은 전 아프리카적 규모로서 범아프리카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성 이전부터 온건파와 급진파가 대결하였다. 온건파는 주로 옛 프랑스령 아프리카 국가들로 브라자빌 그룹과 몰로비아 그룹이라 불리워졌고, 급진파는 가나 등이 중심이 된 카사브랑카 그룹이었다.

118)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의 출범과 전망』, 유종현,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

화를 발전시키고 아프리카 내부의 정치, 군사적 문제에 대한 공동의 문제 해결 방식을 지향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아프리카에서 빈곤을 몰아내고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협의체이자, 자유무역지대, 공동의 중앙은행 및 공동 통화의 도입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통합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¹¹⁹⁾

2) 주요 조직

AU의 주요기구인 정상회의(Assembly of African Union),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 집행위원회(African Union Commission), 범아프리카 의회(Pan-African Parliament), 경제사회문화이사회, 재판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정상회의(Assembly of African Union)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정상회의는 각국 정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회와 다수결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며, 동 결정은 주권제한적 제재력을 보유한다.

②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

집행이사회는 각국 각료급으로 구성되며, 정상회의에 보고를 한다. 집행이사회 업무 보조로 상주대표위원회(Permanent Representative Committee)가 있다.

③ 집행위원회(African Union Commission)

집행위원회는 사무국 역할을 하며, 전 가봉부총이 겸 외무부장관인 Jean Ping('08.2 선출)이 위원장으로 있다. '09.2 정상회의시 Commission을 Authority로 변경 결정되었다.

14집 2001.12, p.20.

1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연합(AU)과 NEPAD 프로그램의 출범: 향후 과제와 전망」, 2002, 1면.

④ 범아프리카의회(Pan-African Parliament)

감독기관인 범아프리카의회는 남아공에 소재되어 있으며, 각국 당 5명을 선출하여 총 26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의장, Idriss Ndélé Moussa 차드출신)

(3)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1) 설립배경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는 서아프리카 지역 내 경제 및 화폐통합, 국가 간 협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목적으로 1975년 5월, 라고스협약에 의해 설립되었다.¹²⁰⁾

서아프리카는 프랑스령 아프리카 국가들의 불어권 국가 권역과 영국령 아프리카 국가들의 영어권 국가 권역으로 나뉘어 이질적 집단으로 각각 분리·형성되었다. 또한 서아프리카 지역은 남과 북 간의 경제적 부와 인구 밀도면에서 크나큰 대조적 현상을 보여왔다.¹²¹⁾

서아프리카 하부지역 내의 개별 국가들 대부분의 해외무역은 비아프리카 국가들과 이루어져 왔으며 서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무역은 매우 경미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서아프리카의 프랑스령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그들의 공통화폐, 공통예산 및 관세표를 가질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지리적으로도 인적교류를 용이하게 할 정도로

120) 회원국은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베냉, 부르키나파소, 라이베리아, 말리, 세네갈, 시에라리온, 잠비아,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토고로 총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121) 북쪽 사헬과 사바나 지역은 과거 수년동안 극심한 기근과 재해로 엄청난 규모의 인명과 동물들의 손실을 입은 반면, 코트디부아르와 나이지리아와 같은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 달러 이상으로 서아프리카 지역의 경제대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근접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반면에 영국령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프랑스령 아프리카국가들이 프랑스와 가졌던 단위체로서의 유대를 가지지 못하였다. 영국과 갖게된 그들의 무역관계도 모두다 개별적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지역통합의 관점에서 지역을 논할 때 어떤 추정된 동질성 및 상호의존성의 요소가 중요하게 취급된다. 서아프리카 지역의 상호거래 및 상호의존은 그들의 식민경험에 기인된 언어적 공동체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므로 영어권 서아프리카 국가들과 불어권 서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상호거래 및 상호의존에 기초한 동질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두 상이한 단위체를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리적 인접성인 것이다.

ECOWAS의 창설은 서아프리카를 오랜 기간 분열시켜 왔던 언어적 장벽이 70년대 초반부터 붕괴되기 시작하여 모든 서아프리카 국가들 상호간의 협력활동으로 귀결된 대표적 상징이다.

실제로 이 공동체를 창설하기 위한 계획은 1968년 몬로비아에서 개최된 서아프리카 국가회의가 서아프리카 지역공동체 창설을 골자로 하는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2년 나이지리아와 토고의 제창으로 이 계획이 재시도 되어 결국 1975년 5월 라고스 협약에 이르게 된 것이다.¹²²⁾ 동 협정에서 결의된 주요 목표로는 경제활동의 전 영역에 있어서 협력과 발전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이 목적을 위해서 통상상의 물량적, 행정적 모든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적자원 및 자본, 서비스 등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협력, 보상, 발전 등을 위한 기금 창설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¹²³⁾

122) J.C Aghaji, "ECOWAS : Is ia a Countervailing power for Economic Independence?", In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XIV 1-2, p.111.

123) ECOWAS 조약 2조 1항은 그 공동체 목적을 「경제적 활동 특히, 산업, 수송, 전화통신, 에너지, 농업, 천연자원, 통상, 금융 및 재정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2) 주요 조직

ECOWAS의 주요 조직으로 위원회(The Commission)와 공동체 의회(The Community Parliament), 공동체 재판소(The Community Court of Justice) 등이 있다. 그 밖에 ECOWAS 투자개발은행(ECOWAS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EBID), 특별 전문기관으로 서아프리카 보건기구(WAHO: West African Health Organization), 서아프리카 화폐국(WAMA: West African Monetary Agency), 서아프리카 에너지은행(WAPP: The West African Power Pool) 등이 있다.

(4) 중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CAS)

1) 설립배경

중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CAS: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는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역내 공조 강화, 관세철폐 등 무역자유화 추진 및 단일시장 구축, 개발협력기금 창설, 역내 평화·안정유지 등의 목적으로 출범한 공동체이다.¹²⁴⁾

‘81년 12월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 정상회의시, 회원국들 간 중부아프리카국가 간 경제공동체 확대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92년~’97년 회원국 중 7개국이 분쟁 국면에 접어들면서 활동이 전면 중지되기도 했으나 ‘99년 정상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99년 2월 중부아프리카 평화안보이사회(COPAX) 및 중부아프리카 다국적군(FOMEAC)을 창설하였으며, ‘03.4 중부아프리카 에너지 풀(PEAC)을 창설하였다.

문제 분야에 있어서 협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24) 회원국은 CEMAC 6개국(가봉,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콩고공화국)과 부룬디, 상투메 프린시페, 앙골라, DR콩고 등 총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내 통합 진전을 위한 ECCAS 와 CEMAC 기능 조율 및 장기적 차원에서 두 지역기구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 주요 조직

ECCAS는 정상회의(Conférence des Chefs d'Etats et de Gouvernement), 각료회의(Conseil des Ministres), 사무국(Secretariat General) , 사법재판소, 각종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정상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각국 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상회의가 있다. 정상회의에서 공동체 전반적인 정책 및 방향을 결정하며 연 1회 개최한다.

② 각료회의

각국 각료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사무국

사무국은 평화정착부, 경제통합부, 기획조정부를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총장으로 Louis SYLVAIN-GOMA 전 콩고 수상이 맞고 있다.

④ 중부아프리카 에너지 풀(PEAC)

회원국들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주 목적이며, 전기공급률 증가 및 빈곤퇴치에 힘쓰고 있으며, 역내 전기공급시장을 창설하였다.

(5)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연합(SADC)

1) 설립배경

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연합(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은 1980년에 설립된 남부아프리카 개발조정회의(SADC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ordination Confernce)에서 발전한 것이다.¹²⁵⁾ SADCC의 초기 회원국은 남아공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지역의 정치지도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해외원조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그러나 남'94년 남아공 가입으로 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로서의 결속이 강화되고 오히려 남아공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

SADCC의 관심은 지역경제통합을 확대되었고, 그 결과 1992년 8월 나미비아 정상회담에서 SADC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SADC는 정치·경제·사회·문화·개발 등 제반분야에서 회원국 간 전반적인 지역협력증진을 통해 아프리카의 개발과 발전에 공헌하며, 역내 경제안정과 균형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EU와 같은 지역통합체를 지향하고 있다.

2) 주요 조직

SADC는 다양한 기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정상회의, 각료회의, 기타 연례협력회의 및 10개 분야별 조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정상회의

각국 정부 수반으로 구성되어 정책결정을 하는 최고 기구로 매년 8~9월 중 회의를 개최한다. 사무국은 보츠와나 수도 가보로네에 위치해 있으며, Joseph Kabila DR콩고 대통령이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② 각료회의

각국 재정경제기획 등을 담당하는 장관들로 구성되며 매년 최소 2회 회의를 개최한다. 각료회의 장관들은 지역정책의 적절한 실행과 SADC의 운영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125) SADCC은 남부아프리카 지역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개발계획에 있어서 지역협력을 촉진하고자, 1980.4 앙골라,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 등 9개국이 모여 설립한 회의이다.

③ 조정위원회

SADC에서 가장 일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부분간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조직은 특정 회원국 정부가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SADC 각국의 책임부문 -

회원국	책임부문
앙골라	에너지
보츠와나	농업연구
레소토	가축생산, 동물지병통제, 물, 환경, 토지관리
말라위	내륙 어업, 산림, 야생동물
모리셔스	관광
모잠비크	문화와 정보, 운송과 통신
나미비아	해양수산자원
남아공	금융투자, 위생
스와질랜드	인적자원개발
탄자니아	산업, 무역
잠비아	광업, 고용과 노동
짐바브웨	식량, 농업자연자원, 농산물보호

출처 : SADC, www.sadc.int

최근 SADC는 2012년까지 회원국간 관세 완전 철폐를 목표로 하는 FTA 창설에 합의를 하였으며, 아프리카 3개 경제공동체¹²⁶⁾ 간 정상회담에서 FTA 창설에 합의후 향후 6개월 이내 FTA 추진 로드맵 작성

126) 남동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SADC 3개 경제공동체를 말한다.

을 위한 3자간 Task Force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경제통합이 실현될 경우 총 26개국, 인구 5억3천만 명, GDP 6,240억불 규모의 경제블록이 구성될 예정이다.

제 3 절 중남미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1. 브라질

(1) 브라질의 기초

1) 브라질의 소개¹²⁷⁾

브라질 연방공화국(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의 위치는 남미 대륙 동부이며, 세계 5위, 남미대륙의 47.7%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의 기후는 열대성(북부), 아열대성(중부), 온대성(남부)을 띠고 있으며, 연평균 기온은 23~24℃로 4계절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브라질 전체 인구는 1억 9,237만 명(2010년 8월 31일 기준)으로 수도인 브라질리아(Brasilia)에 인구 26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브라질의 민족은 백인(48.4% :루투갈계, 독일계, 이탈리아계, 스페인계, 폴란드계 등)과 흑백혼혈(43.8%), 흑인(6.8%), 기타(1.2%: 일본계, 아랍계, 인디오) 등으로 나뉘며, 언어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종교는 가톨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브라질의 주요 도시로는 São Paulo, Rio de Janeiro, Porto Alegre, Curitiba 등이 있다.

2) 브라질의 경제지표¹²⁸⁾

브라질은 GDP가 2조 898억 달러(2010년)에 이르렀고, 실질경제 성장률은 7.5%(2010년), 1인당GDP는 11,353 달러(2010년)이고, 실업률은

127) www.ibge.gov.br / www.mofat.go.kr

128) www.ibge.gov.br / www.bacen.gov.br

5.2%(2010년 연말), 물가 상승률은 5.9%(2010년), 화폐 단위는 Real(헤알화)로 (환율1달러 = 1.71헤알(2011년 9월 12일)) 외채는 2,917억 달러(2011년 7월말)를 나타내고, 외환 보유고는 3,527억 달러(2011년 9월 9일) 규모이다. 상박하강형 산업구조이며,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 기반이 발달하여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진출확대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현지투자 역사가 50년이 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

중소기업 미발달로 부품산업이 취약하며, 브라질 정부의 고 이자율 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정책 부재로 중소기업이 미발달하였으나 1998년 브라질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성장 중이며, 교역규모는 수출은 2,109억 달러(2010년), 수입은 1,816억 달러(2010년), 수지는 293억 달러(2010년) 정도라고 한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류, 자동차, 철강, 육류, 곡물, 철광석, 광물성연료, 사료, 항공기, 전기기기, 목재, 설탕, 신발, 커피, 알루미늄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 기계류, 전기기기, 자동차, 유기화학품, 광학정밀 기기, 플라스틱 제품, 의료용품 등이다.

(2) 브라질의 정치제도 및 동향

1) 브라질의 의회 및 선거 제도

브라질 의회(의회명 : Congresso nacional / National Congress)의 형태는 양원제이고, 정부의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상원(Senado Federal / Federal Senate)의 선거방식은 직접 선거이며, 의원의 임기는 8년이고, 의원의 정수는 81인이며, 여성의원은 13인(16.04%)임¹²⁹⁾. 의원 선출방법으로는 26개 주(州)와 1개 연방구역, 총 27개 선거구에서 3인씩 선출하고, 전체의원 3분의 2와 3분의 1을 4년마다 교대로 선거하며, 3분의 2를 선출할 때 유권자는 후보자 중 2인에게 투표하고, 3분의 1을

129) 최근 선거일은 2010년 10월 3일이었음

선출할 때는 1인에게만 투표함. 투표권 행사는 의무이며, 기권한 경우 벌금이 부과됨. 18세 이상의 브라질 시민권자(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는 선택가능)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고, 35세 이상으로 출생에 의해 시민권을 획득한 자로 선거구 거주자에게는 피선거권이 주어짐. 의장의 임기는 2년 이고, 첫 번째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하고, 없으면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하며, 국가 의전서열 4위에 해당된다.

하원(Câmara dos Deputados / Chamber of Deputies)은 직접선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의원의 정수는 513인이며, 여성의원은 45인(8.77%)임¹³⁰⁾. 선출방법은 각 주(州) 및 연방에서 각각 최소 8인에서 최대 70인의 의원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있으며, 18세 이상의 브라질 시민권자(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는 선택 가능)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21세 이상으로 출생에 의해 시민권을 획득한 자로 선거구 거주자에게는 피선거권이 있음. 의회 의장의 임기는 2년 이며, 첫 번째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하고, 없으면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하고, 국가 의전서열은 3위이다.

연방의회의 권한으로 입법에 대하여서는 법률안은 상원과 하원 모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정에 관하여서는 예산안 동의권¹³¹⁾과 결산 동의권¹³²⁾을 가지고 있다. 연방의회의 권한은 새로운 주를 인정하고, 최고 권력기관 변경, 예산에 필요한 세금 부과, 국가차입의 승인, 주(州)간 통상제한의 방지, 연방공직과 공무원 수 결정, 선전포고, 군

130) 최근 선거는 2010년 10월 3일에 있었다.

131) 정부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법안 형식으로 매년 의회에 제출함. 의회는 8월 3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132) 대통령은 매년 전년도 결산을 의회에 제출한다. 연방 감사원은 예산의 집행에 대해 감사하는 의회 외부기관으로, 감사위원 3분의 1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 3분의 1은 의회가 임명하였다.

대에 관한 규율제정, 사면허가, 보결대통령 임명, 헌법이 규정한 사항에 대한 법률을 제정(제73조)하고, 대통령·연방의회의원·주의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상·하 양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 시 양원 재적 3분의 2 이상 투표로 무효화(제72조) 조항이 있다.

대통령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하원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탄핵 소추할 수 있고, 상원은 탄핵을 심판한다. 대통령 외에 부통령 및 행정각부의 장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원이 재판권한을 가진다. 또한 의회는 필요한 경우 장관을 소환하여 청문회를 개최하고, 현안을 조사하기 위해 양원 합동으로 또는 각 의회가 별도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사권 및 사법권을 가지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옴부즈맨은 행정행위에 대한 불만사항을 수집하고 조사하며, 정당별 의석수는 이하와 같다.

- 브라질의 정당별 의석수¹³³⁾ -

정 당	상 원	하 원
노동자당(Worker's Party : PT)	15	88
민주운동당(Brazilian Democratic Monement Party : PMDB)	20	79
사회민주당(Brazilian Social Democratic Party : PSDB)	11	53
민주당(Democrats : DEM)	6	43
브라질노동당(Brazilian Labour Party : PTB)	6	21
공화당(Republic Party : PR)	4	41
민주노동당(Democratic Labour Party : PDT)	4	28
진보당(Progressive Party : PP)	4	41
기 타	11	26

133) <http://www.senado.gov.br> / <http://www.camara.gov.br>

정 당	상 원	하 원
브라질사회당(Brazilian Socialist Party : PSB)		34
자유당(Liberal Party : PL)		17
녹색당(Green Party : PV)		15
공산당(Communist Party of Brazil : PC do B)		15
사회당(Ppular Socialist Party : PPS)		12

2) 브라질의 정치동향

① 지우마 호세프 정부의 정치 동향

2011년 1월 취임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2010년 10월 대선에서 야당의 조제 세하 후보를 꺾고 승리해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되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이전 룰라 대통령 정부의 정치 및 경제 정책을 대부분 유지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노동자당(PT)과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 간의 정책 조율이 관건이다. 지우마 대통령은 여당내 결속을 통해 PAC 2(경제 개발 촉진 프로그램)의 핵심과제인 극빈층 축소, 세제 개혁, 인프라 투자 확대, 심해유전 개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명한 정치 체제를 확립한다는 목표 하에 공공분야의 각종 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② 지우마 호세프 정부의 외교정책

지우마 대통령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중심으로 남미통합을 가속화할 계획임. 베네수엘라의 메르코수르 정회원국 가입과 함께 남미 인프라 및 자원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은 여전히 브라질의 주요 수출시장이자 협력 대상이며, 특히 최근 들어 유력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탄올의 대량생산 및 공동연구를 통

해 브라질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석유 소비량을 줄이고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에너지 안보 정책’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막대한 석유 자원을 무기로 중남미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우마 정부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인도, 나아가 중국까지 포함하는 ‘남남(南南)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 외에도 제3세계 지역에서 신규 시장을 개척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출범 직후부터 대 아프리카 외교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브라질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과 맞물리면서 대 아프리카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남 협력의 대표적 사례이며 일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IBSA(인도-브라질-남아공) 협력 체제는 외교적 우선순위를 갖고 더욱 심화, 발전될 전망이다.

지우마 정부는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브릭스 국가인 중국과의 통상외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는 산업협력을 비롯해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등 아시아 중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을 위시한 다자 국제기구는 세계 평화 및 안보 유지에 불가결하고, 개발국과 개도국의 균형 있는 참여 하에 유엔 안보리가 재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3) 브라질의 경제제도 및 동향

1) 재계의 동향

브라질의 대표적인 재계 조직으로는 전국경제인연합회(CNI)와 상파울루 경제인연합회(FIESP)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브라질 경제의

중심지인 상파울루 경제인의 이해를 대변하는 FIESP는 브라질 정치·경제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FIESP는 룰라 정부와 지우마 정부의 시장지향적 경제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FIESP는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연평균 5%대의 GDP 성장률에 만족하지 않고, 중국, 인도 등 다른 브릭스(BRICs) 국가들의 성장률과 맞먹는 성장정책을 추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 경제성장률과 금리

2010년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소비 및 투자확대에 힘입어 7.5% 성장하였다. 하지만 2011년의 경우 유럽 및 미국의 재정 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상황의 악화로 브라질 정부는 최근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예상했던 4.5%보다 1% 포인트 감소한 3.5%대로 하향 조정하였다. 한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및 2016년 리오 올림픽 개최에 따른 투자확대, 소비심리 개선, 수출회복 등에 따라 2016년까지 5%대 경제성장 전망되고 있다.

- GDP 성장률 추이(단위: %)¹³⁴⁾ -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1.1	5.7	3.2	4	6.1	5.2	-0.6	7.5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준 금리	17.75	18.5	13.25	11.25	13.75	8.75	10.75	12

<<http://www.bcb.gov.br>>

134) <http://www.ibge.gov.br> / <http://www.bcb.gov.br>

브라질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2010년 4월부터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심화됨에 따라 2011년 8월 말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 하였다.

3) 환율과 물가

브라질은 무역수지 흑자기조, 외국인 투자 확대, 주식시장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에 따라 헤알화 강세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환율하락에 따라 브라질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문제가 되자 최근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으나 헤알화 강세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 8월에는 환율이 1달러 = 1.55 헤알대까지 하락한 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달러 환율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 환율추이(달러표시 헤알화 환율) -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0.12)
환율 (연말기준)	2.32	2.14	1.80	2.35	1.74	1.67	1.71
환율 (평균환율)	2.43	2.17	1.94	1.83	1.99	1.69	-

<<http://www.bcb.gov.br>>

브라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와 경기회복에 따라 2010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6% 포인트 상승한 5.9%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1~8월 누적 소비자 물가지수는 4.5%로 중앙은행이 연 초 발표한 연간 목표치 4.5%에 이미 다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 물가상승률(IPCA) 추이(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8)
물가 상승률	7.6	5.7	3.1	4.5	5.9	4.3	5.9	4.5

<<http://www.bcb.gov.br>>

브라질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브라질 경제의 고성장세 및 인프라 분야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06년부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의 경우 브라질 경제의 빠른 회복과 2014년 브라질 월드컵과 2016년 리오 월드컵 개최,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추진 등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사상최대 액수인 485억불에 이르렀음. 2011년 1~7월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384억 달러로 이 기간 사상 최대 금액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4) 브라질의 사회·문화 및 산업동향

1) 미디어와 노동세력

브라질에서 미디어는 여론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85년 민주화 이후 언론매체는 1992년 콜르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는 등 브라질 정치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문맹자가 많은 브라질에서 TV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브라질 전 지역을 커버하는 글로보(Globo) TV의 위력이 가장 막강하다. 브라질에서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20~25%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하면 노조 가입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브라질 노조의 특징은 노동자 조합, 기업가 조합, 자유업 조합 등 3개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각 조합별로 총연맹(전국단위의 산업별),

연맹(주 단위), 조합(도시, 농촌 단위)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노동부 산하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산업별 조합의 경우 기업 내 조합은 금지되어 있다. 1988년 10월 공포된 신헌법에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확대되어 조합 활동 및 단체행동권에 있어 종래보다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노조단체는 금융노조, 석유노조, 사법부 직원 및 복지행정 노조가 가입한 노동자 총연맹(CGT: General Confederation of Workers), 철강노조 및 직능별 노조가 가입한 단일노동자연맹(CUT, United Workers' Federation)으로 대별된다. CGT는 전통적으로 브라질민주운동당(PMDB)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CUT는 집권 노동자당(PT)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이다. 룰라 대통령이 1989년 이후 강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노조 세력의 급신장에 기인했다. 외교는 친서방노선을 견지하고 개도국의 입장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 제3세계와의 유대강화를 외교정책의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21-45세 남자에 대해 병역이 부과되는 의무제이며 복무 기간은 9-12개월이다. 직업 군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1980년대 초반부터 여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을 기준으로, 군사력은 약 30만명으로 육군 189,000명, 해군 48,600명, 공군 65,30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산업동향

브라질은 세계의 곡물창고라는 명성에 걸맞은 식량자원의 보고임. 생산량에서 오렌지 주스, 커피 등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두와 쇠고기 생산은 세계 2위, 닭고기, 담배. 옥수수 생산은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량에서는 커피, 오렌지 주스, 설탕, 대두, 커피, 쇠고기, 담배 등이 세계 1위를 점하고 있으며 대두박, 대두유, 닭고기는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 광물의 보고로 총 69종의 광물(비금속 광물 45종, 금속 광물 20종, 에너지 광물 4종 등)을 생

산하고 있음. 2008년 기준 매장량 면에서 브라질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광물은 니오븀과 탄탈석이다. 다음으로 흑연 및 망간 매장량이 세계 2위, 질석, 주석 및 알루미늄 매장량은 세계 3위,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세계 4위, 철 매장량은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면에서 브라질은 세계 5대 광물 생산국 중 하나이다. 2008년 기준 세계 1위 생산 광물은 철, 니오븀, 망간 등이며 제2위 생산 광물은 알루미늄(보크사이트), 제3위 광물은 흑연, 4위는 장식석, 석명, 마그네사이트 5위가 고령토이다.

브라질의 석유 매장량은 2010년 말 기준 148억 배럴로 세계에서 15위, 중남미 지역에서는 베네수엘라,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임. 브라질의 석유 생산량은 1985년 해양시추를 통해 석유생산을 시작한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해 1997년에는 세계에서 17번째로 1일 100만 배럴 생산국 반열에 들어섰다. 2011년 기준 일일 석유 생산량 210만 배럴인 브라질은 2020년까지 일일 생산량을 610만 배럴로 늘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2006년 4월 21일 캄포스 유전 P - 50 광구 개발을 계기로 역사적인 석유자급자족을 선언하여 고공비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 유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한 경제안정을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브라질은 항공 분야에서 오랜 기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4대 항공기 제조국으로 발돋움했으며, 현재 브라질에는 17개의 다국적 기업이 현지생산을 하고 있으며, 총 39개의 생산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 룰라정부는 경제 촉진 프로그램(PAC)를 발표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에는 조선산업이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 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조선산업은 브라질 핵심산업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브라질 건설업체들은 이미 전 세계 50개국에 진출해 석유 플랫폼, 지하철, 가스관 및 공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브라질 건설 업체들의 높은 경쟁력과 자국산업 보호정책으로 외국 기업의 브라질 건설 · 엔지니어링 시장 점유율은 매출 기준으로 5%에 불과한 실정이다.

2. 멕시코

(1) 멕시코의 기초

1) 멕시코의 소개¹³⁵⁾

멕시코는 영어식 발음이며, 원어로는 메히꼬(MÉXICO)이다. 멕시코의 위치는 북으로는 미국과 접경(3,326km), 남으로는 과테말라 및 벨리즈 등과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면적은 1,964,375km²(세계 15위 규모로 한반도의 약 9배, 남한의 약 20배 크기)이고, 기후는 멕시코는 고지대와 저지대로 나뉘며, 저지대는 고온다습, 고지대는 온난건조함. 수도는 멕시코시티(CIUDAD DE MÉXICO / D. F)로 면적 1,547km², 해발 2,308m의 위치에 있고, 인구는 총 1억 1,234만명이다. 멕시코의 주요 도시로는 GUADALAJARA(제2도시/4.3백만명), MONTERREY(제3도시/3.8백만명) 등이 있으며, 인종을 이루는 것은 혼혈(MESTIZO) 60%, 원주민(INDIJENA) 30%, 백인 9%, 기타 1% 를 차지하고 있다.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는 가톨릭 83.9%, 신교 7.6%, 무신론자 4.6%, 기타 2.5%, 무응답 1.4%이고, 1821년 9월 16일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다.

2) 멕시코의 경제지표¹³⁶⁾

멕시코는 GDP US\$ 10.343억 달러('10), US\$ 11.624억 달러('11 전망)를 나타내고, 실질 경제 성장률은 5.5%('10), 1인당 GDP(명목)는

135) www.ibneg.gob.mx(2011.1)

136) www.kita.net / www.banxico.org.mx / www.ibneg.gob.mx (2011, 9)

US\$ 9,242('10), 실업률은 5.4%('10), 물가상승률은 4.4%('10), 화폐단위는 페소(\$)/peso이며 환율로는 US\$1=\$ 12,3480('11.9.1), 외채는 US\$2,048억 달러('11.09.1), 외환보유고는 US\$1,345억 달러('11.08.1), 그리고 1차 산업구조는 3.66%, 2차 산업비율은 33.50%, 3차 산업은 62.84%를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제지표는 교역규모 수출 2,984억 달러, 수입 3,015억 달러, 무역적자 31억 달러('10)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한 교역품으로는 주종 수출품목으로 자동차 및 엔진, 컴퓨터, 전자제품, 석유, 의류, 농산물 등을 꼽을 수 있고, 주종 수입품목으로는 자동차 부품, 컴퓨터 및 전자부품 등을 꼽을 수 있다.

(2) 멕시코의 정치제도 및 동향

1) 멕시코의 의회 및 선거 제도

멕시코의 의회(Congreso de La Unión / Congress of the Union) 형태는 양원제이며,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이다. 상원(Cámara de Senadores / Senate)의 선거방식은 직접 선거이며, 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의원정수는 128인이며 이 중 여성의원은 25인(19.53%)이다. 선출방법은 31개 주와 1개의 연방직할지에서 각 3인씩 96인을 선출하고,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 정당에 2석, 차순위 득표 정당에 1석을 배정함. 전국구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32인을 선출하며 투표참여는 의무이지만 불참에 따른 제재조치는 없으며, 18세 이상 멕시코 시민에게 선거권이 있고, 25세 이상 멕시코 시민으로, 선거구에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의장의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최고득표자가 선출되고, 양원 의장은 동등한 서열임. 정당별 의석수¹³⁷⁾는 이하와 같다.

137) <http://www.senado.gob.mx> / <http://www.diputados.gob.mx>

정 당	상 원	하 원
국민행동당(National Action Party : PAN)	52	143
제도혁명당(Institutional Revolutionary Party : PRI)	33	237
민주혁명당(Democratic Revolutionary Party : PRD)	26	71
멕시코 녹색 환경당(Green Party of Mexico : PVEM)		21
노동당(Labour Party : PT)		13
신연합당(New Alliance Party : NA)		9
통합당(Convergence Party : CONV)		6
기 타	17	

주요 정당으로는 1929년 창당된 이래 2000년까지 71년간 집권해온 제도혁명당(PRI), 1939년 창당하여 2000년 대선에서 최초로 집권한 국민행동당(PAN) 등이 있다. 2006년 12월 현재 정당별 의석 분포를 보면 보수성향의 국민행동당(PAN)이 상원 52석, 하원 206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1989년 멕시코 사회당(PMS) 해체 후 명칭을 변경하여 창당한 진보성향의 민주혁명당(PRD)이 상원 32석, 하원 125석을 차지하였음. 중도성향의 제도혁명당(PRI)은 상원 30석, 하원104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그외 1988년 환경보호를 주요 정강으로 창당한 보수성향의 녹색혁명당(PVEM), 1990년 창당한 진보성향의 노동당(PT) 등이 나머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 의회는 헌법규정에 의거하여 1개 정당이 하원에서 300석 이상 차지할 수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

멕시코 하원(Cámara de Diputados / Chamber of Deputies)의 최근 선거일은 2009년 7월 5일이었고, 선출방법은 300개 소선거구에서 1위 대표제로 직선으로 300인을 선출하며, 5개 대선지구에서 비례대표제로 200인을 선출하여 임기 3년의 총 50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명부에서 총 투표수의 2%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며 투표참여는 의무이지만 불참에 따른 제재조치는 없고, 하원에서 1개 정당이 300석 이상 차지할 수 없다. 18세 이상 멕시코 시민에게 선거권이 있고, 21세 이상 멕시코 시민으로, 선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하원 의장의 임기는 1년이다.

의회 의원의 재선 금지가 특징임. 상원의원은 96석은 32개 주에서 각 3명씩 직선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32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6년 임기로 연임불가이며 3년마다 1/2씩 개선하여야 한다. 연방의회의 입법권한은 대통령, 하원의원, 상원의원에게 있고, 주 의회는 법률이나 명령을 발의하며, 차관, 세금, 모병에 관한 법안은 모두 하원에서 먼저 심의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9월 8일까지 세입법안과 연방지출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하고, 하원은 11월 15일까지 연방지출예산을 승인하며 전년도 공공회계는 6월 10일까지 연방하원에 제출되고, 연방 최고재무기관은 공공회계 감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정통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반역죄 등 중죄를 범한 경우,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은 9월 1일에 열리는 연방의회 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국정현안에 관해 연설함. 또한 각 부 장관은 정기회가 시작되면 소관 부서의 업무 현황을 연방의회에 보고하며, 하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연방 참여 기업이나 분권 기관의 운영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정부의 외교정책 분석, 주요 정부 인사 인준, 국군의 해외 파견 승인, 임시주지사 임명, 각 주 간 분쟁 해결, 정치재판의 대배심 등은 상원의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

멕시코의 정치는 대의제도(代議制度)를 기본으로 하는 삼권분립제(三權分立制)와 연방제(聯邦制)를 2대 원칙으로 하는 공화체제이다. 정부형태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로 임기는 6년이고, 직접·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연임을 금지함. 부통령 및 수상제도는 없고, 대통령 유고시 의회에서 임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브라질 정치 제도 중 가장 큰 문제는 다당제 하에서 의회에 수많은 정당이 난립하여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성향이나 정책기조가 다른 정당과도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회에서의 지지확보를 위해 대통령과 집권당은 내각의 각료직을 타당에 분배하거나 연방 예산을 특정 지역이나 후보에 유리하게 배정하는 후견주의(clientelism) 정치가 전통적 정치스타일로 브라질 정치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이는 브라질 정당의 취약성으로 지적되는 정당 이데올로기와 당규율의 부재, 다당제를 만들어내는 선거제도 등의 문제가 얽힌 것으로 정치개혁은 90년대 초반부터 정당 파편화를 막고 정치인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간 제시된 주장들은 선거제도 개혁, 소수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의회 진출 최소득표기준(vote-share threshold), 선거 연합을 막는 규제, 정당 교체 억제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2002년과 2004년 이런 논의들이 의회를 거의 통과할 순간들이 있었으나 카르도소나 툴라 모두 눈앞의 경제 및 행정법안 통과를 위해 논란이 많은 이런 법안들을 최종 순간에 포기하였다.

현(現)대통령은 2006년 7월 대선에서 친미·친기업 우파성향의 국민행동당(PAN)의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on)으로, 그는 분배적 정의 실현을 주장한 좌파진영의 로페즈 오브라도르(Lopez Obrador) 민주혁명당(PRD) 후보를 0.58% 차이로 누르고 신임대통령으로 12월 1일 취임하였으며 임기는 2012년까지이다.

2) 멕시코의 정치동향

‘11년 7월 3일 시행된 멕시코주의 주지사 선거는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제도혁명당(PRI)이 승리하며 ’12년 7월로 예정된 대선에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멕시코 주에 15,174,862명의 인구가 거

주하고 있으며 이는 멕시코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유권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의회에서도 제일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11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12년 7월로 예정된 멕시코 대선을 위한 경쟁구도가 서서히 구축되고 있다. 현 집권당인 국민행동당(PAN)에서는 아직 뚜렷한 대권후보가 정해지지 않고 있으며, '12년 2월,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당내 경선에는 전 재무부장관 Ernesto Cordero, 하원 정치조정위원회 의장인 Josefina Vazquez Mota, 상원의원 Santiago Creel 등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도혁명당(PRI)은 멕시코 주지사인 Enrique Peña Nieto와 상원의원인 Manlio Fabio Beltrones가 경선에 참가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이번이 없는 한 Enrique Peña Nieto가 후보로 선출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혁명당(PRD)에서는 현 멕시코 시장인 Marcelo Ebrard와 2006년 대선에서 현 대통령인 Felipe Calderon 과 경합을 벌였던 Lopez Obrador가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한편, 당내 경선 결과와는 별도로 현재까지는 제도혁명당이 대선에서 우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도혁명당이 멕시코 혁명 이후 70년간 통치 하며 부패 및 개혁 부재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그 문제점들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2000년불 집권을 시작한 국민행동당에 마음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치안 불안, 더딘 경제 발전이 꼽히고 있다.

3)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

외교 문제 : '11년 3월 카를로스 파스쿠알 주멕시코 미국대사는 위키리스크의 외교문서 유출사건으로 대사직에서 물러났다. 파스쿠알 전 대사는 외교 전문을 통해 멕시코 정부가 마약조직이 저지르고 있는 조직범죄를 척결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부패 역시 문제 삼았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집권 여당인 국민행동당은 물론 깔테론 대통령 역시 미국 방문시 파스쿠알 전 대사와 함께 계속해서 업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공식석상에서 불쾌한 어조를 드러내었다. 이번 위키리스크의 문서 공개로 인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멕시코와 미국 양국 사이에 파장을 불러왔고 결국 파스쿠알 대사의 사퇴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음. 현재 파스쿠알 전 대사는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멕시코에 머물며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조직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멕-미 관계는 “Fast and Furious” 작전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다. 동 작전은 미국의 주류·담배·화기 단속국(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에서 수행한 위장잠입 작전으로 멕시코의 마약조직 리더들을 소탕하기 위해 미국의 무기류를 불법으로 멕시코에 유통시켜 무기들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09년 10월에서 '10년 9월까지 멕시코로 넘어간 1500~2500 개의 무기류 중 797 개만이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유통경로가 추적되지 않고 있다. 동 작전은 사전에 멕시코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하였다.

치안문제 : 미국은 멕시코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 '08년 8월 메리다 계획을 통해 미국은 3년간 13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10년 5월까지 1억 2,800만 달러만 지원하였다. '09년 4월 16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자격으로 멕시코를 방문하면서 양국 간 치안, 이민자 문제, 마약 문제 등에 관한 많은 협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지역에서의 불법 무기류와 마약 거래 등에 관한 양국 간의 가능한 모든 협력을 통해 근절할 것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치안은 불안한 상태에 있다. '10년 3월 13일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의 시우다드 후아레스 시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여직원 부부 등 3명이 13일 마약조직으로 보이는 세력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되었다. 미 국무부는 멕시코에서 마약 관련 폭력이 확산함에 따라 멕시코 북부지역 내 영사관 6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가족을 현지에서 소개하라고 조치하고, 또한 시우다드 후아레스를 비롯해 티후아나, 노갈레스, 누에보 라레도, 몬테레이, 마타모로스 주재 미국 영사관 직원의 가족들을 떠나도록 하는 한편, 멕시코시티 주재 미국 대사관에 미국인이 두랑고, 코아우일라, 치와와주(州)를 불필요하게 여행하는 것을 연기하도록 권고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문제 : 미국은 자국 내 1,200만 명의 멕시코계 노동자(이 중 50% 이상은 불법이민) 중 불법 이민 단속을 철저히 하려는 반면 멕시코는 이민자가 감소할 경우 본국송금액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적극 협력하기 힘든 상황이다. '09년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백 기간 중 미국 내 멕시코 불법 이민자 문제에 관해 현재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로 본국에 송환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멕시코의 경제제도 및 동향

1) 멕시코의 경제정책

멕시코는 '82년 및 '94년 두 차례의 경제 위기 이후 경제 안정을 최우선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80년대 중반부터 민영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1994년 NAFTA 발효 이후 대외무역 및 투자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09년 유례없는 경제불황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절대적으로는 낮은 수치인 3.6%를 기록 했으나, 경제성장률(-6.5%)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였다. 2010년은 비교적 안정적인 4.4%를 기록하였다. '11년 멕시코 중앙은행은 3%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멕시코 소비자 물가상승률¹³⁸⁾ -

구 분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7
물가상승률	%	3.3	4.05	3.8	6.5	3.6	4.4	3.55

개방적인 무역통상 정책 추진 : '94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NAFTA 협정으로 멕시코 대외무역정책이 본격적인 개방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음. 또한,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정부는 전 세계 다수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FTA)를 맺어 45개국과 13개의 FTA를 맺고 있는 등 'FTA 허브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발효된 FTA는 '11년 4월 체결된 멕시코-페루 FTA이다. 무역 개방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FTA 미 체결국 특히, 아시아산에 대한 각종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가 중국산 수입 억제를 목표로 각종 수입통관 엄격화, 최저 수입가격제도 등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산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08년 10월에 다수 품목에 대해 정상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한편, 2006년 9월 6,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단행하고, '08년 5월 중국과 상호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는 등 무역개방조치를 계속하고 있어 거시적인 통상환경은 개선되고 있다.

'06년 12월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이끄는 신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페루,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과 FTA 체결 협상을 추진하는 등 개방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자동차, 철강, 화학업계의 반대가 심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11년 4월 페루와의 FTA가 5년 만에 체결되고 콜롬비아와의 FTA 확대가 논의되면서 브라질, 한국 등과의 FTA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38) www.banxico.org.mx(2011.7)

재정적자 축소 및 외채 관리 : 원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의 경우, '10년 멕시코 원유수출가가 높아지며 고유가로 인한 재정 수입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또한 '11년에 들어서면서 중동 위기로 인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호가하는 등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고질적인 원유수입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세제개혁을 단행하는 등 세수 다변화를 통한 정부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려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혁의 성과가 적은 편이다. 공공부채는 '04~'09년간 GDP의 20%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11년 9월 기준 외채는 2048억 달러로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 멕시코의 최신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제 동향 : 멕시코 제조업 낮은 성장 - 멕시코 경제는 '11년 상반기,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위주로 성장하였으나 2분기의 경우, 3.3%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특히 제조업의 경우 2010년 1분기부터 6개 분기 중 4.8%의 제일 낮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3월 일본 지진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 난항으로 자동차 제조업이 영향을 받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운송기기와 각종 기계류 생산 역시 각각 15%, 15.8%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작년 동기 성장률 70%, 41.7%)제조업 분야에 상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및 세계 경기 침체 - '11년 8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이에 대한 쇼크와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며 멕시코 경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부 시장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이 오름세와 내림세를 계속 반복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멕시코 주가지수(IPC)의 경우, 지지선은 33,650~33,000p, 저항선은 34,500~35,000p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 업계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비 “세수 감소가 없는 범위 내에서의 조세제도 간소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건설 증진, 개발은행 강화, 기업 및 정부 투명성 증진, 비공식 경제타파, 개발과 혁신에 대한 지원”등으로 구성된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원유생산량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 멕시코는 전 세계 7위 산유국이자 20위 석유 수출국으로 세수의 1/3이 원유 판매수익에서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원유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10년에는 멕시코 원유 수출가가 높아지며 고유가로 인한 재정 수입 호황을 누렸으며 '11년에는 들어서면서는 중동 위기 및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호가하는 등 호조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중동위기가 진정세를 보이며 유가는 다시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원유 생산량 역시 2005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세수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세제개혁을 단행하는 등 세수 다변화를 통한 정부재정의 안정성을 높이하고자 하고 있으며 2008년 채택된 에너지 개혁안에 의거 7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기업에게 원유 시추권을 허용하였다. 이번 입찰로 외국의 자본 및 기술 유입이 원활해질 뿐 아니라, 기존의 유전들을 대체할 신규 유전을 발견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1년 전망 : 경제성장률 3.8% ~ 4.8% 예상 - 멕시코 중앙은행은 '11년 미국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멕시코의 동반 성장을 기대했으나 신용등급 강등 및 고용지표 악화, 소비 감소 등 미국의 더딘 경기회복을 의식, 2011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기존의 4~5%에서 3.8~4.8%로 낮추고 2012년 성장률도 3.8~4.8%에서 3.5~4.5%로 조정하였다. 인플레이션 3.7% 증가 예상 - Economist에 따르면, 2011년 인플레이션 수준은 지속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해 3.7%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 물가는 기존 세율의 유지로 인해 전년에 비해 소폭 상

승하거나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 적자 계속 - 무역 수지는 수출액은 대미 수출량 증가와 원유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액의 증가로 인해 소폭 악화되어 29억 달러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 지표별 현황 : 경제성장¹³⁹⁾ -

구 분	단 위	2007	2008	2009	2010	2011
경제성장률 (실질)	%	3.2	1.5	-6.1	5.5	3.4* ¹⁴⁰⁾
GDP (명목)	US\$억	10.359	10.962	8.828	10.397	11.624

'08년 하반기 본격화된 경기침체는 '09년에도 지속되어, 멕시코 GDP 성장률은 '09년에 -6.1%이라는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주 원인은 소비침체, 수출감소, 투자침체이었음. '10년에는 성장세로 돌아서 5.5%의 성장을 보였다.

-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INPC)¹⁴¹⁾ -

구 분	단 위	2007	2008	2009	2010	2011.7
물가상승률 (연평균)	%	3.8	6.5	3.6	4.4	3.55 ¹⁴²⁾

'09년 소비자 물가는 소비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3.6%의 상승률을 보였다. '10년은 세계개혁으로 인한 부가세 상승(15% → 16%) 및 법인

139) www.banxico.org.mx / www.eiu.com

140) eiu 전망치

141) www.ibneg.gob.mx / www.eiu.com

142) banxico(멕시코 중앙은행) 전망치

소득세율 상승(28% → 30%)등으로 인해 4.4%까지 상승하였다. '11년의 경우, 7월까지의 누적 인플레이션은 3.55%를 기록하였으며 별다른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수지 부분¹⁴³⁾ -

구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6
교역 규모	수출	US\$억	2,719	2,913	2,298	2,984	1,713
	수입	US\$억	2,819	3,086	2,344	3,015	1,619
무역(상품)수지		US\$억	-101	-173	-46	-31	34
경상 수지		US\$억	-90	-163	-63	-57	-26

무역 수지 - '11년 상반기, 수출은 21.3%, 수입은 19.1%가 증가하여 경기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가 나타났다. 또한, 수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전체 무역수지는 개선된 반면, 원유 부문을 제외한 무역수지는 악화되어 멕시코 교역의 원유 의존도를 보여주었다. 경상 수지 - '10년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적자와 이전수지적자가 합쳐져서 57억 불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11년에는 무역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환율 하락으로 인해 이전 수지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수지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43) www.banxico.org.mx / www.eiu.com

- 외국인 투자¹⁴⁴⁾ -

구 분		단 위	2008	2009	2010
외국인 투자	직접투자	US\$억	259	152	177
	간접투자	US\$억	48	152	371
	총액	US\$억	307	304	548

'10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548억 불을 기록하며 경제회복세를 보여주었음. 간접투자는 증권시장(6억 4100만불), 금융시장(231억 2700만불)에 투자되었음. 특히 투기성 달러캐리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시장은 전년 대비 565% 성장하며 멕시코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 환 율 ¹⁴⁵⁾ -

구 분	단 위	2007	2008	2009	2010	2011
환율(연말)	페소/US\$1	10.87	13.54	13.06	12.36	12.20 ¹⁴⁶⁾ *

(4) 멕시코의 사회·문화 및 산업동향

1) 멕시코의 사회·문화

2007년부터 집권을 시작한 국민행동당(PAN) 소속의 칼데론 정권은 원유수출에 편중되어 있는 국가 재정수입 다변화를 꾀하고 멕시코 국

144) www.banxico.org.mx

145) www.banxico.org.mx / www.eiu.com

146) EIU 전망치 : 세계 경제 시장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유럽 국가들의 경제 위기,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지속적인 달러캐리자금의 유입 등으로 페소화는 연말 환율은 약 12.20 페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석유공사(PEMEX) 개혁 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IETU(단일세율법인세), IDE(현금예금세) 등이 신설되고, ISR(소득세), IEPS(특별소비세)의 세율이 올라 일정부분 세수 다변화 및 세수 증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원유의 보유량 및 채굴량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새로운 원전을 개발하거나 채굴량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을 PEMEX가 자체적으로 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PEMEX에 대한 멕시코 연방정부의 세수 편중률은 1/4을 넘기 때문이다. 원유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는 추가유전 탐사 및 채굴이 시급하나 PEMEX 자체적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하고 외국기업의 에너지 부문 투자는 헌법 제27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08년 중순, 우여곡절 끝에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심해져 탐사 등 제한된 부문에 대한 외국인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음.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며, 근본적인 에너지 부문 개혁이 필요한 상태이다. 전국 행정구역은 수도인 연방직할구와 31개 주(州)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주에는 독자적인 3권의 행사가 인정된다. 사법부의 경우, 대법원과 고등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법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법관의 임기는 15년이고 연임 불가임.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되는 대법원장 임기는 4년이며 연임 불가임. 고등법원은 11개 순회 재판소로 구성되며, 6개는 일반, 민사,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5개는 인권보호 재판소이다. 외교면에서 멕시코는 UN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를 통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NAFTA 발전을 통한 북미경제통합 강화, 중남미 지역내 위상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아시아 및 EU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칼데론 신정부의 2007년도 외교정책 기본 방향은 중남미지역 외교중시, 이민문제 해결 등 미국과의 관계강화, 중미지역 사회·경제적 통합 강화,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의 관계강화, 국제 무대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담당 등이다. 폭스 행정부 시기에 등한시되었던 대중남미 외교를 강화한다는 큰틀 하에 푸에블라-파나마 플랜(PPP) 및 중미 지역 에너지 이니셔티브(IEM) 등을 통한 중미지역 통합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간 관계가 소원해진 쿠바,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복원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중이다. OAS(미주기구), IDB(미주개발 은행) 등 지역기구의 핵심적인 구성원으로 멕시코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미관계에 있어 NAFTA를 통한 경제통합을 심화하고 정치·안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민, 마약, 국경관리 등의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부시 행정부의 국경장벽설치 등 이민 통제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통상 및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유용한 메카니즘으로 발전하고 있는 APEC을 통해 동아시아와의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중국·일본·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군 최고지휘권은 대통령이 가지며, 1년 의무제(18세 이상)와 3년 지원제(16세 이상)를 혼합하고 있음. 의무제는 육군에만 적용되고 해군과 공군은 모두 지원병으로 구성되며, 여성의 경우 자원할 수 있음(2007년 기준). 2006년을 기준으로, 육군 16만 8497명, 해군 5만 3729명, 공군 1만 4800명의 군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예산은 2006년 기준 GDP의 0.5%를 차지함. 1967년 라틴아메리카 14개국이 멕시코 연방구에 모여 라틴아메리카 비핵무장지대 설정조약을 조인하는 등 군축에 참여하고 있다.

멕시코는 NAFTA 출범 이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대형유통마트 위주로 소매시장이 변화해 왔으며, 멕시코 유통시장은 Walmart(Bodega Aurrea, Superama 등) 대 기타기업(Comercial Mexicana, Gigante, Sorina, Chedraui 등)의 양대 구조로 편성되고 있는 추세임. 최근에는 편의점인 OXXO가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며 대형유통마트의 판매를 위협하고 있다. 멕시코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식민지 및 원주민 문화유적을

보유한 국가로서 중남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이며, 2010년 전체 관광객 수는 2200만 명으로 2009년에 비해 7.3% 증가하였다.

UN 세계 관광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주요 관광국 순위에서 10위를 차지 한 바 있다.

2) 멕시코의 산업동향 및 신재생에너지

① 멕시코의 산업동향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신종플루 사태의 영향으로 멕시코의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 이후, 미국의 경기 회복과 주요 수출품인 원유의 국제 가격 반등에 힘들여 경제는 호조를 띄어 2010년에는 5.5%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2011년의 경우, 미국의 더딘 경기 회복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큰 폭의 경제 성장은 이뤄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11년 3월 일본 지진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난향으로 인해 제조업 분야에 타격을 받게 됐다. 멕시코의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은 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으나 중국의 인건비 상승 및 멕시코 폐소화 절하, NAFTA를 통한 미국 시장 접근성,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낮은 물류비용 및 납기 준수 등의 이점으로 일부 산업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회복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섬유, 의류, 컴퓨터 및 전자제품 등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건설부문은 4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산업이며, 비공식 부문은 물론 다른 분야로의 파급효과도 커 멕시코 실업문제 해소에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 분야이다. 멕시코는 세계적인 원유 및 은, 철, 등 각종 광물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광업은 멕시코 GDP의 1.5%, 고용의 1.5%를 차지하며 전세계 9위 광물생산국의 지위를 갖음. 1990년대 초부터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 개방을 통해 다수 외

국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캐나다의 참여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원유 부문은 1960년 국영화 이후, 민간자본의 참여가 불가하였으나 2008년 에너지법 개정 이후, 민간자본 참여의 길이 열렸고 2011년 8월, 70년 만에 최초로 민간기업에 석유시추권을 허용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전 세계 8위 산유국인 멕시코가 점차 줄어드는 원유 생산량을 다시 늘릴 수 있는 기술 및 자본 도입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 대 후반부터 2002년 까지 국제광물가격이 낮아 멕시코 광산업 또한 주춤하였으나 2002년 말부터 구리, 은, 아연, 철 등 주요 광물의 국제가격이 급등하면서 멕시코 광업 또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주요 자원으로는 은(전 세계 1위 생산국), 금(11위), 납(5위), 카드뮴(6위), 몰리브덴(6위), 아연(6위), 소금(7위), 그라파이트(7위) 등이 있다.

② 멕시코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 재생에너지 활용 정책 : 멕시코는 전세계 7위 산유국이며 동시에 전 세계 20위 석유수출국으로 전통적으로 높은 에너지 자립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편이었다. 하지만 원유매장량이 고갈되고 있고 이를 대체할 신규 유전이 없다는 점, 이로 인해 전체 발전의 약 50% 가량을 천연가스에 의존하게 되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되자 멕시코 정부는 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대체에너지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에 '07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 취임 이후, 다양한 국가 발전 계획을 수립하며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다.

프로그램 명	기 간	목 표	주 체
국가개발계획 PND National Development Plan	2007 ~ 2012	국가 전체 발전 계획	연방 정부
에너지분야 프로그램 PSE Energy Sector Program	2007 ~ 2012	신 재생에너지의 전력 발전용량을 23%에서 26%로 제고	멕시코 에너지부
에너지국가전략 ENE National Strategy of Energy	2009 ~ 2024	전력 발전용량의 35%를 청정에너지로 대체	멕시코 전력청, 석유공사

또한, 멕시코 에너지 부는 “신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 기금의 사용에 대한 법률”(LAERFTE, Law on 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Transition Funding)을 제정하고 “신 재생에너지 촉진 특별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었다.

3. 페 루

(1) 페루의 기초

1) 페루의 소개¹⁴⁷⁾

페루(영문명 : Republic of Peru, 현지어 국명 : República del Perú)는 북쪽은 에콰도르, 콜롬비아, 동쪽은 브라질, 남쪽은 칠레, 볼리비아 접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1,285천km²(산림지대 53.2%, 목초지 21.2%, 경작지 2.7%)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페루의 기후는 리마를 포함한 바다 인근 지역(costa)은 온난한 사막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고, 안데스 산맥

147) www.inei.gob.pe

以東의 산악 지대는 무덥고 비가 오는 열대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는 리마(Lima, 해안과 접해 있는 平地, 페루에서는 “costa”라고 함)로 주요도시는 Lima(850만명), Arequipa(100만명), Chiclayo(73만명), Trujillo(70만명) 이고, 페루의 인구는 2,741만 명(2007년)이고, 리마 인구는 약 850만 명이다. 페루의 인종 및 차지하고 있는 민족은 인디오 50%, 메스티조 37%, 백인 12%, 일본 및 중국계 1% 이며,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고, 종교는 가톨릭교(90.5%), 기독교(6.5%), 기타(3.0%)를 차지하고 있고, 1821년 7월 28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인 독립은 1823년이라고 할 수 있다.

2) 페루의 경제지표(2010년 기준)¹⁴⁸⁾

실질경제성장률은 8.8% 이며, 1인당 GDP는 US\$ 2,915(2005), US\$ 3,386(2006), US\$3,918(2007), US\$4,415(2008), US\$ 4,365(2009), UAS 5,224(2010)이고, 물가상승률2.08%(2010년 말)이었다. 실업률 6.6%(리마시)이며, 화폐단위는 누에보솔(Nuevo Sol)이고, 환율은 US\$=2.72(2011년 9월)이고, 외채는 US\$ 402억 3천 6백만불(2010년), US\$ 421억 8천 7백만불(2011.3월)이며, 외환보유액은 US\$ 475억 8천 4백만불(2011.7월)이다. 주요업종별 성장률은 농목축업 4.3%이고, 어업은 -16.4%, 광업석유개발은 -0.1%, 제조업은 13.6%, 전기상수도는 7.7%, 건설은 17.4%, 상업은 9.7%, 기타 서비스는 8% 이다.

페루의 교역규모로는 수출은 US\$ 355.65억이고, 수입은 US\$ 288.15억이며, 교역품 중 주종 수출 품목으로는 광물, 수산물, 석유류, 농수산물 가공품 등이 있고, 주종 수입 품목으로는 연료, 전력 관련 플랜트, 자동차, 곡물, 플라스틱 등이 있다.

148) www.eiu.com / www.bcrp.gob.pe

(2) 페루의 정치제도 및 동향

1) 페루의 의회 및 선거제도

페루의 국가형태는 공화국,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제로,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3권 분립 형태를 취함.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35세 이상의 페루 출생의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져며,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획득해야 한다.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은 불가능하나 5년 후 재출마는 가능함. 제1·제2 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음. 내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15명의 각료와, 각료 또는 비각료에서 임명하는 각료회의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는 단원제로 5년의 임기를 가진 1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6년 4월 총선 결과 아메리카인 혁명동맹(APRA, 36석), 페루를 위한 동맹(Union por el Peru : UPP, 45석), 국민단일동맹(Unidad Nacional, 17석), 미래연합(Alianza Por El Futuro, 13석) 등이 주요 정당으로 대두되었다.

페루의 의회(Congreso de la República / Congress of the Republic) 형태는 단원제이고, 직접선거의 방식을 가지고 있고, 5년의 의원임기를 가진 120인의 의원 중 여성의원은 33인(27.50%)이며, 최근 2006년 4월 9일에 선거가 있었으며, 25개 대선거구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120인을 선출하였다. 70세까지 투표권 행사는 의무이며, 18세 이상의 페루 시민권자에게 선거권이 있으며, 25세 이상으로 출생에 의한 페루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의회의 의장 임기는 1년이며, 무기명 투표로 투표자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하고 없으면 재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하며, 국가 의전서열 2위이다.

입법권은 의회에 속하며, 재정에 관하여서 대통령은 8월 30일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대통령은 감사관의 보고서가 첨부된 결산서를 다음 해 11월 15일 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회는 90일 동안 심사·의결하고 감사관은 국가 예산 집행을 감독하고, 공공채무를 관리하며 공공기관의 활동을 감사하고, 감사관 임명권은 의회가 보유한다.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리와 내각은 의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하는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고, 총리는 임명된 후 30일 안에 다른 장관들과 함께 의회에 출석하여 정부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며 의회의 신임을 요청하는 내각신임을 하고, 내각 전체 혹은 개별 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국정통제를 할 수 있다. 2014년 10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을 것이며, 2016년에는 다음 대통령 및 의원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당연히 유망 대통령 후보로는 금년 우말라 대통령에게 패한 게이코후지모리(Geiko Fujimori), 2명의 전대통령 알레한드로톨레도(Alejandro Toledo, 2001-2006), 알란 가르시아(Alan García, 2006-2011)가 예상되며 이들은 금년 6월 의원 선거에서의 채배로 인한 의석 감소를挽回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 우말라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직 연임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정치 야심이 큰 夫人이 역시 다음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소문이 회자되고 있다.

2) 페루의 정치 동향

'11년 6월 5일 대선 결선투표에서 오안타 우말라 후보가 51.4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 게이코 후지모리((48.55%)를 제치고 페루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2011년 7월 18일부터 2016년 7월 28일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됨. 선거공약을 통

해 밝혔듯이 중도노선의 정책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당선된 우말라 대통령은 국민화합을 추구하면서 집권 후 빈곤 감소, 사회 평등 제고, 민주주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며, 남미국가연합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등 지역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말라가 이끄는 ‘가나 페루(Gana peru)’ 당은 의회 전체 의석인 130석 중 47석을 차지한 소수 여당이라 주요 법안통과 등 정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게이코 후지모리의 ‘푸에르사 2011(Fuerza 2011)’을 비롯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동시에, 급진적인 성격을 띠는 정책의 조짐을 보일 경우 언론, 기업계의 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켜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그의 지지기반을 더욱 약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현재의 상태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정책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단기적으로 예측된다. 의회에서도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툼레도 前대통령의 “페루포시블레(Peru Posible)” 당과의 제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역시 그의 독주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의회에서의 기반이 이렇게 취약하므로 정부의 정책집행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집권당이 현재의 경제를 또는 정치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거나,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야당인 후지모리당에 의해 경제를 받을 가능성이 100%이다. 우말라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부패척결을 우선으로 내걸었으므로 그 어떠한 정치 스캔들도 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의 지지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新정부의 사회개발과 관련된 과장된 기대, 빈곤퇴치(아직도 국민의 40% 가까운 규모가 빈곤층)를 조기에 완료할 것이라는 부풀려진 대중적 염원 등이 계속 우말라 대통령의 효율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도시, 非도시 간의 격차로 정치안정은 계속 위협을 받을 것이며 특히 자연자원(광물, 석유, 수력) 사용 및 통제와 관련된 사회 분쟁이 폭

력성을 떨 위험성마저 있다. 우말라 대통령은 국내외 투자업체 및 가난한 원주민 사회와의 대화를 지속할 의지를 비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프로젝트 컨세션 틀을 재검토하고 정부의 중재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급진성향의 지방리더들(다수가 밀수, 불법 자원거래, 코카인 재배와 관련) 도로점거나 파업 등의 방법으로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을 근절하지는 못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민간 사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말라 대통령은 3종의 국가안전 관련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대통령 선거 공약대로 에네(Ena), 아푸리막(Apurimac), 와야가(Huallaga) 지역의 멕시코카르텔 세력연계 마력게릴라 소통을 위해 정부군을 증강할 경우 게릴라들의 폭력성은 그 도를 더할 것이며, 둘째, 코카인 재배가 증가하면서 조직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flak 등 주요도시지역에서의 치안도 나빠질 것으로 보이며(페루는 현재 코카인 수출에서는 세계 1위, 코카인 생산 면에서는 세계 2위임), 셋째, 센데로루미노소(Sendero Luminoso, 1980-2000 기간 중 페루에서 극렬히 테러활동을 자행했으며 현재는 4백명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무장게릴라 잔여세력은 정부의 힘이 잘 미치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그 테러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점이다.

(3) 페루의 경제제도 및 동향

1) 페루의 경제정책 전망

우말라 정부는 국내외 성장 저하에 따라 상당히 신중한 경제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정책 악화가 예상되나 페루중앙은행은 신중한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방지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페루의 경제기초는 튼튼한 편이어서 앞으로 당

분간은 그렇게 경기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나 세계경제가 다시 위기로 들어간다면 그 충격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민경제가 원자재 가격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그 충격은 매우 클 것이다. 페루의 가장 큰 약점은 그 비즈니스 환경인 바, 제도 미비, 경직된 노동시장, 저생산성, 인프라 부족 등이 그것이나 우말라 대통령 재임기간 중 많이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 고용 및 해고 절차를 엄격히 하려는 우말라 대통령의 계획은 중기적으로 페루의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그나마 원자재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며 원자재가격이 좋다는 것은 기업의 조세납부액 및 광업부문의 새로운 조세 납부액이 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재정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자본지출, 사회개발프로그램 지출, 일부 가격보조금 지출(가정용 가스) 등으로 정부지출은 2012-15 기간 중 GDP의 29.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비금융공공분야(NFPS) 적자는 그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국내외 起債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기채를 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공공분야 신용도,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있으므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10년에 23.9%로 내려가 사상 최저라는 좋은 성적을 보였으며(한국은 100% 초과) 꾸준한 명목 GDP 성장 및 재정규칙 준수로 2015년에는 현재보다도 더 안전한 20.1%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계경제가 호황을 보인다는 전제 하에 전망하는 것이며 선진국이 침체로 들어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경우 페루 정부는 재정안정기금 중 6십억불(GDP의 3.5%)을 방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페루 중앙은행은 페루 국내경제 둔화 및 세계경제

침체를 고려해 연간 인플레이션률 유지 목표 3%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유연한 통화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있다. 페루중앙은행이 추구하는 2015년까지의 최고 목표는 연 인플레이션율을 목표수준인 3% 이내로 항상 유지하는 것이다. 페루중앙은행은 1990년대 이후 항상 그러했듯이 인플레이션을 연간 목표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운송 부문의 병목현상 및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공급충격요법 및 2011년 상반기의 식료품 가격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2011년 말에는 목표치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나 2012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경제 침체, 세계 이자율 하락으로 페루중앙은행은 중기적으로 2010년과 유사한 통화정책을 취하고 있다. 즉 외환유입 증가로 인한 내국화 가치 상승이 지나치게 일어나는 것을 막으면서 인플레이션도 억제하는 것이다. 페루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수시로 개입함으로써 지나친 환율변동을 막고 있으나 적어도 중기적으로 미국 달러화 가치가 다시 올라갈 때까지는 달러화의 방출을 막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신용대출 증가세는 꾸준히 계속되는 추세이며 소득증가 및 은행 신뢰 확대로 은행 사용자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脫달러 현상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훌리오벨라르데(Julio Velarde)의 중앙은행장 연임으로 통화정책은 계속성을 유지할 것이다.

2) 페루의 경제성장 동향

페루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래도 라틴아메리카 전체와 비교할 때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景氣冷却, 우말라 대통령의 정책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은 이미 비즈니스 신뢰를 저하시키고 민간투자를 둔화시킨 것이 사실인 바, 이로 인해 2011년 경제성장률은 6-7%대에 머물것으

로 보인다. 세계경제 회복의 지연, 중국경제의 소폭 둔화, 우말라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한 비즈니스 환경 악화 등으로 2015년까지 경제성장률은 크게 높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성장률 5.6%로서 잠재성장률보다 1.5%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비록 우말라 대통령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비즈니스환경과 소비자신뢰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긴 하나 민간소비와 투자가 경제성장의 주된 역할을 할 것이다. 페루의 주된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임으로써 가계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소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율이 다소 높아지면서 소비증가율이 4.9% 선에서 머물 것이며 아눈 2006-2009년의 연평균 6.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사회개발을 위한 지출 증가로 정부지출도 커져 2010년 GDP의 10.5%에서 2015년에는 12%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빨리 증가함으로써 2015년까지 대외무역은 국민소득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측면에서 볼 때, 건설한 금속광물 가격 및 광업 생산 증가로 2012년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新정부가 도입할 새로운 광업 조세는 광업 분야 투자를 저해하는 영향을 끼치기도 하겠지만, 광물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보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2011년 이후 2012년에도 건설업은 융화할 것이며 신정부가 사회간접자본(전기, 주택, 상하수도 등) 증대 계획을 실천할 경우 건설업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이며, 광업, 에너지 부문의 파이프라인 건설이 전체 건설업의 경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서비스 분야는 소매유통, 관광산업, 운송 분야 성장으로 나름대로 활발히 성장할 것이다.

- 페루의 경제성장¹⁴⁹⁾ (단위 :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GDP	8.8	6.2	5	6	5.9	5.5
민간소비	6	5.7	5.1	4.9	4.6	4.8
정부소비	10.6	6	6.8	7	7.1	7.1
총고정투자	23.2	7.8	7.5	7.8	7.6	7.5
재화서비스 수출	2.5	5.3	4.2	5.1	5.6	5.3
재화서비스수입	23.8	8.7	5.8	5.7	5	4.2
국내수요	12.8	6.9	5.3	6.1	5.7	5.3
농업	4.3	3.8	5.2	3.6	4.5	5
제조업	11.1	6.1	6	6.1	4.2	3.8
서비스	8.4	6.5	4.6	6.2	6.7	6.3

인플레이션율은 2011년 중앙은행의 연간 유지 목표 인플레이션율인 3%를 조금 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바, 이것은 전체적인 수요 증가 및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 것이 그 원인이다. 2012년에는 다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 내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2-15년 연평균 2.9%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 가능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외환보유고 증가, 장기 자본 유입 등으로 환율은 안정세를 계속 보일 것이다. 우말라 대통령이 급진적인 자본이동 통제를 실시하거나, 국제 조건이 계속 유지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1달러당 2.74누에보솔 정도의 환율은 계속 될 것이며 교역조건이나 달러화 유동성 이동은 유리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2013년 미국의 이자율이 다시 올라갈 때까지 환

149) www.bcrp.gob.pe

율은 계속 누에보솔화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계속하겠으나 경상수지가 더욱 나빠지고 생산성이 떨어질 경우 누에보솔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페루중앙은행 외환보유고가 매우 큰 상태이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15개월치의 수입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 경상수지 적자는 2011년 현대 GDP의 1.2% 규모이나 2015년까지 3%까지로 커질 전망이다. 상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수출 증가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무역흑자도 2011년 현재 GDP대비 4.4%에서 2015년 3%까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鑛業稅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소득적자 규모는 오히려 2006-2010년 GDP 대비 7.1%에서 2015년까지 6.4%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경상이전수지흑자는 2015년까지 GDP의 2%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겠으며 이는 유럽 및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송금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경상수지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가 증가해 외환보유고는 2014년까지 620억불에 이를 전망이다.

- 경제전망치 요약¹⁵⁰⁾ (단위 :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질 GDP 성장률	8.8	6.2	5	6	5.9	5.5
제조업 생산 증가율	13.6	6.6	7	7.1	5.2	4.8
총 고정투자 증가율	23.2	7.8	7.5	7.8	7.6	7.5
실업률	6.6	6.8	8.5	7.8	8.1	8.3
소비자물가상승률 (연평균)	1.5	3	2.9	2.7	3.2	2.8

150) www.bcrp.gob.pe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말)	2.1	3.3	2.8	2.9	2.9	2.8
여신 이자율	19	18.8	20.7	22.8	23.8	24.4
非금융공공분야 적자 비율(GDP 대비)	-0.6	0.2	-1.1	-0.9	-0.8	-0.9
재화수출 (십억불)	35.6	43.8	48.6	50.5	52.4	55.9
재화수입 (십억불)	28.8	36.8	40.7	42.6	45.2	48.7
경상수지 (십억불)	-2.3	-2.1	-2.6	-4.1	-5.8	-7.1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1.5	-1.2	-1.4	-1.9	-2.6	-3
외채(연말, 십억불)	34.3	37.7	39.3	40.5	42.2	44.5
환율(對美貨, 연말)	2.83	2.75	2.66	2.62	2.65	2.69
환율(對美貨, 연평균)	2.81	2.69	2.64	2.63	2.67	2.71

(4) 페루의 사회·문화 및 산업동향

1) 페루의 사회·문화 및 외교관계

우말라대통령은 인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정치 및 통상교역 면에서의 연합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남미연합(Unasur)을 구체화하는 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페루-브라질 무역 및 투자 증가 페루 아마존 유역의 수력전기를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한 협정 체결 등을 볼 때 무엇보다도 브라질과의 관계 강화가 우선적인 목표이다. 이전에 보이던 태도와는 달리 우말라 대통령은 칠레와의 관계 강

화를 증시하고 있으며 양국간 투자 및 무역 확대를 적극 바라고 있다. 칠레, 페루 양국 정부는 해상경계선 획정 관련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Court)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칠레와의 분쟁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베네주엘라가 주축이 되어 라틴아메리카 좌익 국가들끼리 만든 볼리바르연합(ALBA, 영어로는 Bolivarian Alliance for the Peoples of Our America, 서반아어로는 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과의 관계 강화도 역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는 우호적이나 우말라 대통령은 미국이 페루 내에서의 마약퇴치 활동을 직접 현지 수행하고 있는 것을 재고해야 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알랑가르시아 전 대통령이 활발히 추진하던 태평양협정(Pacific Alliance, 페루,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가 아시아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 자유무역협정 등은 다소 그 순위가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09년 보류되었던 광산 및 오일 탐사 등에 대한 투자 계획 재개로 광물 및 에너지 자원 밀집지역 주민들과 정부와의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남동부 세 지역(Cusco, Puno, Madre de Dios)의 접경에 위치한 대규모 Inambari 수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무허가 영세 광산업자들의 수은과 준설기의 무분별한 사용 등을 통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자원 집중 지역인 Madre de Dios 등 일부 지역에 채굴 금지지역을 지정하고 무허가 광산업을 단계적으로 허가받도록 하는 포고령 발령하였으나 광산업자들의 파업을 야기한다. 페루는 세계 5위 금 수출국으로 승인받지 않은 영세 광산업자들이 전체 금광 채굴의 60%를 담당하고 있어 정부가 대규모 광산 개발과 함께 광산업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작업을 진행할 경우 대규모 저항이 예상되며, 정부와 광산업자들 간의 포고령 수정에 대한 합의로 파업은 일단 중지되었으나 향후 협상이 원만하게 진

행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고, 자원개발사업 재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증가된다. 페루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브라질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조만간 브라질과 에너지 협정(Energy Integration deal)을 통해 Inambari를 포함한 6개의 수력발전소 건설에 브라질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에 있고 브라질-페루간 고속도로 건설이 '10년에 완공되면 양국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페루는 칠레로부터의 지속적인 투자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페루의 제소로 국제 사법재판소(ICJ)에 계류 중인 해상국경 분쟁과 관련한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할 경우 칠레와의 관계 악화 가능성 존재한다. 페루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미국 및 중국과의 양국간 FTA협정이 '09년, '10년 각각 발효된 이후 '10년 일본과 한국, '11년 EU등과 FTA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에 초점을 맞춘 대외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페루는 1945년 10월 국제연합에 가입한 이후, 반제국주의·반식민주의·반인종차별주의를 헌법에 명시하고, 국제연합헌장·미주기구(OAS)헌장의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면서 국내 문제 불간섭 및 국제조약상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아 왔다. 또한 보편성과 다원주의에 입각해 세계 모든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개발도상국과 협조를 강화하면서 신국제 경제질서 수립에 적극 협력한다는 일반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중남미지역 통합 정책 추구 및 결속 강화, 빈곤·마약·테러 등 지역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추구 등 대 중남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안데스 공동체(CAN)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역내국가 간에 우선적으로 교육분야 통합을 통한 남미 공동체 창설을 제의하였다.

지역협력기구 활동으로는 미주기구·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안데스공동시장(Andean Community)·리오그룹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여하여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서명을 추진하고 있음. 국방비는 약 10억 5,100만 달러이고, 군사력은 2005년 기준 110,000명으로, 육군 70,000명, 해군 25,000명, 공군 15,000명이다. 2001년 1월부터 의무복무제에서 지원병제로 변경하였으며, 지원자격은 18~30세에 해당하는 남녀(여성 10% 선발)에게 주어져 있다. 전략상으로 칠레·에콰도르를 가상적국으로, 볼리비아·콜롬비아·브라질·아르헨티나는 우호국으로 상정하고 있다. 미국과는 1952년 군사협정을 체결하였으나, 1968년 군사정부의 독자적 민족주의 노선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진 뒤 1980년대에 다시 호전되었다. 그러다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가, 미군 철수 및 페루에 대한 군장비 지원을 약속받은 이후 마약 문제 협조, 페루의 민주주의 발전, 에콰도르와의 국경분쟁시 페루 지지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 페루는 2002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안데스 특혜무역제도(ATPDEA) 혜택으로 의류 등 대미 수출이 급신장세를 보였으며, 2005년 12월에는 미국과 FTA에 서명하고 2006년 6월 의회에서 비준을 마쳤으며 (미국의 수정안으로 인해 2007년 6월 다시 비준을 마침) 2007년 현재 미의회의 비준을 기다리는 중이다.

인접국인 아르헨티나·브라질·콜롬비아·볼리비아·파나마 등과는 전통적인 우방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는 반면, 에콰도르와는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170여 년 간 반목과 적대관계를 유지하다 1998년에야 평화협정을 맺고 적대관계를 종식하였다. 칠레와도 1879년 태평양전쟁 이래 반목과 협상을 거듭하면서 다소 소원한 관계로 지내 오다가 1998년 6월 경제보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한편, 볼리비아와는 2006년 1월 모랄레스 대통령 취임 이후 볼리비아가 베네수엘라, 쿠바와 긴밀해지고 CAN 통합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면서 다소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러시아와는 1969년에, 중국과는 1971년에 각각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2001년 현재까지 계속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멕시코·칠레에 이어 쿠바와도 1972년 외교관계를 재개하는 등 중남미 국가와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교역이 활발하지는 않고 있다. 국제연합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제국 간의 결속 강화, 민족자결권 존중, 식민지 철폐 및 제3세계와의 유대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비동맹관계회의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1981년에는 페레스데쿠에야르(er Perez de Cuellar)가 제5대 국제연합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뒤 1986년 재선에 성공해 1991년까지 재임하기도 했다.

2) 페루의 산업동향

2010년 4/4분기 비전통상품 생산은 2009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바, 이는 비전통상품 제조업, 건설, 상업 부문의 활발한 성장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상품 생산은 2009년 동기 대비 1% 성장한 바, 이는 농축목제품 생산은 증가하는 가운데 수산물 금속광물 생산은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표는 페루의 산업분야별 GDP 구성 비율 및 성장률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바, 매년 제조업, 건설, 상업 등의 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페루의 산업별 GDP 구성 및 성장률¹⁵¹⁾ (단위 : %) -

분 야	산업별 비중 (2009년)	산업별 성장률	
		2009	2010
농목축	7.8	2.3	4.3
- 농업	4.7	0.9	4.2
- 목축	2.4	4.4	4.4

151) www.bcrp.gob.pe

분 야	산업별 비중 (2009년)	산업별 성장률	
		2009	2010
수산업	0.4	-7.9	-16.6
광업, 원유개발	5.7	0.6	-0.8
-금속광업	4.7	-1.4	-4.9
-원유개발	0.6	16.1	29.5
제조업	14.3	-7.2	13.6
-1차산품가공	2.8	0.0	-2.3
-非1차산품가공	11.4	-8.5	16.9
전기상수도	2.0	1.2	7.7
건설	6.2	6.1	17.4
상업	14.9	-0.4	9.7
기타서비스업	48.6	3.1	8.1
전체 GDP	0.0	0.9	8.8
1차산품 생산 분야 GDP	16.8	1.0	9
非 1차 산품 생산 분야 GDP	83.2	0.8	10.4

제 4 절 동남아시아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1. 인도네시아의 정치 · 사회 · 문화

(1) 인도네시아의 정치현황

1) 개 설

뻘짜실라 기본이념에 따라 1945년 헌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건국하였다. 뻘짜실라(Pancasila

: 5개 건국이념)는 ① 유일신에 대한 믿음(Belief in the One and Only God, 다양한 신앙에 대한 존중을 의미), ② 인간의 존엄성(Just and Civilized Humanity), ③ 통일 인도네시아(The Unity of Indonesia), ④ 대의 정치(Democracy guided by the Inner Wisdom in the Unanimity arising out of Deliberations amongst Representative), ⑤ 사회정의 구현(Social Justice for the Whole of the People of Indonesia)을 의미한다.

2) 행정부

① 개 설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인 임기 5년의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1968년 6월 제1차 개발내각이 발족한 이래 수하르토 전 대통령 하에서 제7차에 걸쳐 개발내각을 구성하였다. 1998년 5월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사임하고, 하비비 대통령이 취임하여 새 과도 정부를 구성하였고, 1999년 6월 총선실시, 1999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압두라만 와히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2000년 7월 메가와티 부통령이 국민협의회 특별회의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하였고 2004년 10월 유도요노 대통령이 국민직접 투표에 의해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제1기 인도네시아 연립(United Indonesia) 내각이 출범하였다. 2009년 7월 유도요노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 제2기 인도네시아 연립내각이 출범하였다.

② 행정 시스템

인도네시아 행정시스템은 대통령이 국가의 행정책임을 담당하고 지방(Province)은 주지사(governor)가 행정권한을 행사한다. 그 이하의 행정구역으로 District, Sub-district, Ward, Village 등의 행정구역이 있다.

③ 중앙 행정조직

행정조직의 운영은 국가가 정부 부서를 통해 주로 관리한다. 행정부서가 업무별로 분리되어 Department - Secretariat - Inspectorate - Directorate - Division - Centre- Bureau의 단계별 행정조직 구조를 이루고 있고, 각 행정조직의 책임자로 Minister - Secretary General - Inspector General - Director General - Head of Division - Head of Centre - Head of Bureau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 각부를 감독하는 각부 장관과는 별도로 조정장관(Coordinating Ministers)이라고 불리는 몇몇의 수석 장관이 있어서 담당분야를 넘어서서 관련된 분야에 대한 행정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공식적으로 장관급에 해당하는 검찰총장과 대통령 비서실장, 인도네시아군 사령관 등이 있다.

④ 지방 행정조직

지방행정기관은 33개 주(Province, 자카르타·족자카르타·아체는 특별주), 95개 시, 370개 군(District 또는 Regency), 6,093개 읍(Sub-district)으로 구성된다. 지리적 관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지수마트라 중앙지역, 자바, 그리고 수도인 자카르타 지역 등 크게 세 개의 특별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역은 지방의회를 가진 지방정부가 행정권한을 행사한다. 지방 정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지사가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2000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01년부터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를 시행하여 점점 더 많은 자율과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3) 입법부

기 관	주요 기능 및 권한	임기 및 구성
국민협의회(MPR : People's Consultative	헌법제정 및 개정, 대통령, 부통령 탄핵.	임기 5년의 692명(국회의원 560명, 지역대표 132명)으

기 관	주요 기능 및 권한	임기 및 구성
Assembly)		로 구성되며 의장, 부의장(4명)을 둠
국 회(DP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입법권, 예산결정 및 예산집행 감독, 행정부 견제	임기 5년의 560명으로 구성.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선출되고 의장과 부의장(4명)으로 의장단을 구성.
지역대표협의회(DPD : Regional representative Council) ¹⁵²⁾	①지방행정, 지자체 관련 사업, 정책심의 및 입법권, ② 지방분권 관련 사항 입법권, ③ 지자체 관련 예산 사항 심의	5년 임기의 33개 주에서 각 4명씩 선출한 132명으로 구성. 입후보 자격으로 정당에 소속하지 않는 것을 의무화하였음.

4) 사법부

법원조직은 대법원, 고등법원(26개), 지방법원 및分院(326개)으로 구성. 대법원은 하급법원을 지도 감독하며 3심제를 취하고 있다. 재판권은 4개의 관할로 나누어져 ①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을 다루는 일반관할, ② 이슬람 법률에 따라 결혼·이혼·상속을 다루는 종교관할, ③ 군사관할, ④ 민간인과 공무원 사이의 소송을 다루는 행정관할로 구성된다. 국방부 관할의 군사재판소, 종교부 관할의 종교재판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각 관할사건 담당한다. 검찰조직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있고, 2003년 12월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여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를 담당하게 하였고 그 외 국가사법 위원회를 설립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아 대법관 임명한다.

152) 국회(DPR)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10월 신설된 상원(上院)과 유사한 기관.

5) 정치 상황

① 개 설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였으나, 수하르토의 퇴진(1998년) 이후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각 정당은 뼈째살라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당으로 출발하여 1999년 및 2004년 총선을 거쳐 이슬람계 정당과 민족주의 정당으로 양분되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DPR)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현재 민주화와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 중이나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하고 있다. 1998년 수하르토 퇴임 이후 혼란기를 거쳐 현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 하에서 상당한 민주화를 성취하였으나 사회인프라 구축 미비, 지역편중, 군부와 고위공직자의 부패 등이 큰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다.

② 정치단체(Faction) 및 주요 정당

현재 3-4백 개의 정당이 존재하는 복잡한 다당제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과도한 군소 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총선에는 24개 정당, 2009년 총선에서는 44개 정당에 대해서만 총선 참가 자격을 인정하였다. 복잡한 다당제 정치상황은 인도네시아의 정치 발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주요 정당은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다.

정 당	연혁 및 정치상황
민주당 (Partai Demokrat)	현 집권당으로 2001년 9월 9일 유도요노 당시 정치·안보 조정장관을 중심으로 설립. 2009년 총선에서 국회 총 의석 560석 중 148석(26%)을 획득하여 제1당이 됨.
골카르당 (Golkar)	과거 수하르토 정권 시절 재벌기업 및 전문직업인을 중심의

제 2 장 글로벌 전략수립을 위한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등에 관한 기초

정 당	연혁 및 정치상황
	인도네시아 최대 정치세력 결합체였으며, 1999년 1월 정치관 계법 개정 에 따라 공무원들이 탈퇴하고 1999년 3월 정당으로 출범. 2009년 총선에서 국회 총 의석 560석 중 107석(19%)을 획득하여 제2당이 됨. 인도네시아 연립내각 참여(연립여당)
투쟁민주당 (PDI Perjuangan)	비 이슬람계 5개당이 통합하여 설립되었던 인도네시아 민주 당(Indonesian Democratic Party)에서 축출된 메가와티 전 당수 및 그 지지세력이 세운 정당. 2009년 총선에서 국회 총 의석 560석 중 94석(17%)을 획득하여 제 1 야당이 됨.

그 외 복지정의당(PKS), 국민수권당(PAN), 통일개발당(PPP), 국민계몽당(PKB) 등이 있다.

③ 최근 정치 상황

시 기	정치 상황
2009년 4월 총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선 결과, 유도요노 대통령의 민주당은 2004년 총선에서 제 1당이 된 골카르당을 제치고 제 1당으로 부상. 민주당은 대선에 독자적 후보를 출마시킬 자격인 득표율 25%, 의석수 20%를 충족한 유일한 정당으로 성장함. - 2009년 4월 총선은 폭력사태 및 선거부정 시비가 만연했던 과거 총선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실시되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 다만 분리주의 운동 촉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 지역에서 선거 전 날부터 선거일 오전 까지 산발적인 폭력 사태로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선거 전반에 미친 영향은 미미
2009년 7월 대통령선거	- 2009년 7월 9일 실시된 대선 결과, 유도요노 대통령은 60.8%를 획득하여 26.79%를 획득한 메가와티-프라보워 후

시 기	정치 상황
이후	<p>보를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도요노 대통령이 달성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안정이 메가와티 후보가 제시한 서민중심 경제(people's economy)보다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한 요인으로 판단됨 -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4년 집권 이래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 및 안정적 성장, 개혁기조 유지, 민주주의 발전 등을 이루면서 국민적 지지 하에 정치적 안정을 계속 유지. 다만 집권 2기 출범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2기 출범 당시의 국민의 높은 기대와 부패청산, 개혁 등 대국민 공약의 가시적 성과 미흡으로 유도요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010년-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도요노 대통령은 집권초기에는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듯 했으나 집권2기에 들어서 각종 부패스캔들로 큰 정치적 타격을 받고 있음. - 센츄리 은행사건, 세무부정부패사건 등 계속된 부패사건으로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져 자카르타와 지방에서 대통령과 내각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음.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테러와 마약, 각종 범죄를 소탕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나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됨.

(4) 인도네시아의 사회제도

1) 국민성향과 인구구성

열대성 기후와 풍요로운 식생활 자원 그리고 오랜 식민지와 광활한 영토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국민성이 온순하고 밝은 편이다. 또한

대국적 기질을 갖고 있으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을 등 사회지도층 인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자바인이 전체인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를 존중하면서 감정 없는 표현과 사려 깊은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통관습도 모든 문제를 서로 협의하고 상부상조하여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2) 문화 및 관습

① 문 화

인도네시아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2억 3천만 명)의 인구 대국이며, 300여 종족이 사용하는 언어도 600여 종에 이르고, 종족별로 상이한 문화와 전통 유지하고 있다.¹⁵³⁾ 인도네시아 표준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Bahasa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사회통합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바하사 인도네시아는 7-15세기경에 이르기까지 남부 수마트라지역의 팔렘방을 중심으로 번성한 스리위자야 왕국의 상인들 간에 사용되었던 말레이어의 원조격인 멀라유어(Melayu)를 그 유래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교가 사회 생활 문화의 저변을 이루고 있으나 중동지역보다는 무슬림 데모크라시가 보편화 되어 있다. 다만, 최근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종교적 충돌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일고 있다.

② 사 회

이슬람 사회의 경우 여성의 사회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개방된 이슬람 사회로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보장되어 있고 경제발전에 따라 사회진출이 더욱 활발하다. 종교구성은

153) 양승윤, 인도네시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년 1-3면 참조.

이슬람이 86.1%로 사실상의 이슬람 국가이나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힌두교, 불교, 기독교, 도교 등의 활동은 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불평등 조항으로 기독교를 포함한 소수종교를 억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독교 5.7%, 천주교 3%, 힌두교 1.8%, 기타 종교 3.4% (2000년 인구센서스 통계)로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지만 발리 섬에서는 힌두교가, 술라웨시 섬 북부에서는 기독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3) 언 론

① 언론 정책

1998년 5월 수하르토 대통령의 하야 이후 언론·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신장되었고 와히드 대통령 재직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공보부가 폐지되어 현재는 언론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없고, 인도네시아 기자협회에서 언론제도를 자율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방송·통신의 설립 허가 등은 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고, 외신의 경우 외교부 내 공보국에서 상주 및 취재 허가 업무 담당한다.

② 언론 현황

넓은 국토와 방송·통신 인프라 부족으로 전국지와 전국방송이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 현황은 아래의 표에 설명하였다.

	현 황
신 문	전국적으로 중앙일간지 약 45종, 지방일간지 약 170종 등 총 215여 종의 일간지 발간. 주간·격주간, 월간지는 전국적으로 총 약 570종 발간되고, TEMPO(인도네시아어 12만, 영어 5만), GATRA(인도네시아어, 10만 5천) 등이 주요시사 주간지

	현 황
텔레비전	1공영 다민영 TV방송 체제. 공영 TV TVRI(1962년 최초 설립, 인도네시아 최다지역에서 시청 가능), 민영 TV(12개 채널)이 운영.
라디오	국영 RRI 방송국 외에 지방자치단체 운영 또는 민영 라디오 방송국이 약 850여 개가 있음.
통신	국영 Antara 통신 : AFP, 로이타, UPI 등 세계 각국 통신사와의 계약하였으며, 한국의 연합뉴스, 북한의 중앙통신과 동시에 뉴스 공급 계약 체결

4) 교육제도

① 교육시스템¹⁵⁴⁾

인도네시아 헌법은 “모든 어린이는 만 6세가 되면 최고 6간의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만 8세에 달하면 그 권리는 무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등교육 기관에는 교육문화부에서 관리하는 초등학교 이외에 종교부에서 관리하는 ‘마사도라’라는 이슬람교 학교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학제는 6-3-3-4년제로 1994년부터 9학년(초등학교,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재도 교육 환경이 열악하여 아직까지 문맹률이 높은 편이고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까지이나 초등학교 졸업자가 다수이다. 이들은 대부분 막노동자로 일하고 있어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¹⁵⁵⁾ 인도네시아의 교육시스템을 아래에 표로 정리하였다.

154) 정광희, 인도네시아의 교육현황 및 발전과제, 2007, 한국교육개발원

155) Teachers and Transformative Education Policy in Indonesia, Education up date-march 2011, World Bank. 참조

학 교	기 간	운 영
초등학교(SD)	6년	일반, 종교학교
중등학교(SMP)	3년	일반, 종교학교
고등학교(SMA)	3년	일반, 종교학교, 실업고교
전문대/대학 (Institut /Universitas)	전문대(Diploma)	1년, 2년 또는 3년 과정 별도 운용
	대학학부과정 8~10학기(S1)	학 사
	대학석사과정 4학기(S2)	석 사
	대학박사과정(S3)	박 사

② 고등교육 현황

2008/2009년 기준 대학·전문대학 등 국·공립 고등교육기관은 총 83개(4년제 대학은 48개), 사립 고등교육기관은 총 2,892개(4년제 대학은 393개)이다. 2007년 기준 19~24세 연령층 2,600만 명 중 약 430만 명이 대학진학(17.2%)을 하였다.

2. 베트남의 정치, 사회, 문화

(1) 베트남의 정치

1) 정치체제

① 기본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제’를 국체 및 정체로 하고 있으며, 헌법상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세력’, ‘국회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 ‘국가주석은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는 국회의

집행기관이자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집단 지도체제를 표방하고 있다. 공산당이 국가, 국회, 정부의 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총리)의 권한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② 공산당(Communist Party of Vietnam : CPV)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공산당은 1930.2 홍콩에서 호치민에 의해 창립. 1930.10 당명을 인도차이나 공산당으로 개명, 1951.2 제2차 전당대회에서 베트남 노동당으로 당명을 변경, 베트남 통일 후 1976년 개최된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명을 다시 베트남 공산당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름. - 창당이후 베트남 공산당은 10차례의 전당대회를 개최(제10차 전당대회 : 2006.4월 개최, 제11차 전당대회 : 2011.1월 개최)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기본조직은 당 지부인 '치보'(chi bo)로 규모에 따라 3명에서 30명 규모로 구성. 피라미드식 구조를 이루고 권력의 정점에서부터 조직 하부에 이르기까지 통제력 확보 - 베트남 공산당은 전당대회와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중앙서기국, 중앙군사위원회 및 중앙감찰위원회 등의 중앙조직과 각 지역 및 직능별 조직으로 편성
전당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식상 베트남 공산당 최고기관으로 5년마다 개최. - 당의 중요정책을 인준하고, 새로운 당 규약을 채택,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을 선출 - 전당대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토의나 결정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추인하는 역할 수행
당중앙집행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당대회에서 선출. - 당 규약상 전당대회 폐회기간동안 전당대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세부적인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당의 모든 활동 지도. - 중앙집행위원회가 독자적인 기구로서 정책을 제안하거나 임의로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사실상 정치국이 결정한 정

	책이나 세부사항 또는 인사개편을 사후에 승인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일반적
대중조직	조국전선(Fatherland Front) ¹⁵⁶ , 노동조합총연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 청년연맹(Hochiminh Communist Youth Union), 여성연맹(Women's Union)

③ 국 회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으로 유일한 헌법제정 및 입법기관이다. 구체적으로 ① 헌법과 법률의 제정, 개정 및 입안, ② 국가기구의 조직 및 활동 규정, 최고 검찰권 행사, ③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등의 활동을 보고 받으며, 이들을 선출 또는 해임,¹⁵⁷ ④ 경제사회발전계획 등 국가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⑤ 국가주석의 국방안보위원회 설립안 거부권을 행사, ⑥ 총리의 부총리, 각료 임명 및 해임안 거부권, ⑦ 사면, 전쟁 선포,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국민투표 실시 권한이 있다.

국회의 구성과 상무위원회는 아래의 표에 설명하였다.

• 국회의 구성

임 기	의원 수	회기	국회조직
5년 단임제	제12대 국회 493명	매년 2회(5월, 10월) 정기국회(약 1개월) 개최. 국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주석, 총리 또는 국회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회기를 개최할 수 있음.	국회의장(1인), 국회 부의장(4인), 상무위(18인), 상임 위원회(10개 위원회)

156) 베트남 신헌법 제9조는 조국전선의 역할을 규정. 이전에는 모든 조직들이 애국전선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헌법에서는 모든 정치적 및 경제적 회원단체들이 연합하는 데 있어 자율권을 인정.

157) 베트남 신헌법 제83조, 84조 참조.

- 상무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구 성	국회에서 선출. 국회의장(President), 부의장(4), 상임위원(상임위원장 10명+사무총장, 사법담당위원, 민원담당위원 각1명)
기 능	국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며 국회 폐회시 국회업무수행, 헌법 해석권 행사

- 상임위원회(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10개의 상임위원회¹⁵⁸⁾.

④ 국가주석

5년의 임기로 국회가 국회의원 중 선출한다. 주요권한은 ① 국가원수로서 대내외적으로 베트남을 대표하고, 국회에 책임을 지며, ② 국회에 업무 보고 ③ 국회상무위원회 참석권한을 가지며 ④ 임무와 권한을 수행키 위한 필요한 명령 및 결정 시달, ⑤ 인민군 통수, 국방안보위원회 당연직 의장, ⑥ 헌법 및 법률 공포권, ⑦ 부주석,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감찰원장의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 ⑧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및 법관, 최고인민감찰원 부원장 및 검사 임명 및 해임, ⑨ 국회 또는 국회상무위원회의 결의에 근거, 전쟁상태 선포 및 사면권 행사, ⑩ 대사 임명 및 소환권, 외국대사 신임장 제정, 조약 협상 및 서명권, (국회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조약 비준 및 가입권 보유한다.

⑤ 정부(Government)

총리, 부총리 5인, 각료 22명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 의결사항의 최

158) 법률(Law Committee), 재정·예산(Finance-Budget Committee), 경제(Economic Committee), 외교(Foreign Affairs Committee), 국방·안보(Defense & Security), 문화·교육·청소년·아동(Culture, Education, Youth and Children Committee), 사회문제(Social Affairs Committee), 과학기술환경(Science and Environment Committee), 민족(Ethnic Groups Committee), 사법위(Justice Committee)위원회.

고집행기관 및 행정기관으로 정부는 업무를 국회, 국회상임위, 국가주석에게 보고. 국회에 책임을 지며, 법령, 예산 등을 국회에 제출한다. 총리는 임기 5년으로 국가주석의 추천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총리는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정부 및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를 지도하고, 국회, 국가주석에게 업무를 보고(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 정부기구 조정, 각부 장관의 임명 및 해임을 국회에 건의하는 권한 보유)한다.

국무회의는 의장(총리), 제1부의장(수석부총리), 부의장(부총리 4명), 18개 부처 장관(부총리 겸 장관 2명) 및 부와 동등한 4개 기관장으로 구성된다.

정부 조직은 총리(Prime Minister), 부총리(수석 부총리, 반부패 담당 부총리, 부총리, 경제 담당 부총리, 교육·사회·문화담당 부총리), 각 부장관¹⁵⁹⁾으로 구성되고, 그 외 조직으로 감찰원(Department of State Inspection), 중앙은행(State Bank), 소수민족위원회(Committee for Ethnic Minorities), 총리실(Office of the Government) 등이 있다.

⑥ 사법기관

주요 권한이자 임무로 사회주의 법제보호, 사회주의 제도와 인민의 주권보호, 국가와 조직의 재산 보호, 공민의 생명, 재산, 자유, 명예 보호 등이 있다. 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 군사법원, 기타

159) 국방부(Ministry of Defense)/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Trade),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ur, Invalids & Social Affairs),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 Rural Development),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보건부(Ministry of Health),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문화관광체육부(Ministry of Culture, Tourism & Sports), 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

특별법원으로 구성된다. 최고인민법원장(임기 5년)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국회, 국가주석에게 업무를 보고한다. 법률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재판이 원칙이고 헌법해석권이 국회 상무위원회에 있어 사법부의 국회,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미약하다.

검찰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검찰원, 군 검찰원으로 구성된다. 최고인민검찰원장(임기 5년)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국회, 국가주석에게 업무를 보고한다. 각 정부기관 및 단체, 인민들의 법 준수 감독 및 법 집행 확보를 위한 기소 권한을 가진다.

2) 정치현황

① 1970-2000년 정치상황

70-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6년 통일직후 남부에 대한 급속한 사회주의 도입의 실패 - 캄보디아 침공(1978) 및 중·베트남 전쟁(1979)에 따른 과도한 전비부담과 서방국가의 원조중지 등으로 80년대 후반까지 국민 경제는 악화상태
80-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 초반 신경제정책('80-'82)을 추진하였으나 성과 미흡. - 산업기반 및 하부구조의 미비, 서방국가의 경제제재(Embargo) 조치와 외환부족으로 인해 경제재건 실패. 전쟁으로 황폐화된 경제를 재건하고 국제적 고립에 따른 경제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개방이 불가피 - 1986년 제6차 당대회에서 Doi Moi(쇄신) 정책 채택. 대외개방을 통한 외국과의 경제협력확대, 시장경제요소 도입 - 1987.12.7 “외국인투자법” 공포, 1989년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의 철수를 계기로 대외관계가 호전되기 시작 하였으며, 다변화, 다양화를 기조로 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및 국제 협력에 동참하는 개방적, 적극적 대외정책 추구
90-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0.8월 캄보디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베트남과 대화를 재개한 이후 대서방 관계개선 급진전, 1991.11월

	<p>그동안 캄보디아 사태로 악화되었던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국가, NIES, 일본, 프랑스와 경제협력을 증시하는 외교 정책 모색 - 1995.7월 아세안 가입 및 미국과 수교로 아태지역의 주요국가로서의 외교적 지위 확보 - 1998.11월 APEC의 정식회원국으로 가입, 2004.10월 ASEM 정상회의 개최, 2006.11월 APEC 정상회의 개최, 2007.1월 WTO가입, 2008.1월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2008-2009), 2010년 ASEAN의장국 수임
--	--

② 최근 정치정세- 2011년 1월에 개최된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주요 정책	정책 내용
정치·사회적 안정 속의 경제발전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986년부터 추진해온 Doi Moi(쇄신)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개혁·개방을 통한 국가 발전을 기본정책으로 지속 추진 ② 소득증대 및 빈부격차 해소, 당원 및 관료의 부정부패 추방, 범죄 확산 대처 등을 통해 정치·사회적 안정 도모
공산당 지배체제 내에서의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급진적 개혁보다 공산당 지배체제의 틀 안에서의 점진적 개선 추구. ② 공산당 일당 지배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다당제 등 이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 ③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경제발전을 촉진
당·정·국회 지도부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06.4월 제10차 전당대회¹⁶⁰⁾ 및 2007.5월 제 12대 국회 출범 등으로 당·정·국회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진행

주요 정책	정책 내용
세대교체	<p>되었고, 2011년 1월에 개최된 공상당 전당대회에서 새지도부를 선출</p> <p>② 전당대회(2011년) 준비과정에서 들어난 내부적 개혁·개방 정책추진과 평가에 근거하여 응우옌떤중 총리의 퇴진여론이 있었으나¹⁶¹⁾ 정치적 혼란을 고려해 유임.</p>

③ 국내정세 전망

법률·제도 정비 통한 개혁개방 지속 추진	<p>① 개정 헌법(2001.2)의 ‘사회주의 법치국가’ 개념에 근거,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법의 지배’를 위한 법률정비 지속 추진</p> <p>② 국가관리하의 다부문 시장경제체제인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 틀에서 경제자유 확대조치 지속 도입</p> <p>③ 제도 및 정부구조 혁신, 공직자의 자질개선, 재정구조 개혁 등의 정부 혁신도 추진</p>
국내정치 안정기조 유지	<p>① 다당제 등 정치적 다원화 요구에 대해서는 불허 입장을 견지하면서 체제안정을 위한 국민화합 및 경제개혁을 가속화</p> <p>② 소수민족 및 종교 활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국전선 활동 강화 등으로 다원화 요구를 수용</p>
지속적인 부정부패 척결과	<p>①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소득격차 심화, 당원 및 관료의 부정부패, 각종 범죄 확산 등이 사회불안 요소로 대두</p> <p>② 부패방지법 제정을 통해 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있으</p>

160) 제10차 전당대회에서는 ‘도이모이’정책 20주년을 평가하고,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국에서 탈피(2010년)하여 2020년까지 근대화·산업화된 국가 건설 목표 제시

161) 그간의 물가폭등, 동화(베트남화폐) 평가절하, 국영조선기업인 비나신의 채무불이행 사태 등이 원인이 됨.

<p>개혁개방 부작용 해소</p>	<p>나, PMU18사건 및 PCI 뇌물사건¹⁶²⁾ 등 대형 부정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p> <p>③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농촌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불만을 고려하여 농촌개발, 빈곤퇴치, 소수민족 배려정책 지속과 마약·매춘·도박 등 각종 사회악 제거 노력 강화</p> <p>④ 근대화·산업화된 국가건설추진</p> <p>⑤ 2008년 1인당 GDP \$1,024을 기록함으로써 저소득국(약\$900)에서 탈피하여 목표 달성</p>
<p>외교정책의 다변화</p>	<p>다양화, 다변화 정책하에 안정되고 장기적인 양자, 다자 관계 메카니즘 구축 전개</p>

(2) 베트남 사회·문화¹⁶³⁾

1) 민족과 민족성

<p>민족분포</p>	<p>- Viet족이 전 국민의 대부분(89%)을 차지하고 있으며, 53개 소수민족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고, 약 100만의 화교가 거주</p> <p>- 베트남 민족은 언어군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 그 중 비엣므엥(Viet-Muong) 어군이 베트남 전체 인구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어군에 속하는 민족은 비엣(Viet), 므엥(Muong), 토(Tho), 쯏(Chut) 등 4개 민족이 이에 해당.</p>
<p>민족성</p>	<p>- 베트남인들은 스스로 근면·성실·인내·친절·용감성 등의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랜 세월 동안의 끊임없는 외침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국민이라고 생각하며 외세에 굴복하지 않은 역사를 지닌 나라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함</p>

162) 전자는 국도건설 사업에 투입된 ODA 자금을 교통부 간부가 유용한 사건이고, 후자는 일본 PIC社의 베트남 교통부 간부에 대한 뇌물수뢰사건으로 베트남 권력층 내부의 부패상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임.

163) http://www.mofat.go.kr/mission/emb/ww_info_view.mof. 참조.

2) 인구현황

① 전체 인구는 약 8,728만명(2009년)으로 전 국민의 70%가 농촌에 거주한다.② 수도인 하노이에는 약 650만명, 호치민에 약 710만명, 하이퐁에 약 183만명, 다낭에 약 85만명, 께터시에 약 115만명이 거주하는 등 전체 인구의 43%가 홍강 및 메콩델타 지역에 집중하여 거주 불균형 현상이 있다. ③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으며, 이주하려면 지역 경찰에 등록 신고를 거쳐 주민등록부를 발급 받아야 한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려면 거주 승인 획득이 어렵다. ④ 인구 구조를 보면 24세 이하의 젊은 층이 약4천 3백만으로 향후 20-30년간 경제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인력 공급이 가능하고, 노동력의 질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3) 언 어

① 공용어는 베트남어이며, 4종의 소수민족 언어를 법률상 허용하고 있다. 베트남어는 중국 문화의 영향으로 한자어가 상당한 비중(60% 정도)을 차지하고 있다. ② 1878.4.6 프랑스 식민정부는 현재의 베트남어를 국어로 공인하였고 1882.1.1 부터 각급 학교, 공문서에 적용하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1915년과 1919년에 하노이와 후에(Hue)서 과거시험을 폐지하면서 한문은 쇠퇴하고 현재의 베트남어가 국어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4) 종교 생활

① 베트남 내에는 신자가 가장 많은 불교를 비롯하여 카톨릭, 까오다이(Cao Dai, 유·불·도 혼합), 화하오(Hoa Hao) 등의 종교가 있으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일반적으로 미신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② 베트남 국민의 약 2/3가 불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등록된 신자는 약 1,000만명(인구의 약 11.7%)정도이고, 카

톨릭 신자는 약 550만명(인구의 약 6.5%), 기독교 신자는 약 100만명(인구의 약 1.1%)으로 추정된다.¹⁶⁴⁾ ③ 베트남 종교위원회는 2011년7월 신흥종교 까오다이를 국가의 공인종교로 인정하는 의식을 치루었다. ④ 베트남의 토속신앙은 도교와 유교,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상생활 속에는 미신적 요소가 존재한다. 가정과 사무실, 상점 등에 지신(地神), 부(富)의 신을 모셔 놓고 복을 기원하기도 하고, 고사를 지내거나 굿을 하는 풍속도 있으며, 사람이 죽었을 때는 길일을 택해 장례 날짜를 택일하기도 한다.

5) 교 육

① 일반 현황

최근 교육분야에도 개혁정책을 실시중이며, 특히, 고등교육에 있어 과학의 실용화와 기술보급 및 직업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혁정책 이전에 무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1990년도 초반이후 유료교육제도가 도입되고, 사립학교도 설립되었다.

② 교육과정

학 교	기 간	운 영
유아원 (Nha Tre)	생후 3-4개월, 3년	취학전 교육
유치원 (Mau Giao)	3세-6세, 3년	
초등학교 (Truong tieu hoc)	5년(1학년-5학년) 6세-10세	

164) 도시나 지방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사찰이 존재하고, 16세기경부터 포르투갈이나 프랑스 사제들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알려진 카톨릭은 전국 50개의 성곽 도시에 널리 퍼진 것으로 알려짐.

제 2 장 글로벌 전략수립을 위한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등에 관한 기초

학 교	기 간	운 영
중등학교 (Truong trung hoc co so)	4년(6학년-9학년)/ 11세-14세	상급학교 진학을 원할 경우, 우수반에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며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은 국영기술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후 사회로 진출
고등학교 (Truong trung hoc pho thong)	3년(10학년-12학년) 15세-17세	일반 고등학교와는 별도로 전국에 약 200여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며, 자연과학, 사회과학, 기술과학 등으로 나눠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
기술학교 (Trung cap)	4 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3년 과정의 기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은 취업을 하거나 2년~2년반 과정의 기술 전문학교 과정 또는 4년 과정의 기술학교에 진학, 졸업시 '기술사' 자격증 취득
전문대/대학 (Institut /Universitas)	전문대(Diploma)	3년 또는 3년 반 과정
	학사과정(4년), 약대(5년), 치의대(6년-7년)	1993년말부터 우수대학 육성책으로 하노이 국립대학교, 호치민 국립대학교, 타이 응웬(Thai Nguyen)대학교, 후에(Hue) 대학교 및 다낭(Da Nang) 대학교 등 5개의 종합대학교 설립
	석사과정 4학기	2년
	박사과정	2-4년

6) 언 론

① 일반 현황

전국에 약 450개 이상의 언론매체 및 563종의 인쇄매체(일간·주간·월간지 포함)가 발행되며, 국영 베트남TV(전국방송)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방송국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모든 언론매체는 공산당(인민일보), 행정부(내무부, 외교부, 문화공보부 등 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성, 시 등), 사회단체(조국전선, 노총, 청년동맹, 여성동맹)에서 발행한다.

국내언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언론국)에서 인허가, 검열 등 업무를 관장하고 외신에 대해서는 외교부 공보국과 Foreign Press Center에서 사증발급, 취재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¹⁶⁵⁾ 2011년 2월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포고령이 발효하여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¹⁶⁶⁾

② 주요 매체

주요매체	현 황
통 신	Vietnam News Agency. 국영통신으로 세계 21개국에 특파원 파견
방 송	Voice of Vietnam. 국영 라디오로 5개 채널을 통해 전국 방송
	베트남TV. 국영 방송으로 6개 채널을 가진 베트남 유일의 전국 방송
	VTC. 11채널을 가진 베트남 디지털 방송

165) 그 외에 공산당 정치국에 소속되어 있는 언론인협회(1950년 창립, 회원 8,300명)가 전국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언론인들의 권익과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함.

166) 포고령은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기자나 편집인에게 최고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정보를 언론에 공개한 경우 최고 2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 1990년에 제정된 베트남 언론법은 언론인들이 정보 제공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도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음.

주요매체	현 황
	하노이TV. 하노이 인민위원회와 문공부 운영, 하노이와 북부 12 개성에 방송
신 문	인민일보(Nhan Dan). 공산당 기관지로 최대 권위지(일간)
	인민군보(Quan Doi Nhan Dan). 국방부 기관지로 3대 일간지의 하나
	새하노이(Hanoi Moi). 하노이 인민위원회가 발행. 3대 일간지의 하나
	노동(Lao Dong). 노동총연맹 기관지로 주요 경제일간지. 노동관계 기사를 노동문제를 주로 취급
	Vietnam News. 국영통신사 발행, 유일한 중앙 영자 일간지
	Vietnam Investment Review. 투자계획부 발행, 경제전문 영자 주간지
	Vietnam Economic News. 무역부 발행, 경제전문 영자 주간지

<출처 외교통상부 베트남 개황, 2010.10>

3. 캄보디아의 정치, 사회, 문화

(1) 캄보디아의 정치¹⁶⁷⁾

1993년 신헌법에 의한 입헌군주국이 된 이후 1993년 5월, 1998년 7월, 2003년 7월, 2008년 7월 총 4차례의 총선이 실시되어 제1기에서 제4기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167) <http://www.asean.fta.govt.nz/cambodia-political-situation> 참조

1) 제4기 현 정부의 출범

① 현 정부는 2008년 7월 실시된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소속된 캄보디아 국민당(CCP)으로 의회 전체 123석의 의석 중 90석을 차지하였다. ② 총선 이후 구성된 제4기 정부는 지난 제3기 정부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을 착수하여 지속적인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③ 최근 평균10%에 이르는 경제성장을 통한 국내안정과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부패척결, 사법제도 개혁, 행정 개혁, 국방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¹⁶⁸⁾

① 2004년 7월부터 향후 4년간 부패퇴치 및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과 빈곤감축을 추진한다는 전략으로, 부패 척결, 사법제도 개혁, 행정 개혁, 국방제도 개혁 등 4개 분야에 개선된 국정체제 확립을 내용으로 한다. ② 농업분야 강화, 민간부문 개발 및 고용 창출, 인프라 복구 및 부흥, 역량 강화 및 인적자원 개발부분을 사각전략의 성장 사각(Growth Rectangle)으로 지정하였다.

(2) 캄보디아의 경제

1) 현 황

① 적극적인 외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발전 및 정국안정에 힘입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1%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2008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7%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② 캄보디아 정부는 WTO 가입(2004.9)을 계기로 총 46개에 달하는 국내법을 WTO 규범에 맞추어 개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향

168)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IMPLEMENTING THE RECTANGULAR STRATEGY and DEVELOPMENT ASSISTANCE NEEDS, 2004.11, 참조.

후 투자환경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의 비효율성, 공무원들의 부패 등이 외국인 투자 유치의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다.

2) 경제정책

① 제4기 정부(2008-2013년)는 제3기 정부가 추진하던 사각전략의 제2단계를 발표하여 구체적인 이행을 추진하고,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캄보디아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② 경제성장을 위한 분야별 우선해결 과제로 농업분야 강화를 위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다양성 강화, 토지개혁 및 지뢰제거, 수산업분야 개혁, 임업분야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¹⁶⁹⁾ ③ 경제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운송 인프라 건설 및 개선, 수자원 관리 개선 및 관개시설 확충, 에너지 분야 발전, 정보 통신 기술 발전을 추진 중이다. ④ 민간분야 발전 및 고용 창출을 위해 민간분야 역량강화 및 투자 유치 확대, 고용 창출 및 노동환경 개선, 중소기업 육성, 사회보장 제도 확충을 추진 중이다. ⑤ 국가역량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교육의 질 향상, 보건 서비스 개선, 양성 평등 정책 이행,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이행을 추진 중이다. ⑥ 특히 캄보디아는 농업을 기반산업으로 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소규모의 노동집약적인 봉제, 의류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¹⁷⁰⁾

3) 최근 동향

①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과 개혁을 통한 정국안정의 영향으로 매년 10%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고, 농업, 물 및 관계시스템, 운수인프라, 전력, 인재육성, 관광, 천연자원개발, 정보통신, 무역, 수출주도형산업 등 10개분야에 대한 경제발전을 추진 중

169) 특히 농업분야의 성장과 개발이 중요한데 이에 관하여는 Toshio Kondo, Approach Paper for a Sector Assistance Program Evaluation for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ector in Cambodia, 아시아개발은행, 2009.3 보고서를 참고.

170) Sophal Ear, Sowing and Sewing Growth: The Political Economy of Rice and Garments in Cambodia, 2009.3, Stanford University, p. 1-2.

이다. ② 경제성장으로 빈곤층이 감소하고 있으나 부패문제와 함께 여전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¹⁷¹⁾

(3) 캄보디아의 사회, 문화

1) 구성원

① 인 구

2010년 기준 인구는 1,470만명, 인구밀도는 1km²당 75명이다. 인구의 약 90%가 크메르족이며, 그 외에 참족(이슬람교 신봉), 중국계, 베트남계. 중국계는 상업분야에 많이 진출하였고, 크메르족은 주로 농업, 참족 및 베트남계는 어업에 주로 종사한다.

② 국민성과 종교

캄보디아인은 외견상 친절하지만 타민족에 대한 배타심이 있다. 헌법에서 불교를 국교로 규정하고 있고, 전 국민의 약 95%가 불교(소승 불교)신자이지만,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이슬람교 3%, 기독교 2%)하고 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원은 캄보디아 국민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육 및 사회활동 장소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2) 생활 및 치안¹⁷²⁾

① 캄보디아의 치안상태는 과거보다 많이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 치안이 불안한 상태로 납치사건과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등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②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이 없고, 최근 택

171) World Bank, Sustaining Rapid Growth in a Challenging Environment: Cambodia Country Economic Memorandum, 2009.

172)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주캄보디아대사관 홈페이지(<http://khm.mofat.go.kr/kor/as/khm/main/index.jsp>) 참고.

시를 운행하기 시작했으며, 툽툽(이륜거를 연결한 오토바이), 모토둑(오토바이) 또는 씨클로(자전거를 개조하여 만든 달구지)를 이용한다. ③ 의료수준 낙후 및 의료시설 미비로 인해 간단한 질병 외에는 방콕 등 인근 국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3) 교육제도¹⁷³⁾

① 교육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크메르루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1979년 크메르루즈의 붕괴 이후 다시 재건되고 있는 상황이다. ② 교육시설, 교사, 교육매체가 모두 부족하며, 프놈펜의 경우는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의 경우는 매우 열악하다. 초등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중·고등교육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③ 교육제도는 1996년부터 우리와 같은 6-3-3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까지 9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등학교 취학율이 10%미만으로 고등교육이 매우 낮은 편이다. ④ 공립학교가 대부분이나 최근 사립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은 종합대학인 프놈펜왕립대학이 있으며, 왕립법률경제대학, 국립경영대학 등이 있다. 그 외 우리나라의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Faculty가 법률, 경영, 의학, 약학, 공학 등 각 분야별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규모가 작고 시설이 열악하다.

제 5 절 중앙아시아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1. 중앙아시아의 개관

소련시기의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 민족 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방

173) World Bank, CAMBODIA HIGHER EDUCATION QUALITY AND CAPACITY IMPROVEMENT PROJECT, (2011/3)

공화국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¹⁷⁴⁾ 그 후 1991년 소연방 해체로 중앙아시아 5개국은 독립을 획득하여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다.

[그림 1] 중앙아시아 지도



출처: <http://centralasianpeoples.imb.org/map.htm>

소련 해체 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 이들 국가들은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여 왔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하나로 크게 묶어서 논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전반에 대한 현황을 소개함과 동시에 이들 국가 중 가장 대표적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점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중앙아시아는 농업생산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소연방 시절부터 곡물과 목화 등을 생산하는 주요한 농업 국가였다.¹⁷⁵⁾ 천연

174) 중앙아시아는 넓은 의미의 중앙아시아와 좁은 의미의 중앙아시아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중앙아시아는 동쪽으로 카스피해, 서쪽으로는 중국의 신강위구르 자치구와 내몽골자치구를 포함하며, 남쪽으로는 알타이 산맥에서 서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최한우, 중앙아시아 연구(상), 펴내기, 2006년, 21면 이하 참조).

목장과 광활한 초원이 있어 대규모의 목축업 발달되어 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을 포함하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2000년부터 천연자원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눈부신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장기간 소연방에 소속되어 있었던 이유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장기간 소외되었으며, 그 후 소연방 해체 후에야 비로소 독립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교류와 협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¹⁷⁶⁾

현재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정학적 가치 면에서의 중요성, 천연자원의 보고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잠재적 시장으로서 경제적 가치 면에서의 중요성이 인정되어¹⁷⁷⁾ 러시아, 인도, 터키, 중국 등 주변국과 미국, 일본, 인도 등 강대국의 각축의 장으로 전변되었다.

아래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에 앞서 국가별 일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카자흐스탄은 272만 4900km의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아스타나(Astana)라는 도시가 수도이다. 넓은 국토에 비하여 인구는 적고, 겨우 1,580만 명이 거주한다. 카자흐계 주민이 63.1%, 러시아계 주민이 23.7%, 우즈베크계 주민이 2.9%, 우크라이나계 주민이 2.1%, 위구르계 주민이 1.4%, 카타르계 주민 1.3%, 독일계 주민 1.1% 등으로 구성된다. 카자흐어가 국어이며, 공용어로 러시아어도 사용된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제일 많다.¹⁷⁸⁾

175)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세계 11대 밀 생산국이며,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6대 면화 생산국으로 세계 주요 농업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176) 박상남, 경제진출에 따른 문화장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연구 제16호, 2003년, 53면 이하 참조.

177) 박정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 비교, 중앙아시아 정치·사회·역사·문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2009년 57면 이하 참조.

178)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kazakhstan/data.html>(2011.10.5.)

우즈베키스탄은 44만 7,400km의 국토를 가지며 타슈켄트(Tashkent)라는 도시가 수도이다. 우즈베키스탄에는 2,78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민족별로 보면 우즈베크계 78.4%, 러시아계 4.6%, 타지크계 4.8%, 타타르계 1.2%로 구성된다. 우즈베크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러시아어도 사용된다. 종교는 이슬람교 수니파가 제일 많다.¹⁷⁹⁾

타지키스탄은 약 14만 3,100km의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 두산베(Dushanbe)라는 도시가 수도이다. 타지키스탄공화국에는 710만 명이 거주하여 민족별 구성을 보면 타지크계 주민이 79.9%, 우즈베크계 주민이 17.0%, 키르기스계 주민이 1.3%, 러시아계 주민이 1.0%, 그리고 기타 민족 0.8%로 구성된다. 타지크어가 공용어이며 러시아어도 국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된다. 종교는 이슬람교 수니파가 제일 많다.¹⁸⁰⁾

키르기스스탄은 19만 8,500km의 국토를 가지며 비슈케크(Bishk)라는 도시가 수도이다. 키르기스스탄에는 56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키르기스계 주민이 75%, 우즈베크계 주민이 14.3%, 러시아계 주민이 7.2%, 동간계 주민이 1.1%, 우크라이나계 주민이 0.3% 가타 위구르계 주민이나 타타르계 주민으로 구성된다. 키르기스어가 국어이며 러시아어는 공용어로 사용된다. 종교는 이슬람교 수니파가 제일 많다.¹⁸¹⁾

투르크메니스탄은 48만 8,000km의 국토를 가지며 아스가바트(Ashgabat)라는 도시가 수도이다. 투르크메니스탄에는 5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투르크멘계 주민이 81%, 우즈베크계 주민이 9%, 러시아계 주민이 3.5%, 카자흐계 주민이 1.9% 등으로 구성된다. 투르크멘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며 러시아어도 일반생활에서 사용된다. 종교는 이슬람교 수니파가 제일 많다.¹⁸²⁾

179)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uzbekistan/data.html> (2011.10.5.)

180)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tajikistan/data.html> (2011.10.5.)

181)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kyrgyz/data.html> (2011.10.5.)

182)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turkmenistan/data.html> (2011.10.5.)

위에서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기초데이터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중앙아시아 각국의 기초데이터를 보면 구소련시대에 러시아어가 사용되어서 그런지 러시아어가 널리 사용되고 이슬람교 수니파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카자흐스탄의 사회·정치·경제

(1) 카자흐스탄이 주목 받는 이유

1) 지정학적 중요성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이다.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몽골, 중국과 경계를 두고 있다. 서남쪽에는 카스피해를 접하고 있어 바다를 통해 아제르바이잔, 이란과의 교통로도 연결되어 있다.¹⁸³⁾

2) 전략적 중요성

카자흐스탄의 에너지자원 확보와 지역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둘러싼 강대국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복잡하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경제통합을 통해 러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해당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미국은 9.11테러 이후 이슬람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하여 패권경쟁을 추진해왔으며,¹⁸⁴⁾ 중국은 에너지자원 확보와 신강 위그르자치구의

183) 김화년, 정호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와 투자 환경 변화, 중앙아시아 정치·사회·역사·문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2009년, 1면 이하 참조.

184) 이홍섭,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미-러 관계: 에너지자원과 9.11테러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0권 제2호, 2006년 127면 이하 참조.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하이무역조직을 통하여 영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3) 경제발전 가능성

카자흐스탄은 2000년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확대, 산업다각화 정책으로 인해 높은 경제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⁸⁵⁾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을 실현하고, 국민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2) 카자흐스탄의 정치제도

1) 헌법과 통치구조

1995년 8월 30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채택된 신헌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대통령 중심의 의회민주주의공화국이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최고의 직무수행자로서 국가 대내외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국내외 외교관계에서 카자흐스탄을 대표하고, 또한 국민의 일체성과 국가의 권력,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모든 국가권력기관의 조화로운 기능과 인민에 대한 권력기구들의 책임성을 제공하고 있다.

185) 2011년 12월 1일 아스타나에서 열린 “카자흐스탄 국가경제 발전: 독립 20주년과 새로운 임무”를 주제로 열린 경제포럼에서, 카림 마시모프 총리는 “2010년 전체 경제성장률이 7%였던 반면, 2011년에는 10개월 만에 7%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후가 되면 11월 경제지표 결과가 나온다.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행보를 본다면, 올해에는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포럼에서 카자흐스탄이 독립 초기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독립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강조했다(카자흐스탄, 경제성장 정세기에 서 벗어나(Қазақстан экономикалық дамудың тұрақты кезеңіне өтті), Kazakhstan Today, 2011.12.01. CAF 중앙아시아포럼 번역문 재인용, <http://caf.kiep.go.kr>, 2011.12.26.).

국가정권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며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입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정부 및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고, 사법부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화국 정부는 대통령, 총리, 부총리, 정부판공실주임, 행정 각 부의장,¹⁸⁶⁾ 국가위원회 주석으로 구성되며,¹⁸⁷⁾ 정부는 국가의 사회경제정책, 국방, 안보와 사회보장질서에 관한 기본적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며,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또한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정책을 확립하며, 입법권을 행사한다.¹⁸⁸⁾

의회는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카자흐스탄의 최고대표기관으로 상원과 하원(Mazhilis) 양원제로 되어 있고,¹⁸⁹⁾ 상원은 카자흐스탄 각 주와 공화국 직할시, 수도¹⁹⁰⁾에서 각각 2명씩 선출되며, 그 외 7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바 상원의석은 총 39석이고, 임기는 6년이다.¹⁹¹⁾ 하원은 보통·평등·직접선거에 의해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선출되며, 하원의석은 총 107석이며, 임기는 5년이다. 의회는 헌법 개정·보완, 법률안의 제정·개정, 국제조약의 비준·폐지 등 입법에 관한 권한, 예산안 심의·승인·변경, 조세 및 세율 결정 등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186) 행정부에는 농업부, 문화·정보부, 국방부, 경제예산계획부, 교육과학부, 비상상황부, 에너지광물자원부, 환경보호부, 재정부, 외무부, 보건부, 산업통신부, 내무부, 법무부, 노동·사회보호부, 관광·체육부, 교통·통신부 등 17개 부처가 있다.

187) 정부법 제35조의 내용 참조.

188) 공화국 권한에 대한 제한: 공화국정부 구성원은 대표기관의 대표로 겸임할 수 없으며, 교원, 과학연구 또는 기타 창조성 활동을 제외한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경영활동, 상업과 관련한 기관단체 또는 감사회 등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정부법 제8조의 내용 참조).

189) 카자흐스탄 헌법 제50조 내용 참조.

190) 공화국 직할시와 수도를 특별시라고도 하는데 이에에는 아스타나, 알마티가 있다.

191) 상원은 3년마다 상원의원의 1/2을 재선출하며 임기종료 두 달 전에 선출한다(헌법 제51조 2의 내용 참조).

사법부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주법원 및 2개 특별시에 설치된 시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¹⁹²⁾ 대법원은 민사, 형사 및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하여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법률에 명시된 사법 절차에 대한 감독과 판결에 대한 해석을 한다.

2) 권위주의 정치체제

1991년 독립 시 카자흐스탄지역의 공산당 제1서기인 나자르바예프가 의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엘리트들은 특유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발전시켰는데 현지인들은 이를 벨벳 권위주의로 정의한다.¹⁹³⁾ 따라서 1995년 카자흐스탄공화국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의 독재체제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헌법 제42조 5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인이 3회 이상 연속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으나 초대대통령은 제외된다. 2011년 1월 14일 카자흐스탄 의회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2012년, 2017년 대선을 치르지 않고 2020년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국민투표 실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나제르바예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퇴임 후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국가지도자법을 채택함으로써 대통령과 대통령가족에 대한 특권을 입법화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정치는 여전히 강력한 대통령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통령은 정치엘리트¹⁹⁴⁾에게 국가자원에 접근할 수

192) 주법원의 하위 법원으로는 군법원이 있고, 시법원의 하위법원으로는 구법원이 있다. 이하 주법원과 시법원을 지방법원으로 칭한다.

193) 벨벳 권위주의는 대통령 독재제도를 은유하는 표현이라고 한다(윤성석, 카자흐스탄 이중전환의 정치경제, 세계지역 연구논총 제15집, 2000년, 235면 이하 참조).

194) 정치적 엘리트는 혈연과 지역에 제한되지 아니하며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Neil Melvin(2001), "Patterns of Centre-Regional Relations in Central Asia: The Cases of Kazakhstan, the Kyrgyz Republic and Uzbekistan," Regional & Federal Studies, Vol. 11, No. 3, pp.173~174).

있도록 후원해주는 반면에 이들의 충성과 지지를 얻어내는 ‘후원주의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¹⁹⁵⁾ 특히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민영화, 증권시장 현대화, 에너지 개발 및 수출에 있어서 새로 창출되는 경제적 부를 장악한 대통령과 정치엘리트층의 권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반면에, 국민들의 삶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3)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정치문화

카자흐스탄은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가장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민주화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이며, 시민의 반정부적 저항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였다.¹⁹⁶⁾

소연방시기 중앙집권체제의 잔재로 인해 갑작스러운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은 정치권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체제변화에 따른 사회변동을 두려워하거나 민주주의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사회주의 체제하의 중앙집권제와 공동체적 문화가 정치문화의 근간을 이루는바 민주화의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⁹⁷⁾

(3) 카자흐스탄의 경제제도

1) 산업구조

소연방 해체 이후 독립한 카자흐스탄은 소연방이 남겨 놓은 산업구

195) 이재영, 고재남, 박상남, 이지은, 카자흐스탄 정치 엘리트와 권력구조 연구, 전략지역심층연구 09-03, 대외정책연구원, 2009년, 27면 이하 참조.

196) Kathleen Collins, 2005, “When Do Clans Survive and Destabilize Politics? Exploring Positive and Negative Political Trajectories in Clan-Based Societies, APSA Convention Paper September,” No 3.

197) 성동기, 최준영, 조진완, 중앙아시아 개발독재의 패러독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례의 다면적 분석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제34권 제2호, 2010년, 231-232면 이하 참조.

조의 유산으로 인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농업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2000년 이후에는 자원가격 상승과 경제개발 정책에 힘입어 연평균 10% 전후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으나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은 국내 산업발전 보다는 에너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GDP 구성요소를 통해 본 산업구조는 다음과 같다.¹⁹⁸⁾

- 석유, 가스분야 중심의 산업구조
- 제조부문 중 광물가공업 기반은 견실한 편이나 소비재, 자본재 등은 수입에 의존
- GDP 대비 농업비중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나 최근 곡물가격 상승으로 중요성 부각
- 금융부문 및 건설부문 성장세는 국제 금융시장 경색으로 당분간 침체 전망

2) 한국과의 경제협력

1992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수교 이후 경제교류 및 협력이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수출입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주요 수출 품목은 합성수지, 자동차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합금철선, 고철, 철강판, 동제품 등 광산품 등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¹⁹⁹⁾ 무역협회 국가무역통계포털의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교역량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이후 한국의 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에 대한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²⁰⁰⁾

198) 그 외에도 상위 50대 기업을 통해 본 산업구조는 금융산업이 30%, 제조업 14%, 석유 및 가스관련 산업이 1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악투러스 [Arcturus], <http://bizkhan.tistory.com>, 2011.10.3.).

199) 세계국가편람, 2009년 통계자료 참조.

200) 무역협회 홈페이지 내용 참조([www. stat. kita.net](http://www.stat.kita.net)).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300개 이상의 한국자본 참여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48개가 합작기업, 62개가 대표부임. 주로 IT, 버스 생산, 석유가스, 화학 산업용 장비 생산, 가전제품 등이 있다.

2004년 9월에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양국 협력에 관한 문제들과 현안문제, 특히 무역투자협력의 확대, 카스피해 에너지 공동개발, 중소기업들 간 교류 활성화, 건축자재 및 농산물 가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6년 9월에는 광구 공동개발을 포함한 일련의 양자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카자흐스탄 한국: 새로운 협력 전망’이라는 주제의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2010년 4월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는 우라늄 공동개발,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 공동연구, 쿨릭 항만개발협력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중앙아시아의 광물자원 개발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아직까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경제협력 및 에너지협력은 다소 못 미치나 에너지 확보 및 잠재적 수출시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향후 양국은 상호협력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카자흐스탄의 사회 및 문화질서

1) 사회 전반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은 독립 후 초대 대통령으로 장기 집권하고 있는 카자흐인 나자르바예프이다. 그는 공산당 간부 출신으로서 소련 붕괴 후 개방적인 개혁정책을 추진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비교적 높으며, 정부는 반러시아 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족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예컨대, 카자흐인들과 러시아인들과의 공존을 강조하며 이러한 공존이 국가의 발전 및 민족단합에 유익하다는 것을 카자흐인들에게 설득하고 있다.²⁰¹⁾

카자흐인들은 유목민의 습성을 갖고 있으나 최근에는 경제발전으로 인해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인구집중현상으로 인해 주거환경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민족 간의 마찰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2) 인구 및 민족구성

카자흐스탄 인구는 2010년 10월 기준으로 1,603만 명이다.²⁰²⁾ 카자흐스탄의 주민은 카자흐인이 53.4%, 러시아인이 30%, 우크라이나인 3.7%, 우즈베크인 2.5%, 독일인 2.4%를 차지하고 있다. 독립 전에는 소련방의 민족정책에 따라 러시아인들의 이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인구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으나,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인의 인구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몽골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카자흐인을 대거 카자흐스탄 영토 내로 이주시켰다.²⁰³⁾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농촌(43%)보다는 도시(57%)에 더 집중되어 있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고 한다.

3) 언 어

카자흐스탄의 공식어는 카자흐어이며, 러시아는 민족 소통의 언어로써 공식어와 마찬가지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다른 언어와 달리 카자흐어는 자체 방언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단일화 되어있다.²⁰⁴⁾

201) 최한우, 중앙아시아 연구(하), 펴내기, 2006년, 75면 이하 참조.

202)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2011년 카자흐스탄 개관 및 생활 안내의 내용 참조.

203) 카자흐스탄의 민족이동에 관련한 내용은 http://www.junim.pe.kr/koica/prepare/kaza_k2.htm의 내용 참조(2011.12.26. 방문).

204) 최한우, 앞의 책, 56면 이하 참조.

4) 문화와 종교

카자흐스탄의 문화는 튀르크족이라는 민족적 근간 위에 이슬람의 종교적 영향과 소연방시기 사회주의체제하의 영향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왔다.

독립 전 사회주의체제하에 신앙생활이 철저히 통제되었으며, 독립 후 카자흐스탄 사회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체제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비하여 정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슬람을 민족 종교로 부상시키려는 일부의 정치적 노력이 보였다.²⁰⁵⁾

5) 교육제도

카자흐스탄의 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율이 낮고, 교육제도가 미비한 것은 낙후한 사회적 인프라, 교육시설의 부족, 여성에 대한 소극적 교육태도, 대학의 도시 집중화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²⁰⁶⁾ 카자흐스탄 국민에 대해 교육은 무료나 대학교육에 대해 외국인들의 경우 외국수준에 상당하는 등록금을 받는다.

(5)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카자흐스탄은 소연방에 속해 있었음으로 세계적 경제교류과정에서 장기간 소외되어 있었다. 1991년 소연방 해체로 인해 독립을 획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20년간의 짧은 외교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카자흐스탄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205) 최한우, 앞의 책, 71면 이하 참조.

206) 최한우, 앞의 책, 72면 이하 참조.

은 소연방이 붕괴하면서 외교정책의 방향을 강대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설정하였다.²⁰⁷⁾ 또한 중앙아시아지역 내의 정치, 문화, 경제, 안보, 국경, 테러, 마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역내 협력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카자흐스탄의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러시아, 중국, 미국 등 강대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일본, 터키, 인도, 한국 등 자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하도록 아시아 기타 국가들과도 활발한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왔다.²⁰⁸⁾

(6) 민주화 동향

카자흐스탄은 독립 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 민주주의 정치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이중전환을 시도하였으나 시장경제체로의 전환지수에 비해 정치의 민주주의지수가 현저히 낮다. 헌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선거를 시행오고 있으나 대통령의 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장기집권이 지속되고 대통령의 권력과 권위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민주화의 실현은 매우 장기적인 과제로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제적 권력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권력엘리트의 설득을 통한 민주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²⁰⁹⁾ 그러나 권력엘리트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지라도 정치권력의 형식적인 제도화나 민주적 경합을 가져다주지는 못할 것이므로 민주적 정권교체로 정의될 수는 없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다.²¹⁰⁾

207) 이경희, 중앙아시아 에너지에 대한 지정학과 주변국간 국제정치·경제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년 2월, 8면 이하 참조.

208) 이재영, 고재남, 박상남, 이지은 앞의 연구보고서, 77면 이하 참조.

209) 김화년, 정호성 외 9명, 중앙아시아 경제·에너지·환경, 대회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2, 2009년, 120면 이하 참조.

210) 반면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권위주의적 요소와 민주적 요소가 혼합된 합성체

3. 우즈베키스탄의 사회·정치·경제

(1) 우즈베키스탄이 주목 받는 이유

1) 지정학적 중요성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 가장 많은 인구와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지역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내륙교통의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륙국가로서 해상 교통로가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다.²¹¹⁾

2) 에너지확보의 중요성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석유, 석탄, 및 가스 응축물 광상으로 구성된 에너지 및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새로운 자원 확보를 위한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충당할 수 있다.

3) 경제발전의 중요성

우즈베키스탄은 개방정책의 지속적 수행을 통해 2004년 이후 평균 7%를 초과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중앙아시아지역의 최대 소비시장이자, 우라늄과 금, 구리 등 광물자원의 보고로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²¹²⁾

또한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 상당한 수준의 농업 생산력 등 실질적인

제적 성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로 이행해 가고 있는 불어나전 상태가 아니라 유사 민주주의로서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Heinemann-Grüder/Haberstock 2007, 138).

211) 박정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 비교 연구, 중앙아시아 정치·사회·역사·문화,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년, 81면 이하 참조.

212) 배성준, 중앙아시아의 자원을 확보하라, Y수 신문기사 내용 참조(http://www.ytn.co.kr/_ln/0102_200805290245390983, 2011.12.27.).

경제발전에 필요한 잠재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1992년 우즈베키스탄과의 수교 이후 1994년 자동차, 1996년 섬유산업 그리고 건설, 전자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제도

1) 헌법과 통치구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헌법이나 인권, 영토의 불가침성을 보장한다. 공화국 정부는 국가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총리, 부총리, 장관, 국가위원회 위원장 및 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으로 구성된다.²¹³⁾ 입법기관인 의회는 “Oliy Majlis”이라고 불리는데, 독립 초기에는 단원제를 채택하였으나 현재는 상원(The Senate)과 하원(The Legislative Chamber)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원의원은 선거구 선거로 선출되며, 상원의원은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임명된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겸직할 수는 없다.

사법부는 공화국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경제법원, 카라칼파크스탄공화국 대법원, 카라칼파크스탄 경제법원, 주법원, 타슈켄트시 법원, 지구(地區) 법원, 시(市) 법원 및 시 경제법원으로 구성된다.²¹⁴⁾ 법관의 임기는 각각 5년이다.

2) 카라칼파크스탄공화국

우즈베키스탄 내부에 카라칼파크스탄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자치공화국이 존재한다. 카라칼파크스탄은 우즈베키스탄 북서부에 위치하여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공화국과 인접하며, 북부는 아랄해와 인접해

213) 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은 주권국가로서 우즈베키스탄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은 우즈베키스탄의 보호를 받는다. 본 공화국은 자국의 헌법, 국기, 문장 및 국가도 가진다(헌법 제70조, 제98조 제1항의 내용 참조).

214) 헌법 제107조의 내용 참조.

있다. 면적은 165,000km²이며 인구는 150만 명이상이며, 인구의 구성의 33%가 카라칼파크인, 33%가 우즈베크인, 26%가 카자흐인, 기타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타탈인, 투르크멘인, 고려인 등으로 구성된다.²¹⁵⁾

카라칼팍스탄공은 독자적인 헌법, 국기, 국장, 국가와 국회 및 내각을 가지고 있으며, 카라칼파크어와 우즈베크어를 공용어로 한다.²¹⁶⁾

3) 공고화된 권위주의

Freedom House의 ‘민주주의 점수’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등의 국가와 더불어 가장 비민주적인 공고화된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²¹⁷⁾ 1991년에 취임한 카리모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장기 집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투표를 활용하여 임기를 연장하고, 3선 연임을 넘어 종신 대통령제를 확립하였다.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방식과 비민주적인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으나 중앙집권세력은 보다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크 무슬림의 근대화운동을 주도한 자디드와 최근에 발생한 안디잔사건과 같이 저항운동을 시도한 경험이 있으나 위의 사건들이 모두 실패하고 오히려 시민들의 힘으로 저항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는 평가도 있다.²¹⁸⁾

우즈베키스탄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정치문화는 카자흐스탄과 거의 유사하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215) ジュリボイ・エルタザロフ 『ソビエト後の中央アジア - 文化、歴史、言語の諸問題』(大阪大学出版会、2010年)207頁 参照。

216) ジュリボイ・エルタザロフ、앞의 책, 같은 면 참조.

217) Freedom House, Nationsin Transit 2009, <http://www.freedomhouse.org/template.cfm?page=485> 참조.

218) 성동기, 최준영, 조진완, 앞의 논문, 229면 이하 참조.

(3)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제도

1) 산업구조

우즈베키스탄의 주된 산업은 면섬유산업, 식품가공, 기계제작, 금,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다. 2010년 국내총생산(GDP)은 UZS 61,831.20 억불로 38.987억 달러에 달하며, 1인당 GDP는 UZS 25,292.08불로 1,380달러에 달하며, 경제성장률은 8.5%이다.²¹⁹⁾ 우즈베키스탄의 부문별 경제성장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발전은 금, 면화, 석유 등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산업의 발전이 미비하고, 사회적·산업적 인프라가 미비한 현황이다.

다음은 GDP 구성요소를 통해 산업구조이다.

o 에너지 연료(Fuel)와 기계, 면화분야 중심의 산업구조(각각 19.2%, 16.2%, 13%를 차지한다)

o GDP 대비 면화와 농업비중이 점차 축소

o 석유화학, 비철금속, 전력산업이 급속히 발전

그러나 수출품목별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에너지 연료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23.1%를 차지하고, 면화의 수출은 27.5%를 차지하고, 수입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기계와 장비류이며, 다음으로 화학제품과 식품으로 나타나고 있다.²²⁰⁾

2) 정부의 경제정책

카자흐스탄의 경우 급진적인 경제개혁정책을 채택한 반면에 우즈베키스탄은 국가주도형의 점진적인 경제개혁정책을 채택하였다. 소련의 계획경제체제의 붕괴에 따라 정치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독

219) Uzbekistan GDP - real growth rate, <http://www.indexmundi.com/g/g.aspx?c=uz&v=66> (2011.10.2.).

220) Economic Indicators for Uzbekistan 2010, [http://www.economywatch.com/economic-statistics/country/Uzbekistan\(2011.10.14.\)](http://www.economywatch.com/economic-statistics/country/Uzbekistan(2011.10.14.)).

립이 필요하였고, 정부는 자국의 산업구조와 인구분포, 산업인프라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국가주도형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갔다.²²¹⁾

우즈베키스탄은 주요산업인 농업부분을 중점으로 발전시키고, 산업인프라가 미비한 제조업분야를 육성하는 발전모델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기타 국가들에 비해 폐쇄적인 점진적 경제개방정책의 이행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유치가 쉽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공정경쟁규제의 도입과 전면적인 경제개혁 등을 권고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World Bank, IFC, IDB 등 국제기구들은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을 제공하고, 투자환경의 개선과 시장경제의 제도화, 공공분야 프로젝트와 전문 인력의 개발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²²²⁾

3) 한국과의 경제협력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 가장 우호적이며, 한국을 중요한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로 간주하고 증권, 에너지 개발, 자동차, 섬유,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2011년 8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하였으며, 양국은 상호관심사인 지역문제와 국제정체 현안문제들에 관해 협의를 달성하였다. 경제분야와 관련하여 “수르길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 중앙아시아 물류허브 21세기 신 실크로드 재건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나보이 프로젝트”²²³⁾ 추진, 에너지자

221) 강명구,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가발전전략, 신범식 역음,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한울 아카데미, 2006년, 332면 이하 참조.

222) 김상욱,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투자정책 연구, 한신대학교 국제평화인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년, 22면 이하 참조.

223) 나보이 프로젝트는 나보이지역에 경제특구를 설립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 기지로 세계적인 공동 화물망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이재영, 우즈베키스탄-한국의 경제투자 협력에 관한 토의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년, 3면 이하

원, 금융, 인프라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국가건설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국내 건설업체들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²²⁴⁾

향후 양국의 투자협력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자원의 개발사업과 자동차, 섬유 제조업을 핵심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는 자국의 중점산업을 육성시키고자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및 에너지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한국의 외교정책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4) 한국과의 경제협력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 가장 우호적이며, 한국을 중요한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로 간주하고 증권, 에너지 개발, 자동차, 섬유,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2011년 8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하였으며, 양국은 상호관심사인 지역문제와 국제정체 현안문제들에 관해 협의를 달성하였다. 경제분야와 관련하여 “수르길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 중앙아시아 물류허브 21세기 신 실�크로드 재건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나보이 프로젝트”²²⁵⁾ 추진, 에너지자원, 금융, 인프라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국가건설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국내 건설업체들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²²⁶⁾

참조).

224) 건설부문에 있어서 주로 도시 정비 사업, 고속도로 건설, 주택단지 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225) 나보이 프로젝트는 나보이지역에 경제특구를 설립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 기지로 세계적인 공동 화물망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이재영, 우즈베키스탄-한국의 경제투자 협력에 관한 토의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3면 이하 참조).

226) 건설부문에 있어서 주로 도시 정비 사업, 고속도로 건설, 주택단지 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 양국은 투자협력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가장 유망한 협력 분야는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운송업, 섬유식품의 제조업으로 추측된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자국의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시키고자하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정책과 에너지자원 확보, 잠재적 해외시장 개발을 위한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정책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4) 우즈베키스탄의 사회 및 문화질서

1) 사회전반

우즈베키스탄은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과 문학가, 시인을 배출하였다. 우즈베크인들 사이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는 시인들이 많다.²²⁷⁾

또한 전통적인 농업사회로 대가족 단위로 모여 살며, 가부장적 사회, 남아 선호사상이 민족의식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2) 인구 및 민족구성

우즈베키스탄 인구는 2009년 통계로 2760만 6000명이며, 130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인구의 80%가 이 나라의 원주민인 튀르크계 우즈베크인들이고, 러시아인이 5.5%, 카자흐인 3%, 타타르인 5%, 카라칼팍인이 2%, 고려인이 1%를 차지한다.²²⁸⁾

3) 언 어

우즈베키스탄의 공식어는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가 공용어나, 독립 후 정부는 우즈베크어만을 공용어로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러시아어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 러시아는

227) 최한우, 앞의 책, 106면 이하 참조.

228) O'zbekiston Respublikasining Hukumat portali, [http://old.gov.uz/uz\(2011.12.27.\)](http://old.gov.uz/uz(2011.12.27.)).

현재 민족 간의 소통언어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우즈베크어는 중국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에서 공용어로 사용하는 위구르어와 함께 동튀르크어군에 속하는 튀르크계이다.²²⁹⁾

4) 문화와 종교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대표적인 문화적 특성으로 이슬람과 투르크, 페루시아를 들 수 있다.²³⁰⁾

우즈베키스탄은 약 90%에 해당하는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 종교를 신봉하는 무슬림들이나 정부는 자국이 이슬람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우즈베크인들은 고대 조로아스터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었다. 아랍 이슬람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따라 8, 9세기 이후에 다른 튀르크계 민족들과 함께 우즈베크인들도 이슬람을 접하게 되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람 문화는 儀禮·慣習의 요소나 외부적 영향이 강한 이슬람 주의가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이데올로기 측면과 행정적 측면에서 이슬람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 전자에서는 이슬람교보다도 오래된 고대종교를 내세우고 이슬람을 제한하려고 한다. 후자에서는 이슬람 신앙을 국가가 관리하면서 이슬람 반체제파를 구속하면서 이슬람을 제한하고 있다.²³¹⁾

다음은 투르크와 페루시아에 대해서 보고자 한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역사적으로 명백한 민족 구분이 안 보였지만 帝政러시아 말기로부터 구소련 초기에 걸쳐서 영역적 경계 획정을 할 때 민족적 구분이 이용되었다. 중앙아시아를 투르크와 페루시아로 두 개로 구분하는 것으로 우즈베크와 타지크를 구분하는 것에 이용되었다.²³²⁾ 그러나 실제로 정주자가 형식적으로 정해진 민족구분과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

229) 최한우, 앞의 책, 97면 이하 참조.

230) 高橋巖根 『ウズベキスタン 民族・歴史・国家』(創土社、2005年) 146-147頁参照.

231) 高橋巖根, 앞의 책, 148면 이하 참조.

232) 高橋巖根, 앞의 책, 149면 이하 참조.

는 민족 구분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경계 설정이 우즈베키스탄의 투르크 화를 완성시켰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한다.²³³⁾

5) 교육제도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은 과거 구소련의 교육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법을 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설립인정과 공립학교의 수업료 징수허가, 산학협력체제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²³⁴⁾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제도는 인적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민족국가임을 인정하여 학생과 부모의 희망 언어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되 주로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로 이루어진다.

기타 사회주의 나라와 같이 9월 2일에 새 학년이 시작된다. 특이한 점은 1년은 4학기로 나뉜다.²³⁵⁾

(5)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우즈베키스탄 헌법에서의 국방 규정은 제26장 제125조에서 규정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군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국가주권 및 영토 보전, 주민의 평화로운 생활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충분한 수준의 군을 유지한다.”²³⁶⁾라고 하고 있으므로, 다시 말하면 우즈베키스탄공화국군은 주로 자위를 위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침략전쟁에 대한 금지 등에 관해서는 명문상 규정이 없다.

1991년의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경감하여 전방위적인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2001년 9월 11일의 미국 테러 이후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국내 공군기지에 미군의 주류를 인정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였지만, 2005년 5월에 일어난 안

233) 高橋巖根, 앞의 책, 150면 이하 참조.

234) 최한우, 앞의 책, 108면 이하 참조.

235) 장원창,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제도와 교과서제도, 인터넷자료 참조(http://cafe.naver.com/uzinves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1&, 2011.10.30.).

236) 헌법 126조의 내용 참조.

디잔 사태 이후에는 서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가 악화하였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강해지고 있다. 2005년 11월에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부터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는 러시아와 동맹관계조약을 체결하여 2006년 1월에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AEC)에 가맹, 동년 6월에는 CIS집단안전보장조약기구(CSTO)에 복귀, 그리고 동년 9년에는 러시아와 반테러 공동군사연습을 하는 등 러시아와 접근하고 있다.²³⁷⁾

(6) 민주화 동향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은 1991년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는 일관해서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동안 한 번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2005년 5월에는 카리모프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지만 무력 진압되었다. 안디잔 사태가 주된 사례이다.

안디잔 사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5월 13일 미명,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동부의 안디잔에서 무장한 집단이 형무소를 수격하여 많은 수인을 해방하였다. 이에 대하여 군과 무장집단이 몇 시간에 걸쳐서 교전상태가 되었다.²³⁸⁾ 무장집단은 시 중신부에 이동하여 안디잔주의 주청사를 점거하였다. 이러한 무장집단의 행동에 유발되고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경제 정체나 민주화,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여 주청사 근처의 광장에서 집회를 시작하였다고 한다.²³⁹⁾ 정부는 13일 저녁에는 무장 세력을 배제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수백 명의 시민이 희생자가 되며, 많은 시민이 국경을 넘어가고 키르기스스탄으로 건너가고 난민이 되었다고 한다.²⁴⁰⁾

237)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uzbekistan/deta.html>, 참조(2011.6.16.).

238) 高橋巖根, 앞의 책, 169면 참조.

239) 高橋巖根, 앞의 책, 같은 면 참조.

240) 高橋巖根, 앞의 책, 같은 면 참조.

많은 시민이 희생자 또는 난민이 되었기 때문에 국제문제로 발전하였다. 미국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민주화를 중시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대하여 개혁 추진 등을 요구하였다. 다른 한편에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침투하는 이슬람 반정부세력에 의한 ‘이슬람 혁명’의 일관이라고 해석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의한 무력진압을 지지하였다.²⁴¹⁾

241) 高橋巖根, 앞의 책, 같은 면 참조.

제 3 장 글로벌전략수립을 위한 지역의 법체계 분석

제 1 절 중동의 법체계

중동국가의 경우(UAE, Saudi Arabia, Qatar)에 이슬람국가로서, 다른 지역의 법률체계와는 다른 이슬람 고유의 법령체계에 의한 법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UAE, Saudi Arabia, Qatar의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이 코란이라고 하는 율법에 의한 Sharia法體系에 의하여 法制를 운영하고 있다.²⁴²⁾ 일반적으로 Sharia라고 불리우는 샤리아법은 이슬람 교리에 근거한 전체적인 法體系를 의미한다.²⁴³⁾ 이러한 샤리아법에는 상거래와 같은 세속적인 法規定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슬람 교리에 근거한 宗教法으로서 만의 性格을 갖지는 않는다.²⁴⁴⁾ 이슬람의 샤리아法은 사회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앙적인 관계마저 규율한다. 이슬람의 Sharia法은 예배, 종교부금, 금식, 순례, 장례, 세징 등 종교적 신행에 대한 규범과 혼인, 상속, 징세, 친자관계, 노예와 자유인, 계약, 매매, 전쟁, 비무슬림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규범

242) 법학자 압둘 와하브의 통계에 의하면, 경전 속에 있는 부분별 관련 구절 수는 신분법이 70개, 채권이나 물권 등의 재산권 등 민사법이 70개, 형사법이 30개, 형사소송법이 13개, 집단이나 개인에 관한 법이 10개, 국제법이 25개, 재정법이 10개 정도로서 샤리아의 사회적 관계법 영역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정수일, 「이슬람문명」(창비, 2010/3), 173면 이하 참조; 이원삼, “이슬람과 대화를 위한 이슬람 사회연구” 「현상과 인식」 제32권제1·2호(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8/5), 93~126면; 최영길, “이슬람, 현대 그리고 개혁” 「서강인문논총」 제23집(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6), 439~452면).

243) 구체적으로 샤리아는 코란학자, 울리마(지식인) 혹은 푸카하(회교도 법관)에 의하여 전승되고 만들어진 神法이다. 샤리아는 4가지 법원으로 구성되는 바, 코란 및 순나가 주요 법원이고, 이즈마(IJMA: 킨센서스) 및 끼야스(유추)는 보조법원이다. (손태우, “아랍 이슬람국가에서의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의 법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1권제2호(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5), 9면 이하 참조).

244) 공일주, 「이슬람율법」(살림, 2010/9), 3면 이하 참조.

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의 현대법률은 주로 인간의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의 체계로 公·私法の의 社會關係만을 規律한다.

따라서 이슬람국가의 샤리아법은 宗教的인 規定을 초월한 一般民事法, 家族法(혼인, 이혼, 상속 등), 刑事法(범죄, 강도, 강간, 중상, 음주 등), 行政法, 商去來法(고리대금, 계약, 증인 등), 國際法 등과 같은 폭넓은 영역에서 적용되는 강력한 一般法으로서의 性格을 갖는다고 하겠다. 하지만, 샤리아법은 상거래의 규제에 있어서 특징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첫째, 이자수수의 금지²⁴⁵⁾, 수익과 위험에 관한 공정한 분배, 비도덕적인 거래에 대한 절대적 금지, 자금축재의 금지, 모든 상거래에 대한 샤리아 위원회의 인증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중동국가의 UAE, Saudi Arabia, Qatar 이슬람국가는 이슬람사회 전체를 규율하고 있는 샤리아법률이 헌법보다 상위의 법률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헌법보다 하위규범이라고도 할 수 없는 특수한 지위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중동의 이슬람국가의 경우라 해서 종교법만 있는 게 아니라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상법, 환경법, 不法行爲法, 勞動法, 건설법, 소송법 등의 법률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지역연구의 기초법제로 UAE, Saudi Arabia, Qatar 憲法에 규정된 각국의 국가형태, 기본권, 통치구조(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같은 법제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245) 꾸란은 정당한 거래를 통한 이득과 상대의 어려움을 이용한 고리대 수익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알라는 장사는 허락하셨지만, 이자취득은 금하셨습니다”는 암소의장을 규정하였다. 이슬람권 은행에서는 은행과 고객이 이익과 손실을 공유한다는 관념에 따라 은행이 투자로 얻은 이익을 고객과 나누어 갖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대부할 때에는 은행이 고객 대신에 상품을 구입하고 수수료를 붙여서 전매하는 방법, 즉 은행이 고객에게 설비와 기재 등을 리스하거나 할부로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한다.(미야자키 마사카츠/이규원(역), 하룻밤에 읽는 중동사, (랜덤하우스, 2008), 148면).

1. 아랍에미레이트

(1) UAE 헌법체계의 관건

UAE는 Abu Dhabi, Dubai, Sharjah, Ajman, Umm Al Quwain, Fujairah의 에미리트로 1971년에 6개의 에미리트로 구성되었고, 1972년 2월 10일에 Ras Al Khaimah가 합류를 함으로써 7개의 에미리트 聯邦國家가 되었다.²⁴⁶⁾ UAE의 헌법서문에는 에미리트 간의 연합을 통하여 더 나은 삶, 더 지속적인 안전성뿐만 아니라 에미리트 국민들과 국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에미리트 국민들의 바램이라고 정하고 있다.

UAE의 현행헌법은 1972년 12월에 잠정적으로 승인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고, 1976년, 1981년, 1986년, 1991년까지 연장하여 오다가 1996년 5월에 영구적인 헌법으로 승인 되었다.²⁴⁷⁾

UAE의 법체계는 연방법과 각 에미리트법으로 구별되고, 그 밖에도 이슬람국가의 특징인 샤리아법²⁴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UAE 법률은 기본적으로 프랑스법, 로마법, 이슬람법인 대륙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2011년 현재 UAE 법률은 아부다비, 두바이의 발전에 따라 국가간의 계약법, 건설법, 투자법 등의 입법화로 英美법인 (Common Law)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UAE의 법률체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혼합된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246) 금상문, “UAE(United Arab Emirates)정치발전과 이슬람” 『중동연구』 제23권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04/7), 57~92면.

247) UAE 연방헌법이 1971년에 잠정적인 헌법인 이유는 두바이, 라스 알 카이마가 연방수준에서 국방과 사법체계를 통합하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1996년에 중재를 하여 비로소 1996년 영구적인 헌법으로 확정되었고, 하지만 두바이와 라스 알 카이마는 경제와 사법체계에서 독자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UAE 헌법은 연방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게 되었고, 각 에미리트의 독자성을 최대한 인정하게 되는 방향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248) UAE에서 샤리아법은 혼인, 이혼, 상속, 자녀 양육권 등 가족문제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2) UAE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UAE 헌법은 아랍 에미리트가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연방국가임을 밝히고 있다(헌법 제1조). UAE 연방의 주된 목적은 주권(Sovereignty)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연방의 안전기준은 안전성과 보안이다. 연방은 어떤 침략 또는 각 에미리트의 존재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이다. 또한 연방 국민의 책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에미리트간의 긴밀한 협력의 성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 모든 분야에서 증진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헌법의 틀 내에서 내부 사정이 있는 다른 에미리트의 주권과 독립을 위하여 각 에미리트의 존중과 함께 모든 시민을 위하여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헌법 제10조). 따라서 연방국가는 통치권을 각 에미리트에 분산시키는 분권주의에 입각하여 분할된 각 에미리트가 결합하여 하나의 국가적 결합체를 구성하는 국가를 말한다. 각 에미리트는 주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본래의 국가와 구별되고, 연방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광범위한 자주적인 조직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UAE 연방의 구성요소로 연방은 각 에미리트의 경계에 놓여있는 영해와 모든 영토에 걸쳐져 있는 문제를 헌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한다(헌법 제2조). 그리고 각 에미리트가 헌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문제에서 자신의 영토와 영해에서 주권을 행사한다(헌법 제3조). 연방은 영토와 영해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주권을 양도하지 못한다(헌법 제4조).

그리고 헌법 제6조에 연방의 국민은 아랍국가의 한 부분이고 한 사람임을 정하고 있다. 연방시민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단일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연방국민은 국제적인 허용원칙에 따라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연방의 시민이 아닌 자는 자신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할 수도 있다(헌법 제8조).

(3) UAE 연방 헌법상 法 앞에서의 平等權

헌법 제25조에 “모든 국민은 인종, 국적, 종교,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과 관련하여 연방시민과의 사이에서 관련 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함으로써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정의를 지향하는 헌법국가의 핵심적인 원칙이자 전체 법체계질서를 지도적인 법원칙이다. 즉 평등의 실현은 정의의 요청으로 간주되며, 평등은 정의의 정신이다. 헌법국가에서 평등권은 국가의 침해행위뿐만 아니라 수혜적인 행위 또는 급부행위에 적용되는데, 이는 기본권 중에서 가장 넓은 범위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이기도 하다.

(4) UAE의 사회·경제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

UAE 연방의 기둥은 모든 사람에 대한 기회균등, 즉 평등, 사회정의, 안전보장과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들 상호간 자비와 협력은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헌법 제14조).

UAE 연방국가의 사회적 토대는 가족이다. 그리고 사회는 도덕, 종교, 윤리, 애국심을 기초로 하고 있다(헌법 제15조). 그리고 사회는 어린이와 어머니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미성년자와 노인, 무능력자, 강제실업과 같은 이유로 자신을 돌 볼 수 없는 것을 보호하여야 한다(헌법 제16조).

UAE 연방은 교육을 사회발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 연방내에서 교육은 초기단계에선 의무교육이고, 모든 단계에서 무료이다. UAE 연방법률에 문맹퇴치를 위한 것과 다양한 수준의 교육전파, 확산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다(헌법 제17조). 그리고 헌법 제18조에 학교는 권한 있는 공공기관의 감독과 감시를 받아야 한

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UAE 연방은 사회보장제도로 전염병과 질병을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공립병원과 사립병원을 설립토록 촉진하고 있다(헌법 제19조).

2) 경제적 기본권

UAE 국민의 사유재산은 보호한다. 어느 누구도 공공의 이익에 의하여 보상한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탈당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헌법 제21조). 공공재산은 불가침이고, 공공재산의 보호는 모든 시민의 의무이다(헌법 제22조). 각 에미리트에 존재하고 있는 풍부한 천연가스는 공공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헌법 제23조).

UAE 국가경제의 토대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경제는 공공과 민간 사이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하고, 국가경제의 목적은 법률의 한계내에서 국민에 대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번영, 생산성 향상,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은 상호협력과 절약을 장려하여야 한다(헌법 제24조).

(5) UAE의 자유권적 기본권

UAE 헌법 제26조에“모든 국민은 자유권을 가진다. 그리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수색, 구금 또는 구속을 받지 않는다. 또한 누구든지 고문과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고,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고, 관계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원칙”과 “소급효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헌법 제27조). 형벌은 개인적이고,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

죄로 추정된다는“무죄추정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은 재판 도중에 자신의 방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권리를 가지며, 변호인의 선임권을 가진다(헌법 제28조).

UAE의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주지의 불가침을 정하고 있다(헌법 제29조, 제36조). 또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우편, 전화, 다른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 강제추방금지, 정치적인 난민의 인도 금지, 재산몰수금지 규정과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하고 있다(헌법 제30조 내지 제39조).

(6) UAE 국민의 권리와 기본적 의무

UAE 헌법 제41조에 모든 국민은 사법부, 행정부에 불만을 제출한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UAE 연방의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 공공요금과 세금의 납부는 국민의 의무라고 정하고 있다. 연방의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42조 및 제43조).

(7) UAE 연방정부의 통치구조

UAE 연방정부는 연방최고위원회, 연방대통령과 부통령, 연방각료위원회, 연방평의회, 연방사법부로 구성한다(헌법 제45조).

1) 연방최고위원회

헌법 제46조에 연방최고위원회는 연방에서 최고의 정부기관이다. 연방최고위원회는 모든 통치자로 구성되고, 에미리트 통치자의 부재의 경우에 부통령이 참여하여 구성된다. 연방최고위원회는 연방에 부여된 모든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형성 및 연방의 목표설정, 연간 일반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선포하기 전 연방법률의 제재, 국제협정과 조약의 비준, 연방내각위원회의 의장, 법원장(판사)

에 대한 임명권, 승인권, 사임권, 연방헌법과 연방법률에 관한 문제 등을 담당한다(헌법 제47조). 연방최고위원회의 심의는 비밀이고, 최고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아부다비와 두바이 에미리트를 포함한 다섯 에미리트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일곱의 에미리트 중 다섯 에미리트), 최고위원회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다수투표로 결정하고, 이러한 문제는 최고위원회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헌법 제49조).

2) 연방대통령과 부통령

연방대통령과 부통령은 연방최고위원회에서 선출되고, 부통령은 대통령의 부재사유가 있을 경우에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헌법 제50조). 연방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그들은 재선거로 동일한 임기를 수행한다. 그리고 연방대통령과 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연방최고위원회 앞에서 “나는 아랍에미리트 연방에 충실할 것을 전능하신 하느님께 맹세한다. 첫째,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둘째, 연방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셋째, 나는 나의 의무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고, 연방의 영토보전과 연방의 독립을 보호할 것이다”선서를 하여야 한다(헌법 제52조).

헌법 제53조에 대통령의 사망과 사임으로 인하여 직무상 공백 또는 통치자가 그만 둘 경우에, 연방최고위원회는 헌법 제52조의 규정된 공백기간에 대하여 선출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연방대통령은 연방최고위원회 주재 및 토론 진행, 연방최고회의 회의주재, 회의 절차 규율에 따른 회의 종료, 에미리트 멤버 중 요구로 회의에 대한 위원회의 소집의무, 언제나 회의참가를 요구하기 위하여 내각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호출, 최고위원회의 동의된 연방법, 명령과 결정은 대통령에 의하여 승인·공표, 수상임명, 최고위원회의 동의로 공직 제안권 및 사임권, 대통령은 수상과 장관을 임명하며, 연

방수상으로부터의 제안에 제청권 및 사임권, 민간과 군사(연방의 최고 법원의 법원장 및 판사 제외)의 외국과 다른 고위 연방당국에 대한 연방의 외교대표자 임명권, 최고위원회의 동의로 연방장관의 해고권 및 사임권, 외국과 단체에 대한 연방의 외교대표자로 신용의 문서 서명과 연방의 외국의 영사 대표자 및 외교자격 수용 및 신용문서 취득, 장관의 자격과 연방장관 위원회를 통한 연방법, 명령과 결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권, 서로 서로 다른 국가와 모든 국제적인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연방대표권, 연방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요한 형량 승인, 형량 감형, 사면권 이행, 장식과 메달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간과 군사는, 존경에 대한 메달과 장식 수여, 연방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최고위원회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기타 모든 권한도 부여권한을 갖는다(헌법 제54조).

연방대통령은 연방사법부에 의하여 통과된 선고의 집행으로부터 사면권을 갖고 있다. 즉 연방대통령은 형량의 감형 또는 복역에 대한 사면권을 집행하기 전에 3년의 기간 동안 연방내각위원회에 의하여 선택된 6명의 회원으로 구성과 연방장관의 의장하에서 형성된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연방법무부장관의 추천을 근거로 갱신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원은 좋은 평판과 능력이 있는 시민으로부터 추천된다. 위원회의 회원들은 무료로 한다. 위원회 의결은 비밀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다수투표에 의하여 결정된다.²⁴⁹⁾

3) 연방내각위원회

연방내각위원회는 국무총리(연방수상), 부총리, 장관으로 구성되고, 공직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헌법 제55조 및 제58조). 장관은 능력과 경험에 대하여 알려진 연방의 시민 중에서 선택된다(헌법 제56조). 헌법 제58조에 의하면 외교부, 내무부, 국방부, 금융경제산업부, 법무부,

²⁴⁹⁾ UAE Constitution, Art. 107.

교육부, 공공건강부, 공공사업과 농업부, 통신부, 노동부, 정보부, 계획부로 구성되고, 이들 부처장관이 내각위원회를 구성한다. 국무총리(연방수상)는 내각위원회의 회의를 관장한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회의를 개최하고, 직접적으로 토론하고, 장관의 활동을 수행하며, 다양한 부처와 연방의 모든 행정조직 사이에 업무를 조율하고 감독한다. 또한 부총리는 연방수상의 부재의 경우에 수상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헌법 제59조).

연방내각위원회는 국내외 연방정부의 일반정책의 이행을 수립, 연방법률의 초안을 제안, 연방의 연간 일반예산 작성 및 최종계정, 명령과 다양한 결정의 초안 준비, 연방법률의 개정 없이 이행에 대한 필요한 규제 사안 또는 그러한 규제중단 및 집행으로부터 면제제작 또한 연방헌법과 법률의 한계내에서 행정과 공공서비스 조직과 관련된 경찰규제와 기타 규제 사안, 내각위원회 또는 특별한 법률조항의 선포로 연방장관 또는 행정당국의 권한을 규제, 연방법률, 명령, 결정의 이행의 중단과 연방과 에미리트에 관련된 당국의 모든 규제, 연방법원에 의하여 내려진 판결의 집행 및 연방에 의하여 결정된 국제조약과 협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방근로자의 해고와 임명, 일반적으로 연방근로자의 훈련과 행동 그리고 연방의 공공서비스와 부서에서 근로자 행동의 규제, 다른 행정당국은 헌법의 한계내에서 최고위원회에 의해 또는 법률에 의하여 권한 확정의 권한을 갖는다(헌법 제60조).

연방내각위원회의 심의는 비밀이고, 결정은 에미리트의 과반수로 통과된다. 그리고 투표가 동등하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투표로 결정된다(헌법 제61조). 그리고 국무총리(연방수상) 또는 부총리 그리고 장관은 어떤 직업적, 사업적, 직업을 또는 연방정부와 에미리트 정부간의 상거래, 금융 및 상업회사의 이사회에 공식적인 회원으로 결부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헌법 제62조). 즉 내각위원회의 국무

총리, 부총리, 장관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금지케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연방내각위원회의 멤버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공공복지의 증진, 연방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헌법 제63조).

국무총리(연방수상), 부총리, 장관은 국내외 연방의 일반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연방최고위원회와 연방대통령 앞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헌법 제64조). 연방내각위원회는 매년 회계연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서 진행과 목표달성, 안보와 안전성 통합, 연방의 토대를 강화하는 가장 실용적인 최고의 수단과 내각 추천권과 함께 다른 국가와 국제기관과의 연합관계, 내부업적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연방최고위원회에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연방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헌법 제65조).

(8) 연방평의회

UAE의 연방평의회는 헌법국가에 있어서 입법부에 해당하나, 국가최고권력기관의 최고회의이고, 법률안의 작성은 정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형식상 심의기관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UAE의 연방평의회는 헌법 제68조에서 40명으로 구성되는데, Abu Dhabi 8명, Dubai 8명, Sharjah 6명, Ras Al-Khaimah 6명, Ajman 4명, Umm Al-Quwain 4명, Fujairah 4명으로 의석이 배분된다. 그리고 각 에미리트는 연방평의회에 국민의 대표로 선출하는 결정은 자유하다고 정하고 있다(헌법 제69조). 2005년 HH Sheikh Nohammed bin Rashid가 두바이의 대표가 되고, 동시에 국무총리 및 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간접선거의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개편이유는 2005년 독립기념일 경축사에서 국가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방평의회 역할 강화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즉 첫째, 선거인단에 의한 의원선출, 둘째, 평의회 의 권한 확대 및 의원수의 증가, 셋째, 공개선거로 이루어진다.

UAE의 연방평의회는 멤버가 되기 위하여는 연방평의회 대표자로 연방의 에미리트 시민으로서 장기적으로 거주하여야 하며, 선출당시 적어도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좋은 품행과 평판을 가져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읽고 쓰는데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헌법 제70조). 연방평의회 멤버는 장관직을 포함하여 모든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²⁵⁰⁾ 연방평의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가 만료된 멤버는 2년 더 재선될 수 있다.²⁵¹⁾

UAE 연방평의회 멤버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석이 될 경우에, 공석이 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멤버를 선정하여야 한다(헌법 제73조). 연방평의회 회의는 연방수도에서 개최하고, 멤버 중에 필수자격 요건을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원 과반수 또는 다섯 멤버의 제안으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헌법 제75조, 제76조). 연방평의회 멤버는 단순히 에미리트만이 아니라 연합의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헌법 제77조). 연방평의회 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 내에서 그들의 직무수행 중에 표현된 어떤 의견에 대하여는 면책된다. 또한 헌법 제82조에 “현행범(flagrant delicate)”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평의회 회기 동안에 의회의 승인 없이 어떤 의원에 대한 어떠한 형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지만, 연방평의회 회기가 아닌 동안에 그러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연방평의회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연방평의회는 제1, 제2 부의장의 관리자로 구성된 사무국이 존재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연방헌법 제72조에 따른 기간 만료나 평의회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해산한다.²⁵²⁾ 또한 연방평의회는 의회에 직접 책임을 질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무총장을 두고 있고, 투표와 논의과정 및 절차, 규칙, 고용, 사무국, 회원, 위원회, 다른 문제와 의회에 관한 일체 사항 및 의장, 부의장, 관리자의 권한을 정하고 있다.²⁵³⁾

250) UAE Constitution, Art. 71.

251) UAE Constitution, Art. 72.

252) UAE Constitution, Art. 84.

연방헌법 제85조에 연방평의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원의 3분의1 또는 의장, 정부대표자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할 수 있다. 그리고 연방평의회의 심의가 회원의 과반수이상인 참석하지 않는다면 유효하지 않고, 회원의 절대적인 다수의 투표로 결의안은 채택된다(헌법 제87조). 또한 연방평의회의 회기는 한 달의 기간동안 연방장관 및 위원회의 승인과 연방대통령에 의하여 선포된 명령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연방평의회의 승인을 제외하곤, 회기는 한번만 확인한다. 더불어서 연방평의회는 연방최고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연방대통령에 의하여 선포된 명령으로 해산될 수 있고, 해산 명령은 명령의 60일 이내에 새로운 평의회에 대한 소집을 포함할 수 있다.²⁵⁴⁾

연방평의회의 권한으로 헌법 제110조에 반하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을 포함한 연방법률(안)은 최고위원회에 비준을 위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연방대통령에게 제출하기 전에 연방평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방평의회는 법률안을 통과, 수정, 거절여부를 결정한다(헌법 제89조). 또한 연방평의회는 연방의 연간 일반예산에 대한 법률안과 최종계정의 법률초안을 검토하고(헌법 제90조), 정부는 국제조약, 협약 및 각종의 국제기구와 다른 국가를 포함한다는 설명과 함께 연방평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헌법 제91조). 연방평의회는 연방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일반적인 주제를 논의할 수 있고, 내각위원회는 연방의 최고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그러한 논의를 연방평의회에 알려야한다. 국무총리(연방수상)와 관련 부처장관은 토론에 참여를 하고, 평의회는 토론 주제를 정하고 권장사항을 표현할 수 있다.

앞선 권한과 더불어서 연방평의회는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질문권을 가진다. 즉 국무총리(연방수상), 부총리, 관련 부처 장관은 평의회에 출석하여 의원이 정부에 관한 질문을 답변하여야 한다.²⁵⁵⁾

253) UAE Constitution, Art. 85.

254) UAE Constitution, Art. 88.

255) UAE Constitution, Art. 93.

(9) UAE의 연방사법부

UAE 연방사법부는 연방국가라는 점에서 연방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연방사법부에 할당되지 않는 모든 사법분야의 문제에 있어서 각 에미리트가 독자적인 사법권을 갖는다.²⁵⁶⁾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지방법원에 할당된 모든 일부의 관할권은 연방사법부와 관련하여 에미리트 요청에 따라 발행되는 연방법률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형사, 민사, 상업 그리고 기타 소송에서 지방당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의 상황은, “항소심에서의 결정이 최종적이다”라고 연방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면, 연방법원에 언급된다.²⁵⁷⁾

헌법 제94조에 재판은 규율의 기본이고, 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이다. 그는 행정당국에 구속되지 않고 법과 자신의 양심에 구속된다. 즉 UAE의 법관도 법에 구속된다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법관은 사법기능을 이행함에 있어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거나 지시 명령에 따라서는 안된다. 즉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무의 독립성은 외부로부터의 영향과 지시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법관의 직무독립성은 헌법과 법률의 기속을 실현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정한 재판, 즉 사법부의 객觀性和 公正性を 保障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방은 연방대법원과 에미리트 법원을 갖는다(헌법 제95조). 이슬람 사회인 UAE의 사법부는 독립적인 정부기관²⁵⁸⁾으로 법원은 연방최고법원, 지방법원 성격의 각 에미리트 민사·형사법원, 이슬람정신에 의거한 샤리아법원²⁵⁹⁾이 존재한다. 재판은 대부분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

256) UAE Constitution, Art. 104.

257) UAE Constitution, Art. 105.

258) Mohamed Ali Abou Sakr, The courts System in the UAE, (Liberty Magazine, 2005/3)

259) 샤리아법원은 종교재판의 법원으로 이슬람정신에 근거를 두고, 이슬람교도의 민

으며, 사형과 같은 중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샤리아법원에서 재심한다. 각 에미리트 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연방법원을 정점으로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두바이와 라스 알-카이마를 제외한 5개의 에미리트는 자신의 법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5개의 법원은 연방 사법당국의 감독을 받으며, 연방대법원과 협력한다는 조건하에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법부의 관할권을 연방으로 이관한 5개의 에미리트는 소송, 항소, 상고심은 연방 제1심법원, 연방항소법원, 연방최고법원에서 각각 담당한다. 한편 두바이와 라스 알 카이마는 독자적으로 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부다비에 위치한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두바이는 소송, 항소, 상고심이 두바이 제1심 법원, 항소법원, 두바이 최고법원인 파기원에 진행된다. 즉 항소법원의 판결은 두바이 최고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최고법원의 상고심의 최상위로 아부다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하지만 두바이와 라스 알-카이마를 제외한 5개의 에미리트는 아부다비에 위치한 연방대법원이 최종심이 된다.

연방대법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연방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5명이 초과하지 않는 법관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헌법 제96조). 연방대법원의 원장과 판사는 법을 집행하는 동안 파면되지 않는다. 그들의 임기는 사망, 사임, 기간만료, 퇴직연령 도달, 질병으로 직무수행 영구적인 불능인 상태, 징계, 다른 공직의 임명을 제외하고는 종료되지 않는다.²⁶⁰⁾ 또한 연방대법원의 대법원장과 판사는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연방대통령과 연방장관 앞에서 연방헌법과 연방법률에 충성을 다하고, 두려움과 부당함이 없이 정의를 유지한다고 선서를 한다고 정하고 있다(헌법 제98조).

사 분쟁을 담당하고 있다. 샤리아법원에서 취급하는 사건은 이혼, 상속, 후계자선정, 양육권 등의 가족법에 관한 사건을 담당한다.

260) UAE Constitution, Art. 97.

연방헌법 제99조에 연방대법원의 관할권을 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연방에서 에미리트 사이에서의 다양한 분쟁 또는 한 에미리트 이상과 연방정부, 언제든지 당사자의 요청으로 법원에 제출된 분쟁, 연방헌법의 위반의 근거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에미리트에 의하여 도전하는 경우, 연방법률의 위헌여부의 심사, 이러한 요청이 전에 계류 중인 사건 중에 지역의 법원에 의하여 언급하는 경우에 법률, 입법행위 및 규정의 위헌여부의 심사, 연방당국과 에미리트 정부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의 헌법조항의 해석, 관련 법률에 따라 장관위원회의 요구부분에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그들의 행위에 관한 명령에 의하여 임명된 연방의 고위직 공무원과 장관의 판결, 연방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 연방당국의 밀봉 혹은 공식기록의 위조와 화폐위조, 국내외 안보와 관련된 범죄, 에미리트에서 연방사법당국과 지방사법당국간의 관할권 갈등, 다른 에미리트에서 사법당국과 한 에미리트에서 사법당국 사이에서 관할권 다툼 등이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수도에서 법정기간내에 개최한다. 예외적으로 다른 에미리트의 하나인 수도에서 개최할 수 있다(헌법 제100조).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모든 것을 구속한다. 만약 법원이 법률과 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결에서 연방법률이 연방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하거나, 지역의 법률과 규정이 연방헌법과 연방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지를 고려하는 경우에, 즉 연방과 에미리트에 관련한 당국은 헌법의 불일치성을 조정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101조). 헌법 제102조에 연방은 에미리트의 어떤 수도에서 또는 연방의 잠정적인 수도에서 위치하는 연방이 원고인지 피고인지의 연방과 개인사이의 민사, 상업과 행정 분쟁, 헌법 제99조에 따라 연방대법원에 이미 제정된 문제이외에 연방의 잠재적인 수도의 경계내에 체포된 범죄, 연방의 잠재적인 수도에서 야기 되는 개인 사이의 다른 사건, 민사 및 상

업적인 사건, 개인적인 지위 사건에서 자신의 관할권의 구역내에서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더 이상의 연방 주 재판소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UAE 법원의 조직과 형성, 회의실과 연방 주재판소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규율한다(헌법 제103조). 연방은 검찰청 구성원의 도움으로 연방장관의 위원회의 승인과 더불어 연방명령에 의하여 검찰 임명권을 갖는다. 검찰의 임명, 순위, 승진, 퇴직과 그들의 필수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연방검찰청의 구성원에 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연방의 형사절차법과 공판은 신체의 절차 및 경찰과 공공안보실로부터 법률의 보조권한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07조).

UAE 연방사법부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부관된 사형선고는 연방대통령에 의한 형을 확정하기까지 이행할 수 없다. 사형은 앞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형량감소에 의하여 대체할 수 있다.²⁶¹⁾ 헌법 제109조에 의하면 법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범죄와 일반범죄에 대한 일반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사면의 선포는 특별범죄와 일반범죄에 대한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의 양형 실행에 대한 면제를 하는 것이다.

2. 사우디아라비아

(1) 사우디아라비아왕국 憲法的 管見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의 왕정국가 중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나라이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國王은 王인 동시에 宗教의 수장이다.²⁶²⁾ 王의 권한은 立法·私法·行政 등 모든 분야에서 絕對的이다. 현재

261) UAE Constitution, Art. 108.

262) 박종평,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체제와 이슬람” 『중동연구』 제23권제1호(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04/7), 33~56면.

成文化된 憲法이 存在하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政黨도 인정되지 않는다. 議會는 없으며, 4년 임기의 150명 의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이를 대신하는데 국왕이 자문위원을 임명한다.²⁶³⁾ 자문기구가 법안을 제출하여 국왕이 재가하면 칙령이 된다. 국왕과 왕족회의가 실권을 장악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政治·社會·文化 등 모든 분야에서 엄격한 이슬람의 교리를 따르며 중동지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32년부터 지금까지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초대 국왕의 다섯 왕자가 차례로 왕위를 계승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 계승은 특이하게도 동생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2대부터 6대 압둘라 현 국왕까지 다섯 왕자가 왕위에 오른 시기의 평균 나이가 63세다. 2005년 즉위한 압둘라 국왕은 올해 86세다. 2대부터 5대까지 4대 간 재임기간은 평균 13년밖에 되지 않는다. 국왕의 공식적인 부인은 모두 17명이다. 첫째 부인과 셋째 부인 사이에서 2~4대 왕이 나왔고, 넷째와 다섯째 부인은 왕을 배출하지 못했다. 여섯째 부인에서 5대 왕이, 여덟째 부인 사이에서 현 국왕이 출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는 모두 6000여 명이다. 왕위에 오르는 시기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 왕위 계승을 놓고 자칫하면 권력투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왕세자 술탄이 83세인 데다 차차기 국왕으로 유력한 내무장관인 나예프 왕자도 71세의 고령이다. 이 때문에 압둘라 국왕은 왕위 계승을 최종 승인하는 왕족 회의인 ‘총성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국왕 서거 시 왕세자를 즉각 새 국왕으로 선포하는 동시에 10일 이내 새 왕세자도 결정하는 기구다.

263) 사우디아라비아의 의회에 해당하는 자문위원회가 2011년 6월 26일에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재 사우디 여성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 않다. 즉 이번 2011년 9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할 없다고 한다. 하지만 2015년으로 예정된 다음 지방선거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는데 동의한다고 한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29/2011062900197.html).

사우디아라비아왕국 헌법은 1992년 3월에 채택되어 1993년 10월에 문서화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왕국 헌법은 모두 8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1장 일반원칙으로 국가의 토대, 국가의 공휴일, 국기, 국장에 대하여 제1조 내지 제4조로 구성하고 있다. 제2장은 국왕에 대하여 제5조 내지 제8조로 구성하고 있다. 제3장은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특징(제9조 내지 제13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원칙(제14조 내지 제22조), 제5장에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제23조 내지 제43조), 제6장에는 국가의 행정당국으로 사법부, 행정(집행)부, 규제부에 대하여 제44조 내지 제69조, 그리고 국제조약과 법률에 관하여 제70조 내지 제71조로 구성하고 있다. 제7장에 재무와 관련하여 제72조 내지 제7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8장 통제기관(제79조 내지 제80조), 제9장 일반규정으로 제81조 내지 83조로 구성되어 있다.

(2)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국가형태와 구성형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정치체제는 왕정국가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이슬람교를 가진 아랍의 이슬람국가이다. 헌법은 전지전능한 하느님과 사도 Sunnah(하느님의 기도와 그에게 평화와 있기를)의 책이다. 언어는 아랍어이고, 수도는 리야드로 정하고 있다(헌법 제1조). 헌법 제2조에 국가의 공휴일은 Al Fitter와 Al Adh'ha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국기는 (a) 색깔 : 녹색, (b) 너비는 길이의 3분의2 정도로 동일하여야 한다, (c) “하느님과 모하메드는 그의 예언자이다”라는 단어 아래 칼을 들고 있는 것을 중앙에 새겨야 한다. 국기와 관련된 규율을 법률에 정하고 있다고 정하고 있다(헌법 제3조). 또한 헌법 제4조에 “국가 엠블렘(국장)은 두 개의 칼사이 위쪽 공간에 야자수 나무로 구성한다. 법률에 사우디아라비아의 國歌와 메달을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사회의 경우에도, 가족은 핵심이고, 그 가족들은 신에게 복종하고 충성을 하고, 이슬람의 신앙 및 신의 메시지를 통

하여 키워진다(헌법 제9조). 헌법 제10조에 국가는 모든 구성원을 위하여 아랍의 보호와 이슬람의 가치를 유지, 그들 자원 및 역량의 성장에 대한 적합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사회는 신의 명령을 지켜야 하고, 선행과 신앙심에 대한 상호간의 협력 및 분리할 수 없는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헌법 제11조). 헌법 제12조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통일은 의무이고, 분열, 폭동, 분할을 막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슬람 고유의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교육을 통해서 이슬람 신앙을 심어 주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 역사를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이다(헌법 제13조).

(3)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왕정제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서 정부의 시스템은 군주제이고, 국왕은 후계자를 선택하고, 왕의 명령에 의하여 자신의 직무를 후계자에게 털어 준다. 확실한 후계자는 국왕의 임무를 그에게 임무를 위임할지라도 후계자로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왕이 사망했을 경우에, 후계자는 새 국왕으로 승인될 때까지 국왕의 권한을 수행하여야 한다(헌법 제5조).

사우디아라비아왕국 헌법 제6조에 시민들은 성스러운 코란과 예언자의 전통에 따라 행운과 역경, 편리함과 어려움, 복종과 순종의 시기에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는 코란과 예언자로부터 권한(Power)이 도출되고, 이 권한은 이슬람 샤리아에 따라 정의(공평), 조언, 평등을 전제로 한다(헌법 제7조 내지 제8조).

(4)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경제원리

신은 국가의 영해 또는 토지하에서 모든 부를 부여한다. 영해와 토지는 국가의 통제하에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국가의 재산이다. 법률은 국가의 안보와 경제 이익에 따라 부의 개발과 착취, 보호의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4조). 공공자원은 법률의 규정없이 이용할 수 없고,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는다(헌법 제15조). 헌법 제16조에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이고, 국가는 공공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가지고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공공재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서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로 재산, 자본, 노동으로 파악하고 있다(헌법 제17조). 또한 헌법 제18조에 국가는 사유재산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공정한 배상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재산을 강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사유재산의 보장).

공공재산의 몰수는 금지되고, 사인의 벌금에 대한 몰수는 법률의 명령에 의하여 부과된다(헌법 제19조). 세금과 수수료는 그들에게 발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평의 잣대로 부과한다. 구호금은 합법적인 수령자인자를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한다(헌법 제21조). 사회와 경제발전은 정당한 과학적인 계획에 따라 달성하게 된다(헌법 제22조).

(5)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기본권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은 이슬람을 보호한다; 이슬람은 샤리아²⁶⁴⁾를 이

264)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은 헌법 제1조에 이슬람을 바탕으로 한 Arab Islamic State임을 천명하면서 코란과 순나를 통치의 규범으로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23조에 국민의 의무로 신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 제26조에도 인권을 규정하는데, 국가는 샤리아에 따라 인권을 보호토록 정하고 있다. 헌법 제38조에도 죄형법정주의 규정하면서 샤리아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 제46조에도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샤리아가 적용되는 사건에는 법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박규완, “이슬람법질서의 공법적 구조분석” 『공법학연구』 제10권제3호(한국비교공법

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헌법 제23조). 국가는 성지를 제공하고, 그 성지를 건설한다. 그리고 국가는 성지순례를 위하여 평화적인 시설을 제공하고 사람을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다(헌법 제24조). 즉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이슬람 종교를 헌법에서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이슬람의 샤리아에 따라 인권(Human Rights)을 보호한다(헌법 제26조).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노인, 질병(장애), 비상사태시 가족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의 기회를 제공한다(헌법 제27조, 제28조). 국가는 과학과 문화를 보호하고 장려한다(헌법 제29조). 국가는 문맹을 대처하기 위하여 공교육을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헌법 제30조, 제31조). 국가는 환경의 개선, 보호, 보존을 하여야 하고, 군대를 창립한다(헌법 제32조, 제33조). 그리고 병역(헌법 제34조), 시민권(헌법 제35조), 신체의 자유(헌법 제36조), 주거의 자유(헌법 제37조), 형벌(헌법 제38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39조), 통신의 자유(헌법 제40조), 주민의 의무(헌법 제41조)를 정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은 헌법 제42조에 명문으로 공공의 이익이 요구될 때에 정치적인 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6)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통치구조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통치구조는 사법부, 집행부, 규제부로 구성된다. 이러한 당국은 기타 법률문제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한다. 국왕은 이러한 당국에 대한 평가기준을 삼는다.

1) Fatwa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서 fatwa(이슬람법에 따른 결정이나 명령) 구조의 근원은 코란과 그의 메신저 Sunnah이다. 법률은 Ulema의 권한과 과학연구의 행정부, fatwa의 구조와 기능을 정한다(헌법 제45조).

학회, 2009/8), 161면.).

2) 사법부

헌법 제46조에 사법부는 독립기관이고, 이슬람 샤리아를 제외하고 판결문의 제공에 판사를 통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송권은 평등을 기초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거주자 및 시민에게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47조). 법원은 사안에 따라 성서와 순나에 지적되어 있는 것과 성서와 순나에 상반되지 않는 통치자의 법규명령에 따라 샤리아법을 적용하고, 모든 범죄와 분쟁을 중재한다(헌법 제48조, 제49조). 또한 정부는 최고사법위원회의 권한과 구성뿐만 아니라 법원의 권한과 조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고, 판사의 임명과 직무의 종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최고사법위원회로부터 제안된 국왕의 명령에 의하여 수행한다(헌법 제52조). 헌법 제53조와 54조에는 법률을 통하여 불만과 상급재판소를 제정하고, 수사기관과 일반경찰, 그들의 조직과 우선순위의 관계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사우디 법원 시스템은 최고 사법위원회, 항소 법원, 그리고 첫 번째 인스턴스코츠(일반 법원)로 구성된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은 샤리아 법원 시스템과 불만위원회으로 알려진 독립적인 행정 사법부로 구성된 이중 사법 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사법부의 전문 법원의 설립을 허용하는 샤리아법원 시스템 내에는 두 전문 법원이 있는데, 보증과 결혼 생활의 법원, 결혼, 이혼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권에 관한 민사 소송 관할을 발휘하는 법원과 같은 사우디 사법 법원 시스템의 능력이 설정 되어있다. 사법부는 법률에 의해 1975년도에 채택했고, 거버넌스의 기본적인 법률에 의해 1992년 후 재확인했다. 사법부와 거버넌스의 기본적인 법률의 법률에 따르면, 샤리아법률은 관할권 면제 제외한 모든 분쟁과 범죄를 관할하고 있다.

3) 행정(집행)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은 이슬람법에 따라 나라의 정책을 수행하고,

지역의 보호와 방어, 국가의 일반정책, 정부 시스템, 이슬람 샤리아법의 수행을 감독한다(헌법 제55조). 헌법 제56조에 “국왕은 내각(장관) 위원회의 의장이다; 그는 이 헌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관위원회의 회원에 의하여 그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 장관위원회는 국내외의 업무에 관한 위원회와 정부조직기관 사이에서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또한 그들은 그들에 관한 모든 이슈와 그들의 문제에 대한 태도, 그들의 우선순위, 장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자격요건을 제정하여야 한다. 장관위원회에 관한 법률과 그 우선순위는 이 법률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다”라고 정하고 있다.

헌법 제57조 제1항에 국왕은 국왕의 명령에 의하여 장관위원회의 멤버와 수상, 장관의 직무를 덜어주고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 장관위원회의 장관과 국무총리(수상)의 직무는 이슬람 샤리아법과 국가의 일반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국왕 앞에 결속에 대한 표출 책임을 진다고 하고, 제3항에 국왕은 장관위원회를 해산하고 재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국왕은 높은 순위의 장관과 장관의 직무, 장관의 순위를 즐기는 사람을 임명하고, 법률에 포함된 설명에 따라서 국왕의 명령에 의하여 그들에게 그들의 직무를 덜어준다. 장관과 독립부서의 장은 그들의 감독 부서와 행정부에 대한 국무총리(수상) 앞에 책임이 있다(헌법 제58조). 법률은 호의와 연금, 배상, 보너스, 봉급 등을 공무원 조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헌법 제59조).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은 모든 군대의 총 사령관이고, 그는 장교를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종료한다(헌법 제60조). 헌법 제60조에 국왕은 국가의 비상상태, 일반적인 동원과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법률은 이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국가비상 사태시 전쟁선포권을 가진다. 즉 헌법 제62조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안전, 영토보전,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하는 위험이 있거나 국가가

관의 기능을 방해한다면, 국왕은 이러한 위협을 처리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국왕이 이러한 조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런 다음 이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실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정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왕국 헌법 제63조에 “국왕은 국민의 왕이고 국가의 원수이다. 국왕은 국가에게 그 대표자를 임명하고, 그는 대표자에 국가를 대표하는 공인된 자격증명을 받게 된다”고 장하고 있다. 또한 국왕은 국왕의 명령에 의하여 왕세자의 우선순위를 선정한다(헌법 제65조). 국왕의 해외여행의 경우에, 국왕은 국가의 업무관리와 국민의 이익을 왕세자에게 위임토록 하는 국왕의 명령을 발행한다(헌법 제66조).

4) 규제부(당국)

사우디아라비아왕국 헌법 제67조에 “규제부(당국)은 이슬람의 샤리아법에 따라 그 업무에 나쁜 것을 제거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하여 규제와 동의를 요한다. 규제부(당국)은 자문위원회와 장관위원회에 관련된 법률과 샤리아 법률에 따라 그 기능을 행사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법률은 자문위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지,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는지, 어떻게 멤버를 선택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헌법 제68조). 또한 국왕은 그가 원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논의를 하기 위하여 그 회의를 참석하기를 바라는 사람을 초대하거나, 자문위원회와 장관위원회를 합동으로 회의를 소집할 권리를 갖는다(헌법 제69조).

3. 카타르

(1) Qatar State 헌법적 관건

카타르는 18세기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18세기 후반 아라비아 반도 내륙부 네지도 지방 출신의 마데도족과 동북지방 출신의 우

도바족이 순서대로 지배한 것이 현재 카타르가 형성된 배경이다. 그들은 인접국가인 바레인에 진입하여 어업과 진주잡이, 무역에 종사하며 같은 지역내에 지배권을 확립하여 바레인과 카타르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오스만투르크와 와하브국의 침입이 있었으나, 1913년 영국과의 투르크 협정에 의하여 카타르 자주권을 인정받게 되어, 1910년 카타르는 다른 수장국과 같이 영국과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영국 이외의 다른 영사를 확보할 수 없었고, 또 영국의 동의 없이는 외교정부와 어떠한 외교관계를 체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영국이 재정곤란을 이유로 서서히 철수를 하게 되자 1916년 협정을 체결하여 친선관계로 양국간의 관계가 변화되었다. 이에 카타르를 포함한 수장국은 연방결성 노력을 계속했지만, 바레인의 단독 독립선언으로 연방정부의 결성은 무산되고 카타르도 독립을 선언하였다. 카타르가 독립을 선언 후 아하마드수장 정부의 불신감이 왕족사이에 팽배하여 1972년 2월 무혈 쿠데타로 아하마드 수장의 종형제인 하리파가 수장에 취임하였다. 따라서 1972년 4월 19일에 국가에 의한 임시헌법이 마련되었고, 2004년도에 카타르 국가의 영구적인 헌법이 마련되어 기존의 헌법은 폐지되었다. 2004 카타르국가의 영구적인 성문헌법은 정책결정에 대중의 참여가 실현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공포된 영구적인 헌법에 따라 국왕과 왕실이 누리온 절대 권위 일부가 국민에게 넘어가고 국정 운영에 대중의 발언권이 다소 높아지겠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왕실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04년 통과된 카타르국가의 영구적인 성문헌법은 정부 구성 및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 1972년 디자인된 “잠정적인 정치질서법”을 대체하였는데, 비록 서구식 민주주의처럼 완전한 의회기능을 보장하지 않지만, 三權分立의 土臺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절대왕정이 주류를 이루는 중동지역에서 카타르의 성문헌법의 공포는 민주주의를 향한 이정표라고 하겠다.

(2) Qatar State의 형태와 구성요소

카타르는 독립주권의 아랍국가이다. 카타르 종교는 이슬람이고, 샤리아법은 그 법제의 주요 근간이 된다. 카타르는 민주주의의 정치시스템 국가이다. 카타르 국민은 아랍국가의 일부분이다(헌법 제1조). 헌법 제2조에 국가는 자신의 영토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고, 그 영토에 대한 주권을 포기할 수 없고, 영토의 일부분을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의 국기, 엠블렘, 장식, 깃발 그리고 국가의 國歌는 법률에 명시한다고 정하고 있다(헌법 제3조). 그리고 카타르국가는 외부의 침략에 대하여 스스로 방어를 하고, 독립, 주권, 영토의 안전과 통합, 안보와 안전을 보장한다(헌법 제5조). 또한 헌법 제6조에 국가는 국제적인 현상과 협정을 존중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Qatar State의 지도원리- 사회정의(공평), 평등, 박애 등

카타르 국가는 사회의 지도 원칙으로 정의(공평), 평등 그리고 높은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18조). 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기회의 평등과 안정(안보)를 사회적 기둥으로 삼는다. 또한 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박애, 협력, 통합의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헌법 제19조, 제20조).

카타르국가도 가족은 사회의 근본이라고 정하고 있다. 즉 카타르가족은 종교, 윤리, 애국심을 갖고, 법률은 노인, 어린이, 임산부를 보호하고,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가족의 조식을 유지함과 아울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규율한다(헌법 제21조). 또한 카타르 국가는 청소년을 보호, 공공의료를 장려, 과학기술, 문화와 예술을 육성한다(헌법 제22조 내지 제24조). 카타르는 사회발전의 기본적인 기둥으로 교육을 장려한다(헌법 제25조). 그리고 소유, 자본과 노동은 카

타르 국가의 사회구조의 토대를 구성한다(헌법 제26조). 카타르국가도 사유재산을 보장한다(헌법 제27조). 자연의 부와 천연자원은 국가의 재산이다(헌법 제29조). 사업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사회정의(공평)라는 이상을 기초로 법률로 규율된다(헌법 제30조). 카타르국가는 시설투자를 장려하고, 고리대금을 금지한다(헌법 제31조, 제32조). 헌법 제33조에 카타르 국가는 모든 세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과 환경을 조화롭게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카타르국가는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4) Qatar State의 기본권

카타르 국가는 헌법 제35조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종교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수색, 되지 않고, 불이익한 처우 및 고문을 받지 않는다(헌법 제36조). 인간은 사생활의 자유를 갖는다(헌법 제37조). 헌법 제39조에 피고인은 법정에서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어떤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정하지 않고는 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정하고 있고,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카타르 국가는 시민에게 선거권을 두고 있고, 세금부과, 집회의 자유, 협회설립의 자유, 공공기관에 연설의 자유, 과학적 연구와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인쇄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종교의 자유, 사유재산의 보호를 두고 있다(헌법 제42조 내지 제52조).

헌법 제53조에 국가방어는 모든 국민의 의무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직은 국가의 서비스이고, 공직을 수행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헌법 제54조). 공공기금은 불가침이고, 일

반적인 재산몰수는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형벌이라는 법률의 규정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과된다(헌법 제55조, 제56조). 헌법 제57조에 카타르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국가의 전통을 준수하고, 관습, 공공질서와 공중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치적 난민의 송금은 금지되고, 법률은 정치적인 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헌법 제58조).

(5) Qatar State의 통치구조

카타르국가는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정부는 권력분리의 원칙에 따라 행사하고, 헌법에 규정된 방식과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카타르국가의 입법기관은 헌법에 규정된 Al-Shoura 위원회에서 하고, 행정(집행)기관은 국왕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사법기관은 법원에서 행한다(헌법 제59조 내지 제63조).

1) Qatar State의 국왕

카타르 국가는 국왕이 국가원수이고, 군 통수권자다. 그는 신성불가침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또한 그는 모든 국제관계에서 내부와 외부의 국가를 대표한다(헌법 제64조 내지 제66조). 국왕은 장관 위원회의 도움에 따라 국가의 일반적인 정책을 작성, 법률의 공포와 비준, 언제든지 공공이익에 필요한 장관위원회의 소집, 법률에 따라 공무원과 군임의 선임, 외교 및 영사관의 인가, 법률에 따라 형벌감형과 사면권, 법률에 따라 명예 훈장과 민간 및 군사적인 명령, 각 부처의 조직과 설립 그리고 다른 정부 기관의 기능을 규정, 국가의 고도의 정책 기능을 지정, 감독, 그를 돕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설립, 다른 기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확정을 행한다(헌법 제67조). 또한 국왕은 명령에 의하여 협정과 조약을 체결하고, 적절하게 설명된 메모와 더불어 Al-Shoura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조약 또는 협정은 공식관보에 출판되고, 비준 후에 법률의 권한을 갖는다(헌법 제68조).

카타르 국왕은 국가의 안전과 그 사람의 이이과 안보 및 영토의 통합을 위태롭게 하거나, 그들의 직무를 수행으로부터 국가의 조직 방해 및 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엄법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하고, Al-Shoura 위원회에 계엄이 선포된 다음날 15일 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69조).

헌법 제71조에 카타르국가를 위한 방위전쟁은 국왕의 명령에 의하여 선언되고, 침략전쟁은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왕은 국무총리(수상)를 임면권을 갖고, 또한 국무총리(수상)에 의하여 추천으로 국왕의 명령에 의하여 각 부처의 장관을 임면할 권한을 갖는다(헌법 제72조, 제73조).

특별하게도 카타르 헌법 제75조에 국왕은 국민투표에서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 대한 공적인 의견을 추구한다. 만약 다수 유권자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이러한 국민투표의 주제는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국민투표의 결과는 발표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구속된다. 이 결과로 공식적인 관보에 출판하게 된다고 정하고 있다.

2) Qatar State의 입법기관 : Al-Shoura(알-슈라)

카타르 국가의 입법기관으로 Al-Shoura(알-슈라)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정부의 일반정책과 예산승인을 담당한다. 그리고 동 위원회는 행정(집행)기관을 통제한다(헌법 제76조).

① Al-shoura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Al- Shoura 위원회는 45명으로 구성되는데, 30명이 직접 선출되고, 일반적으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그리고 국왕은 어떤 다른 사람 및 장관들 사이에서 나머지 15명을 임명한다. Al-Shoura(알-슈라) 위원회에서 임명된 회원의 서비스 기간은 회원 또는 자신의 자리를 사임할 때 또는 자신의 직위가 해임될 때 만료된다(헌법 제77조). Al-Shoura

위원회의 회원은 원래 카타르 국적의 소유자일 것, 그의 나이가 적어도 임명의 날 마지막일 보다 30살 되지 않으면 안되고, 아랍어를 읽고 쓸 수 있을 것, 법률에 따라 교화되지 않거나 부정직, 도덕적 비열함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법률의 관할 법원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선거법에 정해진 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헌법 제80조).

② Al-shoura 위원회의 임기

Al-Shoura 위원회의 임기는 첫 회의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그리고 새 위원회의 선거는 앞서 언급한 임기의 마지막 90일 중에 개최한다. 만료회원의 서비스 임기는 재선될 수 있다. 그리고 선거가 위원회의 임기의 만료로, 어떤 이유로 지연되어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위원회가 선출될 때까지 의회의 임기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헌법 제81조). 헌법 제83조에 Al-Shoura 위원회의 선출 회원 중 하나의 자리가 어떤 이유로 공석이 된다면, 의회임기가 적어도 만료 6개월 전에, 후계자는 이러한 공석의 통지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선출되어야 한다. 반면에, 임명된 멤버의 자리가 공석이면, 새로운 멤버가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임명하게 되는데, 두 경우 모두, 새로운 회원은 그 전임자의 임기를 완료하게 된다. Al-Shoura 위원회의 년 회기는 적어도 8개월이여야 하고, 위원회는 국가예산이 승인될 때까지 휴회를 허용하지 않고, Al-Shoura 위원회는 매년 10개월 이내에 국왕의 소집에 따라 연중 일반 회의를 시작한다(헌법 제84조, 제85조). 앞선 두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국왕은 선거의 마지막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일반선거 다음의 첫 번째 회의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소집 후 앞선 조항에 규정된 날로부터 이 임기동안 지연되고, 위원회의 임기 기간은 앞에서 언급한 두 날짜 사이의 시간차이에 의하여 감소하게 된다(헌법 제86조).

③ Al-shoura 위원회에 국왕의 회의개최 및 연설권

국왕 또는 국왕에 지명된 대표자는 Al-Shoura 위원회에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의 사무를 해결하고 포괄적인 연설을 하고, 필요의 경우에, 국왕은 특별한 모임에 대한 Al-Shoura 위원회라고 불리는 위원회 회원 과반수 요청에 의하여 명령한다. 특별회의 경우에, 위원회는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보다 그 외의 다른 것을 조사해서는 안된다(헌법 제87조, 제88조). 국왕은 명령에 의하여 1개월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Al-Shoura 위원회의 회의를 연기하여야 할 것이다. Al-Shoura 위원회 회의의 연기는 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한회기 동안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기간은 회의의 일부기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헌법 제90조).

④ Al-Shoura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 선출

위원회는 첫 회의와 그 회의의 임기동안에 멤버의 구성의 사이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그들 중에 공직에 공석인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임기기간 동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그들 사이에서 대체하기 위하여 선출한다. 선거는 비밀투표로 하고 참가회원의 절대다수 투표로 한다; 이러한 과반수는 첫 투표에서 획득할 수 없고, 두 번째 투표가 참가회원의 가장 높은 투표를 획득한 두 구성원 사이에서 이동한다. 최고득표를 획득한 두 사람 중에 동점인 경우와 다른 후보자는 두 번째 투표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선거는 상대다수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회의는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원의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헌법 제93조).

Al-Shoura 위원회는 내부질서, 사업 활동, 위원회의 업무, 회의의 조직, 절차의 규율, 투표 그리고 이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능을 구성하는 내부규정을 만든다. 규율은 회원의 명령위반 또는 위원회의 회의

불참시 또는 위원회의 허용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징계처벌을 결정하게 된다(헌법 제97조). 헌법 제98조 Al-Shoura 위원회의 회기는 공개한다. 또한 그들은 장관위원회로부터 요청과 위원회의 회원 3분의 1의 요청으로 공개촬영을 개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결의안은 특히 다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참가 회원의 절대다수에 의하여 통과되고, 투표수가 동등할 경우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갖는다(헌법 제100조).

위원회의 회원은 사망 또는 완전 신체장애, 회원의 임기 만료, 사임, 사무실 제거, 위원회의 해산의 이유로 만료 된다(헌법 제101조). 국왕은 해산이유를 명시하여 (국왕의) 명령으로 위원회를 해산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똑같은 이유로 두 번 해산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해산되는데, 새로운 위원회의 선거는 해산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새로운 위원회가 선출될 때까지, 국왕은 장관위원회의 도움으로 입법의 권한을 맡게 된다(헌법 제104조).

⑤ Al-Shoura 위원회의 법률안 제출권

위원회의 모든 회원은 법안을 제출할 권리를 갖는다; 위원회에 제출 및 추천된 모든 법률안은 연구를 위하여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만약 위원회가 제안된 법률안을 수용하게 된다면, 연구와 의견을 위한 정부 초안 형태로 회부된다. 이러한 초안은 회의의 다음 임기 또는 같은 임기동안에 위원회로 되돌아오게 된다. 위원회에 의하여 거절된 법률안은 동일한 회기기간 동안에 다시 발의되지 않는다(헌법 제105조). 헌법 제106조 제1호에 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초안은 비준을 위하여 국왕에게 회부되고, 만약 국왕이 법률초안에 대한 승인을 거절한다면, 그는 회부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내에 위원회에 법률안의 거절이유와 함께 장기간 반환하고, 법률초안은 전항의 정해진 기간 내에 위원회에 반환된 사건에서, 위원회가 모든 회원의 3분의2 이상

과반수로 똑같이 통과하게 되는 경우에, 국왕은 비준을 하고 공표를 한다. 국왕은 나라의 고도의 이익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게 될 절박한 상황에서 그 기간 동안 법률초안을 보류하도록 명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법률초안이 3분의2 다수결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회의 동일한 기간 내에 다시 재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⑥ Al-Shoura 위원회의 일반예산권

일반예산 초안은 회계연도의 개시로부터 적어도 2개월 이상 Al-Shoura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가 일반예산 초안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Al-Shoura 위원회는 정부의 승인과 함께 예산초안을 수정할 수 있다; 예산초안이 회계연도의 시작하기 전에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 이전의 예산이 새로운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하게 된다. 법률은 예산을 준비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회계연도를 정하고 준비한다(헌법 제107조). 헌법 제108조에 Al-Shoura 위원회는 정부의 공공문제에 관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만일 정부가 그러한 관심을 따르지 못할 경우에, 위원회에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일단 정부의 성명서를 제외하고 언급하여야 할 것이다.

⑦ Al-Shoura 위원회의 국정 질문권

Al-Shoura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수상과 장관의 관할권내의 문제에 관한 요점을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답변을 한번 언급할 권리를 갖는다(헌법 제109조). Al-Shoura의 모든 회원은 그들의 관할권 의 문제를 장관에 대하여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원 3분의 1의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장관에 대한 대정부 질문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장관의 대정부 질문은 긴급한 상황에서 제출된 날로부터 적어도 10일의 기간 이전에는 논의

될 수 없고, 장관은 이 기간을 감축하기 위하여 동의하여야 한다(헌법 제110조). 또한 모든 장관은 Al-Shoura 위원회 앞에서 그 (정부의 각) 부처의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부처장관은 그에게 대정부 질문을 한 후에 신임투표를 받지 않는다. 신임투표는 장관이 그렇게 바라던지 또는 회원 15명의 서명에 의한 요청시 논의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회는 바람의 표현과 요청의 제출일로부터 적어도 10일 전에 해결책을 취할 수 없다; 그리고 장관의 불신임투표는 의회의 구성원 3분의 2의 과반수로 한다. 장관은 불신임의 날로부터 그의 직무실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된다(헌법 제111조).

⑧ Al-Shoura 위원회의 면책특권, 겸직금지, 행위제한

Al-Shoura 위원회의 회원이 현행범(flagrante delicto)으로 발견되었을 때, 그는 위원회로부터 사전허가 없이 체포, 구금, 검색 및 수색을 받지 않는다. 위원회가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내에 허가에 대한 요청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 사실상 이것은 허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허가는 마지막으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을 때 위원회의 의장에 의하여 발행된다. 현행범의 경우에, 위원회는 유죄가 되는 회원에 대한 취한 조치를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이러한 통지는 첫 번째 회의 결과에서 행하여져야 한다(헌법 제113조). 위원회 구성원의 조합과 공직의 취임은 헌법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결합의 경우에 허용할 수 없다(헌법 제114조). 헌법 제115조에 Al-Shoura 위원회의 회원은 국가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행위를 목표로 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공식적인 지위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자신의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안된다. 법률은 Al-Shoura 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제한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3) Qatar State의 행정(집행)기관

각 부처 장관은 본래 카타르 국적 사람이어야 한다(헌법 제117조). 장관위원회의 형성은 국왕의 명령과 국무총리(수상)의 제안에 의한다. 국왕은 하나 또는 더 이상의 부처 기능을 수상과 다른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은 장관의 권한을 정한다(헌법 제118조). 장관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의 기능을 이행함에 국왕을 지원하여야 한다(헌법 제120조). 또한 장관위원회는 최고집행기관의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관할권의 범위내에 놓여있는 국내외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부한다. 장관위원회는 Al-Shoura 위원회에서 제출되어 똑같이 논쟁 중인 법률과 명령의 초안 제안, 부처에 의하여 제안된 결정과 규율 및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이행에 대한 관할권과 관련한 다른 정부기관의 승인, 법률, 명령, 규정과 결의 이행의 감독, 법률에 따라 정부부처, 공공기관 그리고 사단법인의 조직과 설립의 제안, 정부의 행정시스템과 재정의 높은 통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의 권한과 국왕의 관할권 내에 놓여있지 않은 임명과 해임사건에서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법률에 따라 국가의 모든 부분에서 공공질서와 내부적인 안보의 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일반규정 작성,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예산 초안의 준비와 국가재정의 행정, 경제 프로젝트와 그 이행의 방법의 승인, 해외업무와 국제적인 관계의 유지와 해외 국가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의 감독, 국내외 완성된 작업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포함한 모든 회계연도의 시작부분에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국가의 종합적인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방식의 계획을 설정하여 완성하고, 이 헌법에서 진술된 국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안과 안전성을 통합하는 것,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확립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헌법 제121조).

장관은 자신의 관할권의 한계내에서 일반적인 정부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국왕은 그들의 기능의 형태내에서 국가의 모든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국무총리(수상)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헌법 제 122조). 국무총리(수상)와 장관들은 집합적으로 국왕 앞에 정부정책의 실행에 대한 책임을 있다. 장관들 중 각각은 그의 기능 수행과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국왕 앞에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헌법 제123조). 국무총리(수상)는 국가의 정부조직 사이에서 통합과 조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간 업무를 조정, 감독 및 그 절차를 조직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수상은 위원회에 의하여 행해진 결정, 장관위원회를 대신하여 이름에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수상은 승인과 발행에 대한 국왕의 결의안에 요구되는 문제점에 대해 위원회의 결정을 국왕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헌법 제 125조). 장관위원회의 회의는 국무총리(수상) 또는 부의장이 참석하고, 현재 그 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하는 경우를 정족수로 한다. 장관위원회 회의는 비밀로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은 현재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투표가 가부동수 일 때, 국무총리(수상)가 캐스팅 보트를 가진다. 소수는 다수의 의견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한다(헌법 제126조). 그리고 헌법 제128조에 장관의 공직에 있을 때, 국가의 이익을 목표로 하고 사적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Qatar State의 사법기관

Qatar 헌법 제129조에 법의 우위는 국가통치의 근간이다. 사법부의 명예, 판사의 청렴성, 공정성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법기관은 독립적이고 사법기관은 다른 유형과 심급의 법원²⁶⁵⁾에

265) 카타르 사법부는 5종의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심 하급민사법(Lower Civil Court), 2심인 상급민사법원(Upper Civil Court), 경범죄를 처벌하는 하급형사법원(Lower Criminal Court), 중요사건을 다루는 고등형사법원(Higher Criminal Court), 민·형사 최고법원인 항소심법원(Court of Appeal)이 있다. 또한 특수법원으로 이슬

서 부여하게 된다. 법원은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고 정하고 있다(헌법 제130조). 또한 법관은 독립적이고 어떠한 권력에도 구속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다고 한다. 법원의 부서와 범주에 대하여 법률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권한과 관할권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군사법원의 관할권은 제한하게 되는데, 계엄법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내에 보안부대와 군장병에 의하여 범해진 군사범죄를 단죄한다(헌법 제132조).

법원의 재판은 공개한다. 그리고 도덕적 관심과 공공질서를 위한 것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했을 때, 카메라에 그들을 공개한다. 모든 경우에 판결의 선고는 공개 재판을 한다(헌법 제133조). 법관은 법률에 의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으로부터 제거를 받지 않는다. 또한 법률은 판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징계문제와 규칙을 정한다(헌법 제134조).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든지 침해할 수 없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법률은 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게 된다(헌법 제135조).

카타르 국가의 검찰은 국민의 이름으로 공적인 행위를 수행하고, 법집행을 감독하고 형법에 의한 법집행을 보장한다. 법률은 검찰조직의 기능을 규정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과 관련한 조건과 보장을 규정한다(헌법 제136조).

카타르 국가의 사법부는 법원과 법원의 보조기관의 적절한 기능을 감독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를 둔다. 법률은 최고위원회의 기능, 권한, 구성을 규정한다. 법률은 행정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위임된 관할관청을 정하여야 하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구조를 정한다. 법률은 사법기관간의 판결과 관할권의 갈등해결의 방법을 규율하고 있다. 법률은 법률규정의 헌법위반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관할

람교도의 개인문제와 관련한 판결과 꾸란의 율법에 의하여 유권해석을 내리는 종교재판소인 Sharia법원이 있다.(정상률, “카타르의 정치변동과 정치발전” 『중동연구』 제23권제1호(한국의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04/7), 119~150면).

사법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미리 사법기관에 이의제기를 하기 위하여 절차, 이의제기 방법 및 그 권한을 정한다. 또한 만장일치에 관한 판결의 결과를 정하고 있다(헌법 제137조 내지 제140조). 즉 헌법 제140조는 법원은 위헌법률에 대한 심판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중동(UAE, Saudi Arabia, Qatar State)지역의 법체계에 관한 공통점 도출

(1) 중동국가의 경우 “샤리아(Sharia)법”을 헌법과의 상호 협력적으로 적용

샤리아(Sharia)란 ‘구멍에 물을 대는 통로(the path to a wartering hole)’을 뜻으로 “진리 또는 알라에게 다가가는 길”을 뜻한다.²⁶⁶⁾ 샤리아는 서구의 의미의 “법”보다는 훨씬 광범위하여 좁은 의미에서의 법 규정뿐만 아니라 의례적인 규정과 정치적 규정을 모두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고, 무슬림으로서 다섯 가지 의무를 비롯해 목욕이나 참회의 방법과 같은 의례적 규범(이바다트)이 있다. 그리고 사법적인 문제에서 도덕적인 문제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이혼, 비무슬림의 권리와 의무, 상속, 매매, 증언, 소송, 범죄와 형벌, 나아가 전쟁, 국제문제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것을 법적 규범(무아마라트)이라고 한다. 또한 이슬람법 체계는 알라와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관계를 다룬 서유럽 법체계와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법의 개념 자체가 서구적인 것과는 다르다. 서구의 형법이 유죄 또는 무죄를 판정하는 기준인데 반해 이슬람법은 삶의 도덕적인 측면으로 “명예(Honor)”와 “부끄러움(Shame)”을 중요시하고 있다.

266) 이원삼, 「이슬람법사상」, (아카넷, 2001), 19면 이하 참조; 미야자키 마사카츠/이규원(역), 「하룻밤에 읽는 중동사」, (랜덤하우스, 2008), 40~41면; 공일주, 「이슬람 율법」, (살림, 2010/9), 4면 이하 참조.

샤리아는 알라가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관점을 기준으로 대체로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알라에 대한 인간의 필수적 의무를 뜻하는 와집(wajib, 의무)에 속하는 행위인데 이행하지 않으면 벌의 대상이 되며 이행하면 칭송의 대상이 된다. 둘째, 알라가 권장하는 행위(만둑, mandub, 권장)이다. 이를 행하면 칭찬을 받게 되고 천국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행하지 않아도 비난 또는 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셋째, 알라의 관심이 결여된 행위로 무바흐(mubah, 무관심)라 한다. 알라가 칭찬하나 보상하지는 않으시며 또한 꾸짖으시나 벌하지는 않는다. 넷째, 알라가 싫어하시는 행위로 마크루(makruh, 마음에 들지 않음)라 한다. 이 행위를 삼가면 보상을 받으나 행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다섯째, 알라가 금지한 행위로 하람(haram, 금지)이라 한다. 무슬림은 이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되며,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다섯가지 인간 행위의 분류로 이슬람법체계가 형성된다. 샤리아는 통일된 성문법과 함께 여러 이슬람 학파의 복수적인 해석체계가 병존하고 있다.²⁶⁷⁾

Sharia는 “코란”과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기초한 이슬람의 법률이다.²⁶⁸⁾ 샤리아의 규정이 도출되는 근거를 “법원(법적 근원)”이라고 부르는데, 우선되는 법원으로는 “꾸란”과, 각 생활에 대한 무함마드의 판단과 해설, 언행을 전한 ‘하디스’가 있다. 세번째 것은 무함마드 이후 무슬림 사이에서 일치점을 본 법 판단의 소산인 ‘이쥬마’이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해 앞의 세가지를 참고로 판단하는 ‘키야스’가 있다.²⁶⁹⁾ 이슬람교도의 종교, 정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샤리

267) 정수일, 『이슬람문명』, (창비, 2010), 173면 이하 참조.

268) 이슬람 율법(샤리아)의 법적근거는 꾸란, 순나(하디스), 만장일치, 유추이므로 어떤 사건에 대한 무프티의 판단은 그가 어떻게 알라의 법과 무함마드의 말을 이해했는지를 보여준다. 공일주, 『이슬람 율법』, (살림, 2010), 30면; 이희수·이원삼, 『이슬람-9·11테러와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 (청아, 2010), 387면 이하 참조.

269) 김용운, “샤리아형법의 태형에 관한 고찰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1권제4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겨울호), 303면 이하 참조.

아를 해석, 적용시킴으로써 이슬람 공동체를 정신적으로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울라마’라고 한다.

결국 헌법을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정의해 놓고 샤리아법이 이슬람 국가의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선언을 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한다면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슬람국가 전체를 규율하고 있는 샤리아법체계는 헌법보다 상위의 법률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헌법보다 하위규범이라고도 할 수 없는 특수한 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과 샤리아법은 이슬람 국가의 질서내에서 독립적인 대등한 지위를 점유하며, 공동체의 합의된 근본가치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중동국가의 경우 서구의 “입법부” 대신 “명목상 의회기능”만을 가진 “위원회”

중동국가, 즉 UAE, Saudi Arabia, Qatar는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입법부인 의회를 입법화하고 있지 않고 그 대신에 명목상 의회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두고 있다. 예컨대, UAE의 경우에 연방평의회를 두어 입법부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연방평의회는 임기가 4년이고, 각 에미리트별로 임명하고, 40명으로 구성된다. 연방평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로 내각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고, 명목적으로 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할 뿐, 입법기능이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은 없다. 그리고 연방평의회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먼저, 연방평의회는 대표자로 연방의 에미리트 시민, 장기적으로 거주하여야 하고, 둘째, 선출당시 적어도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좋은 품행과 평판을 가져야 하고,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지 않아야 하고, 법률에 따라 교화되지 않는 한 시민의 지위를 즐겨야 하고, 셋째, 읽고, 쓰는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연방평의회는 회원은

장관 및 연방의 모든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 UAE 연방평의회 의원은 평의회와 위원회에 내에서 그들의 직무수행 중에 표현된 어떤 의견과 관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정하고 있고, 또한 “현행범(flagrant delicate)”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평의회 회기 동안에 의회의 승인 없이 어떤 의원에 대한 어떠한 형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Saudi Arabia Kingdom은 의회와 정당을 국민의 직접적인 선거로 선출되지 않고, 국왕의 명령으로 90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권고한다. 그리고 왕족으로 구성되는 왕실위원회와 종교지도자 회의가 국왕선출 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방행정조직은 사우디아라비아를 13개주로 나누고 이들 13개 주의 주지사들은 거의 왕실에서 임명한 왕자들이 맡고 있다. 또한 최근에 2005년 압둘라국왕의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사우디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지방의회선거를 통해 2005년 12월 178개의 지방의회(Municipality Council)가 구성하게 되었는데, 각 지방의회는 선출직의원 592명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Qatar State의 입법부는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의 형태로 4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임기가 4년이다. Qatar의 영구헌법에 따르면, 국왕이 15명을 임명하고, 30명은 직접·보통선거에 의해 선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2005년 최초의 자문위원회에 대한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계속 연기 중에 있다. 그 이유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이중국적자 투표권 부여, 선거구 획정, 부족 간의 이해관계 및 집권 가문 내 이견 등의 문제로 당초 2005년 실시예정이던 자문위원회 선거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Qatar state에 Al-Shoura 위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원래 카타르 국적의 소유자일 것, 둘째, 그의 나이가 적어도 임명의 날 마지막일 보다 30살 되지 않으면 안 됨, 셋째, 아랍어를 읽고 쓸 수 있을 것, 넷째, 법률에 따라 교화되지 않거

나 부정직, 도덕적 비열함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법률의 관할 법원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다섯째, 선거법에 정해진 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l-Shoura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법률(안)발의 및 법률 제정, 각의에서 회부하는 예산안 및 법령안, 기타 주요안건 심의를 한다. Al-Shoura 자문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안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국왕의 비준을 필요로 한다. 또한 국왕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심의를 이루어지며, 2/3의 지지를 얻어 재차 통과되면 법률안으로 확정하게 된다. Qatar의 Al-Shoura 위원회의 의원이 현행범(flagrante delicto)으로 발견되었을 때, 그는 위원회로부터 사전허가 없이 체포, 구금, 검색 및 수색을 받지 않는다. 위원회가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내에 허가에 대한 요청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 사실상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허가는 마지막으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을 때 위원회의 의장에 의하여 발행하게 된다. 또한 현행범의 경우에, 위원회는 유죄가 되는 의원에 대한 취한 조치를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이러한 통지는 첫 번째 회의 결과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즉 Qatar State의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는 명목상 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할 뿐 서구 개념의 의회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원의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동국가(UAE, Saudi Arabia, Qatar)의 경우에, 왕정국가이므로 서구의 입법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 의회기능”만을 가진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3) UAE, Saudi Arabia, Qatar State의 왕정국가로 인한 병폐

중동의 왕정국가들은 막대한 오일머니로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대신에 정치참여를 막고, 시민권이 없는 외국의 노동자들을 수입하여 국가를 운영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중동국가가 단일왕정체제를 폭압

적으로 유지하면서 왕족일가가 정부의 주요보직을 차지하고 있고,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여 왕정이 불안해지면 언제든지 도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아랍에미리트(UAE)는 토후국 4개가 느슨한 연합형태를 취한 이 나라도 복잡한 상황이다. UAE의 경우 석유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부다비가 사실상 UAE를 대표하고 있다. 현재 UAE는 아부다비의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명목뿐인 통치자이며, 칼리파 대통령의 이복동생인 모하메드 왕세자가 실권자로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상태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 알-사우드 왕가가 통치해온 이 나라는 앞으로 중동 사태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만하다고 하겠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이슬람의 성지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데다가 이슬람근본주의를 추종하는 ‘와하비’운동이 득세해 항상 보수적인 분위기가 지배하였고 그만큼 의미 있는 사회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5년 왕위를 계승한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이 첫 남녀공학 대학을 개교하는 등 개혁추진을 천명했으나 사사건건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Saudi Arabia Kingdom의 왕가는 후계 구도가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 왕세자 술탄이 83세인데다 또 다른 실력자인 내무장관 나예프 왕자도 71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왕자들에게 권력 이양작업을 해야 할 상황이다. Qatar State는 알-타니 왕가로 막대한 가스 매장량을 바탕으로 생긴 부를 국민에게 배분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으며, 외교 정책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아랍세계 반정부 시위대의 목소리를 증계하고 있다.

따라서 중동국가(UAE, Saudi Arabia, Qatar State)가 왕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폐단으로, 향후 중동국가인 카타르의 경우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국민은 적극적인 반정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아랍에미리트 국민들도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 2 절 아프리카지역의 법체계

1.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정치체제

1) 정치체제 개요

에티오피아는 100여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 티그레이(Tigray), 아파르(Afar), 암하라(Amhara), 오로미아(Oromia), 소마리(Somali), 남에티오피아(SNNPR, Southern Nations, Nationalities and People's Region), 감베라(Gambela), 하라드(Harar), 아디스 아마바(Addis Ababa)의 9개 주로 구성된 연방 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형태이다.²⁷⁰⁾

에티오피아의 정치상황은 많은 불안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OLF(오모로 해방전선) 등은 에리트리아 분립 허용, 종족에 근거한 지방 분권주의 채택 및 소수 종족인 티그레이족에의 권력 집중 등에 반발하여 대정부 무력 투쟁을 전개 중에 있다. 둘째, 현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2005년 총선에서 수도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야당이 선전하고, 특히 수도에서 야당이 압승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것은 15년에 걸친 멜레스 정권의 장기집권과 소수 티그레이족 편중 정책에 대한 여타 지역의 불만과 상대적 빈곤감 증대에 따른 민심 이반이 총선 결과에 반영된 것이다. 셋째, 2005년 6월 반정부 시위에 이어 10월 야당측의 정부출범식 등원거부와 이에 따른 정부측의 해당의원 특권면제의 박탈 등으로 인하여 야당 및 대학생들의 반정부 활동이 계속되었다. 특히, 2005년 11월, 아디스 아바바, 지방 도시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과정에서 경찰 등 보안국의 발포로 50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하였으며, 1만명 이상의 야당인사 및 시위 협의자

270) Constitution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at Art. 47.

가 체포되었다. 넷째, 최근 에티오피아-에리트리아 국경지역에 설정된 임시안전지대(TSZ)에서의 긴장 고조가 국내 정국상황과 맞물려 불안 요인을 가중시키고 있다.

2) 국가조직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⁷¹⁾ 연방정부와 주는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가진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력은 헌법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서로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국가원수는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인 국정 권한은 행정부의 수반이 총리가 갖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는 양원제로 인민의회 및 연방의회로 구성되나 인민의회가 실세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의전적 역할만을 담당하는데 인민의회가 후보를 지명하고 양원 합동회의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 임기는 6년으로 3선을 허용되지 않는다.

① 대통령

에티오피아 연방 민주공화국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²⁷²⁾.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2/3 과반수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다²⁷³⁾. 또한 헌법에 따라 하원이 승인한 국제 협정을 선포하고, 총리의 추천에 따라 대사를 임명하고 법에 의해 조건과 절차에 따라 사면을 부여한다.²⁷⁴⁾ 현재 국가원수는 2001년 10월에 당선된 기르마 월데 기오르기스(Girma Wolde Giorgis)가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인 국정권한은 총리가 갖고 있다.

271) Id. at Art. 50.

272) Id. at Art. 69.

273) Id. at Art. 70.

274) Id. at Art. 71.

② 총 리

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이며, 각료 회의 의장인 동시에 군최고 사령관으로서 국정의 실권을 행사한다.²⁷⁵⁾ 또한 총리는 인민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인민의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③ 각료회의

각료회의는 총리, 부총리, 연방정부 각료 및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연방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²⁷⁶⁾

o 권한 및 기능

- 인민의회에서 채택된 법률 및 결정을 집행
- 연방예산안 작성
- 재정, 금융정책 집행 및 중앙은행 관리
- 경제사회 정책과 전략의 수립 및 집행
- 외교정책의 수립 및 집행 통제

④ 의 회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 이며 양원제를 채택. 의회는 하원인 인민의회(547석, 임기 5년)와 상원인 연방의회(117석)로 구성된다. 인민의회(the Council of People's Representative)는 기본적으로 인구비에 따라 선출되지만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총 547석 중 오로모(Mromo)주가 총 의석수의 1/3, 암하라(Amhara)주 및 남에티오피아(SNNPR)주가 각각 1/4, 트그레이(Tigray) 주가 7%를 차지한다.

o 주요 권한

- 입법권

275) Id. at Art. 74.

276) Id. at Art. 75.

- 대통령 지명, 추천(상·하원 합동회의에서 2/3 찬성)
- 총리임명
- 각종 각료 및 연방재판관 임명 승인
- 전쟁 선포권
- 예산 승인권

연방의회(the Council of Federation)는 종족대표로 구성되며 각 종족은 적어도 종족당 1명의 연방의회 대표권을 보유한다. 또한 각 종족은 인구 100만 명당 추가로 1명씩 대표권을 더 보유한다.

o 주요 권한

- 헌법 해석권
- 각 종족의 분리독립 등 자결권 문제에 관한 결정권
- 각 States간 분쟁해결

⑤ 정 당

에티오피아의 주요 정당은 3개가 있다. 집권당인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통일민주연합(CUD, Coalition for Unity and Democracy), 연합에티오피아민주전선(UEDF, United Ethiopian Democratic Front) 등이 있다. 집권여당이었던 EPRDF는 2005년 5월 총선을 통해 총 547석 중 327석을 차지하여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EPDF는 1989년 멩기스투 사회주의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싸우던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TPLF), 에티오피아 인민민주운동(EPDM), 오로모(Oromo) 인민민주조직(OPDO) 등 3개 단체가 연합하여 결성된 정당이다. 당의장은 멜레스 제나위 총리가 맡고 있다. EPRDF는 OLF 등 반정부 단체들의 제도권 진입 거부로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CUD는 2004년 11월, AEUP(All Ethiopian Unity Party), UEDP-Medhin (United Ethiopian Democratic Party-Mehdin), EDL(Ethiopian Democratic League), Rainbow Ethiopia for Democratic and Social Justice 등 4개 정당의 연합이다. 2005년 총선에서 109석을 차지하여 EPRDF에 이어 제 2당으로 부상했다. 수도 아디스 아바바의 23개 선거구 전의석을 차지하고, 시의회 선거에서도 전체 138석중 135석을 석권하여 시정부를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CUD가 의회를 보이코트함과 동시에 아디스 아바바 시정부 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아디스 아바바는 과도정부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당 지도층은 주로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티오피아내 거의 모든 지역과 종족에 걸쳐 당원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학자나 기업인, 노동자, 전직 외교관, 국제기구 근무자, 해외 거주자들이 주요 지지층이다. CUD의 주요 정책 공약은 농민의 토지 소유권 보장, 노동자의 권리 존중, 인권보장², 각 종족의 민주적 권리 존중 등이다.

UEDF는 2003년 8월 ONC(Oromo National Council)와 ARDUF(Afar Revolutionary Democratic Unity Front)등 14개 정당의 연합으로 결성된 정당이다. 2005년 5월 총선에서 52석을 얻어 CUD에 이은 제2당이 되었다. UEDF는 종족에 기반을 둔 정당의 연합체로 주로 남부와 중부 지역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해외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당이다.

3) 입법부

① 연방(Federal)

1995년에 제정된 헌법은 연방정부에 두 개의 대표기관을 두고 있지만 에티오피아 의회는 전통적인 양원제라 볼 수 없다. 인민의회(House of Peoples' Representation)가 전통적인 입법과 그 밖의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연방의회(House of Federation)는 많은 부족과 종족

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독특한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민의회는 연방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이며, 연방 사법권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인민의회는 권한과 기능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만, 필요한 경우 주 정부에 위임될 수 있다.²⁷⁷⁾

인민의회는 일반적으로 정부 권한과 수입원을 정의하기 위한 연방 입법 및 감독 기능을 한다. 또한 연방정부의 최고의 권한을 가지며 연방 사법관할의 모든 문제에 대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²⁷⁸⁾ 그 밖의 다른 의무로서 연방 판사, 위원 등 임명을 승인하며, 여당을 형성하고 리드한다.²⁷⁹⁾

연방의회는 연방지역에서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부족, 민족, 종족으로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다.²⁸⁰⁾ 즉, 방의회는 주 정부(주의회)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며, 헌법을 해석하는 독특한 준사법적인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헌법에 따라 분리·독립의 권리를 포함한 국민, 종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²⁸¹⁾

② 주(States)

1995년 제정된 헌법에서는 주(States)의 권력과 기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²⁸²⁾ 주 의회는 주 사법권 관할권 하에 있는 입법권을 가지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 헌법 초안을 채택, 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대부분의 주는 법을 제정하고 주 헌법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한 개의 의회를 가진다.

277) Id. at Art. 50-51.

278) Id. at Art. 55.

279) Id. at Art. 56.

280) Id. at Art. 61.

281) Id. at Art. 62.

282) Id. at Art. 52.

③ 자치구역(Municipal Districts)

열거된 주의 다른 의무들에 더하여 Addis Ababa 시의회는 자치 사무, 관할권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사법기구를 설치하고 시 헌장(Cith Charter)에 따라 그 권한과 기능을 정한다.

4) 사법부

① 사법의 독립

에티오피아 사법부는 헌법에 의해 그 독립이 명백히 보장되어 있다.²⁸³⁾ 연방정부의 최고 사법권은 연방 대법원에 있다. 법원과 재판관은 법률에 의해 독립하여 어떠한 조직의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²⁸⁴⁾ 역사적, 전통적으로 에티오피아 헌법에서 명시된 독립과 균형을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에티오피아 헌법에는 지방분권화와 종족계통에 따른 주의신설 규정을 두고 있어서 각 주들은 분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사법체계의 최고기관은 연방 최고법원이다. 각 주에는 최고법원과 고등법원, 하급법원이 있다.

인민의회는 2/3 찬성으로 필요지역에 연방 고등법원 또는 1심법원 설치 가능하며, 총리의 지명으로 연방 최고법원장 및 부법원장을 임명한다.

② 연방법원(Federal Courts)

연방법원은 연방 최고법원, 연방 고등법원, 연방 1심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 최고법원은 연방 사항에 대한 최고이자 최종적 사법권을 가진다.²⁸⁵⁾ 각 법원은 민사, 형사, 노동 분야에서 재판장과 각 분

283) Id. at Art. 78.

284) Id. at Art. 79.

야 두명의 판사를 둔다. 연방 최고법원은 수도인 Addis Ababa에 위치해 있으며, 1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 고등법원과 1심법원은 Addis Ababa와 Dire Dawa에 위치하고, 각각 약 35명, 5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 최고법원은 하급 연방법원과 주대법원의 기본적인 법률 오류 결정을 포함한 최종 결정에 대한 파기권을 가지고 있다. 연방 문제에 대한 주 대법원의 결정은 연방 최고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연방 고등법원은 5개의 주에 설립되어 있는데 이는 주 사법체제에 내재된 취약점과 문제점에 기인한다.²⁸⁶⁾ 일부 연방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 법원의 목적은 덜 안정되어 있는 지역의 운영과 안정 유지이다.

연방법원은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 혹은 관할권이라고 인정되는 지역 내 어떤 곳이든 순회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③ 주법원(State Courts)

헌법에서 주는 주 최고법원, 고등법원, 1심법원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²⁸⁷⁾ 주 최고법원은 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법률 및 관할권 문제와 관련 최종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²⁸⁸⁾ 주 고등법원은 Zonal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주 사법관할권 외에 연방 1심법원의 관할권 내에서도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방법원은 주 법원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에 주 법원은 가능한 한 많은 연방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85) Id. at Art. 80.

286) 연방 고등법원은 에티오피아의 Afar, Benshugul, Gumuz, Gambela, Somali 주에 설치되어 있다.

287) Id. at Art. 78.

288) Id. at Art. 80.

④ 사회법원(Social Courts)

헌법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주에서는 규모가 작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법원(Social Courth or Kebele Courts)을 두고 있다.²⁸⁹⁾ 주 법하에 제정된 사회법원은 공식적인 사법체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일부 주 법에서 항소는 1심법원에서 이루어지나 특정 상황의 경우 첫 번째로 사회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법원의 판사는 비전문가로서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법원의 구성원 중 선거나 임명을 통해 선출된다. 사회법원은 에티오피아 대다수 사람들의 법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역할을 한다.

⑤ 지방지역법원(Municipal District Courts)

Addis Ababa 도시현장은 지역을 관할하는 1심법원과 항소법원의 두 가지 형태의 지방법원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²⁹⁰⁾ 도시현장은 지방체제에서 항소법원 내에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사가 있으나 최고법원은 두고 있지 않다. 항소법원의 파기심리는 연방법원의 결정전에 할 수 있으며, 도시법원과 연방법원 사이의 관할권 문제에 대한 결정은 연방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Addis Ababa 법원체제는 연방과 주 법원사이의 결정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지역 법원은 연방법원 체계속에서 전통적인 체제 밖에 있는 젊은 법률가들로 구성되어 진다. 이들 새로운 법률가 그룹은 매우 활동적인 동시에 획기적인 성향을 가지며, 지역에 직면하고 있는 특별한 문제에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Addis Ababa 도시 현장은 5000birr(약\$580) 이하의 사소한 형사범죄와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해 사회법원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평균 도시 근로자들이 월급이 300birr 정도 생각할 때, 이들 법원은 사회 대

289) 사회법원을 두고 있는 주는 Amhara, Tigray, Oromia 주이다.

290) Proclamation 311/2003.

다수 분쟁을 처리한다. 사회법원의 결정은 1심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도시현장의 노사관계위원회, 공공조사위원회, 세무심사위원회, 도시토지정리위원회 등에게도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Dire Dawa는 연방법원에 독립된 지역법원 체제를 공식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 사회법원은 존재하나 사법권한이 명확하지 않으며 항소법원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

⑥ 그 외 법원(Other Courts)

에티오피아 헌법은 종교 혹은 관습법에 따라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 개인과 가족 문제에 관한 분쟁 판결을 허용한다.²⁹¹⁾ 이론적으로는 정통적 법률체계와 공식적 법률체계가 갈등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운영된다. 공식적으로는 종교법원과 관습법원 둘다 인정하고 있다. 전통체제는 공식체제와 동시에 사법권 및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많은 부분에서 두 가지 체제가 상당히 마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아가, 관습 재판은 다른 지역 관습과 전통에 따라 다르며, 성문화 되어 있지 않다. 헌법적 분쟁이 연방, 주 파기원, 인민의회에 헌법상 분쟁으로 주장하여 항소하지 않으면, 공식 법률체제에서 전통법원의 항소 절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에티오피아의 법률 체제는 공식적 사법체제 이외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 있다.

- 이슬람 법을 적용하는 샤리아 법원(Sharia Courts)은 오로지 주, 지방, 지역에 설립된 유일한 종교법원이다. 샤리아 법원은 가족에 관한 사항 및 종교사안 등에 대해 오직 이슬람 법을 적용하며, 자체적으로 항소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법원의 절차규칙을 따르며, 예산은 연방 사법행정위원회로부터 받는다. 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종교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291) Id. at Art. 34.

- 관습/전통 법원(Customary/Traditional Courts)은 헌법상 인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 광범위하게 설립되어 있지 않다. 사회 법원과 달리 관습 법원은 법에 의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인정만 되어 있다. 이러한 법원의 권한은 전통과 지방 관습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전통적 중재위원회 또는 원로 의회가 진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전통법원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에티오피아 도시지역 전체에 걸쳐 도덕적 구속력이 있으며, 주요 결정에 중요한 역할로서 여전히 운용되고 있다. 공식적인 재판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이러한 법원에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2. 나이지리아

(1) 나이지리아 정치체제

1) 정치체제 개요

나이지리아는 다당제를 채택한 민주연방공화국으로 연방 수도지역 및 36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약 1억 5,00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이지리아의 정치체제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전제로 권력을 분산시켜 권력이 어느 특정한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치체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각 기관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며 군의 최고사령관이기도 하다. 임기는 4년이고 재선까지만 가능하다. 대통령은 내각을 통솔하며, 내각 역시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거하여 의회로부터 가능한 한 분리되어 있다. 행정부에는 수많은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거대한 관료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크게 29개의 부서와 대통령 직속의 여러 독립 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부인 의회의 주 임무는 법률의 입안으로 의회 역시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원·하원제를 택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의회는 각 주를 대표하는 109명의 상원과 360명의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입안한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법부 역시 의회, 정부와 함께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법제도는 연방법과 주법의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어 법원은 연방법원계열과 주법원계열이 있다. 연방법원은 연방법원과 연방법의 위반 등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경우를 취급하고, 주법을 둘러싼 사건은 우선 각 주의 주법원에서 다룬다. 주법에 따라 다루는 사건은 주 최고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인 것이 되지만 사안에 따라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다.

나이지리아 정치체제 내에서의 권력의 분립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36개의 주와 수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정부가 나이지리아를 대표하여 완전한 국제법상의 능력을 인정받는다.

연방정부를 비롯한 각 주정부는 각기 고유한 입법·사법·행정조직을 갖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우월성은 일정 한도 내에서 제한된다. 즉, 각 주 주정부와 의회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집행에 대해 연방정부의 간섭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주정부의 권한과 책임, 구조 및 기능 그리고 재정에 관한 사항 역시 기본적으로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각종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어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오바산조 대통령의 집권 이후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는 대대적인 전환을 맞게 되었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영역에 개입하는 경우가 과거 군부 권위주의 체제에 비해 크게 줄어들면서 그동안 있어 온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종적인 관계에 대해 주정부들은 반발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 정책결정의 독단성을 견제하고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나이지리아의 경우 주정부의 자기결정권 강화 양상은 국가분열의 한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체제 내에서 최근 분리·독립의 요구와 같은 연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자기결정권이 점차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오바산조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강력한 정치적 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아 이들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010년 5월 야라두아 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굿럭 조나단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조나단 대통령은 현재 나이지리아의 현안 과제로 전력난 문제, 도로 인프라, 치안, 부패, 자국민 계몽 등을 현안 과제로 열거하며 향후 풀어야 과제로 언급하였다. 또한 나이지리아는 북으로부터 진행되는 급격한 사막화와 남으로부터의 해수면 상승 등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국가 중 하나로 실질적 해결안 마련을 위해 미국 등 선진국에 원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2) 국가조직

나이지리아는 수도지역(FCT)과 36개 주(States)로 구성된 연방공화제 국가이며,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으로 국가를 구성

- ① 행정부
- 대통령

현 대통령(국가원수 겸 군총사령관, 공식직함은(President and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은 굿럭

에벨레 조나단(Goodluck Ebele Jonathan).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재선까지만 가능.

● 부통령

현 부통령>Nama야 Smabo)은 대통령 유고시 직무를 승계한다

● 내 각

각 연방부처별로 각각 1~2명의 각료가 있으며 큰 부처의 경우 장관(Minister)이 외에 Junior Minisiter라고 할 수 있는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을 두고 있다. 전 오바산조 정부 출범이후 문화 관광부, 환경부, 경찰부가 신설되어 부처 수는 총 33개로 증가했으며 Abubakar 정부 시 폐지한 석유자원부 장관직과 Abacha 정권 이래 군 출신 국가 원수가 겸직하던 국방 장관직이 부활했다. 매주 수요일 오전 대통령, 부통령 및 전 각료가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 주지사

전원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현재 주지사는 총 36명이며 주지사 임기는 4년으로 재선까지 가능하다. 주지사는 주 의회의 인준절차를 거쳐 주장관(Commissioner)을 임명한다. 대통령, 부통령, 각주지사가 참석하는 주지사 회의(Council of State)에서 연방 정부와 각 주가 관련된 주요 국가적 사안을 결정한다.

● 대통령 특별보좌관

대통령은 헌법 규정에 따라 수명의 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현재 대통령 특별 보좌관직은 다음과 같다.

- 비서실장(Chief of Staff in the Presidency)
- 석유 및 에너지담당 보좌관(Presidential Adviser on Petroleum and Energy)

- 국가안보 보좌관(National Security Adviser)
- 정치담당 보좌관(Special Adviser on Political Adviser)
- 국제관계담당 보좌관(Special Adviser on Int'l Affairs)
- 언론공보담당 보좌관(Special Assistant in charge of Media and Publicity)

● 경찰

경찰청장은 경찰 고위간부로 구성된 경찰위원회(Nigeria Police Council)의 건의를 참작,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주의 경찰장관(Commissioner of Police)은 연방정부 내에 설치된 Police Service Commission에서 임명한다.

● 14개 연방위원회 설치

헌법 규정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Code of Conduct Bureau), 주지사 회의(Council of State), 국가 안보 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 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연방 공무원위원회(Federal Civil Service Commission) 등이 설치되어 있다.

여타 연방위원회에는 Federal Character Commission, Federal Judicial Service Commission, Independent National Electoral Commission, National Defense Council, National Judicial Council, National Population Commission, Nigeria Police Council, Police Service Commission, Revenue Mobilization Allocation and Fiscal Commission 등이 있다.

② 입법부

입법부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임기 약 4년) 되어 있으며 상원의원은 36개 각 주별 3명과 연방수도 아부자 1명 등 총 109명이며, 하원의원은 유권자 17만 명 당 1인을 선출(현정원 360명)한다. 상원은 대통령이 요청한 각료에 대해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군대 해외 파병시

사전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원 모두 각종 입법권, 예산 심의권, 연방재정 지출 승인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 정족수

- 의사 정족수 : 양원 공히 총 정원의 1/3 출석
- 의결 정족수 :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단순 과반수
- 법안은 상·하 양원을 통과해야만 정식 법률로 완성(단 대통령이 동의한 법안의 경우 상원 또는 하원 중 한곳에서만 2/3 다수결로 통과될 경우 정식 법률로 완성)

● 활동

- 연간 최소 181일 이상 개회
- 활동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부처 관련 업무를 심의할 경우 해당 기관장의 출석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겸직 금지 : 상·하원 의원이 대통령, 부통령, 주지사, 부지사, 연방 각료, 주 정부 장관,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 될 경우 의원직 상실

● 특기 사항

- 상원의장은 대통령, 부통령에 이은 연방정부 서열 3위
- 양원 합동 총회 시 상원의장이 의장이 되며 상원의장 부재시 하원의장이 의장이 됨.

③ 사법부

나이지리아의 사법제도는 지역마다 편차를 보이는데 특히 이슬람 교도가 많은 북부와 그리스 교도가 많은 남부사이에서 편차가 두드러진다. 현재 관습법과 나이지리아 성문법, 영국법이 통용되고 있다.

관습법은 대개 정규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주재하는 부족 법원(일종의 관습법원)에서 적용되지만, 이슬람 법원인 알카리 법원의 판사(Alkalis)는 이슬람법에 관한 정규 교육을 받는다.

나이지리아 성문법은 영국 식민지 시절의 법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주의회는 연방정부가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방·외교·광업 등의 이른바 ‘독점입법 사항’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다.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서로 배치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한다. 나이지리아 성문법 외에 영국법이 하급법원과 모든 고등법원에서 적용된다. 각 주마다 고등법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다.

연방 사법권은 대법원(Supreme Court), 연방 공소원(Federal Court of Appeal), 연방고등법원(Federal High Court)에 속하며, 수도 아부자에 고등법원(High Court of the Federal Capital Territory, Abuja), 회교 공소원(Sharia Court of Appeal fo the Federal Capital Territory, Abuja), 관습 공소원(Customary Court of Appeal of the Federal Capital Territory, Abuja)의 3개 법원이 있고, 주의 사법권은 주의 고등법원(High Court of State), 회교 공소원(Sharia Court of Appeal of State), 관습 공소원(Customary Court of Appeal of State) 및 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원이 속한다.

● 대법원(Supreme Court)

대법원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1명과 최고 21명까지의 판사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연방과 주 및 주 상호간의 분쟁과 연방 공소원으로부터의 공소 사건 심리를 하고 있다.

● 연방공소원(Federal Court of Appeal)

연방 공소원은 원장 1명과 49명 이하의 판사들로 구성됨. 이들 중 이슬람법 전문가 3명 이상, 관습법 전문가 3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된다.

● 연방고등법원(Federal High Courts)

연방고등법원은 재판장 1명과 여러 명의 판사들로 구성된다.

● 수도권 고등법원, 회교 공소원, 관습 공소원

재판장 1명과 여러 명의 판사들로 구성된다.

● 주법원(State Courts)

주 고등법원(High Court of State)은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지사가 임명한 재판장 1명과 판사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주는 필요하다면 이슬람 민사법을 다루는 이슬람법 공소원(Sharia Court of Appeal)과 관습법 공소원(Customary Court of Appeal)을 둘 수 있다.

3) 정당제도

나이지리아에는 현재 다음과 같이 6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다.

- People's Democratic Party(PDP)
- All People's Party(APP)
- Alliance for Democratic(AD)
- All Progressive Grand Alliance(AGPA)
- National Democratic Party(NDP)
- United Nigeria People's Party(UNDP)

이 중 PDP는 북부와 동남부 이보족 지역에 강력한 기반을 두고 있고, APP는 북서부 일부와 북동부 일부 및 중부 지역에, AD는 서남부

요루바족 지역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2월 민선 대통령 선거에서는 PDP의 오바산조 후보가 총 유효투표의 62.78%를 획득,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기타 상·하 의원, 주지사, 기초 단체선거를 모두 PDP가 석권, 여당으로서의 독보적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야라두아 대통령은 거국 내각 구성이라는 취지하에 야당인 APP와 AD 출신 인사 일부를 내각에 포함시켰다.

3. 콩고민주공화국

(1) 개요

아프리카의 심장이라 불리우는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은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할 당시 콩고공화국이라고 하였으나, '64년에는 콩고민주공화국, '71년에 자이르공화국, '97년 5월에 다시 지금의 국명으로 변경되었다. 아프리카에서 3번째로 큰 국가로, 북쪽으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수단, 동쪽으로는 동아프리카 대지구대의 호수를 사이에 두고 우간다, 르완다, 브룬디, 탄자니아, 남쪽으로는 고원지대를 사이에 두고 잠비아와 앙골라, 서쪽으로는 콩고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²⁹²⁾

콩고민주공화국은 99%이상이 흑인(Black African)이며, 250여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⁹³⁾ 20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6년에 제정된 헌법에 의해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카톨릭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개신교 30%, 회교 5%, 토착신앙이 15%를 구성하고 있다.

292) 국명은 '사냥꾼'이라는 뜻으로 콩고강 유역에 사는 바콩고(Bakongo)라는 부족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93) Bantu족(2/3 이상, Mongo, Kongo, Luba, Lunda, Bemba, Kasai 족), Sudan계 종족(북부, Zande, Mangbetu, Banda, Abarambo족), Nilot족(북동부), Pygmy족(삼림 및 강가 거주)

콩고민주공화국은 벨기에에서 독립된 후, 수년 동안 혼란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모든 생산활동이 크게 감퇴되었으나, '66년부터 벨기에 등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국유화하고 '77년에는 통화개혁을 단행하여 경제개발의 기반을 다져 왔다. 그러나 '96년부터 6년간에 걸친 내전으로 인한 살인, 기아, 질병 등으로 35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외채가 증가하고 경제가 피폐화되었다. 2003년 현 임시정부 출범 이후 해이 금융기관 등의 도움으로 안정세를 찾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진정되고 경제가 플러스 성장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정부의 투명성 부족과 부패가 만연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생활은 세계 최하위를 보이고 있다.

'01년 카빌라 대통령 사망 후, 그 아들인 조셉 카릴라가 '06년 43년 만에 직접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대도시권에 기반을 둔 밤바²⁹⁴⁾를 물리치고 당선되었으나 지방 소도시 위주의 미약한 지지기반과 국회에서 과반에 현저히 미달하는 의석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이 적지 않다.²⁹⁵⁾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내전 종식 등 국내정세의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으며, 지리적 특성에 힘입어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중부 아프리카경제공동체(ECCAS) 등 아프리카 내 지역경제공동체에서 의장직을 수행, 2009년 9월과 10월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역내 지위를 높여가고 있다.

(2) 콩고민주공화국 정치체제

콩고민주공화국은 1965년 11월 이후 모부투 세세 세코(Mobutu Sese Seko)가 국가원수의 자리에 오르면서 1967년 5월 혁명인민운동(MPR)

294) '03년 과도정부수립 전까지 카릴라에 맞서 반군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카빌라와 밤바는 오랫동안 대립관계를 이루어 왔다.

295) 콩고민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UN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반대파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사회운동가 등에 대한 암살과 고문이 성행하는 등 인권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 보고된 바 있다.

의 1당제 국가인 콩고민주공화국이 되었다. 1970년 11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모부투 세세 세코가 100%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그는 국내에서 벨기에의 잔재를 일소하기 위하여 수도 레오폴드빌의 이름을 킌사사로 고치는 등 주요도시의 명칭을 바꾸었으며, 1971년에는 국명과 콩고강의 명칭을 자이르 및 자이르강으로 개칭하였다. 이와 함께 국기도 바뀌었고 그밖에 세례명을 폐지하고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철저히 지키도록 명령하였다.

모부투 세세 세코 대통령은 국가건설에 사회주의적 정책을 도입하여, 주요기업을 국유화하는 한편 외교정책에서도 공산권에 접근하고 1974년에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1974년 8월에는 헌법을 개정하고, MPR 당수가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1975년 인접국 앙골라 독립운동단체인 좌우파 사이에 내란이 일어나자 모부투 세세 세코 대통령은 미국과 함께 우파를 지원하였다. 그 때문에 1977년 3월 모부투 정권에 반대하는 앙골라 무장세력의 침입을 받기도 하였다. 이들은 프랑스·벨기에·모로코의 군사개입으로 제압되기는 하였으나 1978년 이와 비슷한 침입사건이 다시 일어났으며, 앙골라와의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같은해 7월 두 나라 대통령은 국경선 존중, 반정부 게릴라의 상호 배제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78년 5월에는 앙골라·쿠바군이 모이세 촌베의 카탕카군을 지원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프랑스·벨기에·모로코의 파병과 미국의 간접지원으로 위기를 모면하였다. 내란이 끝난 뒤 쿠바·동유럽권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1981년 5월에는 이스라엘과도 외교관계를 복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랍 여러 나라는 단교할 것을 권하였다. 그 후 1997년 5월 로랑 카빌라(Laurent Kabila)가 이끄는 반군세력에 의하여 모부투 세세 세코 대통령이 축출되면서 국명을 콩고민주공화국으로 개칭하면서 국기도 바꾸었다.

1998년 8월에 우간다·르완다 등이 지원하는 반정부세력이 무장 봉기하고 짐바브웨·앙골라·나미비아 등은 카빌라 정권 옹호를 위해 콩고민주공화국에 군사를 파견함으로써 내전이 발발하였고 이는 7개국이 관여한 국제분쟁으로 발전하였다. 1999년 8월 말 평화합의가 성립되었으나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었다. 2001년 1월 로랑 카빌라 대통령이 살해되어 같은 달에 아들인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개방노선을 진행하고 있다.

2006년 2월 18일 제정된 헌법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은 대통령중심제 공화국이다. 지난 6년 간의 내전을 극복하고 2002~2003년에 걸쳐 체결된 평화협정에 따라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현재 헌법은 직선 대통령과 국회 내 다수당에서 선출되는 총리 간 권력을 분배한 분권형 대통령제(semi-presidential)의 중앙정부, 각 주정부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 지방자치 특색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1) 행정부

행정부는 직접선거를 통해 5년 임기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국회 내 다수당에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총리와 행정부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대통령

현 대통령(국가원수)은 Josep KABILA Kabange로 2006년 12월 6일 취임했으며,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② 총 리

총리는 Adolphe MUZITO 로 PALU당 소속 당수로 2008년 10월 26일 Kabila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③ 내 각

내각은 총리, 부총리 3명, 장관 36명, 차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국 회

국회는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원(Assemblée Nationale)은 임기 5년의 직선 의원 500명으로 구성되며, 상원(Senat)은 26개주 주의회에 의한 간선 의원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사법부

법원은 3심제로 운영되며 헌법재판소가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사법부는 행정부 및 입법부로부터 독립을 보장 받는 기관으로서 대법원, 사법판결을 담당하는 고등항소법원(Supreme Court of Appeal), 행정판결을 전담하는 행정위원회(State Council)로 구분된다.

3) 정당제도

콩고민주공화국 내무부에 공식 등록된 정당은 총 278개이다. 2006년 7월 30일 총선 결과 국민의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는 재건과 민주를 위한 인민정당(PPRD) 111석, 콩고자유운동(MLC) 64석, 통합콩고당(PALU) 34석, 재생을 위한 사회운동(MSR) 27석, 재성을 위한 운동(FR) 26석, 민주를 위한 콩고렐리(RCD) 15석, 무소속 63석, 기타 160석 등이다.

상원의 정당별 의석 분포를 보면 재건과 민주를 위한 인민정당 22석, 콩고자유운동 14석, 재생을 위한 운동 7석, 민주를 위한 콩고렐리 7석, 기독교민주당 6석, 기독교민주대회 3석, 재생을 위한 사회운동 3석, 통합콩고당 2석, 무소속 26석, 기타 18석 등이다.

여권연합으로 Kabila 대통령 주도의 「국가재건민주당(PPRD)」을 중심으로 한 여권연합인 「대통령집권을위한연합」(AMP, Alliance pour la

majorité présidentielle)이 있으며, 야당으로 Bemba 전 부통령이 주동하는 「콩고자유운동」(MLC, Mouvement de Libération du Congo)를 중심으로 한 야당그룹이 형성되어 있다.²⁹⁶⁾

제 3 절 중남미지역의 법체계

1. 중남미의 법체계의 개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 스페인어를 공식 국어로 하고 있는 나라들인 멕시코나 페루 등을 히스패닉 아메리카(Hispanic America)²⁹⁷⁾라고 한다. 포르투갈어를 국어로 쓰고 있는 브라질은 히스패닉 아메리카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베로 아메리카(Ibero-America) 국가로 분류된다. 히스패닉 아메리카 국가들의 세 가지 공통점은 언어(스페인어), 종교(카톨릭), 그리고 법(스페인법)이다. 최초 300년 식민지 기간 동안에는 스페인 본토의 법이 히스패닉 아메리카에 상당 부분 적용되었고, 독립 후 최근 200년 동안에는 모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성문법전 중심의 대륙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단, 독일법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계수된 것과는 달리, 멕시코, 페루는 모법인 스페인법과 함께 프랑스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중남미 국가 전반적으로“형식적 법치주의”는 존재한다. 즉, 헌법, 법률, 행정명령 등을 비롯한 많은 법규들이 정비되어 있으나, 문제는 과연 이 법규범들이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적용되고 있나 하는 점이다. 즉, “실질적 법치주의”는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96) 외교통상부 아프리카중동국 아프리카과 제공, 「DR콩고 개황」 p.20.

297) 히스패닉 아메리카는 ① 아르헨티나, ② 볼리비아, ③ 칠레, ④ 콜롬비아, ⑤ 코스타리카, ⑥ 쿠바, ⑦ 도미니카 공화국, ⑧ 에콰도르, ⑨ 엘살바도르, ⑩ 과테말라, ⑪ 온두라스, ⑫ 멕시코, ⑬ 니카라과, ⑭ 파나마, ⑮ 파라과이, ⑯ 페루, ⑰ 푸에르토리코, ⑱ 우루과이, ⑲ 베네수엘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은 1,144만 평방킬로미터(한반도의 52배), 인구는 약 3억 8천만명(대한민국의 7.6배)에 이른다.

2. 스페인 법(Siete Partidas)과 히스패닉 아메리카 법의 유래²⁹⁸⁾

스페인 카스티야 왕국의 알폰소 10세는 1252년에서 1284년까지 대규모 법전 편찬 작업을 주도한 결과로 일곱권의 책으로 구성된 “칠법전서”를 완성하였다. 이것은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법전으로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약 5세기 동안 스페인에서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1800년 초까지 약 300년 동안 히스패닉 아메리카 국가에도 적용된 법전이다. 스페인 칠법전서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를 통해 스페인의 공식적인 로마법 계수가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칠법전서는 옛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북미의 루이지아나에까지 적용되어 “해가지지 않는 제국” 스페인의 법적 영향력을 전 세계 식민지에 펼치는 핵심적인 도구가 되었다. 칠법전서 안에는 헌법, 교회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고루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히스패닉 아메리카 국가들의 독립 후 법전화 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참고문헌이 되었다.

식민지 시대(1500년 ~ 1810년)에 히스패닉 아메리카에 적용된 법을 “인디안법”(Derecho indiano)라고 불렀는데, 이 법은 “카톨릭 신앙의 포교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이었으며, “비체계적인 법”으로서, 1680년에 가서야 구체적인 정비 작업이 시작되었다. 스페인 본토에서 발효한 법이라 할지라도 히스패닉 아메리카에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고,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부적당한 법규가 있을 경우 국왕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으며, 공법이 사법의 우위에 있는 행정법 중심의 법²⁹⁹⁾이었다.

298) 하상욱, ‘중남미의 법체계 -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비교분석’, (2010), 137 ~ 139면.

299) 당시 히스패닉 아메리카의 행정기관이었던 부왕, 총독, 지방의회는 운영과 권한에 대한 규정이 많았다.

히스패닉 아메리카 출생자(criollos)보다 본토 출생자(peninsulares)를 우대하는 법이었으며, 스페인 국왕에 충성을 강요하는 법³⁰⁰이었다. 주요 법원(Source of Law)으로는 칠법전서(Codigo de las Siete Partidas), 토로법(Ley de Toro), 푸에로 후스고(Fuero Juzgo), 최신 편찬법(Novisima Recopilacion) 등이며, 이후 이런 법들을 총 집대성한 “인디안 대법전”(Recopilacion de Leyes de los Reinos de las Indias)이 있다.

1810년 이후 히스패닉 아메리카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독립을 해나가면서 공화국의 기반을 다졌고, 이와 아울러 자체적인 법전편찬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사례로 칠레 민법전, 아르헨티나 민법전, 브라질 민법전을 들 수 있겠는데, 특히 1857년 1월 1일부터 발효한 칠레 민법전은 베네수엘라 출신의 언어학자 및 법학자인 안드레스 벨요(Andres Bello)의 작품으로, 유럽에 나폴레옹 법전이 있다면 히스패닉 아메리카에는 칠레 법전이 있다고 할 정도로 중남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칠레 민법전은 에콰도르(1858년), 엘살바도르(1859년), 니카라과(1867년), 니카라과(1867년), 온두라스(1880년), 콜롬비아(1887년), 파나마(1903년) 등 여러 히스패닉 아메리카 국가들이 자국 민법전으로 채택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우루과이 -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민법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 칠레 민법전은 “채권” 부문에 있어서만 프랑스 민법전의 영향을 받았고, 나머지 부문에서는 근대 민법으로서의 여러 가지 독창성을 갖춘 법전이였다. 칠레 민법전의 원천으로 멀리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법대전, 가까이는 스페인의 칠법전서, 나폴레옹 법전, 오스트리아 법전, 프러시아 법전 등을 들 수 있다. 히스패닉 아메리카 국가들의 헌법은 예외 없이 미국 헌법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으며, 미국과의 특수 관계에 있는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한 나머지

300) 스페인 국왕에 대한 조언권이 보장되어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부담의 무, 병역의무 등을 부과하는 법이었다.

18개 히스패닉 아메리카 국가들은 모두 미국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3. 브라질

(1) 연방 헌법의 특징 및 연혁

브라질은 오랜 군부통치를 벗어나 1988년 처음으로 민간정부에 의한 민주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과거 식민지 시절부터 군부시절에 이르는 오랜 세월을 걸쳐 법제도는 국민을 통치하는 정치수단으로 인식되어 사회에 깊은 불신의 벽이 쌓여져 있었다. 1988년 민주헌법은 이러한 법의 불신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국민 각계각층의 요구를 모두 연방헌법에 적어 놓았다. 그리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법으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실체적·절차적 보호장치를 헌법에 명시해 놓았다. 그래서 연방헌법은 마치 백과사전처럼 두껍고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브라질은 중남미국가 중 법치민주주의 국가의 모범 사례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세세한 법규정은 오히려 일반생활에서 국민의 법률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입법절차는 세세한 연방헌법의 규정이 입법활동을 저해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교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방헌법을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인권조약을 법률체계에서 헌법규정과 동등한 위치에 올리는 대범함도 보여주었고, 다양한 형태의 입법절차를 궁리하여 적용하는 개척자적인 법률실험정신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어떠한 공권력도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을 통해 구현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이나 브라질이나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법치국가의 틀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제인 브라질에서는

연방헌법(Constituição Federal)으로 불리우고 있다. 헌법이 어느 정도까지를 규율해야 하는 것은 각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 그러나 법제실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근본규범인 헌법이 자주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각국이 위헌심사 제도를 갖고 있는 사실에서 보듯이 헌법은 하위법규범들의 헌법과의 충돌을 막고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헌법의 내용은 세세한 것보다는 국가의 기본원칙, 정치구조나 국민의 기본권 등 원칙적인 것만을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2) 법률의 체계 및 법원

브라질은 중남미 법체계에서 특이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달리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 19세기에 오랫동안 왕정이 유지되었고 또한 국가적 규모에 걸맞게 연방제의 전통을 오래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영향으로 사법심사를 받아들인 이후에 점차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를 수용하게 되었다. 1832년 인신보호영장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이래, 1891년 이를 헌법에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오랜 독재정치가 끝나고 민주체제로 복귀하면서 새로이 제정된 현행 1988년 헌법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헌법의 우위를 보장하는 다양한 장치와 절차를 마련하였음. 브라질은 이베로 아메리카에 속하며, 250여 조문을 가지고 있다.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제한과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문법 국가이다. 그래서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고 불문법인 관습, 조리 등이 보충적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법은 그 존재형식·제정기관·제정목적 등이 다르고 그 법의 입안이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일정한 법률기준에 따라 분류해야 하고 충돌이 있을 경우 그 해석을 체계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법이 사회질서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률체계 내에서 통일된 질서로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브라질은 최고규범인 연방헌법을 중심으로 법률의 위계질서를 확립해 놓았다.

법원이란 일반적으로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브라질은 성문법 국가이지만 성문법 국가라고 해서 오직 성문법만을 법의 연원으로 삼지는 않으며 성문법을 기초로 하여 불문법도 법원으로 사용한다. 연방국가인 브라질은 연방헌법에서 법령체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와 시차원에서 각각의 법령체계를 갖고 있다. 연방헌법상의 법령체계는 전 국토에 대해 적용되지만 주와 시차원의 법령체계는 지역규범으로서의 역할만을 한다.

법규범은 상호간에 위계질서가 수립되어야 상호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위계질서는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의사를 직접 표출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헌법에서 다른 법 형태에 대해 규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들은 헌법보다 하위법률질서를 구성하게 된다. 브라질의 경우에 법률의 위계질서에 대한 헌법상 규정은 없으나 입법절차에 대한 규정인 제59조에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외견상 연방헌법 > 보완법 > 일반법률 > 위임법률 > 임시조치 > 입법부령 > 결정의 순으로 위계질서가 형성된다. 보완법은 연방헌법상에 명문으로 헌법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예정된 이행법을 말하며 일반법률과 충돌시에는 일반법률보다 상위규범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5조 제3항에서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이나 협약으로서 양원에서 각각 2번에 걸쳐 3/5 이상의 투표로 가결된 경우에는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갖도록 했음. 그래서 브라질에서 국제법은 보완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으며 일부 인권협약은 헌법규정과 같은 지위를 누린다고 보고 있다.

브라질의 학설은 주권규범력을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고 있다. 즉, 헌법수준, 법률수준, 규정수준이다. 헌법수준이란 제한권자가 제정하

는 법규범으로 헌법을 제정하거나 헌법을 수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는 헌법제정권력이 원시적 규범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원시적이란 뜻은 질서의 첫 순위란 의미로 법률사회질서에서 가장 상위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규범들은 이러한 상위규범에 의해 제정되는 하위규범이 된다. 입법절차의 관점에서 본다면 연방헌법과 헌법수정이 헌법수준의 법률규범이 된다.

법률수준의 법규범이란 헌법보완법, 일반법률, 위임법률, 임시조치, 입법부령, 입법적 성격의 결정 등으로 입법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규범들을 말한다. 헌법규범에 직접적으로 종속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일차규범이라고 말한다. 규정수준에서는 규정규범들이 제정되며 대통령령, 부령, 행정결정, 내부규칙 등으로 일차규범에 종속되는 법률하위규범으로 이차규범이라고 한다. 법제실무면에서 이러한 법률의 위계질서는 법률을 제정할 때 법률의 내용을 어떤 법 형식에 넣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 법률에 담아야 할 내용을 행정편의를 위해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제정하는 등의 유혹을 제한하는 기준이 됨. 정리하자면, 브라질의 법률규범의 위계질서는 연방헌법과 인권협약 > 보완법과 조약 > 일반법률, 위임법률, 입법부령 > 행정부령, 결정, 부령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

(3) 헌법의 제, 개정 절차의 특징

브라질헌법도 한국헌법처럼 경성헌법으로서 헌법의 제정과 개정절차는 매우 엄격하다. 헌법개정(Reforma Constitucional)이란 경성헌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형식적인 절차로서 브라질 연방헌법은 두 가지의 개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헌법은 헌법의 잠정조항편 제3조에 1988년 연방헌법 제정 후 5년이 경과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양원합동회의에서 헌법재검토를 하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1994년 6월까지 이러한 재검토를 통해 6건의 헌법수정이 있었다. 헌법재검토

는 양원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표결을 받아 통과하는 비교적 단순한 절차였는데 이미 유효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또 다른 방식은 헌법수정임. 연방헌법수정은 연방헌법 제 60조에 규정된 특별입법절차로 현재 연방헌법을 수정하는 유일한 법적 절차이다. 브라질의 헌법은 1824년에 제정헌법(帝政憲法) 이후, 1891년의 제1공화국 헌법부터 1988년까지 7차에 걸쳐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공포되었다. 헌법은 모두 큰 정치적 변혁이 있었던 때에 새로이 발포된 것으로, 브라질 혁명사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브라질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대통령과 연방정부를 중핵으로 하는 연방공화국으로 1988년 새 헌법에 의해 대통령은 4년 임기로 직접 선출되었다. 1994년 총선에서 중도좌파인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의 페르난두 엔히크 카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1998년 재선에 성공하였음. 2002년 총선에서는 노동자당(PT)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가 선출, 2006년 말 재선되어 201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최근 입법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입법부에 전문성과 신속성을 어떤 식으로든지 도입하려는 것임.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입법절차에서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활용하려는 것임. 이탈리아에 기원을 둔 위원회제도는 현재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위원회 입법제도는 그 전문성에 따라 인원수가 한정된 상설 위원회에 입법권한을 분산시키면서도 정치집단간의 비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경우도 위원회입법제도를 갈수록 활성화하려는 경향이다.

(4) 사법기관과 기본권

브라질의 헌법체계에서 최고사법기관은 헌법 제92조와 제1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방최고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 STF)이다. STF는 헌법체계상 통상의 법원과 동일한 사법부에 속하며 별도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브라질 법원조직법상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 중 최고법원의 지위를 차지함. STF는 기본적으로 헌법의 수호자(*guarda da Constitucao, Hüter der Verfassung*)로서 헌법의 보장을 책임지며 헌법쟁송을 담당하고 있음. 그리하여 STF는 최고규범인 헌법을 수호함으로써 민주주의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1988년 브라질헌법은 폭넓은 기본권 목록을 통하여 기본권을 보호하는 여러 절차를 마련하였다. 브라질의 헌법의 수호자로서 STF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STF의 재판은 대부분 민주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었음. STF는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정당충성의무, 인간줄기세포연구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판결해 왔다. 그리고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등 가난한 자들에게 권리보호의 기회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헌법재판의 여러 유형들이 현실적으로 작동됨에 있어서 여러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브라질의 법체계는 중남미에서 가장 잘 작동되는 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기본권의 보장에 실효적인 장치들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STF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그 구성방식이 지적되고 있다. 재판관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다. 이와 관련하여 STF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하원이 아니라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 인준을 거치게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브라질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되기는 하지만, 선출 방식에 의하여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반면에 상원은 주의 정치적 이익을 대표한다. 이러한 점에서 STF의 재판관 인준절차에 상원의 참여만을 인정하고 하원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민주적이라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직무의 속성상 정치적 판단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STF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헌법의 요구처럼 STF가 ‘헌법의 수호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STF의 민주적 구성이 중대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독일의 입법례가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각 반수씩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서 선출된다. 연방참의원에서는 직접선거로, 연방의회에서는 비례대표의 원칙으로 뽑힌 12명의 연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에서 선출됨. 연방의회나 연방참의원에서 선출되기 위해서는 각 2/3의 찬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입법례는 연방제와 민주주의 원리를 조화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연방공화국의 행정구역은 26개주(estado), 1개 연방구(distrito federal)로 구성되어 있음. 각주는 연방헌법 외에 독자적 헌법과 법률을 가지며, 임기 4년의 주지사(州知事)를 선출함. 사법권은 연방최고재판소·연방항소재판소·군사재판소·선거재판소 등이 있으며, 그밖에 주에는 주고등재판소·하급재판소가 있음. 1997년 대통령과 주지사, 시장의 중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4. 멕시코 개관

(1) 헌법의 특징 및 연혁

히스패닉 아메리카 국가들의 헌법은 예외 없이 미국 헌법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 미국과의 특수 관계에 있는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히스패닉 아메리카 국가들은 모두 미국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20세기 최초의 혁명으로 기록되는 1910년도 멕시코 혁명의 결과로 제정된 1917년도 멕시코 헌법은 2008년 1월 현재까지의 약 50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멕시코 헌정사는 이제 안정기에 돌입하였다.

(2) 법률의 체계 및 법원

멕시코의 법원(法源)은 1917년도 헌법, 멕시코가 서명한 국제조약, 연방법, 법전, 학설, 관습 그리고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이다.

(3) 헌법의 제·개정 절차의 특징

멕시코의 헌법은 연방헌법과 주법으로 나뉘나, 연방헌법만 분석하기로 하였으며, 연방헌법은 136 조문을 가지고 있다.

○ 헌법 제·개정 주요연혁

연 도	내 용
1813년	자유주의적 성격의 Apatzingan 헌법 초안이 마련되나 발효되지 않음
1824년	보수파에 승리한 자유주의 연방파에 의해 미국헌법을 모델로 멕시코 헌법 제정
1836년	연방공화국 헌법(헌법의 연방공화국체제는 각 지방 간 분산된 권력형태의 반영에 불과)
1857년	자유주의 헌법 (성직자의 특권을 철폐하고 노예제 폐지와 인권조항 규정)
1824년 ~ 1917년	독재체제와 민주체제가 번갈아가는 혼란한 정국
1917년	헌법 제정(1917년에 혼란한 정국이 안정화 되면서 1857년 헌법의 원칙을 강조한 헌법 제정)
	토지제도와 노예제도 개혁, 노동자·농민에게 정치적 권리 부여
	연방공화국, 국민주권주의, 삼권분립, 정부형태로 대통령제 규정

(4) 사법기관과 기본권

멕시코 헌법은 7가지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선언, 국민주권, 삼권분리, 대의민주주의, 연방제도, 헌법소원, 정교분리의 원칙이다. 헌법은 국민의 인권과 참정권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촉진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개혁을 그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사법부는 연방법원, 주법원, 기타법원으로 나뉘어져 있고, 연방사법부의 행정, 감독, 징계 및 경력판사의 관리 등의 권한은 연방사법위원회에 귀속된다. 이 위원회는 총 7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3명은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임명, 2명은 상원, 1명은 대통령에 의해 각각 임명된다.

멕시코의 암파로(Amparo)는 멕시코법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제도로 일종의 “헌법소원”이며, 인신구속을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헌법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형식(서면, 구두)에 구애 받지 않고 사법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임. 스페인법에서 유래한 암파로는 멕시코를 비롯한 거의 모든 히스패닉 아메리카 국가에 존재하는 독특한 권리구제 제도이다. 멕시코의 헌법재판은 중남미의 다른 나라와 같이 미국 사법심사의 영향으로 시작하였음. 그리고 거의 300년 지속되었던 스페인의 식민지배 경험은 멕시코 나름대로의 amparo제도와 그 중앙집권적 연방법원 절차에 영향을 미쳤음. 최근 헌법재판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제도혁명당(PRI)의 1당지배가 끝나가면서 시작한 사법의 근대화였다.

특히 1995과 1996년의 헌법개정이 결정적이었음. 이때의 헌법개정은 미증유의 정당간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서 멕시코 민주화의 커다란 진전이였다. 여전히 민주화의 발전과 헌법원칙의 실현에 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 실시된 사법부개혁은 헌법재판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95년 개혁에 의하여 헌법재판권이 여러 연

방법원에 부여되었다. 그런데 사실상 전형적인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대법원이 맡고 있다. 즉 추상적 규범통제와 헌법쟁의심판은 전적으로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법률심사에 대한 amparo는 대법원이 최종심을 맡고 있다.

멕시코의 헌법재판에는 세 가지의 절차가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 판결의 효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기대하는 헌법 원리의 구현이나 개인 기본권의 보장이 과연 충실히 이뤄지는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고 본다. 특히 법률의 위헌성 심사와 관련하여 그러하다. 멕시코 국민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룰 수 있으나 승소한 경우에도 그 효과가 반드시 타인에게도 미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한편 국가기관은 분쟁 발생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의 위헌성을 다룰 수 있지만, 법률이나 규정이 제정된 이후에만 다룰 수 있다. 국가기관이 법률이나 다른 기관의 행위에 대해 위헌성을 다룰 경우, 그 관할권은 대법원에 집중된다. 그리고 판결의 효력은 만인에게 효력이 있거나 또는 당해 사건에만 한정될 수도 있는데, 이는 분쟁의 성격이나 동의한 대법관의 수에 의해 결정됨. 추상적 규범통제가 부분적이거나 Otero-Formel을 폐지하고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체재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에 관하여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편이다.

사법작용에 관해서는 체결·비준된 조약은 연방의회가 정하는 법률과 더불어 연방최고법(제133조), 조약의 해석·적용과 위헌심사는 연방법원과 연방대법원이 관할(제104조, 제105조)하며, 조약에 따른 외국인 죄수이송(제18조)과 외국에 있는 범죄인 인도요청(제119조)을 할 수 있고, 정부는 상원의 승인을 받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인정(제21조)하고 있다. 법원은 대법원·선거법원·합의제 순회법원·단독제 순회법원·지방법원으로 구성(제94조)되며,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11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며, 재임이 금지된다(제94조). 대통령이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고 출석한 상원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명(제96조)되며, 4년마다 대법관 중 1인을 대법원장으로 선출(제97조)함. 국가기관 간의 분쟁해결을 하며, 일반규범의 위헌선언과 지방법원판결의 항소사건(제105조)을 다룰 수 있고, 연방법원은 순회법원과 지방법원 판사를 연방사법평의회가 임명(제97조)하며, 연방법률의 적용과 국제조약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 법률에 명시된 행정분쟁, 회사법과 관련된 모든 분쟁, 연방이 당사자인 분쟁, 한 주와 다른 주의 주민 간 분쟁, 외교관과 관련된 사건(제104조)에 관한 조항이 있다. 또한 선거법원은 연방의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재판을 담당(제99조)하고, 연방사법평의회는 판사의 임명·배치·해임에 관한 독립적인 직무수행(제100조)을 할 수 있고, 연방사법부는 연방법원, 주법원, 연방 직할 지구법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제106조)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 관한 해당조항이 없으며, 헌법개정절차는 연방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주의회 2분의 1 이상의 승인으로 헌법개정(제135조)이 가능하고, 헌법의 불가침성이 있으며, 반란으로 헌법의 시행이 중단되어도 헌법의 효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헌법의 규정과 상반되는 원칙을 가진 정부가 설립되는 경우에도 국민이 자유를 되찾는 즉시 헌법은 복원(제136조) 된다.

헌법 제1장에 제1편 “기본권 보장(개인의 자유와 권리)”에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예제 금지·차별금지와 인간 존엄성 보장(제1조), 원주민의 자결권과 정체성 보장(제2조),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지원의무(제3조), 양성의 평등과 가족보호(제4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노동계약보장(제5조), 정보 접근권(제6조), 표현의 자유와 사전검열 금지(제7조), 청원권(제8조), 집회·결사의 자유(제9조), 무기소지권(제10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1조), 특권적 지위금지(제12조), 개별사건 법률·법원금지(제13조), 소급효 금지(제14조), 형사절차상 원리와 기본권(제15조-제23조), 종교의 자유(제24조) 등의 기본권이 있으며, 헌법 제2장 “국민”과 제4장 “시민”에 규정된 국민과 시민으로서

의무로 국민의 교육·국방·납세의 의무(제31조)가 있고, 시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정치적 문제에 대한 단체결성권·무기소지권·청원권(제35조), 그리고 시민의 납세·병역·선거·피선거·재판참여의무(제36조) 등이 있다.

(5) 국가형태 및 질서

연방국가인 멕시코는 연방의회(상, 하원 임기 6년)로 이루어져있는 입법부, 대통령(임기6년) 중심의 행정부, 그리고 연방대법원(대법관 11명, 임기15년)과 하위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법부로 나뉘어져 있다. 멕시코의 국가 형태는 민주주의이며, 교육의 민주성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를 진보적 생활방식으로 간주(제3조)하고, 국가의 민주적 제도 강화의무(제25조, 제26조), 자유로운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및 정당의 목표로서 민주적 생활로의 국민 참여 촉진(제41조), 각 주의 공화·대의·민주제의 내부체제 선언(제115조)등의 조항이 있다.

멕시코는 연방공화국으로 자유롭고 독립된 주는 주의 내부문제에 대해 주권을 가지며(제40조, 제41조),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의 명칭을 규정(제43조)하고 있으며, 연방 직할 지구는 연방기관의 소재지이자 수도인 멕시코시티이고(제44조), 연방직할지구 정부는 연방기관과 지방적 성격의 입법·행정·사법을 책임진다(제122조). 주의 공권력은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 주지사의 직접선거를 통한 선출방식·임기, 주 의회 의원의 선출방식과 재선금지, 재판사의 임명·직무수행·재임조건에 관하여는 주 헌법에 정함(제116조). 외국과의 동맹·조약 체결, 화폐발행, 당해 조항에서 규정한 세금부과,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관련행위, 연방의회 동이 없는 상설 군대·군함보유 등(제117조, 제118조)을 제외한 각 주와 관련된 직무가 명시되어 있다.

국제관계 및 영토·자원에 관한 조항은 국가의 영토범위 및 영토내 자원의 국가귀속은 국제법의 제한을 받고 있다(제27조, 제42조).

국민의 자격은 출생지주의와 혈통주의 및 귀화에 의해 국적취득(제30조), 귀화에 의한 국민은 헌법이 정한 사유의 경우 국적 상실(제37조), 18세 이상 생계수단을 가진 자는 시민권 취득(제37조), 이중 국적의 충돌 방지(제32조) 조항 등이 있다. 영토의 범위는 영토의 구성요소로 연방의 구성부분, 인접도서 및 태평양의 Guadalupe섬과 Revillagigedo섬, 국제법에 따른 영해와 영공(제42조), 배타적 경제수역(제27조), 대륙붕, 산호초, 암초도 영해의 범위로 하는 헌법상 규정(제42조, 제48조) 등이 있다. 국가의 상징에 관하여서 국기, 국새, 국가의 특징과 사용 문제에 관하여 법률로 정할 것을 규정(제73조)하고 있으며, 수도는 멕시코시티로, 멕시코시티는 연방기관의 소재지이며, 연방직할지구(제44조)임을 명시하고 있다.

경제질서 및 문화질서에 관한 조항으로 영토 내 자원의 국가소유와 공정한 토지분배(제27조), 산업·은행·노동자 단체의 독과점 금지(제28조), 노동 및 사회보장(제123조), 다문화주의와 원주민공동체보호(제2조), 교육을 통한 문화 향상(제3조) 등의 규정이 있다. 멕시코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로 연방의 최고 행정권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귀속(제80조, 제81조)되며, 연방의 권력은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제49조)되고, 입법권은 상원과 하원으로 분리된 연방의회에 귀속(제50조)된다. 연방의회(입법부)의 상원의 구성과 독점권한은 96인이 각 주와 연방 직할지구에서 각각 3인씩 상대다수로 선출되며 32인은 단일 전국구명부제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되며(제56조), 임기는 6년 단임(제56조, 제59조)임. 상원의원의 피선출자격(제58조)은 정부의 외교정책분석, 주요행정부 인사의 임명인준, 국군의 해외파견 승인, 임시주지사 임명, 각 주 간 분쟁해결, 정치재판의 대배심(제76조), 법률안 발의(제71조) 등의 조항이 있음. 하원의 구성과 독점 권한으로 300인은 소선거구제에서 상대다수로 선출되며 200인은 지역명부제를 통해 비례대표로 선출(제52조)하고, 임기는 3년 단임(제51조, 제59조)의 권한이 있고, 하원의원의 피선출자격(제55조), 대통령 당선자 선언,

세입법안과 연방지출예산안 승인(제74조), 법률안 발의(제71조) 등의 권한이 있다.

행정부에 관해서 대통령의 선출은 선거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제81조)하고 대통령의 피선출자격(제82조)이 있고, 임기는 6년 중임금지(제83조), 연방의회 허가를 얻어 사임(제86조)함. 행정권의 수반(제80조)이며, 법률의 공포·집행, 장관을 비롯한 연방공무원 임명할 권한이 있고, 해임, 군대의 배치와 장교의 임명, 선전포고권, 조약의 체결, 연방의회 임시회 소집(제89조)이 가능하고 임기 중 국가반역죄나 중대한 범죄로만 탄핵이 가능(제108조)함. 장관의 피임명자격(제91조)이 명시되어 있고, 국가 구성법에 따라 행정부 업무를 다양한 부서와 행정부 간 분배(제90조), 대통령의 모든 규칙·명령·약정에 관련장관이 서명하여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집행가능(제92조)하며, 연방의회의 정기회에 업무보고가 의무(제93조)화 되어 있다.

5. 페루 개관

(1) 국가 및 정부형태 등

페루법 역시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히스패닉 아메리카법의 범주에 속해 있으므로,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히스패닉 아메리카 국가들의 헌법은 예외 없이 미국 헌법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 미국과의 특수 관계에 있는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히스패닉 아메리카 국가들은 모두 미국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2) 사법기관과 기본권

헌법기관인 사법부는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이며, 법관은 중

양법관회의에서 임명하고 있다. 1996년 7월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호를 위해 설치되었고, 국회에서 임명하는 국민변호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페루는 남미국가 중에서 최근까지 외견적(外見的) 법치국가의 전형을 보여주었으며, 헌법재판과 관련하여, 페루는 독립 이래 여러 제도를 경험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1821년에 독립한 페루는 건국 초기의 헌법에서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면서도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 의회에 의한 합헌성 통제제도를 두었다. 1860년 헌법에서는 헌법의 우월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지만, 이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인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 1919년 헌법을 개정할 당시, 대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끝내 채택되지 않았다. 그 후 1933년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법원이 민중소송의 형태로, 행정관청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하위규범의 합헌성·합법성을 심사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1936년에는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63년에는 민중소송 형태의 위헌법률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도에 의하여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개인의 기본권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1979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한 원인이 되었다.

1968년부터 계속된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는 동안 형성된 기존 법원에 대한 실망과 스페인 1978년 헌법의 영향으로 페루에 1979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그 권한은 추상적 규범통제, 인신보호청구사건과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상고심 등이었다. 1979년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의회·행정부·대법원이 각 3명씩의 재판관을 선임하였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는 1992년 4월 5일 발생한 쿠데타로 해산되고 말았다. 그 후 1993년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로 다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새로 설치된

헌법재판소는 1979년 헌법에 규정된 권한 뿐만 아니라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추가로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에서 헌법재판관 7명 중 6명이 찬성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등이 위헌임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규범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7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의 판사, 검찰총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서 재직하였거나 15년 이상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로 재직한 자 중에서 의회가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관 중 3인은 대법원의 법관 중에서 선출함. 재판소장과 부소장은 재판관들에 의하여 호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페루는 헌법재판이 헌법재판소와 일반사법부에 의하여 이뤄지는 분산형 헌법재판제도를 취하고 있다. 페루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모든 법원의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할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에 헌법부가 설치되어 있어 헌법재판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 헌법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많이 제한되어 지금은 재판에 대한 amparo 사건의 제2심과 법규명령, 행정규칙, 일반적 효력을 갖는 행정청의 명령 등 법률 하위규범에 대한 규범통제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 조직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과 헌법통제의 최고기구이다. 헌법재판소는 추상적 규범통제와 권한쟁의 심판의 배타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반면에 인신보호청구, 정보보호청구, amparo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최종심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음부즈만, 검찰총장, 재적 1/4 이상의 의회의원, 자치단체의 장, 직업연맹(가령, 변호사협회 등), 5,000명 이상의 국

민의 청구에 의하여 법률, 의회규칙, 긴급명령, 일반적 효력을 갖는 지방자치법규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추상적 규범통제). 헌법재판소의 통상적인 결정은 단순다수결, 즉 4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그러나 위헌판결은 7명의 재판관 중 5인의 찬성을 요한다. 헌법재판소는 인신보호청구(habeas corpus) 사건의 최종심을 관장한다. 국가기관, 공무원, 또는 타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자유 및 이와 관련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개인은 인신보호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인신보호청구사건은 형사법관이 1심을, 고등법원 형사부가 2심을 담당하고, 2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가 특별상고에 의하여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amparo 사건의 최종심을 관장한다. 국가기관, 공무원, 또는 타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다른 절차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개인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적법절차에 따라 행해진 법원의 재판이나 법규에 대하여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민사법관이 1심을, 고등법원 민사부가 2심을 담당하고 2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가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 공무원, 또는 타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정보의 자기결정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개인은 정보보호청구(habeas data)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국가기관 및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기정보를 알아내고 자기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이 사건은 amparo 사건처럼 민사사건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이 법규 또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집행명령소송(acción de cumplimiento)을 관장한다. 이

집행명령소송은 민사절차로서 amparo 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치며,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또는 헌법시행을 위한 법률상의 권한에 관한 다툼 즉 헌법기관 상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대하여 심판한다. 페루의 헌법재판은 군사독재 등을 비롯한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변전을 거듭하면서 발전하여왔음. 일반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병존으로 요약되는 분산형 제도적 속성 아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방식의 변경, 권한쟁의의 도입, 인신보호청구 및 헌법소원의 도입 등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나름대로의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마련된 amparo 외에 정보보호청구나 집행명령소송을 도입한 것은 중복된 감이 있다고 하겠다.

페루의 헌법재판제도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보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의 필요성이다. 후지모리정권에 의해 자행된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억압은 역설적으로 그 정치적 독립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는 민주화과정에서 헌법재판의 발전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타산지석이라 하겠다.

제 4 절 동남아시아지역의 법체계

1. 인도네시아

(1) 개 관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전통적인 관습법률, 네덜란드 식민지법률, 국가 법률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³⁰¹⁾ 따라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시스템이 합쳐진 다소 복잡한 체계를 띠고 있다. 1945년 8월 17일에 독립

301) 초기의 토착 왕국의 관습법적 법률체계에서 출발하여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에 네덜란드 식민지로서의 법률 시스템을 가진다. 그 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네덜란드의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

이후 자국에 맞는 법률과 정의 개념에 기초하여 인도네시아의 법률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나 현재에도 식민지 법률체계가 잔존하고, 아직도 많은 식민지 때의 법률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 예로 들어 상법은 식민지시대의 유물인 1847년의 상법전에 기초하고 있으며, 독립 이후 1992년 은행법(1998년 수정), 1995년 회사법, 1995년 자본시장법, 1999년 독점금지법, 2001년 석유및천연가스법 등 새로운 다수의 법률 제정되어 이를 보충하고 있다. 관습법은 덜 부각되지만 의사결정에 이르는 컨센서스 등 몇몇 관습법은 현대 인도네시아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법률구조

① 현대 인도네시아의 법률체계는 몇 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다양한 법률의 카테고리화 입법소스는 인도네시아의 법률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형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MPR은 2000년 8월 공식적인 법률체계를 발표하였다. ② 1945년 헌법을 정점으로 MPR 결의, 법률 (Undang - undang), 법률을 대체하는 정부 규정, 정부 규정 (Government Regulation), 대통령령 (Presidential Decree), 지방정부 규정(Regional Regulation)의 순으로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③ 그러나 실재로는 이 외에도 현존하는 다른 입법형태가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지침(Presidential Instructions), 부령(Ministerial Decrees), 회람(Circular Letters)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 입법형태들 사이에 때때로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④ 법률은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정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고,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정부규정 등은 Elucidation이라는 공식적인 설명서와 함께 공포된다. Elucidation은 관보에 부록의 형태로 게재되고 법령의 해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률해석에 권위가 있다. 국가 관보 외에 자매 간행물로 정부 및 공

공기관의 공지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 보고서 (the State Report)라고 불리는 매체가 있다.

2) 사법제도³⁰²⁾

① 인도네시아의 사법 시스템은 대법원(Mahkamah Agung)의 감독 하에 몇 가지 유형의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네덜란드 민법의 전통에 따른 보통법상의 재판 원칙을 가지고 있다.② 심급제도- 3심제 : 대부분의 법적 분쟁은 제1심 법원인 일반관할권을 가진 주법원에 제소한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250개의 주법원이 있고, 각각 고유한 영토 관할권이 있다. 주법원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에 제기하고, 고등 법원은 항소법원으로서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에 20여 개가 설립되어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수도인 자카르타에 있는 대법원이 이를 담당한다. 대법원은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할 수도 있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다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사건을 다시 판결할 수도 있다. ③ 1998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사법원을 설립하였다. 처음 상사법원은 파산과 도산문제를 처리하였다가 다른 상사분쟁까지 재판권을 확장하였다. 상사법원의 항소는 직접 대법원에서 진행하고, 주 행정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법률 사건을 담당한다. ④ 2001년 헌법 개정에서 헌법 재판소 설립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심리하고 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선거의 적법과 위법 등 효력여부에 관한 법적판단과 대통령의 해임에 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302) Hikmahanto Juwana, "Legal System in Indonesia (Legal System in ASEAN), 2005. 참조.

3) 법률 전문가(Legal Professionals)

인도네시아에는 세 부류의 법률 전문가 그룹으로 공증인(notaries), 변호사, 그리고 법률 컨설턴트가 있다.

① 공증인

법적으로 준 공무원신분으로 정의&인권부에서 임명하며 공증업무를 담당하도록 교육받는다. 그들은 사적으로는 공증업무의 전문가이지만 동시에 정부가 임명하기 때문에 공증업무는 준 공무원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다. 공증업무는 공증인이 작성하거나 준비하는 공식적 행위로 공증은 당사자가 실행하여 공증서가 인용된 경우 법적으로 결정적 증거가 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회사 설립행위가 반드시 공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공증인은 정부로부터 임명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양 당사자 모두에게 법적인 조언을 할 수가 없고, 거래 당사자는 각자 독립적인 법적 조언을 얻어야하고, 사전에 공증인 앞에서 증서에 포함된 사항에 합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증인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동하고 증인 및 인증 서류 등을 서명하고 작성한다. 현재 자카르타에 약 140명의 공증인이 있고,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본인들의 서류를 공증할 공증인을 선택할 수 있다. 특정 문제에 대한 비용이 협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공증수수료가 정의&인권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② 변호사

변호사들은 정식 법률 교육을 받아 개업하여 사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그들은 미국의 변호사나 영국의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와 유사하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주로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또한 일반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도 한다. 소송업무 중 많은 부분이 아직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의 법률회사로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③ 국제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법률 컨설턴트

법률 컨설턴트는 상당한 숫자의 외국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별개의 법률 전문가 그룹이 형성되었다. 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것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변호사이다. 법률 컨설턴트들은 기업, 상업, 금융 및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 및 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 선진 법률교육을 마쳤다.

(2) 인도네시아의 헌법

1) 개 설³⁰³⁾

① 인도네시아 헌법은 **판짜실라**³⁰⁴⁾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1945년 제정된 이래 최근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인도네시아 헌법은 관습법, 네덜란드법 및 독립 후의 국내법 등 세 가지 법체계가 혼재되어 서로 충돌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발전하였다. ③ 관습법이 미완성적인 1945년 헌법을 제1차적으로 보충하였고, 네덜란드법 역시 다당제를 통한 의회민주주의의 확립과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화의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 ④ 1945년 헌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역대표의원을 국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도록하고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국민주권을 실질화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303) www.llrx.com/features/indonesia.htm 참조.

304) 산스크리트어로 불교의 오계(五戒)를 나타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섯(Panca)가지 원리(sila)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판짜실라는 수카르노의 측근이 창안하여 수카르노가 처음 사용하였다. 그 내용은 ‘최고신에 대한 신앙의 원칙’, ‘인도주의 원칙’, ‘민족주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 ‘사회정의 원칙’을 의미한다.

2) 헌법구조(Constitutional Structure)

① 현대 인도네시아의 법률 시스템 이해시 인도네시아의 헌법 구조와 관련한 몇몇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 독립당시에 흔히 1945년 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에 의해 설립된 하나의 공화국임을 천명하였으나 수하르토가 집권한 이후 32년 동안 1945년 헌법은 단 한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수하르토가 사임한 1998년 5월 이후, 1945년 헌법은 1999년 10월, 2000년 8월, 2001년 11월, 2002년 8월 총 4차례의 개정을 하였다.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통령의 임기와 권력에 대한 제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과 주정부로의 권한의 분산, 지방의회와 같은 헌법 기관의 추가적인 설립, 그리고 헌법 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게 되었다. 현재 헌법과 관련하여 논의 중인 중요한 사안과 함께 향후 헌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③ 1945년 헌법은 몇 개의 헌법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국민자문회의(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또는 MPR)와 하원(Dewan Rakyat Perwakilan 또는 DPR)을 들 수 있다. ④ DPR은 선거로 선출되거나 지명된 5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기능은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과 행정각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권한을 가진다. 하원은 연중 예정 회기동안 활동한다.³⁰⁵⁾ ⑤ MPR은 현재 500명의 하원 의원 전원과 지방을 대표하여 지명된 개인 등 기타 지명된 사람 등을 포함하여 약 7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헌법상으로는 MPR이 최고의 국가기관이다. MPR만이 헌법을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가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의결의 형식으로 내린다.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계획도 이에 해당한다. 과거 MPR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였으나 최근의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305) <http://www.nyulawglobal.org/globalex/Indonesia.htm#overview> 참조.

과 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고, 2004년에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최초의 직접선거가 있었다. ⑥ 대통령의 권한이 최근의 헌법 개정에 의해 일정부분 제한되었고, 대통령과 부통령은 한차례의 연임이 가능한 5년 임기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권한의 제한이 있었으나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군 통수권자이다.

3) 1945년 헌법의 특징³⁰⁶⁾

① 미완성적 헌법

1945년 헌법은 예상보다 앞선 독립으로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자들이 구성하였던 독립준비위원회의 초안을 선포한 것으로 선언적 성격의 헌법이다. 전문과 본문 37개조, 경과규정 4개조 및 부칙 2개조로 매우 간략하게 구성되었고, 헌법제정 작업을 수카르노 등이 담당하였다.

② 헌법내용의 불균형

권력구조의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첫째, 국민주권주의 제약되었다. 1945년 헌법은 형식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나 주권의 행사를 대의기구인 국민협의회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제한하였다(제1조 제2항). 둘째, 편중된 대통령중심의 권력체계를 취하였다. 1945년 헌법은 권력구조 대부분의 규정을 대통령의 선출과 임기(제7조), 권한(제5조, 10조, 11조, 12조, 14조)등에 할당하고 국회와 사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였다. 셋째, 권력분립의 불균형으로 1945년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헌법이었다. 대통령이 국민협회의 구성원 중 상당수를 임명하고, 자신이 임명한 국민협회에서 선출되었으며, 탄핵소추도 받지 않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306) 변해철, 인도네시아의 헌법개관, 2면 이하 참조.

③ 기본권보장의 불명확성

1945년 헌법은 본문 37개의 조문 중 기본권 관련 조문은 8개조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즉, 제27조 제1항에서 평등권을, 제2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함.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제28조), 거주이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제29조 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제1항), 기타 구호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제34조)를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기본권 규정의 흠결이 있어 신체의 자유, 참정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들이 흠결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권리구제 절차의 흠결로 국가권력의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발생한 권익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국가배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청구 규정이 없으며,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이나 위헌심사제도의 규정이 흠결되어 있었다.

4) 1998년 독재정권의 붕괴와 헌법의 변동

32년간의 수하르토 군사정권의 붕괴로 민주화의 열망이 확산되어 1999년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의 헌법이 개정되었다. 헌법은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의 임기와 권력에 대한 제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과 주정부로의 권한의 분산, 지방의회와 같은 헌법 기관의 추가적인 설립, 그리고 헌법 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게 되었다. 최근의 헌법개정 과정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⁰⁷⁾

① 제1차 헌법개정(1999년 10월)

1999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48개의 정당이 난립하여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이 없어서 범민주계의 연립정권이 수립되었다. 국민

307) 양승윤, 인도네시아 정치·사회적 변동과 뻘짜실라, 동남아연구 제12호, 한국의 대동남아연구소, 2003.9, 80면 이하 참조.

협의회는 와이드와 수카르노를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하고 1945년 헌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제한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 외에 대통령의 중임을 2회로 제한하고, 대통령의 법률제정권을 폐지하고 사면권의 행사와 외교사절의 파견 시 국회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제2차 헌법개정(2000년 8월)

국민협의회 주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구조와 기본권에 관한 개정이 있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을 제한하고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대정부 질의권을 인정하여 권력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를 확립하였다. 지방자치제를 도입하여 주지사나 시장 등 자치단체장의 선출과 지방의 특색을 고려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인정하였다. 그 외 군과 경찰의 비선출직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전원의 직선제를 이루었으며, 군부가 ‘국가의 통일과 평화’만을 담당하도록 하여 군부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여 문민정부의 틀을 만들었다. 헌법 제28조에 10개의 기본권항목을 신설하여 기본권을 강화하였다.

③ 제3차 헌법개정(2001년 11월)

2001년 7월 국회의 제청으로 소집된 국민협의회가 와히드대통령을 탄핵하고 부통령이던 메가와티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였고, 2001년 11월 정기회의에서 제3차 헌법개정을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국민주권을 행사하던 국민협의회가 더 이상 전적으로 행사하지 못함을 명백히 하였고,³⁰⁸⁾ 둘째,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이들에

308) 개정 전에는 국민협의회가 유일한 주권행사기관으로 그에 의하여 입법, 행정, 사법기관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으나 개정으로 국민협의회는 다른 헌법기관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대한 탄핵절차를 명백히 하였다. 셋째, 대통령의 국회해산과 연기를 금지하였으며, 넷째, 중요한 국제협약의 체결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다섯째,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역대표의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주의 분리·합병, 천연자원, 재정 등에 관련된 법률안을 제출하고 심의하며 그 집행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지역대표의회 의원은 각 주에서 직접선거로 모든 주가 동수의 지역대표를 선출하고, 국회의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일곱째, 사법권의 강화차원에서 대법원, 국회, 대통령이 각각 3인을 추천하여 사법위원회를 신설하고, 법관임명을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였다. 여덟째,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사, 권한쟁의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거소송, 탄핵심판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④ 제4차 헌법개정(2001년 8월)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의 전환점이 되는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국민협회의 권한을 제한하여 대통령궐위 시 또는 대통령의 탄핵 시에만 임시대통령을 임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중요국가정책결정권을 폐지하여 권한을 축소하였다. 둘째,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출과 관련하여 제1차 투표에서 전국적으로 과반수이상을 득표하고 동시에 모든 주에서 20%이상을 득표하여야 선출되도록 하였고, 해당자가 없을 경우 제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를 한 후보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하였다. 셋째, 군부와 경찰의 정치적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여 제3차 헌법 개정 시에 2009년까지 잠정적으로 유지하던 38석의 비선출 국회의원을 제4차 개정에서 완전히 폐지하였다. 넷째, 헌법개정절차를 확립하여 국민협회의 재적 1/3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토록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의 기관으로 격상하였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었다.

2. 베트남

(1) 개 설

1) 법률체계의 시대별 구분

관점의 차이는 있으나 베트남법의 역사는 1986년의 경제개방이라고 칭하는 도이모이(Doi Moi)시대 이전과 그 이후로 크게 둘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³⁰⁹⁾.

도이모이(Doi Moi) 이전	도이모이(Doi Moi) 이후
<p>도이모이 이전의 베트남 법률은 크게 세 가지 법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됨.</p> <p>① 베트남은 고대로부터 중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중국의 문화적 전통인 유교는 현재까지 깊숙이 유지되고 있어서 중국전통법의 영향을 받고 있음.</p> <p>② 1862년부터 1954년까지의 프랑스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프랑스 민법과 유사한 내용의 민법이 시행된 바 있어 프랑스법의 영향을 받고 있음.</p> <p>③ 구소련의 영향으로 프랑스 식민 지배이후 영향력이 강화된 소련의</p>	<p>- 새로운 변화에 따라 시장경제화와 대외 개방정책을 시행하였고, 그 후 1992년 전면 개정된 베트남 헌법(2001년 부분 개정)은 인권·사적 소유라는 기본권을 새로이 도입.</p> <p>- 이에 따라 1995년에는 일본 학자의 도움을 일부 받아 현재의 민법전을 제정하였고, 그 후 민사소송법을 제정하는 등 일련의 법제 정비작업을 진행하였음.</p> <p>- 국가가 자원 배분에 모든 결정을 하였던 계획경제로부터 시장 경제로의 변화는 법률을 근거로 진행되었음. 결과적으로, 베트남 법률제정은</p>

309) 1986년에 열린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 베트남은 구 소련의 중앙통제형 경제를 포기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른바 도이모이(Doi Moi)를 채택했다. 이는 통일 후 10여 년간의 홍수, 한발과 기근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산당이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판단된다.

도이모이(Doi MOI) 이전	도이모이(Doi MOI) 이후
중앙집권적이고 통제형의 법률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며 베트남통일 이후에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음. ³¹⁰⁾	국가의 시장경제의 발달과 함께 하였고, 현행 법률의 대부분이 90년대 초에 제정되었고 점점 더 증가하는 상황임.

현재 베트남 법률시스템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법률제정의 실효성이 향상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법률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자 2003년 초부터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을 관보에 게재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1995년부터 한 달에 2번 발행되던 관보가 2004년부터는 매일 발간될 정도로 이르렀다. 관보의 필수적 게재로 지난날 법률의 대부분 발표되지 않거나, 유효한 서명을 한 지 15일이 지났을 때에 효과가 생기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법률 시스템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고 활력이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법률 시스템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법률제정이 취약성 때문에 부적당하고 불안정한 법률제도가 나타나고 이러한 문제점의 한 요인은 국회가 입법에 관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사법시스템(Judicial System)

① Court system(법원 시스템)

베트남은 제1심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분되는 법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³¹¹⁾ 법원은 대법원, 주 지방인민 법원과 군 지역 인민법원으

310) 현재의 베트남 법률가의 대부분이 구소련에 유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로 사회지도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11) The 1992 Constution, Art. 127, and the Law on Organisation of the People's

로 구성되고 대법원과 주 지방법원은 다시 몇 개의 특화된 법원으로 구성된다. 특화된 법원에는 형사 법원, 민사 법원, 경제 법원, 행정 법원 및 노동 법원이 포함되어 있다.³¹²⁾

제1심 법원의 경우 법원 패널리 재판관과 배심원(보통 한명의 판사와 두 사람의 배심원)으로 구성된다.³¹³⁾ 각급 법원의 인민 배심원은 인민위원회에서 선출된 사람과 베트남 조국 전선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임명되는데 이러한 배심원에 참여한 사람은 법률전문가들이 아니며 지방정부가 그들의 능력과 법원의 활동에 대한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대한 질문을 하여 배심원을 선출한다. 법관의 임기와 선출 방식은 대법원의 대법원장은 국회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는 국회 회기기간동안 유지되고 다시 선출될 수 있다. 대법원의 다른 대법관은 임기는 5년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해임하고 대법원장은 하위 법원의 법관들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³¹⁴⁾

2002년에 법률로 각 지방 인민위원회가 행하던 법관의 임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통일하였고³¹⁵⁾, 지방 법원의 예산도 이전에는 지방의 사법부가 결정하였으나 지금은 의회가 결정한다. 이를 통해 지방 법원이 지방정부로부터 더 많은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에 의하면 베트남 법원은 독립적으로 내리도록 되어있으나 아직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많은 우려가 남아있다. 지방인민법원의 재판장은 판결의 내용을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³¹⁶⁾, 복잡한 법적 분쟁사안에 대해 지방법원이 이를 문서화하지 않은 관행이 있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점과 재판결과에 접근하는 것도 어렵다.

Courts, Arts. 1 and 2, 이 베트남의 사법조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12) the Law on Organisation of the People's Courts, Art. 2, 32 and 33 참조.

313) 경제사건의 경우에는 두 명의 판사와 1명의 배심원으로 구성하였다.

314) Law on the Organisation of the People's Court, Art. 38참조.

315) 일반법관의 임용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the Organisation of the People's Courts, Art 37조 참조.

316) 이러한 보고에는 판결의 이유와 인민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재판의 독립에 큰 위해가 되고 있다.

② 인민의 검찰

인민 검찰은 주요 권한으로 기소권과 사법감찰권을 행사한다.³¹⁷⁾ 검찰조직은 법원의 구조와 유사하게 최고인민검찰, 지방인민검찰, 지역인민검찰 등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범죄의 경우, 인민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고, 범죄가 아닌 경우 인민검찰은 사안의 해결을 감독하고 조정절차를 제외하고 사법적 절차에 참여할 특권이 있다. 통상 서류를 검토하고 증거와 주장을 듣고 법정 패널을 추천한다. 또한 판결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대체 분쟁 해결 시스템

베트남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인 논쟁을 좋아하지 않아 많은 법적 분쟁을 조정과 중재 등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해결되고 있다. 조정과 중재에 관하여 아래의 표에 분석하였다.

조 정	<p>베트남 법률도 조정의 역할을 매우 강조함. 조정은 민사소송과 노동과 결혼 및 가사소송 같은 특정한 소송 절차의 경우에는 필수적 절차임.</p> <p>국가는 민사 및 가사분쟁에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중재에 의한 해결을 권장하고 있음. 지방의 경우 비전문 중재자 그룹이 조정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³¹⁸⁾</p>
중 재	<p>중재는 법적 분쟁해결을 위한 선택적 수단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상사분쟁의 경우에만 인정됨. 중재는 선호되는 분쟁 해결수단이 아님.</p> <p>2003년 상업 중재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채택된 이래 베트남 중재 재판소에서 처리한 중재는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당사자는 실행에 대한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음.</p>

317) 인민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권한과 역할에 관해서는 ‘the 1992 Law on the Organisation of the Procuracy’에서 규정하고 있다.

318) the Ordinance of organization and performance of mediation at the local communities, 1998.12.5

(2) 베트남 헌법

1) 헌법상의 통치이념

① Doi Moi (개혁·개방) 정책과 헌법 개정

1986년 사회주의식 경제 개발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외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주의 통치 체제를 고수하면서 시장경제 원칙을 부분 도입하는 Doi Moi 정책을 86년 12월 6차 공산당 대회에서 공식 채택하였다.

기존의 베트남 헌법은 소련식 스탈린 헌법을 모델로 생산수단 공유 및 국유 경제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중앙경제 체제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베트남 공산정권이 추구하는 목표가 법치주의의 실현이 아니라 제한적인 시장경제 도입과 외자유치를 위한 법제정비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최상위 법원(source of law)인 헌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결국 개혁, 개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92년, 2001년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³¹⁹⁾

② 시장경제의 도입과 사회적 다양성의 증가로 인한 권리 주장

Doi Moi의 딜레마, 즉 정치적 사회주의와 경제적 자본주의의 결합은 경제적 성과에 상응하는 정치적 다원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다. 그러나 헌법의 개정에 있어 사회적 요구 수용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산당 일당 통치에 도전이 될 수 있는 개혁 및 헌법 개정 요구(정치적 다원

319) 2001년 말 베트남 국회의 의결을 통해 1992년 헌법을 24개의 조항에서 개정함. 개정의 주목적은 베트남의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한 것으로 헌법 전문에 "국가 발전의 바탕은 노동자들과 농민들과 지식인들이 베트남공산당의 지도 하에 연합하여 전 인민이 하나가 되는 데 놓여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개인적인, 집체적인, 국가적인 요소들이 기여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경제 부문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를 위해 같은 정도로 중요한 구성요소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의 인정, 사법부의 독립 인정 등)는 철저히 차단된다. 그러나 정치적 영역에 속하지 않는 개인의 권리요구에 대해서는(사유재산의 인정 범위 확대,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 확보) 개정 시 반영이 되거나, 국민적 요구로 하위법령이 개정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2) 헌법의 기본질서- 사회주의 한계속의 인민주권과 법치주의³²⁰⁾

① 사회주의와 인민주권주의 관계

베트남 헌법 제2조는 베트남 국가의 정체성을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국가로 규정하여 표면적으로는 인민주권주의를 표방하나³²¹⁾, 동조항이 의미하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체제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인민주권주의는 사회주의 국가이념을 부정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만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내재적 한계가 있다.

② 사회주의와 법치주의 관계

1992년 헌법과 그 이전 헌법은 베트남 국가체계를 사회주의 국가로만 규정했으나, 2001년 개정에서 사회주의 법치국가로 재규정하여 표현상으로는 법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조항인 제4조에서는 여전히 공산당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신봉하는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the only force leading the State and society)’으로 규정하여 법치주의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Doi Moi 이전인 1980년 헌법과 달리 2001년 헌법은 ‘공산당 영도원칙’을 규정하는 제4조에 공산당의 모든 조직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320) 강지원, 베트남 헌법: A Society in Change, the Constitution under Challenge?, 아시아법 세미나 자료집(2011.4.26) 참조.

321) 신헌법 제2조에서는 국가가 복지와 국가적 힘과 평등한, 민주주의적인, 문명화된 사회에 대한 인민의 권리들을 보장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전체의 해석으로 볼 때 선언적 의미로 판단된다.

안에서 활동한다(operat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and Law)는 문구를 추가하고 있으나 제4조의 ‘헌법의 범위 안’을 해석함에 있어서 동 조항의 공산당 영도원칙, 제13조상 ‘사회주의 불가침’ 규정³²²⁾, 헌법 제4장 (44-48조) 전체를 차지하는 ‘사회주의 조국방위 원칙’ 등으로 볼 때 법치주의를 사회주의 체재와 동등한 국가이념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이념(사회주의)과 현실(시장경제)의 조화

헌법 전문에 현 국가발전단계를 ‘베트남 인민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으로 사회주의 과도기에서 국가건설 강령을 실천하면서’라고 규정해 완전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과도기 단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생산력 발전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 15조에 ‘국가는 끊임없이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정책을 발전시킨다’고 규정하여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혼합적 정책인 Doi Moi의 헌법에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3) 헌법상의 권력분립- 공산당 영도원칙하의 권력분립

① 표면상의 입법·행정 조직³²³⁾

입법기관으로는 헌법에 따른 국가 최고 권력기관, 유일한 입법기관이자 국가의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권을 행사하는 국회(헌법 83조) 및 각 지역단위의 인민의회가 있으며 국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다. 행정기관으로는 국가주석 (국회의원 중 선출, 대외적 대표이자 국방, 외교 및 내무에 일정 역할), 내각 (국가 행정 집행, 수상은 권한 크지 않

322) 동조항은 사회주의 조국건설과 보호사업에 반하는 음모와 행동은 법률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23) http://www.chinhphu.vn/portal/page?_pageid=439,1093454&_dad=portal&_schema=PORTAL

음), 및 각 지역단위 인민의회가 선출하는 지방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가 있다.

②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

헌법상 국회가 국가최고 권력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헌법 제4조에 명시된 공산당에 의한 국가영도원칙의 제약 하에 행정·입법·사법 부중 가장 큰 권한을 지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최고실권자는 당서기이며, 국가주석과 수상은 Doi Moi 이후 다소 강화된 권한을 지니나 여전히 주요 정책결정은 공산당 전당대회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만장일치제)로 이루어지고 있다.³²⁴⁾ 실제로 국회의원 대부분이 공산당원이다.

③ 국회의 강한 사법권 통제

첫째, 국회가 사법심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법원과 검찰(최고인민재판소 및 최고인민검찰청)의 공문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제84조 제9항)하여 사실상 사법부가 공산당 및 국회의 권한에 반하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회의 이러한 위헌법률심사권은 베트남 헌법상 삼권분립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둘째, 임명권과 사법 업무 심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법원과 검찰의 최고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뿐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고 심의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사실상 사법부의 독립성이 미약하다.

4) 헌법상의 기본권

① 국가에 의해 하향식으로 부여받는 인권

베트남 헌법은 국가의 신성불가침성(13조)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인

324) <http://vietnamexport.com/Vietnam3.aspx> 참조.

의 권리에 대한 불가침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인간존엄과 행복 추구권 등의 핵심적 기본권 개념이 없다. 따라서 기본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허가된 권리이다. 베트남 헌법은 주요 기본권 규정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라는 조건을 부가하여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하위법이 규정에 의해 제한받는 결과를 가져왔다.³²⁵⁾

② 헌법상 ‘개인의 의무’규정

헌법은 제76조에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순응할 의무조항을 두고³²⁶⁾, 이 외에도 ‘헌법, 법률의 준수’, ‘국가안녕보호’,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79조)등 인민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무조항은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유지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의 행사에 법률적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헌법 제51조에서 인민의 권리와 의무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인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였다.³²⁷⁾

③ 헌법상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

주요 개별 권리에 대한 내용과 한계를 아래의 표에 분석하였다.

주요 개별 권리	내용과 한계
선거권·피선거권	헌법 제54조에서 18세 이상이면 선거권, 21세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 입법기관인 인민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있으나 국가주석, 수상 등은 국회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투표권 행사에 한계(공산

325) 다만, 개인적 권리 중 경제, 사회권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26) 동 조항은 ‘인민은 조국에 충성해야 하며 조국에 대한 반역은 가장 큰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327) 헌법 제51조의 해석상 권리행사가 의무에 반하는 경우 양자의 불가분적 관계로 인해 권리제한을 하는 것이 헌법상 타당하므로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제한에 이법적 근거가 된다.

주요 개별 권리	내용과 한계
	당 서기장은 후계 지명)가 있음. 또한 베트남조국전선에서 추천받지 못하면 사실상 공직선거에 입후보가 불가능함.
언론·출판의 자유	헌법상 인정되나(제69조), 실제로는 국가주도의 관영 언론 이외에 사실 언론의 설립이 불가능함. 더구나 하위법인 1993년 출판법을 통해 모든 미디어의 국영화 및 사회주의 사상에 반하는 내용의 출판물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국가안보, 사회질서 저해 등을 근거로 사회주의 사상에 반하는 인터넷 활동을 규제하는 하위법률도 200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음.
집회·결사의 자유	법 제69조상 인정되나 법률의 규정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제약이 있음. 또한 정부 건물 주변 또는 공산당의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평화적인 집회, 시위라도 법령으로 금지되는 등 제약이 큼.
거주이전의 자유	규정상으로는 베트남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고 외국의 출입국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그러나, 현실은 베트남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인 경우에도 각 지방행정기관의 철저한 사전, 사후 통제를 받게 됨. 가령 수도 하노이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출, 전입지의 지방인민위원회(지방 행정기관)의 허가를 모두 받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음. 이 때문에 베트남 주요도시에는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불법거주자가 매우 많고 그 수도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헌법상의 주요 권리 조항 대부분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보장받는다’라는 권리제한 조항을 단서에 두고 있고, 관련 법률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안보 및 질서 유지에 저해되는 행동’을 규제한다는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권리를 제한하는 재량권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법률의 범위 내’라는 단서 조항이 없는 권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헌법 전반에 사회주의 체제 및 질서 유지의 절대성을 부여하고 있어서 하위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여도 위헌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④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소유개념을 절충하였다. 소유의 형태는 전 인민소유 (국가소유), 집단소유³²⁸⁾, 개인소유가 있다. 헌법 제15조에서 전 인민소유와 집단소유가 그 기초를 이룬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소유의 개념은 헌법상 전체의 소유보다 헌법적 중요성이 떨어진다.³²⁹⁾ 헌법 제58조는 합법적인 수입, 소유재산, 생활자재, 생산자재, 영업 또는 경제조직 내 기타 재산의 개인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사회주의체제와 달리 사적소유의 허용 가능성이 넓다.

토지의 소유권과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 역시 1차적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국가가 개인에게 토지의 장기간사용을 양도한다는 개념으로 개인의 토지사용권 인정(헌법 18조)한다. 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상으로는 토지의 사적소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토지법, 민법 등을 통해 토지상속권, 토지사용권에 대한 매매권, 저당권 등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일정 범위 안에서는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사실상 인정한다.

328) 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한 각 사회주의적 집단들의 소유를 말한다.

329) 다만, 신헌법 제21조에서 개별 상인, 소기업가 등 사적인 자본주의적 기업가들이 자신의 생산 및 유통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사업의 범위나 수익의 한계가 어떤 규정에 의해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소규모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5) 베트남 헌법에 대한 평가

① 베트남 헌법상에서의 권력분립

베트남 개혁, 개방정책의 이념적 한계는 ‘공산당에 의한 국가영도 원칙’이며, 이를 구현하는 헌법 제4조에 대한 개헌은 공산당이 권력을 다른 집단과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2001년 개헌 당시에도 위헌법률심사권을 갖는 독립적인 헌법재판소의 설립 등 권력집중을 견제하고 개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개헌안이 논의되었으나, 공산당은 개헌의 범위를 개정이 시급한 현안으로 한정시켜 무산된 바 있다.

② 베트남 헌법상에서의 기본권 보호

베트남 헌법상 개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헌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주의 체제에 반하는 모든 활동을 법률로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한 헌법 제13조가 존재하는 이상,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하위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법률들이 현행 헌법상 위헌이 될 여지는 적기 때문이다.

③ 의무와 권리의 상충

베트남 헌법은 조국에 대한 충성 의무,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 국가안녕 보호 및 사회 안전과 질서유지 의무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추상적 표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권리와 의무가 불가분히 있음을 명시해 의무의 이행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 자체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다.

3. 캄보디아

(1) 개 관

1) 법률시스템 연혁³³⁰⁾

캄보디아 법률과 사법 시스템은 다양한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아시아적 사고와 관습이 영향을 미쳤고, 프랑스의 식민지로 프랑스로부터 영향을 받아왔다. 1980년대에는 베트남이 점령하여 베트남의 영향을 받았고, 1990년대 초 유엔의 임시정부(UNTAC)가 통치하던 시절 유엔의 영향과 그 밖의 주요 원조국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캄보디아의 법률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사회주의적 법원칙과 절차는 1980년대의 캄보디아의 사법기관과 법률시스템의 실제법을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대부분의 사회주의적 법률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다. 법률교육을 받은 인재의 부족과 중앙집권적 공산주의 정책이 결합되어 법무부에 사법에 관한 지배적 권한을 주었고, 이러한 지배적 권한의 합법성은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캄보디아 법률의 근간이 되는 신헌법이 1993년에 채택되었으며 1993년 이전에 제정된 많은 기존 법률들은 신헌법과 배치되지 않고 대체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 현 황

① 현재 캄보디아는 2004년 WTO 가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많은 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새로운 법규들은 프랑스 법령을 기초로 하는 대륙법 체계에 영미법 원칙들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330) Introduction to the Cambodian Judicial Process of Koy Neam The Asia foundation, 1998 참조.

있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법체계를 캄보디아 법체계에 통합시키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캄보디아 국회는 1993년 이래 많은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특히 2002년 이후 캄보디아 산업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17개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법률로 투자법(Investment Law), 회사법(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토지법(Land Law) 등이 있다.

② 캄보디아 법체계

가장 상위법인 헌법(Constitution)- 법률(Law)- 시행령(Decree)- 하위시행령(Sub-Decree)- 규정(Regulation)- 규칙(Circular)으로 되어 있고, 헌법(Constitution)은 법체계상 최상위의 규범으로 하위법령은 헌법을 바탕으로 한다.³³¹⁾ Royal Decree는 국왕이 헌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왕의 이름으로 공포하는 명령이고, Kram(Law)은 국가의 제도와 조직을 정하여 국회에서 투표로 정함. Kret(Decree)/Anu-Kret(Sub-Decree)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국무회의에서 채택하고 수상이 제정하고 그 외 각 부처장관의 결정문(Prakas), 회람(Sarachor: Circular), 지시(Instruction) 등이 있다.

③ 법률 제정 과정

먼저 각 부처가 초안을 만들고 내각평의회 (Council of Ministers)가 이 초안을 가지고 토론을 거쳐 수정과 승인을 하면 입법부인 국회로 보내진다. 행정부로부터 넘겨받은 법률초안은 국회의 승인을 거쳐 상원의 추인을 받고 국왕이 최종적으로 서명하면 법률이 발효된다. 현재 상원과 국왕의 추인과 승인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것이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의 개정과 수정안 제출은 국왕, 수상, 국회의장의 권한이며, 국회의원의 4분의 1의 동의를 필요하다.

331) 다만 실제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하위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각 부처 공무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여 법규정과 그 적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

3) 사법부의 구성

①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 최고법관회의(SCM), 법원, 그리고 검사로 구성된다. ② 캄보디아의 법원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구성된다.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은 원장과 부원장과 10명의 판사와 6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법원의 항소를 담당하는 고등법원은 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9명의 판사와 8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은 민사부와 형사부로 나뉘며 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12명의 판사와 3명의 검사로 이루어진다. ③ 캄보디아 검사는 우리나라와 같이 기소권을 가지나 우리나라처럼 검찰청은 없고 모두 법원에 소속되어 있다.

4) 사법부의 독립

① 캄보디아 헌법 제128조는 사법권은 독립적 권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권은 행정소송을 포함하여 일체의 소송을 그 권한으로 하고(헌법 제130조) 사법권은 행정부나 입법부에 부여되지 않는다고 규정(제130조)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성을 재차 확인하였다. ②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배타적으로 속하고(헌법 제128조) 오직 법관만이 재판할 권한을 보유(헌법 제80조)한다. ③ 법관은 파면되지 아니하나 최고법관위원회(Supreme Council of Magistracy)가 부정행위를 행한 법관에게 징계를 내린다(헌법 제133조). ④ 캄보디아 국왕은 최고법관위원회(Supreme Council of Magistracy, SCM)의 도움을 받아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132조).

(2) 캄보디아의 헌법

1) 헌법의 개관

캄보디아는 공산정권이 무너진 이후 1993년 신헌법을 제정하여 입헌군주국이 되었다. 국왕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에 따라 나

라를 다스리고,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로 임명된다.

2) 헌법의 주요내용

캄보디아 헌법은 전문을 포함하여 총 13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제1장(제1조-제6조)에서 주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제2장(제7조-제30조)에서 캄보디아의 국왕의 총리임명권, 국회의 동의에 따라 각료 등 고위직 공무원, 군인, 대사, 법관의 임명에 대한 서명권, 군 최고통수권, 국제조약에 대한 최종 서명비준권 등 국왕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제3장(제31조-제50조)에서국민의 기본권조항으로 평등권, 생명권, 자유와 안전, 사형제 폐지, 선거권, 직업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무죄추정의 원칙, 고문금지, 형사소송의 적법절차의 원칙, 표현의 자유, 정당설립의 자유, 이념의 자유와 국가종교(불교), 소유권, 손실보상, 여성차별금지, 인신매매와 매춘·음란한 행위 금지, 부모의 자녀 교육의무, 아동보호, 국방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④ 제4장(제51조-제55조)에서 정치에 관한 규정으로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을 선언하고 복수정당제와 비핵화를 규정하고 있다. ⑤ 제5장(제56조-제64조)은 경제조항으로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조세법률주의, 국유재산의 관리, 시장경제의 보호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⑥ 제6장(제65조-제75조)에서 교육, 문화, 사회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민의 교육권과 건강권,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보호, 문화예술의 보존과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⑦ 제7장(제76조-제98조)에서 입법부에 관한 규정을, 제8장(제99조-108조)에서 왕립정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⑧ 제9장(제109조-제116조)에서 사법제도, 제10장(제117조-제125조)에서 헌법위원회를 규정하고, 제11장(제126조-제127조)에서 지방행정조직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⑨ 제12장

(제128-제130조)에서 국민회의, 제13장(제131조-제134조)에서 헌법의 발효와 개정에 관한 규정, 제14장(제135조-제139조)에서 임시규정을 두고 있다.

제 5 절 중앙아시아지역의 법체계

1. 중앙아시아지역의 법체계 개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법률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하며 전형적인 성문 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에서 법률을 비롯한 각종 법령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입법부, 대통령, 정부 및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입법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법, 에너지법, 경쟁법, 외국인투자법, 조세법 등 절차법과 실체법으로 구분하여 입법화하고 있다.

그밖에 중앙아시아 법체계의 형성 및 법제도의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소련 및 러시아법이라 할 수 있겠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은 소비에트공화국의 구성원으로 구소련의 법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독립 후에도 러시아와 정치, 경제적 분야에서 긴밀한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제도 정비과정에 있어서도 대부분 러시아의 법제를 모델로 입법화하고 있다. 이 또한 중앙아시아국가 법제도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라고 하겠다.

2. 카자흐스탄의 헌법

(1) 헌법체계의 관건

카자흐스탄공화국 헌법은 98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제1편 총칙 (제1조~제9조), 제2편 인간과 시민 (제10조~제39조), 제3편 대통령 (제40

조~제48조), 제4편 의회 (제49조~제63조), 제5편 정부 (제64조~제70조), 제6편 헌법위원회 (제71조~제74조), 제7편 법원과 재판 (제75조 ~제84조), 제8편 국가의 지방관리와 지방자치 (제85조~제89조), 제9편 결론 및 전환조항 (제90조~제98조)이 규정된다. 통치기구에 대한 규정이 여러 편으로 나뉘져 있는 반면에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한 편에 포괄적으로 규정된다.

(2) 헌법상 정치제도

카자흐스탄공화국 헌법에서는 제3편부터 제8편에 걸쳐서 통치구조에 대해서 규정한다. 통치기구에 관한 조항에서는 대통령, 의회, 정부, 헌법위원회, 법원,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이 보인다.

1) 국 회

카자흐스탄공화국 국회는 상원(Senat)과 하원(Mazhilis)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취하고 있다(카자흐스탄공화국 헌법 제50조 제1항). 상원의원 의석수는 47석이며, 각 주 등의 지방의회에서 각각 2명씩 선출되어, 나머지 7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하원의원 의석수는 107명이며, 98명이 비례대표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나머지 9명은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에서 선출된다.³³²⁾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제50조 제5항).

상원의원이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①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출과 해임, ②대통령에 의한 중앙은행 총재 · 검찰총장 ·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의장 임명 · 해임의 승인, ③검찰총장 · 대법원장 · 대법관의 불가침성 박탈, ④기타 헌법에서 정해진 권한이 있다.³³³⁾

332) NIHU Program Islamic Area Studies, University of Tokyo, http://www.l.u-tokyo.ac.jp/~dbmedm06/me_d13n/database/kazakhstan/election.html (2011. 10. 15.)

333) Ibid.

하원의원이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①법안 심의의 승인, ② 대통령의 의한 총리 임명 승인, ③대통령선거의 고지, ④기타 헌법에서 정해진 권한이 있다.³³⁴⁾

2) 대통령

카자흐스탄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의 자격요건은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 출생한 40세 이상인 자이며, 카자흐어를 구사하고, 카자흐스탄공화국 국내에 1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제41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규정된다(동조 제1항). 또한 동일한 인물이 2회 이상 대통령으로 연임될 수는 없다(동조 제5항). 그러나 이 규정은 초대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초대 대통령인 나자르바예프가 계속 통치하고 있다

3) 내 각

카자흐스탄 헌법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달리 내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사법부

카자흐스탄공화국 헌법에서는 제6편에서 헌법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여 (제71조~제74조), 제7편에서 법원과 재판에 대해서 규정한다(제75조~제84조).

헌법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다(제71조 제1항). 헌법위원회 위원 선출방법은 대통령과 상원의장 그리고 하원의장이 각각 2인씩 선출한다. 위원은 3년마다 1/2가 교체된다(동항의 3). 헌법위원회는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재석의원의 1/5 이상의 의원 및 총리의 제의가 있는 경우에 헌법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제72조).

334) Ibid.

법원에 대해서는 제7편에서 규정된다. 먼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규정하여 (제75조~제76조), 판사의 권한 (제77조~제80조), 대법원의 권한 (제81조), 최고사법위원회 (제82조), 검사의 권한 (제83조~제84조) 등을 규정한다.

법원은 민사, 형사,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소송절차의 형식에 따라 시행한다(제75조 제1항). 특별법원이나 비상법원은 인정되지 않는다(동조 제4항).

판사는 25세 이상의 고등 법률교육을 받은 자 중에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며 자격시험을 통과한 카자흐스탄 국민이어야 한다(제79조 제3항).

(3) 자유권적 기본권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헌법이 기본권을 각각 장으로 세분화함에 비해서 카자흐스탄공화국 헌법에서는 제2편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시민권의 요건(제10조~제11조), 기본권의 향유(제12조), 평등권 (제14조), 생존권 (제15조)이 규정된다.

다음에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원리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에 대해서 규정된다. 신체의 자유(제16조), 인간의 존엄 및 고문·폭행을 당하지 않을 자유(제17조), 그리고 통신의 자유(제18조)가 보장된다.

정신적 자유권에 대해서는 제20조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제23조에서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된다. 또한 제22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4) 정치적 기본권

카자흐스탄공화국 헌법에서는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국가사무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대의제를 인정한다(제33조 제1항). 또한 제2항에서는 타인을 선거하거나 또는 자신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에 선출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한다(동조 제2항).

(5) 경제적 및 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에 대해서는 제15조와 제29조에서 보장되고, 국가의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제29조 제2항).

근로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24조 제1항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제2항에서는 노동조건 선택의 자유와 실업자의 보호가 보장된다. 제3항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제4조에서는 연차휴가를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제30조에서 의무교육이 무상으로 보장된다(제30조 제1항). 또한 입시경쟁을 이겨낸 자는 국립고등학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동조 제2항).

또한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25조에서 보장된다.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는 법정 기준에 따라 국가주택기금에서 지원하며 주택이 제공된다(동조 제2항).

(6) 청구권적 기본권

카자흐스탄공화국 헌법에서는 조문으로 청구권적 기본권을 보장한 것은 거의 안 보인다. 그러나 제13조 제4항에서는 사법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3. 우즈베키스탄의 헌법

(1) 헌법체계의 관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헌법은 128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제1편에서 기본원칙에 대해서 규정하여(제1조~제17조), 제2편에서는 “인간 및 시민

의 기본적 권리, 자유 및 의무”에 대해서 규정한다(제18조~제52조). 제3편에서 “사회와 개인”에 대해서 규정하여(제53조~제67조), 제4편에서는 행정구획과 국가구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제68조~제75조), 그리고 제5편에서 통치구조에 대해서 규정하여(제76조~126조), 제6편에서는 헌법 개정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제127조~제128조).

(2) 헌법상 정치제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헌법에서는 제5편에서 통치구조에 대해서 규정한다. 제18장에서 국회에 대해서 규정하여(제76조~제88조), 제19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규정한다(제89조~제90조). 제20조에서 내각에 대해서 규정하며(제98조), 제21조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규정한다(제99조~제105조). 제22장에서 사법권에 대해서 규정하며(제106조~제116조), 제23조에서 선거제도(제117조), 제24장에서 검찰청(제118조~121조), 제25장에서 재정(제122조~제124조)에 대해서 규정한다.

1) 국 회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국회는 “Oliy Majlis”이라고 불린다. 원래 우즈베키스탄 국회는 단원제이었으나 2003년 4월의 헌법 개정에 따라 상원(The Senate)과 하원(The Legislative Chamber)의 양원제로 변경되었다. 상원과 하원 의원의 임기는 각각 5년이다 (제76조).

우즈베키스탄 국회 하원 의원은 헌법 제77조에서는 120명으로 규정되었지만, 대통령의 제안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 150명으로 증원되었다. 상원의 의석수는 100명이며, 각 주 등의 지방의원 중에서 84명이 선출되고 나머지 16명을 대통령이 선출한다.³³⁵⁾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요건은 투표일까지 만 25세이며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제77조 제2항).

335)NIHU Program Islamic Area Studies, University of Tokyohttp://www.l.u-tokyo.ac.jp/~dbmedm06/me_d13n/database/uzbekistan/institution.html (2011. 10. 15.)

상원이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상원의원에게만 인정된 권한은 국회 상원의장과 부의장·위원장과 부위원장 선거, 헌법재판소 선거, 대법원 선거, 대경제법원 선거, 국가자연보호위원회회장의 임면, 검찰총장의 임면, 국가안전기관위원장 임면에 관한 대통령령의 승인, 외국에 주류하는 외교관 기타 대표의 임면, 중앙은행 총재의 임면, 은사법의 제정, 상원의원의 지위박탈에 관한 문제해결, 국가자연보호위원회회장·중앙은행 총재의 보고청문 등을 들 수 있다(제80조).

하원의원에게만 인정된 권한은 하원의장·부의장·대변자 선출, 하원의원 지위 박탈에 관한 문제해결 등을 들 수 있다(제79조).

2) 대통령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의 자격요건은 35세 이상의 우즈베키스탄 국민으로 공용어를 구사하고,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고, 동일인이 2회 이상 당선될 수 없다(제90조).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독립 이래 대통령이 교체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이슬람 카리모프대통령이 계속 통치를 하고 있다.

3) 내 각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총리, 부총리, 장관, 국가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제98조 제1항). 내각은 대통령이 조각하여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선출한 뒤에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조 제2항). 내각의 권한은 경제 또는 사회적 및 정신적 분야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동조 제3항).

4) 사법부

우즈베키스탄의 사법은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경제법원, 카라칼파크스탄공화국 대법원, 카라칼파크스탄공화국 경제법원, 주법원, 타슈켄트시 법원, 지구(地區) 법원, 시(市) 법원 및 시 경제법원으로 구성된다(제107조). 법관의 임기는 각각 5년이다.

(3) 자유권적 기본권

우즈베키스탄 헌법 제7장에서 “개인적 권리 및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신체적 자유권과 정신적 자유권이 보장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존권의 보장(제24조), 적법절차원리(제25·26조), 주거의 불가침(제27조), 거주·이전의 자유(제28조), 표현의 자유(제29조), 알 권리(제30조), 신앙의 자유(제31조)가 각각 보장된다.

(4) 정치적 기본권

우즈베키스탄 헌법 제8장에서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률내용에 따라 대의제를 정하여, 집회·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여,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시민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 및 국가관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대의제를 규정한다(헌법 제32조). 그러나 선거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헌법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정치적 자유권 항목에서 규정한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정신적 자유권으로 보장하는 한국헌법이나 일본헌법과는 차이가 보인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안전상의 이유로 국가는 실시를 금지할 수 있는 등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동법 제33조).

또한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도 정치적 기본권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정당, 기타 사회단체에 가입할 권리가 보장된다(동법 제34조).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 시설 또는 인민의 대표자에 대하여 신청, 제한 및 불복 신고할 권리를 인정하여, 청원권이 보장된다(동법 제35조).

(5) 경제적 및 사회적 기본권

우즈베키스탄 헌법 제9장에서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제36조~제42조). 이에 따라 재산권, 노동기본권, 사회권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소유권을 보장하여(제36조), 노동의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제37조),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제38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39조),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제40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41조), 과학기술 및 문화재를 사용할 권리(제42조) 등이 보장된다.

(6) 청구권적 기본권

우즈베키스탄 헌법 제10장에서 “인간의 권리 및 자유의 보장”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는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민은 청구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그 권리 및 자유의 사법적 구제를 재판소에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제44조). 국가는 미성년자나 노약자를 보호할 책무를 가진다(제45조).

제 4 장 글로벌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현안 문제

제 1 절 중동지역의 현안문제

1. 물 부족(Water Shortage)

중동은 세계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지역이다. 중동지역의 사람들은 5%의 인구가 1%의 물로 살아간다. 중동지역의 물은 석유와 같은 존재로 각인되고 있다. 최근에 UAE는 세계에서 미국과 캐나다 다음으로 3번째로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이다.³³⁶⁾ 중동지역의 물과 관련하여 나일, 티그리스-유프라테스, 요르단의 제방을 둘러싼 국가간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 예컨대, 나일강은 이집트에 이르기 전에 9개 국가를 관통하여 흐르고,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은 3개국을 통해 흐르고, 요르단 강은 네 개의 영토를 통해 흐른다.

따라서 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국가는 물을 자기 나라의 영역안으로 흐르게 하기 위하여 물의 흐름을 지배하고자 한다.³³⁷⁾ 그러나 강 하류

336) UAE는 4,180 million m³ 중 농업 60%, 국내 25%, 산업 9%, 공공·공원 6%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hamed A. Raouf, The Middle East Institute Policy Brief-Water Issues in the Gulf:Time for Action, 2009/1), 1~13; World Bank, A Water Sector Assessment Report on the Countries of the Cooperation Council of the Arab States of the Gulf, (2005/3)).

337) 미국의 하문 법무장관은 상류국가는 하류국가를 배려하지 않고 아무런 제한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절대적 영토주권론자이다. 이러한 대신하여 등장한 원칙이 “형평의 원칙”, 즉 물의 형평적 이용이다. 물이 부족한 미국의 서부에서의 주사이에서의 물 배분 분쟁에서 발전해 온 “형평적 배분”원칙과 같은 맥락에서 서 있는 “형평적 이용” 원칙은 국제법협회(ILA)에 의하여 국제하천에서의 물 이용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따라서 1966년에 국제법협회(ILA)는 “국제하천의 물 이용에 관한 헬싱키 원칙”을 제정하였다. 헬싱키 원칙 제4조에 합리적으로 형평적 배분이 원칙이라고 선언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11가지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역의 지리, 수문의 현황, 기후, 과거와 기존의 물 이용, 경제 사회적 수요, 인구,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의 상대적 비용, 다른 자원의 존재 여부 등이다. 제8조에는 기존의 물 이용은 그것이 합리적이면, 다른 더 중요한 요소에 의하여 양보해야 할 상황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S.

에 위치한 국가들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징벌적인 수단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Water Stortage와 관련한 이슈는 멀지 않은 미래에 중동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아젠다로 자리메김하게 될 것이다.³³⁸⁾ 아무튼 중동지역에서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 문제는 식량 안보라는 전략과 맞물려서 중동지역에 새로운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항상 내포하고 있다.³³⁹⁾

2. 식량안보(Food Security)

2011년 3월 중순 일본 최악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방사능 유출로 고통 받고 있는 일본국민의 이재민대피소에 써 놓은 “食糧”이라는 대형 글자를 하늘에서 찍은 한장의 사진은 國民들이 國家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國家는 國民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장면이다. 인간은 생명줄을 놓지 않는 한 어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먹을거리부터 챙기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굳건한 식량안보(Food Security)³⁴⁰⁾는 국방력보다 더 소중한 국가의 ‘安全(Sicherheit)’과 제라고 하겠다. 2,500년 전 공자가 한 ‘먹는 것(食)이 국방력(兵)보다

Burchi/ J. Vapnek/ C. Popp, “Internaional Water Law”, in Law for water management : a guide to concepts and effective approaches, (FAO, 2009). pp. 91~119.).

338) 국제연합 식량 농업기구(<http://www.fao.org>)에서 “물 관리를 위한 핵심은 숲을 최대한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관건”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

339) 최근 영국의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장인 Sir John Beddington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으로 인하여 식량가격 상승, 빈곤 문제 등을 야기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대사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주한 영국대사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한국 독일동문네트워크,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 위기의 이해와 기회의 포착”, (2011년 10월 7일 자료)

340) FAO에서 식량안보는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음식섭취의 수요와 기호에 적합하도록 충분하고도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을 획득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을 때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요하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한 진리이다.

최근 중동에서 튀니지, 이집트, 바레인, 리비아 등의 시민혁명은 국민들의 먹을거리 가격 폭등과 높은 실업률, 경제적인 부패, 타락한 정권 등에 대한 분노로 폭발케 했다. World Bank Report에 의하면 세계 식량 가격지수는 지난해 초 보다 29%나 올랐고, 지난해 10월 이후 15% 상승했다. 특히 밀 가격은 지난해보다 두 배나 올랐고, 옥수수는 73%나 상승했다. 이러한 식량가격의 상승은 전 세계 빈곤층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식량문제는 이제 세계안보와 직결된 국가의 안전과제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G20의장국인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식량 등 1차 산업품의 가격의 급변동은 글로벌한 국가의 과제다. 최빈국에서는 폭동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고, 세계 경제 성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며 G20의 주요 의제로 선정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국가들마다 식량안보는 에너지·자원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가의 아젠다라 할 수 있다. 즉 각 나라마다 식량안보는 ‘안전한 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핵심이다. 그런 만큼 식량의 국내 생산 극대화 와 비축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므로 중동의 경우 식량을 극대화와 비축할 수 있는 대안³⁴¹⁾을 마련하는 길이야 말로 더욱 더 안전국가(Sicherheitsstaat)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사우디아라비아의 환경문제로 “태양도시” 건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온

341) 최근 UAE 아부다비는 식량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에 위협을 받게 되자 국영 상품트레이딩업체(ADS:Abu Dhabi Sources)를 푸자이라에 곡물비축 창고를 건설 중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예컨대, 스위스의 글렌코어나 미국의 카길 등과 경쟁을 하게 될 전망이다.(Financial Times, 2010년 11월 17일자).

실가스의 증가로 환경단체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현재 1인당 13.6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솔린 가격은 갤런 당 44센트로 낮은 가격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수단으로 에너지 과소비를 촉발하고 있다. 최근 UN 기후회담에서 탄소배출규제로 인하여 석유 가격이 요동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우디는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내 환경문제는 국가 내부적인 요소도 존재하지만, 외부적인 요소에 의하여 적용된다. 예컨대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 군에 의한 쿠웨이트 시설로부터의 석유유출로 인해 240 갤런의 석유가 걸프만 지역으로 흘러들어 들어가,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자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도시들의 성장으로 인하여 수자원 부족현상이 심해져, 그 수요를 메우기 위하여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공정을 통해 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공장들로부터 공업폐수와 민간에서 나오는 오물들이 충분한 여과단계 없이 바다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흘러들어간 오염물질이 지하수를 파괴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풍부한 태양열을 이용하여 녹색투자를 하고 있다. 즉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1,66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신재생에너지에 몰두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적정한 수입 없이는 왕국을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또한 상승으로 인하여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즉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국을 계속 존속하기 위하여는 경제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리야드 북서쪽 50킬로미터 떨어진 알-주바이라흐, 알-우야이나흐, 알-히제라에 “태양마을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4. 기후변화로 인한 빈곤문제

1996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세계 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가 로마에서 개최되었다. 빈곤과 기아문제가 세계적인 위기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전 세계 인구 중 약 20억명이 빈곤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매일매일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며 사는 절대 빈곤층도 10억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정상들은 2015년까지 식량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숫자를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0년 후에 FAO의 보고서 「2006년 세계의 식품 불안정 상태(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06)」에서는 그 동안 빈곤층의 감소라는 목표 달성에 사실상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발표를 했다.³⁴²⁾ 여전히 세계 인구 중 8억 5천 400백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8억 2천만명이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고, 2천 5백만명이 전환국가의 국민, 그리고 900만명이 선진국 국민들이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전공학이라고 한다. 하지만 유전공학이 빈곤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최첨단 유전공학 지지자들은 아직 실현되지 못한 꿈을 꾸고 있다. 식량공급의 문제와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예컨대, 굶주리는 사람은 가난하거나 힘이 없어서 혹은 양쪽 모두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는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갖지 못하기

342) FAO,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06 - Eradicating world hunger : taking stock ten years after the World Food Summit”(FAO, 2006); <http://www.fao.org/docrep/009/a0750e/a0750e00.htm>

때문에 굶주린다는 것이다. 영국의 소비자협회³⁴³⁾도 세계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명공학의 약속은 단지 기술적인 방법에 의하여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러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희망을 제공할 뿐이라고 한다.

최근에 헨리 조지³⁴⁴⁾는 마르크스와 애덤 스미스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아닌 제3의 길을 ‘토지조세제’라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헨리 조지는 부자와 빈민의 공존을 보고 “엄청난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는데 왜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한 원인이 토지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부의 집중이 계속 확대되는 원인은 토지의 사적 소유에 있으며, 이는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지속적인 진보에 필요한 평등과 자유를 파괴하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은 토지 및 천연자원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공공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5. 정치개혁 논쟁과 선거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왕정에 대한 정치적인 정당성과 권위에 의문으로 논쟁이 있었다. 1990년 이후로 개혁 운동가의 계속된 청원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 책임, 참여, 정부 조직, 의사결정을 로얄 패밀리에게도 요구되었다. 지금까지 이러한 요구는 정부에 의한 저항과 복잡한 포용성과 함께 접하게 되었다. 2003년에도 개혁가는 입헌군주제의 소개를 포괄하는 정치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를 했다.³⁴⁵⁾ 당시 황태자와 지금의 국왕 압둘라가 국민의 대화

343) Sheppard, Julie, “Genetic Engineering and Food Scarcity” in “The Meat Business” (Earthscan, 1999).

344) 헨리조지 / 김윤상(역), 『진보와 빈곤』(살림출판사, 2009)

345) See, International Crisis Group, “Can Saudi Arabia Reform Itself?” Middle East Report N.28, July 14, 2004; and, Reuters, “Saudi Arabia Frees 3 Islamist Reformists,” July 10, 2007.

의 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초기에 요구한 개혁을 수용하였는데, 어떤 비평가들은 정부정책의 비판을 제공하는 것과 정치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공적인 논의를 사우디아라비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³⁴⁶⁾ 그러나 체포 또는 구금자의 서명에 대한 개혁요구는 개혁지지자들을 화나게 했는데, 로얄 패밀리 의 중요한 권위와 관련된 이슈와 관련하여 어떤 핵심 원칙에 대한 왕실과의 타협에 대하여 외부 관찰자에게 의심을 품게 하였다. 2003년 이후 사우디 정치 시스템의 구조에 대하여 유연한 변화가 극도로 제한되었다. 2005년 선거는 새롭게 만든 지방자치위원회에서 178석 중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선거결과로 당국에 지역과 국가수준의 권고권과 명목상 지방정부의 감독권한을 인정했다. 또한 국가간 대화과정을 통하여 적절하게 지방자치위원회와 마주하여 자치와 지역 당국간의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다. 여러 지방자치위원회의 멤버는 사임을 했고,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유지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 강력하게 남게 되었다. 2007년 9월에 Talal bin Abd al Aziz, Abdallah의 이복형제 그리고 장기간 개혁 지지자들은 개혁활동가의 구금을 비난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왕궁에 개혁을 지향하는 정치적인 정당의 설립을 요구했다.³⁴⁷⁾ 지방자치위원회 선거가 2009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그 선거는 연기되었다. 그러나 2009년 4월에 Prince Mansour bin Miteb bin Abd al Aziz는 지방과 시골의 업무, 즉 지방자치위원회 시스템 개선을 위한 권고에 대한 지적을 Ras Tanura에서 최근 회의 주제로 선정했다. 언론보고서는 지방자치위원회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허용하게 하는 제안을 고려하는 것과 아울러서 지방자치위원회 시스

346) Six sessions have been held under the auspices of the King Abdulaziz Center for National Dialogue, with corresponding regional preparation meetings. The subjects included national unity, combating extremism, women, youth, "dialogue with world cultures," and education policy. For more information, see <http://www.kacnd.org/eng/default.asp>.

347) Associated Press (AP), "Key Saudi Prince Says Plans To Form Political Party," September 4, 2007.

템을 법률의 형태로 참작하는 것을 권고했다. Mansour왕은 2009년 11월에 그의 아버지의 사임을 계기로 지방과 시골 업무에 대한 장관으로 승진을 하였다.

6.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1978년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술에 의해 고리 원자력발전소 제1호기를 처음으로 가동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표준 개발에 성공을 하였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가 떨어지면서 원전개발에 대한 기술이 축적되지 못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거의 매년 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최고의 비결이었다. 다음으로, 미국은 1979년의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구소련은 1986년의 체르노빌 사고, 일본은 1999년의 도카이무라 사고, 2011년 일본 동북부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등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30여 년 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안정적인 운영 실적을 보여줬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건설 능력을 가진 국내 기업(두산, 삼성, 포스코 등)과 컨소시엄을 유지함으로써 공사기간 단축을 통한 가격경쟁력측면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었다. 중동국가 중 UAE에 대한 원전 수출은 국가 대항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위의 삼박자 요인과 정부의 적절한 전략이 통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 세계 원자력 규모는 2001년을 정점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원자로도 절반 정도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원자력 자체의 안전성 문제,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문제, 경제성 논란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의 선진국들은 태양, 지열, 바람,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하여 자국내에 존재하는 원자력발전소를 2022년까지 가동을 중지하고 폐쇄(폐지)한다고 했다. 또한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도 원자력은 UN의 온실가스 저감 방안인 청정개발체제(CDM)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원자력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고갈 시대를 맞이하고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에서 유일한 에너지 대안으로 원자력이라고 하고 있다. 즉 녹색에너지 대안으로 전 국가적으로 인지하기 위하여는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를 더욱더 촘촘히 하고,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서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로를 활용한 원자력발전소는 제3세대 원자력발전소라는 점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중동지역에 원자력발전소 기술력을 수출하기 위하여 꿈의 에너지 즉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핵융합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적으로 우리나라는 원자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 에너지 강국이 될 것이다.

7. 후세대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³⁴⁸⁾

UAE는 세계3대 산유국이자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5위 국가이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세계 2위인 에너지 다소비국이다. 앞으로도 50년 이상 화석연료 생산 강국인 UAE가 Masdar City 건설과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사무국 유치, 그리고 원전건설 등 미래 에너지를 선도하는 초일류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UAE정부는

348) http://www.mofa.gov.ae/mofa_english/portal/2666c727-3cea-4483-9791-56462f752166.aspx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극적인 변화를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재생에너지 선도국으로서 국가이미지를 높여 나가고 있다. 아부다비를 재생에너지의 허브로 삼고 전통적인 화석연료 의존경제에서 저탄소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를 적극 육성하려는 칼리파 UAE 대통령의 비전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UAE는 석유와 가스 고갈로 인한 수출의 의존을 멀리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다변화쪽으로 경제정책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ADFEC의 주도로 마스다르 이니셔티브는 국제적인 수준의 마스다르 시티의 개발 작업을 계속하였고, UAE는 국제적인 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 IRENA)에 대한 본부를 갖게 되었다.

2010년 4월 국제적인 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첫 번째 총회에서 본 기구의 토대를 공식적으로 구성하였다. 본 기구는 2009년 설립당시부터 효과적인 다자간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 기구간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IRENA는 국내외에서 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해 개도국과 선진국을 모두 대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2009년 당시 75개국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149개국이 IRENA 설립규정에 동의를 하였다. IRENA의 멤버십에는 아프리카 48개국, 유럽 38개국, 아시아 35개국, 미주 17개국, 호주/오세아니아 회원국 10개국 등이 포함하고 있고, UAE는 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를 주요 의제로 상정하고 있다. UAE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부가 2010년 3월 외무부내에 설립했다. 그리고 UAE가 IRENA 본부 입찰에 성공한 직접적인 결과이며, IRENA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의 참여의 중심지로 활동한 결과이다. 즉 지속가능기술과 솔루션 개발을 향한 이 나라의 강력한 헌신은 또 다른 마스다르 이니셔티브 출범, 아부다비 그린빌딩

표준화(에스티다마, Estidama), 세계미래에너지정상회의, 자예드 미래 에너지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2009년 1월에 아부다비 정부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해 7%의 전기 생성을 찾겠다고 정책을 발표했다.³⁴⁹⁾ 즉 핵 에너지를 통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의 목표를 태양광 발전소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2010년에 재생에너지의 목표는 포괄적인 에너지 정책에 의해 지원된다. 그리고 중요 이슈 사이에서 고비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전기를 생성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인데, 지속가능한 에너지 해결책을 장려하는 방식과 탄소배출량을 축소하기 위한 할인(Discount)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함과 아울러 지속 불가능한 전기생성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의 감축을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8. 이슬람여성의 인권문제 - 일부다처제, 히잡, 여성폭력-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슬람권의 여성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일부다처제”, 현재 1부 4처라는 틀속에 남성으로부터 온갖 억압과 속박을 받는 여성을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서구의 영향 때문이고, 서구에서는 일부다처제를 가장 미개한 제도이며,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제도이자 여성을 가장 속박하고 억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슬람권에서는 “일부다처제”라는 제도가 여성을 가장 잘 존중하고 보호해 주는 제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일부다처제는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이슬람 초기 전투에서 많은 남성들이 사망하게 되자, 과부들과 고아들이 생겨나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으니,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도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맞아들이

349) http://www.mofa.gov.ac/mofa_english/portal/2666c727-3cea-4483-9791-56462f752166.aspx

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사회에서 일부다처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였다.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 의하면, “만일 너희들이 고아들을 공평하게 대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결혼을 할 것이니 너희가 마음에 드는 여인으로 둘, 셋, 또는 넷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들을 공평하게 대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한 여인이나 아니면 너희 오른 손이 소유하는 것(노비)을 취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부정을 범하지 아니할 최선의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꾸란에서 남편은 아내들에게 편애 없이 공평하게 대해야하고, 이러한 공평성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제도는 성립이 불가하며, 설혹 결혼을 하였다 해도 합법적인 이혼사유가 된다. 따라서 이슬람사회의 일부다처제제도는 그 사회의 시대적인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도출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이슬람 여성은 왜 “히잡”을 쓰는 것인가? 이슬람여성의 히잡은 단순히 여성의 패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종교적 관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일까? 히잡의 모양에는 대개 얼굴과 가슴까지 가리는 것과 얼굴을 드러내는 두건 형태의 것이 있다. 히잡의 모양과 색깔은 지역, 종교적 성향, 계층, 연령, 취미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걸프 지역의 여성들은 검은색의 히잡을 쓰고 온몸을 가리지만, 북아프리카의 여성들은 흰색이나 다양한 색의 히잡을 선호하며 얼굴을 내놓는 두건 형태의 히잡을 쓰거나 아예 쓰지 않는다. 또한 종교적 믿음이 강한 보수적 성향의 여성들은 온몸을 가리는 히잡을 착용하는 반면, 개방적인 여성들은 두건 형태의 히잡을 쓰거나 아예 쓰지 않기도 한다. 연령에 따라 젊은 여성들은 원색계통의 화려한 히잡을 좋아하고, 나이든 여성들은 단색 계통의 히잡을 좋아한다. 역사적으로 히잡착용의 관습은 이슬람 이전시대부터 존재해 왔다. 꾸란에 “밖으로 나타내는 것 이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되니라. 즉 가슴을 가리는 수건을 써서 남편과 그의 부모, 자기 부모, 자기자식, 자기의 형제, 형제의 자식, 소유하고 있는 하녀, 성욕을 갖지 못하는 하인, 그리고 성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 이외의 자에게는 아름다운 곳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되니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적인 시각에서는 히잡의 착용은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하는 악습으로 비쳐져 왔다. 그러나 이것은 이슬람의 종교적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한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오히려 히잡은 무슬림여성을 속박하는 개념이 아닌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또한 무슬림 남자는 무슬림여성의 후견인이므로 여성을 남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이슬람 샤리아법의 해석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여성은 아버지, 남편, 가족 중의 남자에 대한 의무가 있다. 예컨대, 꾸란 제 4장 34절에 “알라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리드하게 만들었으므로 남자들은 여성들에게 권위가 있다. 남자들이 여성들을 위하여 돈을 쓰기 때문이다. 착한 여자는 순종한다. 알라가 지켜 주었기 때문에 여성들은(남편이 없는 곳에서도 자신의 국부를) 잘 지킨다. 불순종이 염려되는 너의 부인들에게 권면하고(알라의 말을 기억나게 하고) 한 이불을 쓰지 말고(잠자리를 갖지 말고) 그리고 나서 때려라. 만일 아내가 너에게 순종하면 부인이 싫어하는 어떤 일도 힘쓰지 마라. 알라는 지고하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슬림의 남편은 권위를 독점하고 부인은 순종해야 한다는 틀 안에서 꾸란 본문을 이해한 무슬림들은 아직도 가정 폭력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⁵⁰⁾

350) 2007년 3월 파리에 살던 한 여성이 모로코에서 온 무슬림 남성과 혼인한 뒤부터 자주 손찌검을 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꾸란에서 ‘무슬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미 알고 결혼을 하였으므로 이혼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

9. UAE의 해수담수화로 인한 사해방지 방안

흔히 석유와 물을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20세기 석유가 ‘검은 금(Black Gold)’이라면 21세기 물은 ‘파란 금(Blue Gold)’이고, 20세기 경제전쟁이 석유로 인해 발생된 ‘검은 전쟁(Black war)’이라면 21세기 경제전쟁은 물로 인한 ‘파란 전쟁(Blue War)’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20세기에 오일 쇼크(Oil Shock) 사태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워터 쇼크(Water Shock)’가 발생할 것이라 한다. 그만큼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비단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전 지구적인 숙제라 하겠다.

그렇다면, 과연 물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 세계 인구 13%인 9억 명이 안전한 음용수를 마실 수 없으며, 약 25억 인구가 하수 처리 등 기본적인 위생시설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은 약 14억^{km³}로 이는 지구 전체를 2.7km 깊이로 덮을 수 있는 양이며, 그중 97.5%가 바닷물인데 반해 2.5%에 불과한 담수는 지구 전체를 약 70m 깊이로 덮을 수 있는 양이다. 게다가 담수 중 빙설과 지하수를 제외하고 사람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호수 또는 하천수는 전체 물의 0.01% 이하인 약 10만^{km³}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물 부족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예상대로 바닷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세계 인구의 40%가 식수난과 농업·산업용수난을 겪고 있는데, 주로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의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증발방식 담수화(Desalination) 설비’가 있다. 해수(海水)를 담수(淡水)로 변환시키는 기술인데, 한마디로 바닷물을 끌어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각종 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바닷물을 끓이면 발생

다.(공일주, 『이슬람올법』(살림출판사, 2010), 36면 참조).

하는 수증기를 응축해 사람이 쓸 수 있는 물로 만드는 ‘증발방식 담수화 설비’는 우리나라의 두산중공업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40%)를 차지하고 있다.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파라잔 담수 플랜트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00만 명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담수 생산 설비를 만들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인 두산중공업은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꾸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분야에서 200년 이후 줄곧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화력발전 분야 역시 보일러, 터빈 등 핵심 원천기술을 토대로 지난 2004년부터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서 1조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했다. 최근에는 두산중공업의 경영모토로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통해 인류의 삶의 질을 높여가자’는 것 앞으로 발전(Development)과 물(Water) 사업분야에서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성장해 오는 2020년 글로벌 300대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수처리 사업은 하수나 폐수를 산업 및 생활용수로 정화하는 것으로 현재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3억달러지만 매년 15% 이상 성장해 2015년에는 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증발방식 담수화(Desalination) 설비’함과 아울러 水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하댐³⁵¹⁾을 建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Smart Water Grid 시스템이다. Smart Water Grid란 전력 손실을 줄이고 전력을 아낄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처럼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다. 기존의 水管理 시스템은 물 수요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불가능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시설 가동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 누수 등으로 인한 물 손실, 물의 생산과 수송에 드는 에너지 과다 사용도 문제이다. 또한 조경용수를 먹는 물 수준으로 처리하는 등 물의 사용용도와 관계 없이 일정한 수질의 물을 생

351) 지하댐이란 땅속에 인공 물막이 벽을 설치해 이곳을 흐르는 지하수를 모은 뒤 관정 등의 시설로 물을 사용하는 지하 저류지를 말하는 것이다.

산·처리해 비용손실이 발생하고 빗물이나 재이용수, 해수 등 다양한 종류의 수원을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Smart Water Grid이다.³⁵²⁾ 이는 수자원의 관리, 물의 생산과 수송, 사용한 물의 처리 및 재이용 등 물 분야 전반에 걸쳐 정보화와 지능화를 구현하는 차세대 물 관리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10. 아부다비 그린빌딩 코드 적용 확대

아부다비의 그린빌딩 코드인 Pearl 등급제도는 2010년 11월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2011년 1/4분기에 아부다비에서 접수된 건설신청 프로젝트 중 25%가 동 등급제도 하에 승인을 받아 진행 중에 있다. 아부다비의 도시계획위원회(Urban Planning Council: UPC)는 Estidama(아랍어: 지속성을 의미) Pearl 등급제도를 통해 건물의 환경친화 정도와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다. 건물이 최소 요구기준을 만족하면 Pearl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건물의 경우 최소 Pearl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등급 평가는 설계 단계에서 1번, 건설 완공 후 1번 씩 크게 2회에 걸쳐서 받게 된다.

아부다비의 규제 시행초기에는 업체들의 동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통과비율이 매우 낮았으나, 점차 규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면서 통과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1월까지 145건의 신규건설 승인이 신청된 가운데 이 중에서 단지 3건만 Estidama 규정을 통과하였고, 대부분의 신청 프로젝트는 아부다비 정부의 수정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재신청하도록 권고를 받았다.

352) 미국의 Smart Water Grid는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한 물 관리시설의 에너지 사용 최적화, 수자원 및 수질관리를 위한 센서 네트워크, 국가 단위의 효율적 수자원 관리 시스템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AMI 적용으로 연간 1조3000갤런의 물 절약과 연간 200만MWh의 전력 절감, 연간 14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아부다비 정부는 친환경 규정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서 건설업자는 물론 임대주들을 대상으로 Estidama 규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 규정이 아파트, 오피스 건물은 물론 일반 빌라형 주택에도 적용이 되므로 설계 컨설턴트, 건설 시공업체, 디벨로퍼, 임대주 등 관련업계의 모든 담당자들은 2011년 3월부터 아부다비 정부가 실시하는 규정 교육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아부다비 정부는 부족한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양적 확대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고급형 아파트와 사무실이 2010년부터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양적확대 보다는 생활수준의 제고를 위해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아부다비의 Estidama 규정은 이러한 아부다비 정부의 건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은 친환경 자재의 현지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건설사들은 동 규정의 제반 사항에 대해 숙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 2 절 아프리카 지역의 현안문제

1. 에티오피아의 현안 문제

(1) 민주주의

에티오피아는 민주주의 구축 및 급속한 개발(Building of a democratic system and rapid development)을 추진하고 있다. 급속한 개발은 국민생활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한 바, 급속한 개발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민주화는 인권을 향상시키고 선정을 촉구함으로써 국가 개발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2) 국가적 자존 및 위신(National pride and prestige)

에티오피아는 식민화된 경험이 없고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하여 왔을 뿐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에티오피아는 매년 대외 식량원조 및 차관 제공에 의존하는 가운데 최빈국 처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적 모욕이자 수치로 여겨지고 많은 청년들이 국외 망명을 시도하는 사례가 빈발. 그러므로 국가적 자존과 위신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민주화 및 개발과 연계되어 급속한 사회 경제전환에 기여가 필요하다.

(3) 세계화(Globalization)

상호 연계되어 있고 국제 분업구조를 갖고 있는 세계 경제로의 편입을 통해서만 경제발전 가능. 세계화는 자체 법률체계 및 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바, 이들을 주도하는 강대국 위주로 작용하고 있어 불공평한 측면이 없으나 이로부터 소외되어 발생하는 불이익보다는 나으므로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는 그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주목하여 세계화 틀 내에서 최대의 이익 추진 필요하다.

(4) 물 부족

소말리(Somali) 주와 오로미아(Oromia) 주에서는 10~11월 사이에 내려야 할 비가 오지 않아 물 공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암하라(Amhara)와 아파르(Afar) 지역에서도 평균 이하의 강우량을 기록하여 가축 및 여성·아동의 영양보충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북부지역의 화산폭발로 발생한 화산재가 초원을 뒤덮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현재 아파르 등 주정부는 피해지역 현황조사 및 인도주의적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2. 나이지리아의 현안 문제

(1) 지구 온난화 문제

나이지리아는 자국의 전력 공급량 상당수가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바, 향후 현재와 같은 속도로 자국 내 물이 증발된다면 현재의 심각한 전력난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 전력난 문제로 인해 국내 제조 산업의 발달에 발목을 잡힌 상태이며, 이는 다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국가적 경제 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되고 있다.

(2) 치안문제

현재 석유 발생 지역인 나이지 델타 지역의 치안문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석유로 인한 외화가 국가 수익의 90%를 차지하는 나이지리아에게 치명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요소이다. 특히 많은 FDI(Foreign Direct Investment)가 나이지리아 고유의 치안 문제로 유입되지 않고 있는 바, 정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부패문제

현재 조나단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부패를 손꼽았으며 부패 척결을 위한 관련 인사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정치계는 혈연, 지연에 뿌리가 깊고 부패가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은 나이지리아에서 단기간에 이러한 부패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4) 종교분쟁

2009년 12월 발생한 조스지역 종교 분쟁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이 종족 싸움, 나아가 종교 문제로 번져 수백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으로 종결되었다. 이로써 나이지리아 정부는 종족 및 종교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였는데 민감한 문제에 사실상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5) 의료문제

나이지리아의 국민 보건위생 상태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상태이다. 공공의료·보건 서비스는 미흡하며, 대부분 병원이 충분하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만성적인 약품 부족으로 상당수의 국민이 아직도 말라리아와 각종 수인성 질병, 결핵, 뇌척수막염, 기타 예방 가능한 질병들로 죽어가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51세, 여자가 54세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제 3 절 중남미 지역의 현안 문제

1. 중남미 지역 통합 기구의 변화

브라질은 룰라정부 출범 이후 중남미 지역에 강한 애착을 보이며,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해오고 있고, MERCOSUR³⁵³⁾는 브라질 중남미 외교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에서 상반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었지만, 그래도 에탄올에 의해 미국과 브라질이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하였다.

최근 통합 관련하여 중남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유럽연합(EU)과 같은 깊은 통합(deep integration)을 추진하지 않으며, 최근엔 기존의

353) Mercado Común del Sur - 남미공동시장

경제통합체들 간에 당장 필요한 부분에 얼기설기 엮어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현실성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아시아의 통합 유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주권을 건드리지 않고 경제적 실리에 따라 협력적 통합(cooperative integration)을 유연하게 추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들은 다음의 4개 지역통합체가 가입되어 있어, 이들을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 ALADI의 FTA 통합 이상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중미국가들은 SICA(Central American Intergration System), 카리브국가들은 CARICOM(Caribbean Community), 남미의 북부지역 국가들은 CAN(Andean Community), 남미의 남미지역 국가들은 MERCOSUR를 결성했다. 국제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중남미국가들의 최근 통합경향은 내부보다는 외부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ALADI이후 지역적으로 크게 4분할된 중남미국가들의 통합, 즉, CARICOM, SICA, CAN, MERCOSUR는 국제사회에서 블록단위의 교섭력을 갖추기 위해 다시 통합의 길을 추구하는 모습이지만, ALADI의 이상인 FTA 형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비록, FTA형태를 갖춘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깊은(deepen) 통합대신 얕은(shallow) 통합을 추구하는 현상을 나타내며, CAN과 합작으로 UNASUR를 구성한 MERCOSUR가 이와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³⁵⁴).

UNASUR의 창설과 더불어 MERCOSUR와 SICA간의 접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UNASUR 초석인 MERCOSUR와 CAN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므로, UNASUR의 장래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지만, CAN과 MERCOSUR 뿐만 아니라 칠레까지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남미통합의 새로운 대안모델로 UNASUR가 탄생했다. UNASUR는 급변하는

354) Botelho, Joao Carlos Amoroso(2008), "LA CREACIÓN Y LA EVOLUCIÓN DE UNASUR, REVISTA DEBATES". Porto Alegre. V. 2. N. 2. pp. 317~318.

국제정세에 따라 남미국가들이 국제다자기구에서 공동의 정책을 펼치고, CAN, MERCOSUR가 지리적 한계로 추진하지 못했던 남미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통합을 추진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CAN과 MERCOSUR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UNASUR는 EU를 모델로 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접근보다는 정치적 합의를 더 중요시 여기며, 그 달성방법은 EU와 차이가 있다. UNASUR는 MERCOSUR와 CAN을 포함한 남미전체의 통합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남미의 지위를 제고할 것이다. 또한, UNASUR는 시장통합 외에 EU를 모델로 삼아 안보통합, 에너지통합, 금융통합 등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되어있어 남미국가의 결속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중남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경제 통합 노력

경제통합의 많은 움직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 성공 사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이 결성한 MERCOSUR(남미공동시장, Mercado del Sur)이다. MERCOSUR는 1991년 체결 이후 개도국 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산업의 제품들이 교역상대국에게 수출되기도 하고 수입되기도 하는 현상을 지칭하는데 비교우위와는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산업 내 무역이 지역경제통합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실질적인 공동시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브라질이 아르헨티나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아르헨티나는 의류 품목을 브라질에 수출(산업간 무역)할 경우 이는 양국간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역구조이다. 그러나 이들 양국이 상호간에 자동

차를 수출한다면, 이는 산업 내 무역이 된다. 이처럼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양국이 동종산업 내의 품목을 상호간에 교역하는 구조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에 실질적인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둘째,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될수록 경제통합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부담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고 선진국과의 경제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도 필수적이다. 최근 경제성장에서 기술진보를 의미하는 총요소 생산성은 미미한 성장에 그쳤다. 중남미 경제가 1차산품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른 boom-bust 주기에서 탈피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중남미 각국 정부는 인적자본 개발, 기업환경 개선,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생산구조의 재편에 필요한 투자 확대, 혁신 및 기술개발 등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중남미의 빈곤퇴치 및 사회복지제도

현재(2010 기준) 중남미 지역의 빈곤층은 1억 8천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중남미 전체 인구의 32.1%에 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극빈곤층은 7천 200만명(12.9%) 수준을 기록한다. 2002~2008년 사이 최소한 4천 100만명이 경제회복으로 빈곤 상태를 탈출한 것으로 집계된다. 고로 중남미의 최대 중요 과제 중의 하나는 빈곤퇴치와 삶의 질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취임후 첫 번째 국정 과제로 ‘빈곤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사회구호정책인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의 복지는 성장과는 반대의 위치에 서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오늘날 복지와 성장은 다소간의 구축효과는 존재하나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복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중남미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때의 고속성장의 그늘아래 중남미 국가의 복지 역시 커다란 발전을 이루지 못하여 오다가 성장이후 요구되는 사회복지수요에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전반적인 평가에서 그리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의 복지정책은 좌파와 우파의 정권의 교체과정에서 일관성을 상실하여 추진되어 왔다는 점이 그 실패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불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의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 대비 지출의 비중이 점차 감소한 것을 보이고, 그 원인으로는 브라질의 CCT 프로그램이 GDP 대비 일정비율로 연동되어 예산이 증액되므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³⁵⁵⁾.

또한 효과성을 따져볼 때, 교육분야에 대한 전형적인 비판은 불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이 빈곤 감소에 기여한 건 인정하지만, 이것이 교육 경쟁력을 높였는 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빈곤퇴치 및 소득격차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Bolsa Familia와 같은 CCT 프로그램은 시장을 왜곡할 위험이 없고 행정비용이 낮으며 수혜자에게 구매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현물보조(in-kind subsidy)와 비교하여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일단 후한 평가를 받는 듯 하다.³⁵⁶⁾

355) Klasen, Stephan(2009), Inequalities in Emerging Countries: Trends, Interpretations, and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Intereconomics(Nov)

356) Lampietti, Julian A. Sean Michaels, Nicholas Magnan, Alex F. McCalla, Maurice Saade, and Nadim Khouri, 2011. A Strategic framework for improving food security in arab countries. FoodSecurity 3(-02-14)

4. 중남미의 젠더변화 및 사회적 소수자 보호 정책

중남미 지역은 유럽인들에게 발견되기 훨씬 이전부터인 2만 년 전부터 베링해협을 건너와 정착한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식민시대에는 대농장과 환금작물농장의 노동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유입되었다. 이후 독립과 국가통합과정에서 이들 원주민들과 흑인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배제되었고, 19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유럽으로부터 대량의 이민자들이 들어옴으로써 중남미 지역은 진정한 “melting pot”을 형성하게 되었다. 중남미의 다문화주의는 역사적으로 원주민, 흑인, 혼혈, 농민, 여성, 주변부라는 “상대”를 부정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특징이 있다. 종족과 문화의 측면에서 이해되는 상대에 대한 부정은 신대륙 발견, 정복, 식민화, 기독교포교 시기를 통해서, 그리고 도시와 주변부 유럽과 중남미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다. 상대에 대한 부정은 또한 자신의 고유성을 다른 사회집단과의 상이성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으로도 나타나며, 이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로 구체화된다.

최근 한국에서도 체류 외국인의 증가, 성적 소수자의 증가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증가하면서 주류에서 배제된 소수자들의 사회적 통합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다인종 다문화의 오랜 역사를 지닌 중남미 지역의 사회적 소수자 정책의 특징과 발전과정을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중남미 지역의 젠더변화의 특징과 사회적 소수자 보호 정책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 중남미가 사회 통합을 위하여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는 지, 또한 사회적 소수자를 껴안는 과정 중에 부족한 정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떠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중남미의 부패척결과 사회안전망 확보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 TI)가 2009년 11월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CPI)를 보면, 뉴질랜드가 1위, 소말리아가 180위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39위, 멕시코는 89위, 콜롬비아와 페루는 동일하게 75위로 나타나 있어 중남미 국가의 심각한 부패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또한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소위 부패가 심한 나라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그 만큼 사업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예측가능성 보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 부담이 높다는 점이다. 중남미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로 변화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 윤리와 투명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이 2007년 7월에 발표한 2006 세계 거버넌스 지표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오직 4개국(칠레,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그리고 엘살바도르)만이 국가 “부패 조정” 순위의 상위 절반에 포함되며 5개의 국가(에콰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라과이와 베네수엘라)는 하위 사분위수에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 투명성기구의 2006 부패 지각 지표에서는 오직 칠레와 우루과이만 5.0 이상의 점수를 얻었고 (1에서 10까지의 범위에서 10이 가장 부패가 적은 것이다) 7개의 국가는 3.0 이하의 점수를 얻는, 더 비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찰 부패는 지역의 많은 부분에서 준법 집행 능력을 떨어뜨리고 국가를 범죄적 요소와 국제 테러리즘에 취약하게 하며 법제 행정직의 투명성 부족은 해외와 국내 투자를 약화시킨다. 공권 부패에 대한 대

항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주화 정부를 강화시키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CSIS 아메리카 정책은 2007년 7월 10일 회담을 열어 진보 정도와 전진을 방해하는 장애, 라틴 아메리카 정부 윤리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구들을 점검하였다.³⁵⁷⁾

부패가 지역 정부와 민주주의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으며, 민주주의는 “손상되기 쉽지만 위험에 처하진 않았다”고 보이며, 칠레와 코스타리카 그리고 우루과이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반 부패와 다른 주요 정부 카테고리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지만 정부의 유효성이나 규제력 자질, 관리 조달 역할과 시행, 책임, 법의 역할과 부패 조정에서 증진이 없었다. 부패와 싸우는데 있어 특별한 무기는 없으며 그 대신에 기업 재구성에 있어 진보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모니터링 노력을 포함한 통합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수요 중시 정책의 책임에서 시민 사회와 언론은 필수요소이다.

제 4 절 동남아시아지역의 현안문제

1. 개 관

동남아시아지역은 최근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하고 있고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이 점점 증가하고, 앞으로도 경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도 아세안지역 공동체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우리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정치적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 지역의 법률과 제도협력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

357) Peter Deshazo(2007, September), “Anticorruption Efforts in Latin America”, Policy Papers on the Americas Volume XVIII, Study 2, CSIS AMERICAS PROGRAM

는 바 이를 위해서는 이들 지역의 구체적 현안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동남아시아지역의 부패방지 시스템, 동남아시아지역의 수자원관리 시스템, 동남아시아지역의 재난방지 시스템, 동남아시아 빈곤감소 및 빈부격차해소 등을 선정하였다.

현안 선정은 APEC,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FAO(유엔식량농업기구),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OECD, UNDP, UNEP, WFP, WHO, WTO, WEF(세계경제포럼) 등 국제기구와 해당 지역의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선정하였고, 연구대상지역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를 선정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법제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현안에 대한 구체적 연구분석은 지역현안연구보고서에서 서술하고 본장에서는 개괄적인 내용만을 간단히 다루었다.

2. 동남아시아의 부패방지 시스템

(1) 동남아시아의 부패현황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2010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56위), 태국(78위), 인도네시아(110위), 베트남(116위), 캄보디아(154위) 순으로 나타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부패문제는 어느 국가가 낮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동남아시아 국가 모두가 해당되는 문제이고, 그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

최근 이들 지역의 국가들이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고도의 경제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러한 경제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정치적 안정은 물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인적, 물적 자원과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하고 그 중에서도 고위공직자, 군부,

정치인들의 부패문제는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추동력을 상실케하는 매우 심각한 병폐가 되고 있다.

(2) 부패방지 조직

부패방지 조직으로 반부패조직으로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MACC),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CCC: National Counter Corruption Commission),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CEC, KPK), 베트남 부패방지 중앙위원회(Office of Central Steering Committee on Anti-Corruption, OSCAC)와 감찰원(Government Inspectorate, GI), 캄보디아 반부패처(Anti-Corruption Unit) 등이 있다.

구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기관명칭	부패방지위원회 ³⁵⁸⁾ (MACC)	부패방지위원회 ³⁵⁹⁾ (NACC)	부패방지위원회 (KPK, CEC)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OSCAC)	반부패처 ³⁶⁰⁾ (ACU)
설립근거	부패방지위원회법 (2009)	1997년 개정헌법 1999년 부방위법	부패방지법 (2001)	부패방지법 (2006)	반부패법 (2010) ³⁶¹⁾
설립연도	2009	1999년	2003.12월	2007.1월	2010년
직원수	2,620명 ³⁶²⁾	760명	648명	약 600여명 (지방위원회포함)	
소속·	- 총리 소속 -	- 헌법기관, 국왕이 임명 - 고위공직자	- 대통령 소속 - 부패행위	- 총리가 위원장, 부총리가 부위원장 임명	- 부패신고 접수·조사· 감독·처리

제 4 장 글로벌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현안 문제

구분	말레이시아	태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기 능	<p>공공·민간 부패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 교육·홍보 - 부패방지 정책입안 - 공직자 청렴도 조사 	<p>재산심사³⁶³⁾</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공직자 부패 및 부정축재 조사 후 직위박탈, 형사소추, 징계 - 제도개선권고, 청렴윤리의식 고양, 시민사회 협력 등 부패예방 	<p>수사·기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재산 신고 기록·확인 · 반부패 교육·홍보 및 시민 협력, 국제 협력 · 부패유발 제도 개선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인 부패예방업무 주도·조정·감독. - 부패사례 감시, 부패고발 처리 - 부패방지 교육 및 정보 확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 신고자의 신분 비밀 유지 및 신고자의 안전 보장 조치 - 재산 및 부채 신고 시스템 관리
조 사 권 보 유 여 부	<p>부패전담수사권(긴급시 무영장 압수수색권, 계좌추적권, 특수한 경우 무영장 체포권)</p>	조사권 보유	<p>부패행위 수사 및 기소(위원회가 수사한 부패사건은 ‘반부패특별법원’에 직접 기소)</p>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 혐의자의 금융계좌 추적 - 부패 혐의자의 통화 감청, 물적증거 수집 - 부패 혐의자 등 소환 및 자산 동결
지 방 조 직	<p>15개 주사무소, 9개 지역사무소</p>	지역부방위 설치예정	없음	63개 지역별 지방지도 위원회	

358) 1967년 설립된 반부패청 후속으로 만들어짐

(3) 부패방지 정책과 법률

동남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반부패법률로 말레이시아의 부패방지위원회법, 태국의 부패방지기본법(2007년 개정), 인도네시아의 부패방지법(2009년 개정), 베트남의 반부패법, 캄보디아 반부패법(2010년 재정) 등이 있다. 또한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 부패방지의 개선방향

동남아시아지역에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책 등 시스템의 부재가 아니라 부패를 척결하려는 정책집행권자의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부패를 너무 쉽게 용인하고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국민을 상대로 부패관련 법률과 정책을 홍보하고, 공직자를 상대로 부패방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것도 필요하다. 부패관련 법률의 엄격한 적용으로 법률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동남아시아 수자원관리 시스템

(1) 수자원관리 현황

동남아시아지역의 물 부족은 일반적 현상으로 특히 건기의 물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연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수자원 사용량을 보면 내부 수자원의 54%를 사용하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라

359) 1975년 설립된 舊 반부패위원회 후속

360) 1999년 설립된 舊반부패처 후속

361) 2010.4월 부분 발효되었으며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2010년12월 신형법 발효 1년 후인 2011년1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베트남정부의 결정에 따라 2011년 8월1일부터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발효되었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부패행위를 척결하여 청렴한 사회를 만들려는 베트남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62) 말레이시아정부는 향후 5년간 부패담당 직원을 5000으로 증원할 계임을 추진중임.

363) 고위 공직자는 물론 국회의원, 정치인의 재산을 등록, 심사함.

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의 다른 국가들은 내부 수자원을 불과 2%- 15.5%만을 사용하고 있다.

(2) 수자원관리 조직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Water Management Committee)가 설립되었고, 베트남은 수자원관리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Management, DWRM)가 수자원의 국가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수자원관리는 수자원기상부 MOWRAM (Ministry of Water Resources and meteorology),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가 담당한다.

(3) 수자원관리 정책과 법률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1년 12월 국가수자원정책(National Water Resources Policy, NWRP)을 채택하고 2004년 수자원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베트남도 국가수자원전략을 마련하여 수자원 개발 및 보호, 관리 및 할당 등에 관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캄보디아도 양질의 물을 적정한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 수자원정책과 관련하여 수자원관리법 (Law on Water Resources Management)을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4) 과제 및 시사점

1) 문제점

담수³⁶⁴⁾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이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것

364) 수자원 중 식수원이나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중요한 자원으로 민물이라고도 한다. 기수(汽水)나 염수에 비해 염분의 함량이 상당히 낮지만, 미량의 염분과 함께 부유퇴적물 및 세균과 같은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다. 지표상의 담수는 비나 눈의 형태로 내리는 강수에 의해 공급된다. 하천이나 호수에서 쉽게 관찰되며 지하의 대

은 중요하다.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 경제의 발전과도 밀접하다. 그러나 수자원의 가용성은 위치, 계절과 기후,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담수는 지구상의 수자원의 3%에 불과하지만 그 중 단 13% (지구전체의 수자원 중 0.4 %)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마저도 그 접근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통합적 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가 필요하고, IWRM 정책은 경쟁적으로 물을 확보하려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부족한 수자원으로 인한 지속적인 사회적 불공정과 충돌이 사회적 분열을 촉진하고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수자원 사용자 간의 균등한 권한을 찾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물 사용자 간의 협력을 이끌어가는 정부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 정책은 특히 생활과 생태와 관련하여 토지와 물에 대한 인간 활동의 상호 작용을 존중하고, 필요사항을 통합하면서 강유역에서의 개발 잠재력을 인식한다. 물에 대한 인식과 보전, 식품 안전, 강유역이나 습지 보전 및 수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포함한 모든 활동과 이슈를 포함한다.

현재까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수자원에 관한 많은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집행하기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집행하였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그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공통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먼저 인구 증가와 산업화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최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상수도

수층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하수 역시 대부분이 담수이다. 현재 지구의 담수는 빙하에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도시지역의 생활폐수와 산업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수자원의 오염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수자원관리를 위한 관련법률 자체의 법적인 문제로 ② 수자원법상 정책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입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③ 정부 기관들 간의 권한과 책임의 중복이 있고, 이로 인하여 통합적인 강 유역 계획수립과 관리의 결핍이 발생한다. ④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검사와 법률의 집행 그리고 분쟁해결 등에 있어 비효율적이고, ⑤ 수자원 자료 및 정보가 여전히 산발적이고, 감시 네트워크가 비효율적이며, 통합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한 인식, 능력 및 기술의 수준이 국내와 지역적 수준 모두 상당히 낮다. ⑥ 수자원 관리 및 개발을 위한 예산이 제한적이고 이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⑦ 국가예산, 국제원조, 사적 투자 및 사용자 비용을 포함하는 장기적 재정전략이 결핍되어 있다.

2) 향후 개선방향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인 수자원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① 우선적으로 수자원을 위한 국가적 목표가 국가전략의 주요 요소가 되는 수자원의 보호 및 지속적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 또한 ② 수자원관리를 위한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수자원에 관한 법률과 내규를 검토하여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③ 수자원 감시 네트워크의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하고, 실효적인 수자원 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④ 통합적인 강유역 계획수립과 관리가 있어야 하고, ⑤ 수자원 관리를 위한 장기적 재정투자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동남아시아지역 국가들 간 수자원 관리 기관간의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고, ⑦ 수자원정보 체제 및 수자원 사

용자들에 대한 적시 적절한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4. 동남아시아 재난관리 시스템

(1) 재난관리 현황

동남아시아지역은 지리적, 지형적 원인으로 지진과 해일, 태풍과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이 지역의 대홍수로 태국의 수도 방콕의 전 지역이 침수되고 약 4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인명과 재산손실이 발생하였다.

(2) 재난관리 조직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가조정위원회(BAKORNAS PBP), 주조정단(SATKORLAK PBP)가 있고, 베트남은 중앙에 홍수 및 태풍 통제 중앙위원회를 두고, 각 지방에 홍수 및 태풍 통제 위원회를 두고 있다. 캄보디아는 ‘재난관리 국가위원회’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006년에 각 지역별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공동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3) 재난관리 정책과 법률

인도네시아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UNDP의 지원을 받아 재난상황에 대한 비상대응 및 임시복구를 위한 법률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07년 4월 27일에 발효하였다. 캄보디아는 재난관리 국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국가재난관리법의 제정을 준비 중이며 현재 초안을 작성 중에 있다.

(4) 재난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해마다 자연재난으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속출하고, 거주하며 식량 부족, 질병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를 위해 WHO는 산하조직인 위기관리대응국(HAC, Health Action in Crisis)을 통해 각국이 재난에 대비한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WHO HAC와 함께 동남아시아국가에 대한 구호사업, 질병감시 및 전염병 대비 대응 지원과 더불어 재난대비 위기대응 체계강화 지원 사업을 수행해 왔다. 우리나라도 ‘한-ASEAN 기후 변화 적응 파트너쉽 구축’ 사업을 해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및 유엔환경계획(UNEP)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태 지역 12개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지원을 하고 있다.

재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WHO동남아시아지역사무국은 지역사회 보건기구의 역할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감시체제 구축을 위해 정부 및 비정부 조직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긴급상황 시 1차 보건의료 접근성 (Primary Health Care Approach in Emergency)’에 관한 지역위원회를 열어 지역사회감시체제 강화 및 대응시스템 구축에 관해 논의를 하였다. 또한 재난 대비 종합평가, 자국 상황에 맞는 장단기 대책 수립을 위해 재단은 새로운 벤치마크 툴³⁶⁵⁾을 이용해 동남아시아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방재 및 위기 대응 역량을 평가하였다.

2004년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를 계기로 WHO 동남아시아 회원국들은 재난 대비에 관한 사전 대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2005년 그 대책 마련을 위한 동남아시아 지역회의를 열어 재난관리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체계구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WHO 동남아시아

365) 평가 기준은 WHO 동남아 11개 회원국의 합의 하에 만들어진 벤치마크 툴이다.

사무소는 회원국과 함께 재난 시 긴급구호와 대응 방안의 질적 제고와 평가를 위해 국가 단위에서 시행하는 재난 대비 벤치마크를 개발하였다. 적절한 대응을 위한 일종의 평가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이 벤치마크는 총 1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벤치마크들은 모범 사례에 최적화된 기준과 지표가 정해져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정책 및 법령, 지역사회 역량, 역량 구축, 조기경보 및 보건 감시 등 4개 분야로 요약 구분된다.

2009년에 처음 만들어진 동남아 벤치마크 기본 틀은 통합적인 응급방재 평가 수단으로 고안되어 몇 개국에 한정적으로 시범 운영되었고 지금은 모두 완료돼 각 나라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에는 가장 먼저 네팔이 이 벤치마크 틀을 이용한 평가를 받았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는 부분적 시행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 평가 결과는 응급방재에 따르는 작업 범위 계획 및 국가별로 응급방재와 관련해 격차가 존재하는 부분 규명, 보건 분야에 대한 응급방재의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반영된다. 수치화된 형태로 제시될 이 방재 및 위기 대응 능력에 관한 종합 평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재난 대비에 관한 한계를 규명하고 좀 더 나은 대비책을 모색하는 데 좋은 가이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각 국가별로 자국의 상황에 맞는 장단기적인 재난 대비 로드맵을 구상하는 데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5. 동남아시아 빈곤감소 및 빈부격차해소 방안

(1) 빈곤현황

동아시아의 빈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빈곤감소에 차이가 있고, 동일국가 내에서도 지역간, 민족간의 차이가 있어서 동남아시아의 절대 빈곤 인구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2) 국가별 빈부격차의 유형

실질적인 빈곤타파를 위해서는 빈부격차의 해소가 필수적이거나 이 두 가지를 함께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빈부격차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정책과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로 인한 빈부격차의 유형으로 ① 도시와 농촌 간의 개발격차와 ② 지리적 지역불균형발전 그리고 ③ 다종족 사회의 경우 종족 및 민족간 개발격차 등이 있다. 도농간 격차와 지역불균형발전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이며, 베트남의 경우 지역불균형발전이 소수민족의 경제적 낙후라는 문제와 중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나라들에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주로 농촌개발, 지역균형개발, 소수민족지역개발의 형태로 추진된다. 해당 국가들은 경제발전단계상 주기적인 국가경제개발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빈곤타파 및 빈부격차 해소 또한 국가경제발전의 틀 안에서 다루고 있다.

저개발국의 경우 대부분의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고 또 농촌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농촌개발이 빈곤경감을 위한 주요한 정책적 수단이 된다. 또한 경제성장이 시작되면 한정된 자본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도시지역에 개발이 집중되어 도시 농촌간 개발격차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농촌개발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는 물론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인구 중 농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빈곤 또한 농촌에 집중되어 있다

(3) 빈곤감소 정책과 법률

인도네시아는 2011-25년 장기계획인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P3EI)을 발표하여 추진 중이고, 베트남은 2001년에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과 5개년 계획, 2002년에 포괄적 빈곤감소 및 성장전략을 추진하였다.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회복 및 개발 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to Rehabilitate and Develop Cambodia (NPRD))과 사회경제적 개발계획, 국가전략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4) 빈곤감소 정책과 법률의 시사점

절대빈곤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흔히 말하는 동아시아신 공공업국의 경우에는 모두 해소되었고, 그 외 말레이시아나 태국의 경우도 거의 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간 빈곤 문제의 해소 수준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과연 같은 동아시아에 속하고 있는가의 의심스러운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국가 내에서도 상대적 빈곤 문제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빈곤문제가 세계화와 관련이 있고, 이런 점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적 혹은 세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아세안이 농촌개발과 빈곤추방을 위한 액션 플랜을 설정하고 선진국들의 ODA(공적 개발원조) 지원, 아시아개발은행의 빈곤축소 전략을 통한 다양한 접근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아직까지 빈곤타파를 위해서는 역부족이라 하겠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공동체의 측면에서도 빈곤타파를 위한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역시 동아시아간의 공동체 의식 부족과 민족주의적인 성격 탓에 그 역할이 미미하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아시아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거버넌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하며 지역의 빈곤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³⁶⁶⁾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모두 지난 20년간 높은 경제성장으로 빈곤수준이 꾸준히 감소했으나 개발격차로 인해 빈부격차는 증가하고 있다. 저개발국에서는 주로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경감이

366) IMF, Cambodia: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2006, p. 39.

이루어지고 빈곤감소가 빈부격차 해소로 이어진다. 또한 정부행정능력이 낮은 만큼 조세정책을 통한 재분배보다는 농촌개발 및 지역균형발전 등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 된다. 따라서 세 나라 모두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퇴치 및 농촌빈곤해소와 지역균형개발을 빈곤과 빈부격차에 대한 주요 정책적 대안으로 채택하고 있다.

제 5 절 중양아시아지역의 현안 문제

1. 지역현안 개관

중양아시아국가들은 구소련의 사회주의체제에서 축적되고 독립 후 빠른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국 내부의 다양한 현안과 에너지자원 개발과 수자원 이용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 요소 등 지역의 공통된 현안 발생하게 되었고, ‘지역안보’와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러한 현안이슈는 다시 국내적과 대외적 현안, 지역공통의 현안,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지역현안(이하 ‘글로벌 현안’으로 칭함)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국내적 현안: 경제성장, 외국인투자유치, 에너지수출, 식량 안보, 수자원 확보, 환경오염, 빈부 격차
- 대외적 현안: 에너지 외교, 지역안보, 관세동맹, 자유무역협정, 민족갈등, 이슬람급진주의
- 글로벌 현안: 에너지 확보, 실크로드 지역경제권, 인권, 마약, 테러, 민주화, 식량불안, 공정경쟁, 부정부패, 환경오염, 사막화
- 지역공통현안: 수자원 확보, 에너지개발협력, 경제공동체형성, 지역안보, 정부주도개발, 권위주의체제 확대

2. 중점현안 이슈 분석

(1) 경제성장 관련 현안 이슈

1) 중점현안 이슈

- 시장경제로 체제전환: 독립 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국가별 체제전환모델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나 체제전환과 경제개혁 실행을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 대규모 사유화, 금융시스템 현대화, 민간부문의 기능 활성화, 산업다각화, 외국인투자 유치 등 세부 전략을 추진한다.
- 중앙집권과 시장경제의 결합: 빠른 경제성장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 제고를 최고 목표로 정한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의 목표가 되며, 시장개방과 자유경쟁 등 시장경제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고 시장경제를 왜곡시킨다.
- 국영기업의 민영화정책: 시장경제체제 이행을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단계적인 민영화정책을 추진해왔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1단계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업공개, 2단계는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본 유치하는 전략 선택하였다.
- 증권시장의 현대화 및 개방화: 체제전환과정에서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많고 폐쇄적인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³⁶⁷⁾ 원유개발에 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증권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국제자본시장과의 거래가 낮고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다.

367) 2011년 12월 23일 KRX는 우즈베키스탄 국유자산위원회와 증권시장 IT시스템 수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증권시장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되었다. 또한 24일 카자흐스탄의 증권시장 현대화 프로젝트에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외국인투자 유치 및 확대: 외국인 투자자로서 에너지자원의 보고, 높은 경제성장률 확보, 산업다각화 수요 등이 대중양아시아 투자의 기회이다. 에너지부문의 외국기업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미비하다.
- 탈석유경제 및 산업다각화: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위험분산을 위해 탈석유경제 및 산업다각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세부 전략에는 경기부양정책, 제조업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산업인프라 개선을 위한 경제지원 정책이 있다. 단 산업인프라 확충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³⁶⁸⁾

2) 단계별 추진 현황

- 계획경제기(1991년 이전): 계획경제정책 시행, 1차 산업 중심, 산업별 지역 특성에 따른 산업구조가 형성되었다.³⁶⁹⁾
- 체제전환기(1991년~1995년): 소연방 해체로 인해 경제활동 와해(기업도산, 실업률 급증), 1990년대 대비 마이너스 성장, 체제전환, 경제정책개혁 시도하였다(제조업 육성).
- 경제침체기(1996년~1999년): 러시아 모라토리엄선언³⁷⁰⁾, 경제침체 지속, 금융권 신용공황, 1999년 카자흐스탄(2%성장)을 제외한 기타 국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368) 2009년 12월 4일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10년-2015년간 국내 산업다각화를 위해 670억불(77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정책집행을 위해 새로운 입법을 예고하였다.

369)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와 가스산업, 우즈베키스탄은 면화와 가스산업으로 특화되었다.

370) 모라토리엄(Moratorium)이란 전쟁, 공황 등에 의해 국가경제가 혼란하고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1998년 러시아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고, 이는 중앙아시아국가들의 경제에 치명타가 되었다.

- 경제전성기(2000년~2008년): 자원가격 상승과 경제개발 정책에 따른 고도성장(연평균 10% 전후의 경제성장률 기록³⁷¹⁾, 석유 및 에너지 개발 적극 추진하였다.
- 시장개방화 정착기(2008년~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³⁷²⁾, 에너지민족주의 시행, 산업다각화 정책 시행, 산업별 대규모 구조조정과 민영화, 증권시장 현대화, 에너지수출루트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3) 경제성장 장애요소 및 대응전략

장애요소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주도 통제경제체제 지속 - 에너지자원 의존 경제 - 불투명한 재정운영과 부정부패 - 법제도적 시스템 취약 - 금융시스템 낙후, 대외부채 - 부문별 전문 인력 부족 - 고물가 지속과 빈부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완화, 시장요소 활성화 - 산업다각화정책 추진 - 외국 선진기술과 자본 도입 - 법제도적 시스템 정비 - 금융시스템 및 증권시장 현대화 - 대학 및 직업교육 활성화 - 물가안정

371) 고도성장은 에너지자원 수출증가와 건설 등 고정자산 투자 증가가 크게 기여하였다(김화년, 정호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와 투자환경 변화,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년 12월, 5면 이하 참조). 에너지 수출국(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석유와 광물자원 분야의 개발, 에너지 비수출국(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금과 면화의 가격 상승에 기인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372)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이 금융위기의 충격이 제일 컸고,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상대적으로 충격을 적게 받았고,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연계가 약해 직접적인 금융위기의 피해가 적었다.

4) 정부조직 및 집행법률

국가 내용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부부처	외무부, 재무부, 세무부, 노동 사회보장부, 산업무역부, 에너지자자원부,	외무부, 경제부, 대외경제관 련 투자와 무역부, 노동자 및 거주자 사회보장부, 반독점위 원회,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집행법률	-법률: 투자법, 경쟁법, 특별 경제구역법, 금융증권화에 관 한 법, 외환관리법, 금융리스 법, 자연독점과 통제시장법, 복지기금법, 고용법 등 -대통령령: 금융부문 발전전 략, 경제개혁방안, 법률정책 방안 등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민영화와 사유화법, 국유주택 사유화법, 경쟁과 독점행위제 한법, 외국인 투자법, 기업활 동의 자유보장법, 외국인투자 자 권리보장과 보호방안법, 자유경제구역 법 등 -대통령령: 기업활동의 지원 과 육성방안, 투자관련 분과 조직 강화방안 등

(2) 에너지자원 관련 현안 이슈

1) 중점현안 이슈

- 자원과 에너지민족주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원과 에너지민족주의를 표방하여 외국기업의 시장참여를 규제하고 있다.³⁷³⁾ 이들 국가는 에너지외교 및 에너지수출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73) 카자흐스탄의 경우 국영기업을 통한 에너지자원의 국유화, 개발에 착수한 기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환경오염 등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다(심충희, 카자흐스탄 자원 민족주의 특성연구, 경희대학교 유럽어문학 석사학위논문, 2010년, 12면 이하 참조).

- 카스피해지역 자원분쟁 갈등: 카스피해를 둘러싼 연안국의 자원에 대한 관할권 분쟁이 심각하다.³⁷⁴⁾ 카스피해를 바다로 인정하는 경우 UN해양법협약을 적용하고, 호수로 인정하는 경우 연안국의 협의 하에 경계를 정하게 되었다. 현재 카스피해 영유권 미확정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카스피해 횡단 해저파이프라인 건설도 지연되고 있다. 연안국은 지역 간 에너지대화 협의체를 통한 해결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 수송로 확보 경쟁: 중앙아시아 지역은 과거 구소련에 속해 있었던 관계로 대부분의 수송로가 러시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수송로에 대한 의존은 러시아에 대한 종속을 의미하기에 수송로 연장 또는 새로운 수송로를 개척하여 수송로 확보하려고 한다. 러시아 또한 에너지 수송로 건설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2) 단계별 추진 현황

- 구소련시기(1991년 이전): 1917년 소연방 구성된 후 석유생산 시작,³⁷⁵⁾ 계획경제체제하에 지역별 분업체제 운영, 러시아 석유생산 본격화,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은 유사시 대비 비축하였다.

- 개방화 시기(1991년~2005년): 경제분야의 자유화 정책, 에너지와 광물분야 국유자산 지분매각 감행,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이 있다.³⁷⁶⁾

374) 카스피해에서 확인된 원유매장량은 약 400억 배럴로 전세계 매장량의 5%에 이르며, 잠재매장량은 2600억 배럴로 중동에 이어 세계 2위의 석유자원 매장지이다. 카스피해 석유의 60~70%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유전탐사와 개발단계에 있어 새로운 에너지투자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연안국의 에너지확보를 위한 외교전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각국의 입장과 동향은 방기열, 현안분석-카스피해 영유권 분쟁,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에너지전략, 제16권 제7호, 2008년, 20면 이하의 내용 참조할 것.

375)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석유생산이 시작되었다.

- 국가 주도적 발전시기(2005년~2015년): 석유와 가스자원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에너지산업 현대화와 인프라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석유화학산업 육성, 카스피해 자원개발, 석유기금조성, 선진적 조세시스템 도입, 에너지산업 프로젝트 DB구축하는 것이다.³⁷⁷⁾

3) 에너지부문 장애요소 및 대응전략

장애요소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자본과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에너지부문에 집중된 외국인투자 - 카스피해 영유권 미확정 - 지역 간 자원분배 갈등 -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낙후림 영역(석유화학산업 포함)육성 - 법제도적 시스템 취약 - 정부정책 일관성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주도 프로젝트 발전정책 - 산업 및 혁신발전 전략 - 대형 프로젝트 자국기업 참여 의무화 - 산업구조다각화 정책 -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다운스트 - 정부규제 강화(조세, 환경문제) - 지역에너지대화협의체 구축

376)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나 자원들을 부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자본과 기술력에 의해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였으며, 따라서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되었다. 급진적인 개방정책을 시행한 카자흐스탄의 경우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재정적 토대를 구축하였다(Vladimir Paramonov, The Evolution of Russia's Central Asia Policy, Analysis Report, London: Defence Academy of the United Kingdom, 2008, pp.5-6).

377) 박상남, 카자흐스탄 석유-가스 산업정책, 중동연구 제26권 제2호, 2007년, 343면 이하 참조.

4) 정부조직 및 집행법률

국가 내용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부부처	외무부, 재무부, 에너지자원부, 산업무역부, 경제예산기획부, 환경부	외무부, 경제부, 대외경제관련 투자무역부, 환경보호위원회, 지질과 광산자원위원회
집행법률	-법률: 에너지법, 지하자원과 지하자원이용법, 국가관리 및 감독법, 국경법, 운송법 등 -대통령령: 2010-2014년 중점 산업 혁신개발 국가프로젝트, 2015년까지 운송전략 등	-법률: 에너지사용합리화법, 환경심사법, 국경법, 대외정치활동 기본원칙법 등 -대통령령: 거주지 인프라개발과 개선추가조치령,

(3) 지역협력 관련 현안 이슈

1) 중점현안 이슈

-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구소련 해체와 더불어 단일경제권이 와해되고, 독립국가연합의 구성을 통해 독립하였다. 독립 후 세계경제의 자유무역과 경제통합의 흐름에 맞춰 2000년 10월 10일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형성하였다. 이는 주권존중, 국경유지, 경제, 과학, 교육, 문화, 사회 및 기타 분야에서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⁷⁸⁾

378)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양자간 및 다자간 지역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UN기구 등록, 중국, 러시아, 터키 등 역외 국가도 참여)는 평화, 영토보전, 테러, 마약, 국제조직범죄 공조, 구산지원을 목표로 한다. SCO현장은 국경획정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9.11테러 후 안보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 대화 및 신뢰구축조치회의(CICA, 몽골, 중국, 인도, 등 역외 17국 참여)는 아시아의 평화, 안보, 안정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 외에도 중앙아시아

- 에너지대화협의체 형성: 카스피해를 둘러싼 자원분배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은 제66차 UN총회에서 UN후원 하에 지역 간 에너지대화협의체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는 전략적 에너지부문에서 상호호혜적인 협력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관세동맹 형성: 2009년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협약 체결, 2010년 1월 1일 관세동맹 발효, 통합관세법 제정(2010년 7월)하였다. 협정내용에 따라 협상된 품목에 한해 단일 관세율 적용, '0' 세율 적용한다. 회원국이 원산지인 상품은 역내 이동시 통관절차 폐지되나, 역외 국가로부터 상품 수입 또는 역외 국가로 상품 수출시 회원국 내에서 이동할 때 관세가 부과한다.³⁷⁹⁾
- 자유무역협정 체결: 관세동맹과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³⁸⁰⁾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추진하고 있다. 협상 관련 공동성명은 2010년 11월 23일 체결, 현재 WTO 규정과 원칙에 입각하여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지적재산권, 공산품과 농산품 교역, 서비스 및 투자, 기술장벽, 동식물 검역과 관련한 무역협정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10월 중에 FTA체결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성과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 단계별 추진 현황

- 정치적 통합시기(1991년~1994년): 국제사회에서 주권 독립국가로

아협력기구(CACO), 핵무기없는 중앙아시아(CANWFZ), 물정상회의(Water Summit),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CAREC) 장관급 회의가 있다.

379) 2006년 8월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타지크는 관세동맹보다 WTO 가입을 선호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중 유일한 WTO 회원국이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380) EFTA는 유럽연합(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 강소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체제이며, 1960년 5월에 결성된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인정 획득, 체제전환에 호의적인 대외환경 조성, 국경확정, 지역평화, 안보와 안정 유지를 주된 목표로 설정한다.

- 경제적 통합시기(1995년~2005년): 지역 경제협력 및 교통협력 확대, 경제협력 실행을 위한 메커니즘 마련, 관세동맹과 공동경제공간 확립을 위한 관세동맹협정 및 증시발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³⁸¹⁾
- 지역협력 확대발전시기(2006년~): 경제, 군사, 안보, 정치, 과학기술, 문화, 교육, 에너지, 교통, 환경보호 등 영역에서 효과적인 협력을 이루기 위한 다자협력체로 추진하며, 지역의 안보, 에너지, 통상을 우선 협력분야로 선정하였다.³⁸²⁾

3) 지역협력의 장애요소 및 대응전략

장애요소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대통령 라이벌 관계 - 민족간 역사간 대립관계 -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 주변국 지역협력 추진에 편승 - 권위주의와 파벌주의 심화 -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식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협의체 구축(공생의 길) - 실크로드 외교를 통한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 - 실용주의 노선 추진(중러미)³⁸³⁾ - 범아시아 차원의 안보협력 구축 - 포괄적 협력확대(경제, 정치, 안보, 테러, 마약, 물, 에너지)

381)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의 경우 중앙아시아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협력제이나, 1991년 중앙아시아 연합으로 출범하여, 1994년에는 중앙아시아 경제동맹으로 변화되었고, 1998년에는 명칭을 중앙아시아 경제협력(CAEC)으로 개칭되었다. 이는 협력기구의 설립목적이 정치 및 지역안보에서 경제협력으로 변경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382) 고재남, 중앙아 지역협력의 역내외 환경과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2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2010년) 자료집, 412면 이하 참조.

383) 우즈베키스탄은 기타 국가와 달리 중앙아시아 우선주의와 탈러 외교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키르기스스탄은 실리추구의 대서방 외교를 중시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소극적이고 중립정책 채택하고 있다.

(4) 정부조직 및 집행법률

국가 내용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부부처	외무부, 국방부, 교육과학부, 운송통신부, 산업무역부, 환경부, 문화정보부	외무부, 경제부, 대외경제관 련 투자무역부, 국방부, 인민 교육부, 세관위원회, 환경보호 위원회, 지질광산자원위원회
집행법률	-법률: 외교법, 국제상사중재 법, 국제조약법, 국방 및 군 사력에 관한 법, 극단주의근 절법, 국가안보법, 국가안전 위원회 국경청법 -대통령령: 국가경제의 경쟁 력과 안정성 보장방안, 2015 까지 운송전략	-법률: 국제조약법, 국경법, 대외정치활동기본원칙법, 테러와의 전쟁법, 중재법원법 등

(5) 지역사회 안보에 관한 현안 이슈

1) 중점현안 이슈

- 수자원 문제: 지형적 특정상 산악지대와 초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³⁸⁴⁾ 수자원을 공유하거나 인접한 국가들 간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진다. 소연방시기 목화생산과 에너지개발을

384)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시르다리아(Syr-Darya)와 아무다리아(Amu-Darya)의 두 강을 수자원 원천으로 하고 있다. 목화재배와 자원개발, 식수이용을 위해 수많은 수로를 통해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국가들은 물자원 공유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다(Viorel Badescu, Roelof D. Schuiling, Aral Sea; Irretrievable Loss or Irtysh Imports?, Water resources management Volume 24, Number 3, Springer Netherlands, 2009, pp.597-616).

위해 아랄해로 유입되던 아무다리야강의 강줄기를 돌려 운하를 만들었고, 아랄해의 강줄기가 끊겨 고갈되고 있다.³⁸⁵⁾ 이는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농경과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1992년 ‘국가간 물조정 위원회(the Interstate Commission for Water Coordination: ICWC)’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2009년 4월 28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물 정상회의(Water Summit)’를 개최하고 ‘아랄해를 살리기 위한 국제펀드’를 창설함으로써 아랄해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출처: 아랄해의 재앙(<http://blog.daum.net/originalstone/16906069>)

- 식량위기: 최근 세계 주요 곡물공급지의 기후변화로 농산물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가격급등 등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도 경제개발이 낮은 타지키스탄이 식량불안 위협에 노출

385) 아랄해는 큰 항구가 세 곳이나 되었고, 물이 마르기 전에는 물고기도 많았다고 한다. 1971~1972년 갑자기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1970년 아랄해도 유입되던 강물의 양은 1초당 3000~5000m³였으나 현재는 15m³에 불과하다(Isabel Hilton, Central Asia's water problem, <http://www.opendemocracy.net/article/openecconomy/central-asias-water-problem>, 2011.10.28.).

되었다. 주식인 밀은 90%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수입하나 정치적 변화가 수입을 저해한다. 2010년 세계식량계획(WFP)은 키르기스스탄에 식량제공을 위해 6백만 불을 지원했다.³⁸⁶⁾

- 빈곤과 실업문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연방 붕괴 후 체제전환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침체, 실업과 빈곤층의 증대, 소득양극화 확대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였다. 2000년부터 10% 내외의 고속성장을 이루어왔으나 높은 물가 상승과 부정부패, 빈부격차의 확대, 민족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배분시스템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 민족갈등과 난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다민족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족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려는 노력을 해왔다. 특히 접경지대의 주민들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국경을 나들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안보적 이유로 불법 입국자들을 추방하기 시작하였다.³⁸⁷⁾ 2010년 6월 14일 키르기스스탄 남부지역에 민족분쟁이 발

386) Food Crisis Next Challenge for Kyrgyzstan?, Central Asia Today, <http://www.eurasia.net.org/node/61637>(2011.12.27.).

387) 카자흐스탄은 독립국가연합 출신 소수민족을 추방하고, 우즈베키스탄은 국경이

생하게 되었고, 키르기스스탄 내 소수민족 우즈베키스탄인 10만 명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입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정부는 난민 캠프를 세우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구호품을 공수했다.



출처: 키르기스스탄 남부도시 우쉬에 줄지어 선 난민행렬(<http://www.ekyrgyz.com>)

- 보건과 위생: 중앙아시아 대부분 나라는 기초적인 보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결한 환경 때문에 피부병과 기생충을 가진 아이들이 많고, 음용수 관리 소홀로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마약재배로 인해 최근에는 에이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유엔에이즈(UNAIDS)가 발표한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HIV감염자 수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구성국들에서 급증하고 있다.³⁸⁸⁾

인접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주민들을 학살하는 민족학살과 추방하는 행태를 보였다(이호령,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권력투쟁과 함의, 국방연구원 전략연구, 통권 제38호, 2006년, 148면 이하 참조).

388) 그중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9년 28건에서 2006년 2천 205건으로 늘었고, 수도 타슈켄트는 마약 사용자가 1/3이 HIV 양성반응을

- 테러와 인권침해: 국경분쟁, 수자원 이용과 자원분쟁 등 위협요소는 지역정세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을 겪을 가능성 높다. 또한 이슬람 급진주의, 불법 이주, 소형 무기 확산, 정부와 사회 내의 군사주의 확산, 마약밀매, 인권침해 등 위협 요소가 지역 내에 확산되고 있다.

2) 단계별 추진 현황

- 독립 전(1970년~1990년): 통합적 관리체제 시행(수자원, 에너지), 국가 간 부존자원 차이에 따른 상호 의존성 강조하였다.
- 독립 후(1991년~현재): 물-에너지교관거래, 에너지외교, 실리추구의 전략적 외교정책 시행하여 왔다.

(3) 지역사회안보 관련 장애요소 및 대응전략

장애요소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 이용 분쟁 - 민족갈등, 이슬람문제 - 장기집권과 권위주의 강화 - 실업과 빈곤 증대 - 테러, 마약, 밀매, 조직범죄 -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식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 민족 다양성과 종교자유 인정 - 민주개혁의 시민사회와 정치적 리더쉽 강화 - 산업구조조정, 고용창출정책법 - 아시아차원의 안보협력 구축 - 대화협의회 구축(공생의 길)

보였다고 한다.

(4) 정부조직 및 집행법률

구분 세부주제	정부조직	집행법률
물 문제	카자흐: 환경부, 외무부 우즈벡: 농업수자원부, 외무부, 환경보호위원회	카자흐: 수법, 환경법, 외교법 우즈벡: 수자원과 수자원 이용법, 수자원시설물 안전법, 환경심사법, 대외정치활동 기본원칙법
식량위기	카자흐: 농업부, 토지관 리청 우즈벡: 농업수자원부, 경제부, 내무부	카자흐: 곡물법, 농기업과 농장관 련 법, 농공단지와 농토 개발 국가 관리법, 식물재해 강제보험법 우즈벡: 농장필지규모의 개편 과 최적화에 관한 법
빈곤/실업	카자흐: 보건부, 내무부 우즈벡: 노동사회보장부 경제부, 내무부	카자흐: 노동법, 고용법 실현 방안 개정 우즈벡: 노동법, 고용, 장애인 사회 보장 노동보호법규위반 벌금 적용 절차, 시민국가 연금보장 법
민족갈등/ 난민문제	카자흐: 외무부, 내무 부, 비상상황부, 보건부 우즈벡: 긴급상태부,	카자흐: 이민법, 이민정책전 략 대통령령, 망명자에 관한 법 우즈벡: 국적법, 이민정책법
보건/위생	카자흐: 보건부, 체육관 광부 우즈벡: 위생부, 문화체 육부	카자흐: 보건제도법, HIV와 에이즈 의 예방과 치료법, 국민복지기금법 국민건강과 보건시스템법, 국민건 강보건법, 국민위생검역법 우즈벡: 국가위생감독법, HIV질환 예방법, 시민보호시스템법, 국민영 양실조방지법, 요드결핍증 예방법,

제 4 장 글로벌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현안 문제

구분 세부주제	정부조직	집행법률
테러/인권	카자흐: 외무부, 국방부 우즈벡: 외무부, 국방부	카자흐: 대규모 정치탄압 희생자 회복법, 극단주의 근절에 관한 법, 반테러법 우즈벡: 테러와 전쟁법,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처분과 행위에 대한 소송법, 인신매매 방지법
마약/무기	카자흐: 외무부, 법무부 우즈벡: 외무부, 사법부	카자흐: 형법, 법률위반방지법 우즈벡: 마약류와 향정신물질에 관한 법, 만성 알콜, 마약, 약물 중독환자의 강제치료에 관한 법

제 5 장 결 론

1. 중동국가인 UAE, Saudi Arabia, Qatar State는 왕정국가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통하여 막대한 국부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오일머니를 통하여 중동국가들은 자신들의 왕정일가가 정부 요직을 독차지 하고 있으며, 거액을 마련하려 외국계 은행에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에 Qatar State와 UAE는 Post Oil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여 국부를 과학기술 영역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동의 왕정국가 중에 Qatar state와 UAE는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하여, Saudi Arabia는 국민들이 반정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중동지역의 국가인 UAE, Saudi Arabia, Qatar State는 “코란”이라고 하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Sharia Law)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헌법, 민법, 형법, 환경법, 세법, 건축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즉 샤리아 법률은 헌법보다 상위의 법률이라 판단할 수 없고, 헌법의 하위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동국가는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입법부에 해당하는 의회를 두지 않고, 형식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중동국가에 아랍인들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정교일치 사회라는 이슬람교를 선이해하여야 한다. 즉 이슬람교는 인간이 신에게 복종하고, 현세와 내세에 신이 가르치고 인도해 준 생활양식을 그대로 따르는 종교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정교일치사회의 이슬람교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인간 활동을 포괄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숙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서 중동지역 국가의 사회, 문화 등의 특징으로 일부다처제도와 히잡 등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왜 이러한 제도를 두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인 고찰을 필요로 한다. 중동국가에 일부다처제가

허용된 이유는 이슬람 초기에 전쟁에서 많은 남성들이 사망하여 과부와 고아들이 발생하게 되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동제도를 두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히잡의 착용은 여성의 순결성과 가문의 명예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고, 여성의 사회적인 활동을 보장해 주는 순기능도 된다고 한다. 또한 중동국가의 이슬람교는 종교적인 임무와 수행에서 남녀간의 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혼인, 이혼, 상속, 재산권 문제에서도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전략수립을 위한 중동지역의 현안문제로 물부족, 식량안보, 사우디의 환경문제로 “태양광도시”건설, 기후변화로 빈곤문제, 정치개혁 논쟁과 선거, 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세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이슬람 여성의 인권문제로 여성폭력, UAE 지역의 해수담수화로 인한 사해방지방안, 아부다비 그린빌딩 적용확대 등을 발굴하였다.

따라서 중동국가의 기초연구는 글로벌한 경제성장과 시장의 확대로 중동지역에 대한 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치체제, 사회문화 제도 등을 선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2. 아프리카는 경제적 후진성, 장기간 걸친 내전, 분쟁 등으로 인한 난민문제 등 발전을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지만, 역내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 하나의 목소리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2011년 초 중동에서 시작된 민주화 바람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변화를 초래하면서, 정치적 자유화·경제적 발전,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프리카 연합 헌장의 채택(2002)으로 개발, 평화 및 안보 사안에서 아프리카 연합의 역할 증대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는 전 세계 최빈개도국 49개국 중 33개국이 아프리카에 소재함에 따라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이 최대 당면 과제이다. 아프리카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규모도 점점 확대될 전망이다. 장래 아프리카는 자원개발과 무역투자를 중심으로 개방적 경제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투자협력, 인프라 건설, 인재양성, 환경보전 등 분야의 진출이 기대된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광물자원개발을 중점 추진하며,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 지속가능한 광물자원개발 모델의 기술이전 등을 한국의 협력 요청을 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광물 자원 개발, 석유 탐사, 관광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항만, 댐, 도로 등 자원 인프라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협의하는 등 아프리카 지역과의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지역의 기초연구를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경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지역 국가의 법제도에 대한 기초 연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3. 중남미는 넓은 영토와 다양한 인종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식민경험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배경으로 전 세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유사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공유해 왔으며, 이와 같은 동질성은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각국 간의 다양한 통합 시도를 가능케 해왔다. 그러나 동질성만큼이나 차이가 큰 경제적 부존과 사회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이와 같은 숭한 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효한 경제통합 단위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중남미는 급속도로 발전과 혼돈을 거듭하는 가운데에서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미주 대륙의 변화는 지난 10년간 전개된 중남미 통합운동의 정치적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남미 대륙을 미국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경제적 주권을 되찾고, 또한 정치적 시민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중남미의 경제통합과 금융통합과 관련하여 중남미 지역의 증시합병에 노력하고 있다. 안데스 3개국(칠레, 콜롬비아, 페루)은 2010년 11월부터 증시를 부분적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말 합병을 이를 계획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브라질, 칠레,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6개국이 합병노력을 하고 있다. 6개국이 증시 관련 규제를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나 합병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으며, 중남미 주요 국가들이 3년 안에 증시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남미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는 경제적, 시민적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통합에 대한 노력을 하는 통합체와 중남미의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브라질의 'Bolsa Familia'와 같은 빈곤퇴치 및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젠더변화 및 사회적 소수자 보호문제와 더불어서 중남미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패척결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문제로 발굴했다.

4. 동남아시아지역은 부존자원은 풍부하지만 차이는 있지만 수세기에 걸쳐서 서구선진국의 식민지 상태를 경험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가를 형성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아직 발전중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형식적으로는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였으나 온전한 국민주권을 실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빈곤과 빈부격차, 보건과 위생, 교육, 생활환경 등 모든 면에서 기초생활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성장을 지속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도 이들 지역에 우리나라의 법률과 제도를 전수하여 미비한 법률

을 정비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 축적에 있다.

향후 동남아시아지역은 부존자원과 경제적성장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고, 정치적 측면에서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위치를 고려할 때 동남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정치적 협력이 필요하므로 이들 지역에 대한 법제정비협력 및 연구사업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법제정비협력사업은 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우선 상대국의 법적수요와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종합적인 기초법제연구에 보다 집중적인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동남아시아지역에 대한 법제정비협력 연구사업은 당시의 상황과 필요에 다른 단편적이고, 소극적인사업에서 벗어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중앙아시아 각국은 강대한 권한을 가지는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는 이슬람 카리모프(Islam Abduganievich Karimov) 대통령이 독립 이후 현재까지 계속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공화국 역시 누르술탄 아비술리 나자르바예프(Nursultan Abishuly Nazarbayev)대통령이 독립 이후 현재까지 통치하고 있다. 또한 타지키스탄공화국에서는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대통령이 1994년부터 현재까지 통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공화국의 구르반굴리 말리크굴리에비치 베르디무함메도프(Gurbanguly Mälikgulyýewiç Berdimuhammedow) 대통령이 있으나 투르크메니스탄공화국 역시 초대 대통령인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Saparmyrat Nyýazow)이 죽었으므로 대통령을 대행한 베르디무함메도프가 제2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불과한 것이다.

중앙아시아 중앙집권체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극히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므로 각각 인종 사이에서 대립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적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강한 지배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는 1989년에는 우즈베크인과 터키계 주민이 충돌한 “페르가나(Fergana) 사건”이 일어나고, 1990년에는 우즈베크인과 키르기스인이 충돌한 “오시(Osh)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각국에서는 이러한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석유와 광물 등의 천연자원과 면화를 중심으로 한 농업 등의 산업에 그치고 있다.

6. 중국적으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하여, 동지역의 국가에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계약 체결, 외교 및 경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법제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다.

참고 문헌

1. 중 동

(1) 국내문헌

- 공일주, 「이슬람율법」(살림출판사, 2010)
- 미야자키 마사카츠/이규원(역), 하룻밤에 읽는 중동사, (랜덤하우스, 2008)
- 서정민, 「글로벌에너지의 중심지-중동」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2009/9)
- 이원삼, 「이슬람법사상」, (아카넷, 2001)
- 이희수/이원삼, 「이슬람-9·11테러와 이슬람세계 이해하기」(청아출판사, 2010)
- 이희수/이원삼, 「이슬람」(청아출판사, 2010)
- 이희수, 「이슬람문화」(살림, 2009)
- 외교통상부, 「UAE 개황」 (2011/1)
- 진원숙, 「이슬람의 탄생」(살림출판사, 2010)
- 정수일, 「이슬람문명」(창비, 2010)
- 하병주, 「아랍 사회와 문화」(부산외국어대학교, 1998)
- 헨리조지 / 김윤상(역), 「진보와 빈곤」(살림출판사, 2009)
- 금상문, “UAE(United Arab Emirates)정치발전과 이슬람” 「중동연구」 제23권제1호(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04/7), 57~92면
- 김용운, “샤리아형법의 태형에 관한 고찰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참 고 문 헌

- 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1권제4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겨울호), 303면
- 박규완, “이슬람법질서의 공법적 구조분석” 「공법학연구」 제10권제3호(한국비교공법학회, 2009/8), 161면
- 박종평,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체제와 이슬람” 「중동연구」 제23권제1호(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04/7), 33~56면
- 이원삼, “이슬람과 대화를 위한 이슬람 사회 연구” 「현상과 인식」 제32권제1·2호(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8/5), 93~126면
- 최영길, “이슬람, 현대 그리고 개혁” 「서강인문논총」 제23집(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6), 439~452면
- 정상률, “카타르의 정치변동과 정치발전” 「중동연구」 제23권제1호(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04/7), 119~150면
- 손태우, “아랍 이슬람국가에서의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의 법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1권제2호(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5), 9면

(2) 외국문헌

- Burchi, S. / Vapnek, J. / Popp, C., “*Internaional Water Law*”, in *Law for water management : a guide to concepts and effective approaches*, (FAO, 2009). pp. 91~119.
- FAO,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06 - Eradicating world hunger : taking stock ten years after the World Food Summit*”(2006)
- Ibrahim Abdulla Al-Marzouqi, *Human Rights in Islamic Law*, (Abu Dhabi-U.A.E., 2005), pp. 188~207.

Ministry of Energy, United Arab Emirates, 2006/4)

Mohamed Ali Abou Sakr, *The courts System in the UAE*, (Liberty Magazine, 2005/3

Mohamed A. Raouf, *The Middle East Institute Policy Brief-Water Issues in the Gulf:Time for Action*, (2009/1), 1~13

World Bank, *A Water Sector Assessment Report on the Countries of the Cooperation Council of the Arab States of the Gulf*, (2005/3)

UNITED ARAB EMIRATE YEARBOOK(2010)

(3) 홈페이지

<http://hopia.net/hong/file/oil-uae.htm>

www.uaeinteract.com/governmentaffairs

<http://are.mofat.go.kr/kor/af/are/affair/opening/index.jsp>

http://www.uaeinteract.com/docs/National_Elections_Committee_endorses_the_final_lists_of_winners_in_FNC_elections/46870.htm

http://www.uaeinteract.com/docs/National_Elections_Committee_endorses_the_final_lists_of_winners_in_FNC_elections/46870.htm

http://www.uaeinteract.com/docs/National_Elections_Committee_endorses_the_final_lists_of_winners_in_FNC_elections/46870.htm

http://www.uaeinteract.com/docs/National_Elections_Committee_endorses_the_final_lists_of_winners_in_FNC_elections/46870.htm

<http://sau.mofat.go.kr/kor/af/sau/affair/opening/index.jsp>

참 고 문 헌

<http://www.maxtie.com/ko/nationalPortal/newsDetail/fc9181e8260d26cd012617094e9d018f.html>

<http://sau.mofat.go.kr/kor/af/sau/affair/opening/index.jsp>

<http://qat.mofat.go.kr/kor/af/qat/affair/opening/index.jsp>

<http://www.fao.org/docrep/009/a0750e/a0750e00.htm>

2. 아프리카

(1) 국내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연합(AU)과 NEPAD 프로그램의 출범: 향후 과제와 전망」, (2002)

하영선, 「세계정치론」, 2009

유종현,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의 출범과 전망」,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14집, 2001/12, p.20.

조부연, “아프리카 전통사회의 정치체제와 법” (아프리카학회집 제 20권, 191면

(2) 외국문헌

Aghaji, J.C, “ECOWAS : Is ia a Countervailing power for Economic Independence?”, In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XIV 1-2, p. 111.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and African Union 2006

3. 중남미

(1) 국내문헌

-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201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브라질-중미·카리브 지역 간의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2010.6.30)
- 음선필, “중남미 헌법재판제도”, 중남미법 비교연구회 발표문, (2010)
- 이상환(2007), “중남미의 부패와 민주주의 : 현황과 전망”, 중남미 연구 제25권 2호 pp. 99~128
- 이성형, 「현대 브라질 : 빛과 그림자」, 두술, (2011)
- 이성형, “브라질 룰라 정부의 유산과 후세피 정부의 전망”,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2011)
- 이성형, 「브라질 : 역사, 정치, 문화」, 한국연구재단 / 까치글방, (2010)
- 이중희, “지역연구방법의 범위와 특성”, 한국사회학회 발표논문, (2001)
- 윤택동, “브라질사회의 갈등과 그것의 경제적 영향 그리고 해소 위한 방안”, 중남미연구 제22권 2호, (2004), 73~86면
- 조희문, “브라질의 법률체계와 입법절차”, 한국법제연구원, (2010)
- 조희문, “브라질 헌법의 이해”, 중남미법 비교연구회 발표문, (2010)
- 하상욱, “중남미의 법체계 -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비교분석”, (2010), 137 ~ 139면

(2) 국외문헌

Antonio Gidi, Class Actions in Brazil : A Model for Civil Law

참 고 문 헌

- Countries, Public Law and Legal Theory Series, (University of Houston LAW CENTER, 2006)
- Cramer, C.E., “The 1824 Constitution of Mexico : Roots Both Foreign & Domestic”, (1993/4)
- ECLAC, 「Preliminary Overview of the Economics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0」, (2010.12)
- ECLAC, 「Social Panorama of Latin America」, (2010)
- Fenwick, T. B., “Avoiding governors : The success of bolsa familia”.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44(1), (2009), pp. 102-131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Western Hemisphere Report」, (2010.04)
- Kevin Hillstrom & Laurie Colfier Hillstrom ,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2003)

(3) 홈페이지

<http://www.ibge.gov.br>

<http://www.mofat.go.kr>

<http://www.bacen.gov.br>

<http://www.senado.gov.br>

<http://www.camara.gov.br>

<http://www.bcb.gov.br>

<http://www.ibneg.gob.mx>

<http://www.kita.net>

<http://www.banxico.org.mx>

<http://www.senado.gob.mx>

<http://www.diputados.gob.mx>

<http://www.eiu.com>

<http://www.inei.gob.pe>

<http://www.bcrp.gob.pe>

www.ibge.gov.br

www.mofat.go.kr

www.ibge.gov.br

www.bacen.gov.br

<http://www.senado.gov.br>

4. 동남아시아

(1) 국내문헌

변해철, 인도네시아의 헌법개관, 2005

배궁찬, 주요국제문제분석, 2011.01, 외교안보연구원

손기태 외2인,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상황
과 향후 전망, 2010.10. 대외정책연구원,

양승윤, 인도네시아 정치·사회적 변동과 뽀짜실라, 동남아연구 제
12호, 한국외대동남아연구소, 2003.9,

양승윤, 인도네시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년

이재현, 주요국제문제분석, 2010.11, 외교안보연구원

정광희, 인도네시아의 교육현황 및 발전과제, 2007, 한국교육개발원

참 고 문 헌

한국기업의 아시아 진출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 아시아법연구소 연례심포지움, 2008.4.

외교통상부, 인도네시아 개황, 2010.12

외교통상부, 베트남 개황, 2010.10

(2) 외국문헌

World Bank, CAMBODIA HIGHER EDUCATION QUALITY AND CAPACITY IMPROVEMENT PROJECT, 2011.3

Hikmahanto Juwana, IMPLEMENTING THE RECTANGULAR STRATEGY and DEVELOPMENT ASSISTANCE NEEDS, “Legal System in Indonesia,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2005)

Kei Koga, Competing Institutions in East Asian regionalism: ASEAN and the Regional Powers, Issues and Insights, Vol. 10-No. 23, 2010.10

ophal Ear, Sowing and Sewing Growth: The Political Economy of Rice and Garments in Cambodia, 2009.3, Stanford University

World Bank,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VN-SECOND PUBLIC INVESTMENT REFOR OPERATION (PIR 2), 2011.3.

World Bank, Sustaining Rapid Growth in a Challenging Environment: Cambodia Country Economic Memorandum,

World Bank, Teachers and Transformative Education Policy in Indonesia, Education up date- march 2011.

Toshio Kondo, Approach Paper for a Sector Assistance Program Evaluation for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ector in Cambodia,

(ADB, 2009)

Viet Tuan Dinh, TAKING STOCK An Update on Vietnam's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WORLD BANK, 2011)

(3) 홈페이지

<http://www.asean.fta.govt.nz/cambodia-political-situation>

<http://khm.mofat.go.kr/kor/as/khm/main/index.jsp>

<http://www.llrx.com/features/indonesia.htm>

<http://www.nyulawglobal.org/globalex/Indonesia.htm#overview>

<http://www.state.gov/r/pa/ei/bgn/2748.htm>

http://www.chinhphu.vn/portal/page?_pageid=439,1093454&_dad=portal&_schema=PORTAL

<http://vietnamexport.com/Vietnam3.aspx>

http://www.mofat.go.kr/mission/emb/ww_info_view.mof

<http://www.eisvietnam.or.kr/>

<http://www.eishub.or.kr/index.asp>

<http://www.washlaw.edu/forint/asia/vietnam.html>

5. 중앙아시아

(1) 국내문헌

강봉구, 우즈베키스탄 ‘마할라’제도의 개혁과 성격 변화, (대한정치학회보 제16집 2호, 2008), 152면

박창규, 중앙아시아의 이해, (씨네스트, 2009)

참 고 문 헌

- 방기열, 현안분석-카스피해 영유권 분쟁,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에너지전략, 제16권 제7호, 2008년, 20면
- 성동기, 최준영, 조진완, 중앙아시아 개발독재의 패러독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례의 다면적 분석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34권 제2호, 2010년, 231면
- 이경희, 중앙아시아 에너지에 대한 지정학과 주변국간 국제정치·경제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이재영, 우즈베키스탄-한국의 경제투자 협력에 관한 토의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이재영, 고재남, 박상남, 이지은, 카자흐스탄 정치 엘리트와 권력구조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심층연구 09-03, 77면
- 윤성석, 카자흐스탄 이중전환의 정치경제, 세계지역 연구논총 제15집, 2000년, 235면
- 지재운, 중국의 중앙아시아 전략, 중국학연구 제31집, 2005년, 271면
- 최한우, 중앙아시아 연구(상), (펴내기, 2006)

(2) 외국문헌

- Neil Melvin, "Patterns of Centre-Regional Relations in Central Asia: The Cases of Kazakhstan, the Kyrgyz Republic and Uzbekistan," *Regional & Federal Studies*, Vol. 11, No. 3, (2001), pp. 173~174.
- Butler, William E., *Civil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London: Wildy, Simmonds & Hill Publishing, 2008.

Butler, William E., *Civil Cod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London: Wildy, Simmonds & Hill Publishing, 2007.

ジュリボイ・エルタザロフ 『ソビエト後の中央アジア—文化, 歴史, 言語の諸問題』 (大阪大学出版会・2010年)

高橋厳根 『ウズベキスタン 民族・歴史・国家』 (創土社・2005年).

名古屋大学法制国際教育協力研究センター 『ウズベキスタン民法典』 (名古屋大学法制国際協力教育センター)・2004

藤田勇 『ソビエト法概論』 (有斐閣・1983年)

(3)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area/kazakhstan/data.html>

<http://www.mofa.go.jp/mofaj/area/uzbekistan/deta.html>

<http://www.mofa.go.jp/mofaj/area/kazakhstan/data.html>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uzbekistan/deta.html>

NIHU Program Islamic Area Studies, University of Tokyo,

http://www.l.u-tokyo.ac.jp/~dbmedm06/me_d13n/database/uzbekistan/institution.html